

연구보고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지연

공동연구원 정소연

RESEARCH REPORT 2017

NYPI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
- ▶ 위촉연구원 : 최수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 ▶ 집필진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한미경 (San Hose State University · Professor)
이성규 (한양대학교 · 겸임교수)

발 간 사 ■ ■ ■

1997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동 법률의 취지는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다종다양한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단속과 규제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쉽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그간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된 바 있고 청소년보호 정책의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재하고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청소년의 발굴과 회복지원을 돕는 등 개입대상과 정책수단이 다양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청소년유해환경의 양태와 속성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며 동시에 국가의 정당한 개입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고, 권리주체인 청소년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기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사회의 메가트렌드와 청소년의 미시환경트렌드를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의 추진현황과 여건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청소년보호 책무와 청소년의 기본권 간의 법리를 검토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 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정책 개입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진을 포함하여 각 단계마다 高見과 세세한 도움을 주신 현장, 학계, 그리고 정책담당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정책의 지난 20년의 정책성과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청소년보호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어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아 전반적인 정책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의 기본권과의 쟁점 분석을 위한 헌법적 원칙 검토, 둘째,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여건과 주요제도의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셋째,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주요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점검 및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환경체계의 보호 영향력 검증, 넷째,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선방향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및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비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AHP),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종다양한 신변종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출현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권을 고려한 보호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중심의 섬세한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전반적인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단위 청소년보호사업의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의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 강화 사업 확대,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청소년보호사업의 개입영역과 지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예방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보호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과 피해청소년의 발굴 및 회복지원 활성화,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과 추진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보호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정책효과 제고, 청소년보호사업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 방안 등 3개 정책과제, 15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핵심어: 청소년보호, 청소년 보호법, 유해환경, 대응능력, 자율권, 규제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아 국정과제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의 주요 추진계획인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보호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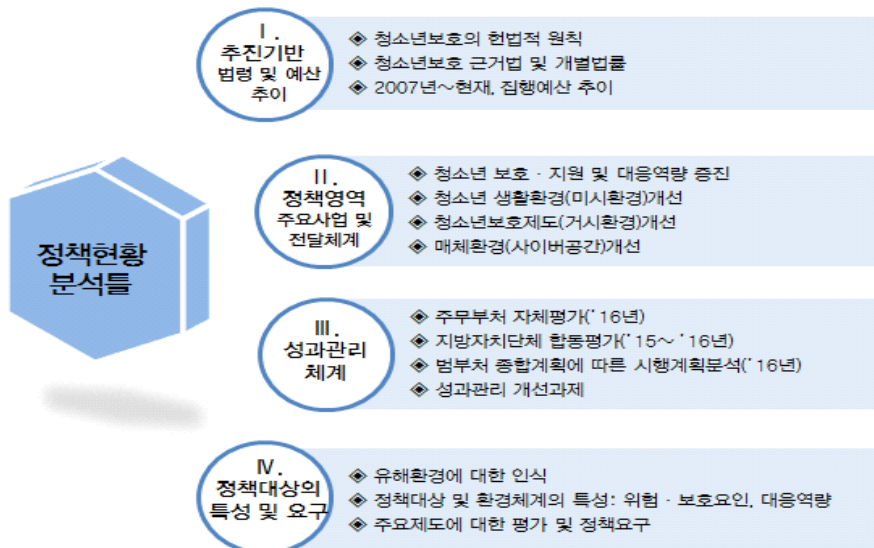
- 청소년의 기본권과 청소년보호정책 쟁점 분석
-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여건 및 현황 분석
-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과 환경체계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검증
-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도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쟁점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 특히 청소년보호정책의 현황분석을 목적으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대상과 정책유형의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를 확인함.
- 2차 자료분석 : 국가승인통계인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주요 보호제도의 작동여부를 확인함. 특히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학교급)에 따라 유해환경에의 노출과 접촉 경험에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함.

- 설문조사 : 2차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관련한 환경체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검증을 통해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입영역을 파악하고, 주요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및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함.
- 비재학생 및 학부모 면접조사 : 주요 청소년보호제도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과 정책 요구를 청취하고자 면접조사를 병행함. 다만 면접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간담회 형식으로 각각 1회씩 실시함.
- 전문가 의견조사 :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을 유목화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현장, 학계, 정책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AHP를 활용한 의견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함.
- 콜로키움 : 청소년보호와 기본권을 주제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범위(법리와 판례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콜로키움을 개최함.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연구내용 및 범위의 설정과 도출된 정책과제의 국가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함.
- 전문가 자문 : 연구의 각 단계별로 쟁점과 주요사안에 대하여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그 결과를 연구결과에 반영함.



【그림 III-1】 정책현황 분석틀

4. 주요결과

○ 청소년의 기본권과 청소년보호정책

- 「헌법」에 따라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보호대상이라는 이중지위를 가짐. 국가의 청소년보호 사무는 「헌법」에서 열거한 공공복리에 해당하나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가부장적 지위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간섭하고 개입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될 수 없음. 이에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헌법적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사법적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법익의 균형을 위한 네 가지 원칙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청소년의 제한되는 기본권과 공익이 상호 균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청소년의 자유권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일 경우 적법절차를 통해 공익과 청소년의 권리를 상호 비교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방안으로 예비적 헌법심사가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음. 청소년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보호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청소년에 대한 모든 간섭과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라면 그 자체가 보호와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한 과잉입법이기 때문임.

○ 청소년보호 5대 영역별 국내·외 연구동향

- 청소년유해매체 :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규제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독일과 같은 규제된 자율규제제도의 시사점을 적용해 보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청소년 참여중심 자율규제 운용, 프로그램 등급제도 강화, 보호주의적 측면의 자율규제 의무화와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 및 포털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활동 활성화, 방송사 및 포털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유해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등 고도의 필터링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가입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낮음. 해외 오픈마켓 유해정보는 선정·음란물, 국내 오픈마켓 유해정보는 도박사행성 게임물 중심으로 규제의 논거를 개발하고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 특히 랜덤채팅을 이용한 섹스팅, 1인 방송의 청소년유해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주요국은 온라인 그루밍, 라이브 스트리밍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자율규제체계에 따라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정책이 추진됨.

- 청소년유해약물 :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물담배, 말아피는 담배(각련), 씹는 담배 등 신종담배의 거래와 인터넷 블로그, 웹툰 등의 유해약물 간접광고가 증가하여 유해약물의 구매형태, 광고형태, 유통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촘촘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당사국이며, 담배 및 주류회사가 10대 청소년을 잠재적 고객으로 인식하여 마케팅을 실시하는 만큼 판매업자보다 담배 및 주류회사에 초점을 둔 규제가 필요함. 특히 학교기반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선별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예방교육이 요구되며, 무료 금연침 시술 및 상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및 중독치료 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확대가 요구됨. 프랑스는 청소년의 금지약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시 약물사용에 대한 처벌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접근을 병행함.
- 청소년유해업소 :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해업소 규제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례중심의 정책접근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통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예방·단속·규제를 특화하여 운영함.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일부 연구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 재산범죄의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함.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업소 이용에 따른 유해성을 자각하고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행동 개선, 부모의 지도감독이 부재한 청소년에 대한 집중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 및 활동내용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주요국의 경우 특정시간대에 청소년의 공공장소에 대한 통행·출입·이용을 금지하는 정도와 내용이 상이한데, 미성년 청소년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연령을 세분화하여 제재와 허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유해행위 : 선행연구에 의하면 랜덤채팅 데이터 분석 결과 사용자간 사진 파일의 60% 이상이 음란물로 확인됨. 또한 멀티채널네트워크가 새로운 영상사업으로 성장하면서 1인 창작자들이 생산하는 영상콘텐츠의 청소년유해성이 확인되었으나 이들은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정보로 분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와 같은 신변종 유해물은 내용과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유럽과 같이 규제된 자율규제 전략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즉, 정부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한 법적

를 내에서 플랫폼을 개발·제시하면 자율규제기구에서 업계 표준(code of practice)을 포함한 콘텐츠를 채우고 회원기관인 민간(업주)에 대한 지원과 계도를 담당하는 등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함. 특히 청소년폭력은 세대 간 전이와 피해와 가해경험이 교차되는 특성을 보임. 또한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가족 내에서 각종 위기와 피해를 경험한 정도가 높게 나타나 회복지원 시 이에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구됨.

- 청소년근로보호 :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뿐 아니라 청소년의 고용 촉진과 근로보호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확대도 필요함. 일본은 청소년고용 우수기업 인정제도(Youth Yell)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이 스스로 청년층 고용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됨. 또한 「연소자노동기준규칙」에 위해위험업무금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의 접근성이 높고 청소년의 고용과 직업훈련, 커리어(경력) 형성 촉진, 자립지원의 연장선상에서 근로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이와 함께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블랙기업’ 지정·공표, 위법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집중 근로감독 체계 등은 참고할 만함.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고용규칙 준수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을 기반으로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피해자 발굴과 구제 등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연계 협력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여건 및 현황분석

-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아 청소년보호사업의 영역은 청소년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업소, 폭력 등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5대 영역으로 확대됨.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는 16개 법률, 청소년유해약물 및 유해업소는 5개 법률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됨.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한 법률 가운데 2016년도 시행계획에는 「공연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세법」, 「담배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청소년이라는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에 있어 부처 간 사업에 유사중복이 발생하여 기획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됨.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관련 사업에, 지자체는 유해업소 관련 사업에 다소 집중된 경향을 보였고, 중앙은 ‘모니터링·제도개선’ 사업이 피해구제·사후관리 관련 사업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지자체는 네 배 이상 많아 정책유형 혹은 수단의 편중도 일부 확인됨. 다만 모니터링제도개선 대상이 중앙은 매체물에, 지자체는 유해약물 및 업소에 집중되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주력하는 보호정책 영역은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반면 청소년의 피해구제·사후관리 사업의 경우 2015년도 시행계획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사업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예방, 개입 관련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수가 적었음.

- 중앙 및 지자체의 보호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수단을 다양화하고 예방·개입·사후관리가 연장선 상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절차가 요구됨. 그러나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사업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feedback)가 미흡한 실정임. 지자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통해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점검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복과 효율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중앙 및 지자체 단위의 각종 보호시책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07년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청소년보호사업(일부 복지사업 포함) 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에 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일반회계 사업의 경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해매체환경 감시·단속 및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포함했는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보호권 보장, 가정·학교·지역사회·사이버공간 등 환경보호사업, 청소년의 건강·안전보장을 위한 피해예방과 회복지원,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비 확보가 요구됨.
- 특히 기존 청소년보호사업 예산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보호사업 예산을 청소년 치료·치유재활지원, 청소년 성보호,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세 영역 모두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시설 건립 예산을 제외하면 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건전사이버 활동지원과 같은 직접사업의 예산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신·변종 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출현함에 따라 정책 실효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호사업의 보호범위(coverage)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점검과 이를 기반으로 한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됨.

○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과 환경체계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검증

- 2차 자료 분석 결과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최근 1년 간 심야시간 대 노래방이나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수의 청소년이 노래방, PC방을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제재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규제임을

의미함. 청소년 스스로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의 장(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같은 자료에서 술을 한 잔 이상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40%로, 이들 중 최근 1개월 내 음주를 한 경험은 56.1%에 달함. 생애기간 중 흡연경험률은 약 23%로 흡연 유경험자 중 67.8%가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이 있고, 전자담배 사용 경험은 16% 수준임. 음주, 흡연이 유해약물 및 위험행동에 대한 게이트웨이로 작용하는 만큼 청소년이 중독과 폐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개입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성과관리가 요구됨.
- 유해환경 접촉경험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교급(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일관성이 있게 증가함. 고등학생은 특성화고교생이 일반계고교생 보다 경험률이 높음. 이에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청소년을 단일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별, 연령,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함. 폭력피해경험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는데 이는 저학년에 폭력행위가 집중된 결과일 수 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진 결과도로 해석되며, 교육 등 예방적 개입은 영유아기를 포함한 초등학교에 집중 투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개인차원, 가족차원, 지역사회차원에서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확인됨. 먼저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청소년 개인의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 변수는 유해매체이용과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몰입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는데 두 종속변수 모두 콘텐츠를 접하는 매체라는 공통점을 보임. 가족차원에서 '방과 후 보호자 부재'는 유해매체이용, 유해물질 사용, 유해업소 이용, 폭력행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몰입 등 종속변수인 5개 유형의 문제행동 증가와 관련성이 확인됨. '비양친 가정' 청소년은 유해업소 이용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을 보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유해매체 이용,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몰입과의 관련성이 확인됨.
- 같은 자료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 '저항기술'은 5개 유형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됨. 즉, 청소년이 권리주체로서 도덕적인 가치관과 자신을 보호하는 사회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유해환경의 접촉과 이로 인한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임이 입증됨. 다음으로 가족차원에서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자녀존중'의 영향력은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웠으나 유해환경 접촉

및 위험행동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임이 확인됨.

- 특히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 가운데 보호요인으로 주목할 체계는 또래와 지역사회로 나타남. 또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통제)'는 5대 유형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감소와 관련성을 보임. 또한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변수는 인터넷게임스마트폰 과몰입을 제외한 4개 유형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학교차원의 '교사로부터의 지지',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도 유해매체 이용 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됨.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는 전략에 있어 가족을 대상에 포함하는 프로그램, 또래관계를 활용한 접근, 교내의 활용 참여 기회 확대 노력, 지역사회 내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환경 정화 노력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함.
- 이와 함께 12개 청소년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에 대한 인지도와 사업 효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청소년의 과반 이상이 대부분의 사업을 인지하였음. 또한 이러한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이 청소년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술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청소년유해업소 지정·단속의 경우 3점 이상(5점 척도)의 대체로 높은 점수를 보임. 반면 심야시간 대 건전게임이용제도는 2.48점으로 청소년 보호효과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었음.
-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폭력 및 학대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해매체·약물 유통 규제,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처벌 순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 구제와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해물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됨.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규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 경향을 보여 성인기 진입을 앞둔 후기청소년의 경우 행동을 제약하기보다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지키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함.
- 한편,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 및 법률 제정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우호적이지 않음. 반면 중학생 31.4%, 고등학생 41.2%가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이나 법률의 기획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

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를 보면 최근 1년 간 성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폭력예방, 흡연·음주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70% 후반에서 80% 초반의 비율을 보여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의미 있는 정책 실적을 도출함. 반면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 즉, 청소년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상담치료 참여율은 약 20~3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재학생 10명 중 2~3명 정도가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이라는 점을 의미하므로 주목할 부분임.

- 청소년이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나누고 싶은 상대는 부모(보호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보다 친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청소년들은 유해물질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로 상담을 받을 경우 1:1 대면상담을 선호하였는데, 초등학생은 가족상담, 중고교생은 집단상담을 상대적으로 선호하여 청소년의 연령별대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5. 정책제언

-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청소년보호정책 개선을 위한 3개 정책과제에 대한 15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함.
- ① 관련법률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와 관련한 세부추진과제로 「청소년 보호법」 내에 ① 보호시책 추진 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 강화, ②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 법적 근거 마련, ③ 청소년 대상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④ 청소년 보호사업 분석·평가 법적 근거 마련, ⑤ 학교의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⑥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제안함.
- ②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정비와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로 ①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② 성과지표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 ③ 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및 인력 확충, ④ 청소년·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 강화를 제안함.

- ③ 청소년보호사업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보호권 보장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①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 사업 확대, ② 유해환경 규제 실효성 제고, ③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 ④ 유해환경 피해청소년 발굴 및 회복지원 강화, ⑤ 지역사회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요소 강화를 제안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6
1) 청소년의 기본권과 청소년보호정책 쟁점 분석	6
2)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여건 및 현황 분석	7
3)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7
4)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도출	7
3. 연구방법	8
1) 문헌연구	8
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9
3) 2차 자료 분석	9
4) 설문 및 면접조사	10
4. 연구 추진절차	12
II. 논의의 배경 : 청소년의 기본권과 보호정책	13
1.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미	15
2.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	19
1) 청소년의 기본권	19
2) 청소년보호와 기본권의 제한	21
3)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과 절차	27
3.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	33
4. 청소년보호 영역별 국내·외 연구동향	37
1) 청소년유해매체	37
2) 청소년유해약물	40

3) 청소년유해업소	43
4) 청소년유해행위	45
5) 청소년근로보호	47
5.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	48
1) 청소년보호정책의 기조 : 인권주체로서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48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9
3) 메가트렌드, 미시환경트렌드와 청소년보호	51
4) 보호정책 사각지대의 청소년보호 이슈	53
Ⅲ.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반 및 현황 분석	55
1. 분석의 개요	57
2. 추진기반 : 법령 및 예산 추이	58
1) 청소년보호 관계 법령 현황	58
2) 청소년보호 예산 추이	72
3. 정책영역 : 주요사업 및 전달체계	78
1) 환경체계 및 정책유형별 현황	78
2)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	82
4. 성과관리 : 평가 및 환류체계	89
1)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89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92
5. 소결	94
1)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사업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개선	94
2)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의 다양화와 균형 있는 추진 필요	95
3) 보호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 및 일반회계 사업 확대 필요	95
4)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근거 마련	96

IV. 정책대상의 특성 및 정책 평가	97
1. 조사개요	99
1) 2차 자료 분석	99
2) 설문조사	103
3) 면접조사	118
4) 전문가 의견조사	120
2.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경험의 특성 : 2차 자료 분석	121
1)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및 근로부당행위 경험 : 성별 차이	121
2)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및 근로부당행위 경험 : 학교급 차이	131
3. 보호요인의 영향력과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42
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142
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153
3)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165
4.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 과제 : 전문가 의견조사	187
1) 영역 1 :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187
2) 영역 2 :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191
3) 영역 3 :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196
5. 소결 및 시사점	202
1) 청소년의 성별, 연령,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 필요	202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우선 지원 영역 :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	206
3) 청소년보호의 잠재적 보호요인 : 또래, 학교, 지역사회, 긍정적인 관계	208
4) 청소년의 청소년보호사업 평가와 요구	210

V.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213
1. 제안배경	215
1) 주요결과 요약	215
2)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	220
2. 정책 추진과제	225
1)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225
2) 추진체계 정비와 정책효과 제고	236
3) 보호사업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보호권 보장	256
참고문헌	275
부 록	295
1. 설문지(초등학생)	297
2. 설문지(중·고등학생)	307
3.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요약)	322

표 목 차

〈표 Ⅰ-1〉 본 연구 관련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현안	6
〈표 Ⅰ-2〉 주요 연구 내용	8
〈표 Ⅰ-3〉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주요 내용	9
〈표 Ⅰ-4〉 초중고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개요	10
〈표 Ⅰ-5〉 비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개요	11
〈표 Ⅰ-6〉 콜로키움 추진내용	12
〈표 Ⅰ-7〉 정책실무협의회 추진내용	12
〈표 Ⅱ-1〉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중앙행정기관)	36
〈표 Ⅱ-2〉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17개 시도)	36
〈표 Ⅲ-1〉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61
〈표 Ⅲ-2〉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계속)	62
〈표 Ⅲ-3〉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계속)	63
〈표 Ⅲ-4〉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65
〈표 Ⅲ-5〉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67
〈표 Ⅲ-6〉 청소년유해행위(폭력)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69
〈표 Ⅲ-7〉 청소년유해행위(폭력)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계속)	70
〈표 Ⅲ-8〉 청소년유해행위(근로권익)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72
〈표 Ⅲ-9〉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2016년)	79
〈표 Ⅲ-10〉 지방정부 추진과제(2016년)	80
〈표 Ⅲ-1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사업(정책유형별)	81
〈표 Ⅲ-12〉 지방정부 청소년보호사업(정책유형별)	82
〈표 Ⅲ-13〉 특정평가 : 국정과제 평가의 평가항목	90
〈표 Ⅲ-14〉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지표 예시(여성가족부)	91
〈표 Ⅲ-15〉 여성가족부 자체평가 결과 예시(청소년보호정책 관리과제)	92

〈표 III-16〉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청소년보호지표	93
〈표 IV-1〉 2차 자료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0
〈표 IV-2〉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및 부당행위 경험 측정	101
〈표 IV-3〉 유해환경 접촉 및 관련 항목 측정	102
〈표 IV-4〉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5
〈표 IV-5〉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업소 이용 측정	106
〈표 IV-6〉 폭력가해행위 측정	107
〈표 IV-7〉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측정	107
〈표 IV-8〉 개인적 차원의 위험요인 측정	108
〈표 IV-9〉 가족 차원의 위험요인 측정	109
〈표 IV-10〉 지역사회 차원의 위험요인 측정	110
〈표 IV-11〉 개인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112
〈표 IV-12〉 가족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113
〈표 IV-13〉 친구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114
〈표 IV-14〉 학교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115
〈표 IV-15〉 지역사회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116
〈표 IV-16〉 통제변수 측정	117
〈표 IV-17〉 비재학생 및 부모 면접조사 대상	119
〈표 IV-18〉 비재학생 및 학부모 주요 면접 내용	119
〈표 IV-19〉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121
〈표 IV-20〉 유해매체접촉 : 성별에 따른 차이	122
〈표 IV-21〉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성별에 따른 차이	123
〈표 IV-22〉 타인 정보도용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124
〈표 IV-23〉 유해물질 이용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125
〈표 IV-24〉 유해업소 이용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126
〈표 IV-25〉 폭력피해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128
〈표 IV-26〉 성(性)적 피해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129

〈표 IV-27〉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130
〈표 IV-28〉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130
〈표 IV-29〉 유해매체 접촉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32
〈표 IV-30〉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33
〈표 IV-31〉 타인 정보도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34
〈표 IV-32〉 유해물질 이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35
〈표 IV-33〉 유해업소 이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37
〈표 IV-34〉 폭력피해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38
〈표 IV-35〉 성(性)적 피해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40
〈표 IV-36〉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40
〈표 IV-37〉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141
〈표 IV-38〉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의 위험요인 검증	144
〈표 IV-39〉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의 위험요인 검증	146
〈표 IV-40〉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의 위험요인 검증	148
〈표 IV-41〉 청소년 폭력가해행위의 위험요인 검증	150
〈표 IV-4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위험요인 검증	151
〈표 IV-43〉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153
〈표 IV-44〉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156
〈표 IV-45〉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158
〈표 IV-46〉 청소년 폭력가해행위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161
〈표 IV-47〉 청소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163
〈표 IV-48〉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 주요영역정책과제세부과제	187
〈표 IV-49〉 청소년보호정책 개선과제(1) :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190
〈표 IV-50〉 청소년보호정책 개선과제(2) :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194
〈표 IV-51〉 청소년보호정책 개선과제(3) :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198
〈표 IV-52〉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과제별 중요도	201

〈표 IV-53〉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경험 분석결과 요약	203
〈표 IV-54〉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분석결과 요약	204
〈표 IV-55〉 청소년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및 근로부당행위 경험 분석결과 요약	205
〈표 IV-56〉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207
〈표 IV-57〉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210
〈표 V-1〉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218
〈표 V-2〉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추진과제(안)	225
〈표 V-3〉 「청소년 보호법」 제34조 제3항 신설(안)	226
〈표 V-4〉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2항 신설(안)	227
〈표 V-5〉 「청소년 보호법」 제5조 개정(안)	228
〈표 V-6〉 「청소년 보호법」 제36조 신설(안)	229
〈표 V-7〉 「청소년 보호법」 제34조 제3항 신설(안)	231
〈표 V-8〉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개정(안)	232
〈표 V-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개정(안)	232
〈표 V-10〉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개정(안)	233
〈표 V-1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안)	235
〈표 V-12〉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안)	236
〈표 V-13〉 청소년의 성장발달 유해요인 관리 성과지표(안)	242
〈표 V-14〉 청소년보호정책 영역별 성과지표 예시	243
〈표 V-15〉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청소년보호지표 개선(안)	246
〈표 V-16〉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행계획 양식 개선(안)	248
〈표 V-17〉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자치법규 현황	255
〈표 V-18〉 청소년보호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과제(안)	256
〈표 V-19〉 청소년보호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273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절차	12
【그림 II-1】 환경 속의 청소년 :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입영역	18
【그림 II-2】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비전 및 중점과제	35
【그림 II-3】 담배회사 내부문건(예) : 10대 청소년=잠재 고객	42
【그림 II-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	51
【그림 III-1】 정책현황 분석틀	58
【그림 III-2】 청소년보호사업(일반회계) 예산 추이	74
【그림 III-3】 청소년보호사업(청소년육성기금) 예산 추이	75
【그림 III-4】 청소년보호사업(양성평등기금) 예산 추이	76
【그림 III-5】 청소년보호 영역별 사업예산 추이	77
【그림 III-6】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여성가족부)	83
【그림 III-7】 청소년유해매체 감시 및 결정고시 절차	85
【그림 III-8】 인터넷스마트 중독예방·해소 및 정서행동문제 사업추진체계	86
【그림 III-9】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추진체계(시범사업)	87
【그림 III-10】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과정 및 주요사업성과	88
【그림 IV-1】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 인지율	166
【그림 IV-2】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의 유용성 정도 평가	167
【그림 IV-3】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의 유용성 여부 평가	169
【그림 IV-4】 청소년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앱 유효성 평가	170
【그림 IV-5】 청소년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72
【그림 IV-6】 청소년보호관련 정책·법률 제정 시 청소년의견 반영여부	174
【그림 IV-7】 청소년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보호정책·사업 추진 단계	176
【그림 IV-8】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	179
【그림 IV-9】 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교육의 유용성 정도 평가	180
【그림 IV-10】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의 유용성 여부 평가	181

【그림 IV-11】 유해물질 사용 관련 고민을 나누고픈 대상	184
【그림 IV-12】 유해물질 사용 관련 선호하는 상담 방법	186
【그림 V-1】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1)	222
【그림 V-2】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2)	223
【그림 V-3】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3)	224
【그림 V-4】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정화’ 거버넌스 개선(안)	237
【그림 V-5】 시행계획 및 사업실적 관리체계 개선(안)	247
【그림 V-6】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확대(1안)	249
【그림 V-7】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확대(2안)	250
【그림 V-8】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입영역	251
【그림 V-9】 청소년보호분야 민간보조사업비	257
【그림 V-10】 규제된 자율규제 협력 체계(안)	265

제 I 장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 추진절차

제 1 장 서 론¹⁾

1. 연구배경과 목적

청소년보호의 의미와 국가의 역할은 그 시대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와 지위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한다. 과거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욕구와 능력이 성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는 곧 열악한 처우로 이어졌다. 이 시기 대다수의 청소년은 농노(農奴)의 신분으로 노동력, 군사력의 가치를 지닌 소유물로 인식되어 오랜 동안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칙을 처음으로 법제화 한 것은 1601년 영국에서 제정된 ‘구빈법(Poor Law, 救貧法)’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는 1960년 대 초에 이르러 각각 제정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복지와 구별되는 유해환경의 폐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는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추진의 근거와 정책영역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각종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2004년 「청소년 기본법」의 전부개정 시 청소년보호의 개념이 포함되어(동법 제3조 제5호) 청소년보호의 정책영역이 확장되고 추진체계도 다양화되었다. 그간 유해매체약물업소행위 등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등 국가의 역할도 강화되어왔는데, 최근에는 유해환경을 규제하는 다소 방어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보다 능동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책기조도 변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부터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추진되고 있고 여기에 주요 청소년보호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즉, 청소년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청소년보호정책은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접촉을 차단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벗어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1)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다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유해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출현, 변화를 거듭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호사업 추진 시 국가가 청소년의 보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과 방법론을 강구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 「청소년 보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중기계획인 ‘청소년 보호종합대책’을 매 3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이에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에 이어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이 마련되었고, 올해는 2차 대책의 2년 차에 해당한다. 1차 대책과 비교할 때 2차 대책은 유해매체·유해약물·유해업소·폭력 등 유해행위근로보호 등 5대 정책영역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청소년 당사자의 대응능력 함양과 피해자 및 보호자 발굴·지원이 추진방향에 포함되는 등 정책수단의 다양화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종합대책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보호정책 추진현황 전반을 검토하는 시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그간 보호정책 추진에 있어 환류(feedback) 과정도 다소 미흡하였다. 다만 보호정책의 추진 수단이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투입(input)에 따른 산출(output)이상의 성과(outcomes)와 효과(impact)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위사업들을 축소,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개악(改惡)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환경변화와 수요에 대응한 전향적인 정책추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²⁾

특히 1997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20년을 맞았지만 그 동안 미디어 환경 분야 등 특정분야에서의 청소년 유해성 관련 연구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보호정책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국가의 청소년보호시책 추진과 청소년의 자율권 침해와 같은 오래된 쟁점을 법리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시도도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는데 반해 정책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추진실적을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청소년보호 관련 영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5년에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범부처 종합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2016년에 첫 시범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부처의 자체평가는 사업부서 단위의 개별사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청소년보호정책 전반을 살펴보기 어렵고, 평가 자체가 서열등급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책추진과 관련된 고질적인 난제를 드러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 기술하였다.

한편 청소년보호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청소년보호시책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노력 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과 성장발달을 위한 환경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정책과 청소년복지정책의 경계와 영역이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 거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다종다양한 유해환경의 출현과 같은 사회적인 위협에 보호정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³⁾ 특히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복지정책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할 때 보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 보호사업의 예산 집행 추이 분석과 관련하여 자료의 분석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청소년복지정책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메가트렌드와 청소년의 미시환경트렌드를 고려하여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현황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국가의 청소년보호 책무와 청소년의 자유권 등 기본권 간의 법리 검토와 청소년보호 영역별 국내외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청소년보호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예산 집행 추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제한적이거나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각종 법률에 근거한 사업추진에 누락이 없는지,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정책유형에 쏠림 현상은 없는지,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에 대한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검증하여 보호정책의 명확한 개입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정책효과의 창출과 성과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2019년부터 시행될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추진과 관련한 국가정책의제의 주요내용과 청소년보호정책의 관련 영역을 요약한 것이 <표 1-1>이다.⁴⁾

3) 1999년에 「청소년 보호법」과 중복되는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면서 동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보호 관련 규정이 「청소년 보호법」으로 통합되었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성폭력성매매로부터의 보호구제와 범죄자 처벌 등을 별도로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와 같은 청소년보호정책의 기틀이 확립되었다. 이후 2004년 「청소년 기본법」의 전부개정 시 법률에서 청소년보호 및 복지의 개념을 처음으로 구분하였고, 현재 각각의 개별법을 근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 복지 모두 청소년을 포함한 환경에 대한 개입방법론이며, 정책목표가 ‘청소년의 안녕(well-being)’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정책영역의 일부 중복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 하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 및 복지정책 간의 영역과 경계를 명확하게 밝히기보다, 「청소년보호」를 근거로 한 정책영역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밝혀둔다.

4) 본 연구는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맞춤형 고용복지), 아동인권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지원(국민안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사회통합) 관련 정책연구로 기획되었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 주요 국정과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I -1 본 연구 관련 국가정책의제 및 주요현안

국정과제(주관부처)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정책 영역 및 주요사업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및 치안지표 개선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밖 위기청소년 보호 · 청소년보호지원률 포함 치안지표 개선	· 청소년유해행위 (학교폭력, 성과지표, 위기청소년)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 학대입양·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공공중심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 청소년유해행위 (아동보호컨트롤 타워, 종합지원체계 등 전달체계)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생애주기별 위기에서 예방·보호·치료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치유지원 전담 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확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지원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 청소년유해물,매체 (치유지원, 근로보호, 가정 내 보호, 통합 사례관리)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구역, 규제)

* 출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p.40, p.81, p.86, p.87.

2. 연구내용

1) 청소년의 기본권과 청소년보호정책 쟁점 분석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과 관련하여 국가의 청소년보호 책무와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이슈에 대한 법리 및 판례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헌법」에서 명시한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 주체라는 점에서 헌법적 원칙을 통해 양자 간의 균형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와 같은 논의는 정책의 기초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청소년의 기본권과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유해환경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여건 및 현황 분석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여건과 주요 제도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의 추진기반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한 주요 근거법의 현황과 예산 추이(2007년~2017년)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정책영역별 주요사업 및 전달체계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정책 자료와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범부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 및 환류체계와 관련하여 보호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현황 및 청소년보호 관련 주요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생태체계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역량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있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보호사업의 개입지점을 확인하고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주요제도의 작동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AHP)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였다.

4)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도출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기반과 현황에 대한 분석,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도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기존 보호사업 운영의 내실화 방안과 신규 사업 영역에 대한 제안, 보호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법률의 제·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1-2>이다.

표 1-2 주요 연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서론	제1장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주요 연구내용 • 연구 추진체계 및 절차
논의의 배경	제2장	• 청소년 보호의 개념과 의미 •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 : 청소년의 기본권과 보호 정책 •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 • 청소년보호정책 영역별 국내외 연구 및 정책동향 •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여건 및 현황 분석	제3장	•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법령 및 예산 분석 • 법무처 종합계획 및 2016년도 시행계획 내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분석 • 청소년보호정책 주요성과와 한계 : 전문가 의견조사
정책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제4장	•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현황 및 특성 : 2차 자료분석 • 청소년보호 보호요인과 정책요구 분석 : 실태조사, 면접조사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제5장	• 제안배경 •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정책과제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쟁점 및 정책현황과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등 관련 자료를 고찰하였다. 특히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청소년보호사업 주무부처(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와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연구의 각 단계별로 쟁점과 주요사안에 대하여 학계, 현장, 정책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표 1-3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주요 내용

차수	주요 내용	참석자	일시
1차	연구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	학계전문가, 연구진	2/10
2차	연구내용 및 관련 쟁점 논의	현장전문가, 연구진	2/17
3차	청소년유해물 규제현황	학계전문가, 연구진	4/6
4차	폭력예방, 법교육 관련 정책자문	정책전문가, 연구진	5/4

3) 2차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경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67001호)⁵⁾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최근 수집된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이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근로부당행위 경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보호정책의 효과를 진단하고 주요 제도를 수정·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정이다. 특히 청소년이 경험하는 유해환경의 종류와 정도는 모든 청소년에게 유사하게 나타나기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학교급)에 따라 유해환경에의 노출과 접촉 경험에 어떤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5)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제4항,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를 근거로 각각 추진되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6701호),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5414호)의 통합조사가 2016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황여장김지경이윤주, 2016, pp.3-6).

4) 설문 및 면접조사

(1)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고자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을 촉발하거나 강화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위험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러한 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 보호요인을 탐색하였다. 통계적 의미에서 위험요인은 본 연구에서 유해환경 접촉과 같은 사안의 발생 가능성이나 문제 심화와 정적 관련이 있는 요인을 의미한다. 반대로 발생 가능성과 문제 심화와 부적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생태체계이론에 기초하여 8개의 위험요인과 12개의 보호요인을 선정하고 그 영향력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환경 요인 중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디를 개입지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목적은 주요 보호제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대한 청소년 스스로의 평가와 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표 1-4 초·중고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 전국 초등학교(4~6학년) 및 중학교(각 1~3학년) 재학생	
표집틀	• 확률표집(2016년 교육기본통계)	
표본수	• 3,000명(초·중고 각 1,000명)	
표집방법	•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 2017년 5~8월	

(2) 비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본 연구에서 활용한 2차 데이터와 설문조사 모두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주요 청소년보호제도에 대한 비재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과 정책 요구를 청취하고자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다만 비재학생과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의견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조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으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간담회의 형태로 각각 진행하였다.

표 1-5 비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참여자 섭외과정	•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 • 참여희망자를 선착순으로 섭외	
면담참여자	• 비재학생 3명 / 학부모 5명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집단면접과 토론 병행	
소요시간 및 횟수	• 각 90분 내외 / 각 집단별 1회(총 2회)	
자료 기록 및 녹취	• 녹음 후 전사	
면접진행	• 연구자	

(3) 전문가 의견조사(AHP)

청소년보호정책과 관련된 쟁점을 유목화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정책영역별로 현장 및 학계전문가, 정책담당자 등 15명 내외를 대상으로 서면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총 2회에 걸쳐 추진하였다.

(4) 기타 연구방법

① 콜로키움

표 1-6 콜로키움 추진내용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일시	비고
1회	청소년보호와 기본권 :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범위(법리와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준일 교수	4월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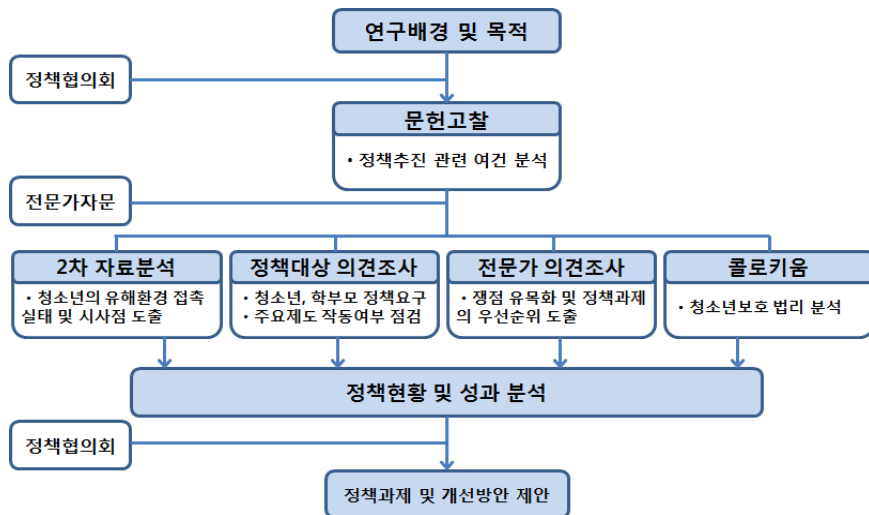
②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표 1-7 정책실무협의회 추진내용

차수	주요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비고
1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정책평가	여성가족부	2월 13일	
2차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여성가족부	10월 26일	

4. 연구 추진절차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 [그림 1-1]이다.



【그림 1-1】 연구 추진절차

제 II 장

논의의 배경 : 청소년의 기본권과 보호정책

1.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미
2.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
3.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
4. 청소년보호 영역별 국내·외
연구동향
5.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

제 II 장

논의의 배경 : 청소년의 기본권과 보호정책⁶⁾

1.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의미

청소년보호(juvenile protection)의 법률적 개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동법 제3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규제하거나, 이들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청소년의 미성숙을 부각하여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보호의 객체로 규정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우리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노력은 주로 법률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생활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⁷⁾ 다만 청소년보호에 있어 유해한 환경의 개념과 범위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데 과거에는 기아, 질병, 노동착취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었다면 현대는 각종 유해매체와 경쟁위주의 교육환경, 가족해체, 사회적 고립과 자존감의 상실 등이 더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모경환·이미리·김명정, 2014, pp.321-322).

특히 청소년보호는 시대사적으로 개념과 관점이 변화해 왔는데, 중세의 가부장적 전통과 국가의 기능이 야경국가(夜警國家)에 머물러 있던 18세기까지만 해도 청소년은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하여 청소년보호는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공적(公的) 영역이 아니었다. 이후 19세기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빈곤, 노동착취, 작업장(workhouse)의 심각한 반인권적 처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공적영역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도제식(徒弟式) 교육, 학교교육이 발달하면서 가정, 학교에서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구제, 후견(後見) 책임이 강조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가 출현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가정의 청소년 자녀 양육 및 보호기능을 국가가 보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6) 이 장의 1절, 3절, 4절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절은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집필하였으며 이성규 박사(한양대 겸임교수), 한미경 교수(San Jose State University)의 집필 원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7)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관련 논의는 2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으로 협약 당사국들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청소년보호는 국가가 청소년의 생활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고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보호의 개념과 목적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통해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청소년보호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는 인간성의 발현일 수 있으나, 그 보다 청소년이 잠재적으로 사회기여도가 큰 구성원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배규한, 2014, pp.115-117; 이유진·배규한·이상희, 2014, pp.76-77).

한편 청소년보호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면 “청소년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반 사회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⁸⁾ 현행 사회정책에서 청소년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총체적인 노력은 복지(돌봄)영역으로, 이 가운데 환경 및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개입을 보호영역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protection)와 복지(well-being, welfare)의 경계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보호·복지정책 모두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systems)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억제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등 개입영역과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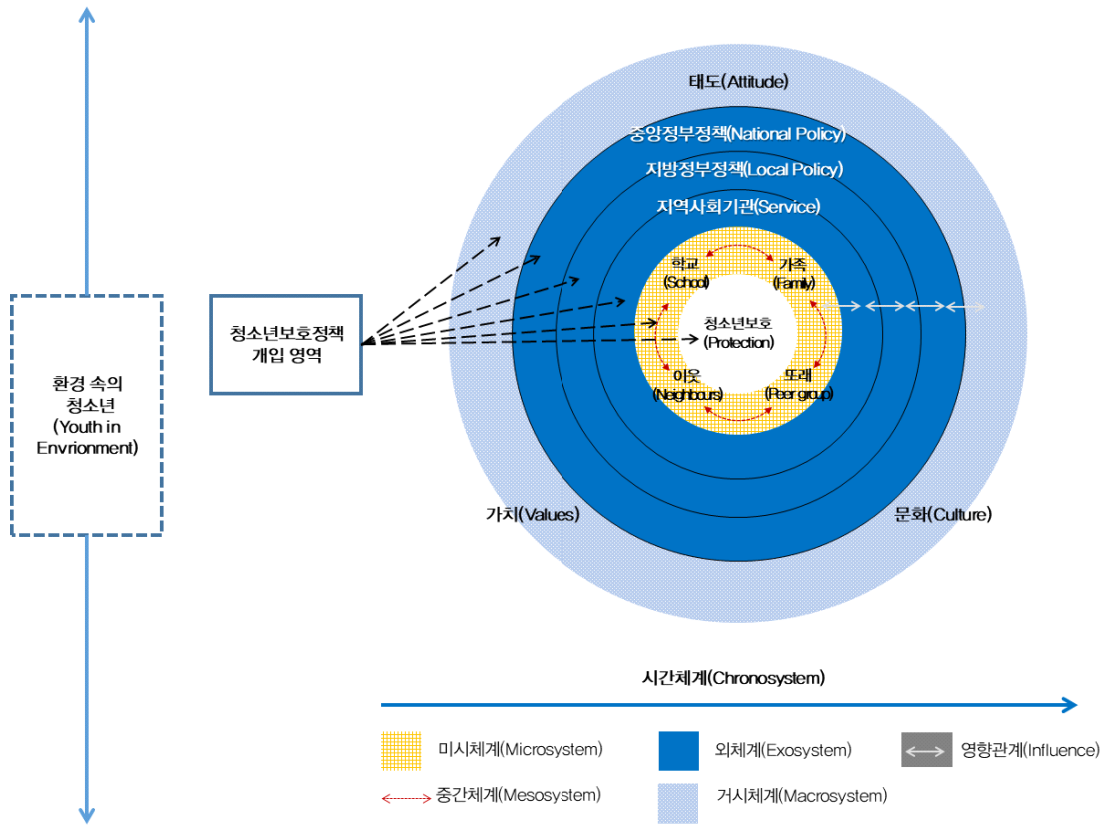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의 개념에는 ‘청소년의 발달과정과 일상생활 장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발달적(developmental), 상황적(situational) 위기와 위험의 가능성을 예방하고,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일련의 사회적 노력’을 모두 포함한다. 문제는 법률적,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청소년보호가 청소년이 시민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측면보다 청소년의 미성숙을 전제로 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유해환경 정화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이다(이철수, 2013, p.756). 그러나 청소년은 보호대상임과 동시에 인권주체라는 이중지위(dual status)를 가진 존재라

8)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 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인출일: 2017.2.15.). 즉,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청소년보호 및 복지정책 모두 사회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정책영역과 수단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9)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주요 청소년보호사업(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 치료비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성매매피해청소년 치료재활 등)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리하는 360개 사회보장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다면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청소년보다 성인의 관점에서 영역과 방법론이 결정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위험행동(risk behavior)이 범법행위가 아님에도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이 기성세대의 양식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행위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자유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목적 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보호는 정책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직접서비스보다 유해환경을 통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 및 복지지원을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현행 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생태체계이론은 ‘환경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을 전제로 유기체인 개인과 환경을 이분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성장과 발달이라는 시간체계(chronosystem)를 기반으로 가족·또래·이웃·학교 등 미시체계(microsystem)와 중간체계(mesosystem), 지역사회기관과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외체계(exsosystem), 가치·태도·문화와 같은 거시체계(macrosystem)로 세분화한다. 이러한 구분은 청소년에 대한 환경의 다차원적인 영향과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개입지점과 영역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규제보다 효과적인 각종 정책수단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행 정책에서 개입의 초점이 되거나 혹은 누락된 환경체계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기본 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The Children’s Society & University of York, 2013, pp.30-31; 김지경·최인재, 2015, pp.4-5 재인용).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보호정책의 목적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 외체계 중심의 규제와 단속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정책수단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입영역은 ‘환경 속의 청소년(YIE, Youth in Environment)’을 기본전제로,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를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그림 II-1]).



* 출처: Bronfenbrenner, 1979; The Children's Society & University of York, 2013, p.31; 김지경·하현주·김옥태, 2014, p.33 재인용을 수정·보완함.

【그림 II-1】 환경 속의 청소년 :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입영역

2.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¹⁰⁾

1) 청소년의 기본권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동법 제10조)을 필두로, 일반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평등권(동법 제11조 제1항)을 보장한다. 또한 개별적 기본권으로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비밀(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제23조 제1항),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청원권(제26조), 재판받을 권리(제27조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을 보장한다.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이에 따라 차별사유나 차별영역에 따라 다양한 개별적 평등권 또는 개별적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또한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교육 받을 권리(제31조 제1항),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노동3권(제33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환경권(제35조 제1항) 및 주거권(제35조 제3항),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제36조 제1항)와 모성권(제36조 제2항) 및 보건권(제36조 제3항)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37조 제1항), 이른바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다.

청소년은 이러한 권리의 주체이자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¹¹⁾ 「헌법」에서도 대표적 사회적 약자로 여성, 노인, 장애인과 함께 청소년(연소자)을 명시하고 있고(제34조 제4항),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다(제31조~제36조).¹²⁾ 여기에는 청소년 근로에 대한 특별한

10) 이 절은 헌법과 판례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본문 내에는 세부적인 출처표기 대신 포괄적·개괄적 출처표기로 가름하였고, 참고문헌에는 자세하게 적시하였다.

11)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27, 456면)”

1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헌법 제34조 제2항)’ 의무와 한 쌍을 이룬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의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모순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우선적인 권리

보호(제32조 제5항)도 포함한다. 다만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기준연령을 달리 규정된다.¹³⁾ 이 경우 연령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 즉, 국가가 급부를 제공하는 권리는 연령 상한 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 대상자 확대와 사회권 보장에 유리하다. 반면 청소년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기도 하고 선거권과 같이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이유로 특정 권리 주체에서 배제되는 의미가 있으므로 연령 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권리 보장에 유리하다.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제37조 제2항). 즉,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 설정한 이러한 한계를 준수할 때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된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기본권향유능력을 가진 주체와 기본권행사능력을 가진 주체 역시 구분되는데,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은 청소년도 향유능력과 행사능력을 모두 가진다.¹⁴⁾ 반면 향유능력, 행사능력의 구분은 청소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하는 논리적 근거도 된다. 즉, 청소년은 많은 기본권에 있어 향유능력은 갖지만 행사능력을 가지지 못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선거권이 그렇다. 그러나 향유능력은 인정하면서 행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라 없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기본권행사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제37조 제2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권리는 일정한 연령에 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이유로 유보되었던

주체가 된다. 헌법에서 사회적 약자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으로 규정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경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되기도 하지만 이들의 사회권을 보장함으로써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되기도 한다.

1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단서). 따라서 2017년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사람(우리 나이로 스무 살이 되는 사람)은 1998년생이므로 1998년생인 사람들은 모두 201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에서는 제외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여기서 제외된다(동법 제2조 제1호).

14) 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판례집 12-1, 427, 456면: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아동은 학교교육외에 별도로 과외교습을 받아야 할지의 여부와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과외교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를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구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나이 때문에 유보된 청소년의 기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과 ‘나이를 이유로 청소년의 기본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대립할 경우 전자가 아닌 후자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2) 청소년보호와 기본권의 제한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7조 제2항). 「헌법」이 열거한 기본권 제한의 사유 가운데 ‘공공복리’의 대표적 사유가 청소년보호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선언하는데(동법 제1조), 입법목적이 「헌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 이에 공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¹⁵⁾이나 청소년유해약물¹⁶⁾과 같은 청소년유해물건¹⁷⁾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이 금지되고, 청소년유해업소¹⁸⁾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행위가

1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6)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은 ① 「주세법」에 따른 주류, ②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④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⑤ 그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4호 가목).

17)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물건”을 ①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② 청소년에게 음란상포악상잔인상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정의한다(동법 제2조 제4호 나목).

18)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우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는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⑦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 ⑧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⑨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

금지된다.¹⁹⁾

청소년보호가 헌법이 열거한 공공복리에 해당하지만 정당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칫 보호를 이유로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호는 다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방어’하는 행위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체의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가 가부장적 지위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에 간섭하고 개입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각종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모든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동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동법 제7조 제1항).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는 특례도 인정된다.²⁰⁾ 또한

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⑩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⑪ 「경륜경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에는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 ⑥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⑦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이 포함된다.

19) 청소년유해물건에 관하여 법률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고시에 위임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헌재 2013. 6. 27. 2011헌바8 등, 판례집 25-1, 428: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 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규제 대상 업소를 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더욱 효과적일 수 있고, 또한 그 구체적 기준 및 대상의 내용은 청소년유해물건에 대한 정의 규정 등 관련조항을 통해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 또는 근로 시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동법 제252조 제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반면(동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형벌이 강화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대가가 오고가는 성매매²¹⁾는 금지되고(동법 제4조 제1호),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동법 제21조 제1항). 다만 성매매피해자²²⁾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6조 제1항), 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이므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오히려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성을 구매하는 사람의 위계나 위력으로 인해 자신의 성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을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이 과연 자신의 의지로 성을 판매한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가능하다는 판단은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확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사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금지와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²³⁾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이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동법 제39조 제1항). 그리고 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 소년부

2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행위에 “성교 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2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피해자”에는 ① 위계, 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②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③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④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화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①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이나 ②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아청법 제40조 제1항).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② 단기 소년원 송치, ③ 장기 소년원 송치의 경우 인신을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과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논쟁이 있다.²⁴⁾ 즉, 이러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호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검토와 보호처분의 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사안에 있어 법관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열거하는데, ‘매체물’에는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③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④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⑥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 ⑦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⑧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 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⑪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이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2호). 이와 같이 매체물의 범위가 영화, 비디오, 음반, 신문, 잡지, 인터넷상의 글과 영상 등 매우 포괄적인데 특정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은 이러한 매체물에 대한 접근과 열람이 불가능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 즉, 정보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다.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개별적 기본권으로 열거하여(제21조 제1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24) 이에 대한 내용은 5절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에도 기술하였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알 권리’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약물은 ① 주류, ② 담배, ③ 마약류, ④ 환각물질, ⑤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을 말한다. 마약류나 환각물질은 성인에게도 금지된 약물이며 주류와 담배는 특별히 청소년에게만 금지된 약물이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⁵⁾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는 “세포와 신체조직이 아직 성숙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시설과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실시하였다.²⁶⁾ 또한 담배소매업자의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한 조례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담배는 폐암, 심장병, 호흡기질환 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되는 등 그 유해함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의 건강에는 더욱 결정적인 해독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흡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음주, 약물남용으로 이어지고 다시 청소년 범죄로 옮겨가서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많은 비행청소년을 양산해 낼 우려마저 있다.”고 하였다.²⁷⁾ 또한 “자판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담배구입을 막기 어려워(중략)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주야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담배구입을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⁸⁾ 이처럼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판매금지에 대해서도 “만 18세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그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25)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판례집 16-2상, 355, 361면.

26) 헌재 2004. 8. 26. 2003헌마457, 판례집 16-2상, 355, 362면; 헌재 2014. 9. 25. 2013헌마411 등, 판례집 26-2상, 609, 617면 참조.

27)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등, 판례집 7-1, 564, 574면.

28)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등, 판례집 7-1, 564, 574면.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²⁹⁾ 또한 “만 18세의 자에게 일률적으로 술을 팔 수 있게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당수 그 나이의 학생들이 쉽게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이해한다.³⁰⁾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의 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술을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술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술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시하였다.³¹⁾ 특히 헌법재판소는 노래방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을 언급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술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음주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을 들고 있다.³²⁾ 주류의 판매와 구매는 연결되는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주류구매를 원하는 청소년의 기본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도 공익의 목적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다.³³⁾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지정하는 것도 청소년의 특정 업소 출입과 특정 업소에서 근로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당구장 운영자에게 출입문에 18세 미만 출입금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하면서 직업의 자유와 함께 18세 미만 청소년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 때 헌법재판소는 특정 업소의 출입과 관련된 청소년의 기본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구성하고, “당구장 출입자의 자숙이나 시설, 환경의 정화로 실내 스포츠로서의 이미지 개선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당구 자체에 청소년이 금기시해야 할 요소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³⁴⁾ 즉, 이는 당구장이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판단을 전제로 특정 업소의 운영자에게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의 해당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에게 보장된 일반적

29)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판례집 13-1, 119, 126면.

30)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판례집 13-1, 119, 126-127면 참조.

31) 헌재 2001. 1. 18. 99헌마555, 판례집 13-1, 119, 127면 참조.

32)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 등, 공보 제122호, 1356, 1361면 참조.

33) 헌재 1999. 9. 16. 96헌마39, 판례집 11-2, 343 참조.

34)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판례집 5-1, 365, 383-384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로 판단한 사례이다.

3)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원칙과 절차

(1) 과잉금지원칙 : 자유권 제한을 위한 사법적 심사기준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헌법적 기준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제시한다. 과잉금지원칙은 과소금지원칙과 함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원칙의 한 축이다. 헌법적 권리인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서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 작위나 급부를 요구하는 ‘급부권’으로 구별되는데 자유권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명령/금지)를 부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때 자유권과 공익 사이에 균형이 요구되며 이는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것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이라고 부른다. 한편, 급부권도 공익적 목적에 따라 국가에 의해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일정한 부작위(작위/급부제공의 불이행)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도 역시 균형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균형은 국가의 부작위로 인하여 급부권이 과소하게 보호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급부권과 공익 사이의 균형은 ‘과소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처럼 자유권에 대한 제한에서 요청되는 과잉금지원칙과 급부권에 대한 제한에서 요청되는 과소금지원칙은 공통적으로 상충하는 법익의 균형을 지향한다.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제한되는 청소년의 권리는 주로 자유권이므로 제한되는 자유권과 이를 제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잉금지원칙이 요구된다. 즉, 청소년의 기본권과 공익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본권 제한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사법적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비례성원칙 : 법익의 균형을 위한 네 가지 부분원칙

한편 과잉금지원칙이든 과소금지원칙이든 상충하는 법익의 균형을 지향하는 비례성원칙은 네 가지 부분원칙들로 구성된다. 우선 ① ‘목적의 정당성’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익적 목적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② ‘수단의 적합성’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여되는 수단은 그러한 목적의 실현에 적합해야 한다. 그리고 ③ ‘피해의 최소성’으로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④ ‘법익의 균형성’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이라는 법익과, 제한의 목적인 공익이라는 법익은 상호 균형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비례성원칙도 비슷하다. “국가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있어서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 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³⁵⁾ 따라서 청소년보호는 목적의 정당성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과 제도의 적합성,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제한되는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피해의 최소성, 청소년의 보호와 기본권 간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공익의 효과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예비적 헌법심사 : 적법절차를 통한 균형점 찾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 경우 청소년보호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적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목적이 정당한지의

35)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538-889면.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즉, 입법목적이 청소년보호의 의미에 부합되며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에 해당하는지가 세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입법에 포함된 개별적인 정책과 제도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특정 정책과 제도보다 청소년의 자유권이 덜 제한받는 대안이 존재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를 구체화하는 개별적 입법목적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과 제도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의 자유권을 서로 비교하여 가치적 비중과 현실적 이해득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과잉금지원칙, 비례성 원칙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적 목적과 청소년의 권리를 상호 비교하면서 정책과 제도가 각각의 가치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될 때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통해 균형점을 찾는 방안으로 예비적 헌법심사가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제가 청소년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과잉입법이 되지 않도록 그 속에 포함된 보호의 의미와 취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예비적 헌법심사가 중요한 것은 청소년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보호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청소년에 대한 모든 간섭과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라면 그 자체가 보호와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4) 청소년보호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례 검토

① 섯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인터넷게임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24조),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동법 제26조). 시행 초기 ‘섯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임에도 청소년이 성인과 차별 없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즉,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³⁶⁾ 섯다운제도의 헌법합치성 판단기준 검토 시

36)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입장이다. 현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0면: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즐기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적 생활방식과 취미를 제한하므로 이들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었다. 먼저 목적의 정당성원칙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금지조항은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실시하였다.³⁷⁾

수단의 적합성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인터넷게임 제공자로 하여금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³⁸⁾ 다음으로 피해의 최소성원칙에서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가정 내에서도 통제가 쉽지 않고 장시간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야시간대인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도 청소년 중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인 16세 미만의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을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 및 중독 현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도의 시간적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³⁹⁾ 더욱이 “인터넷게임 이용에 대한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PC이용 인터넷게임 외에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독의 우려가 적다고 보아 일단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며, 여가부(여성가족부) 인터넷게임물 고시에서 인터넷게임이라 하더라도 시험용게임물,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홍보용 게임물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⁴⁰⁾

이 밖에도 청소년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의 종류 및 시간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섯다운제는 “청소년 자신이나 부모 등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청소년이나 부모의 선택적 섯다운제의 이용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자체만으로는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 및 중독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상 선택적 섯다운제가 이 사건 금지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37)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2면.

38)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2면.

39)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3면.

40)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3-194면.

달성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⁴¹⁾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원칙과 관련해서도 섣다운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하루 중 보통 사람이 수면을 취하는 시간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되고, 16세 미만 청소년 및 그 부모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은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에 반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은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⁴²⁾

② 심야시간 썸질방 출입금지

24시간 영업하는 썸질방이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은신처로 이용되거나 과도한 애정표현, 음주 및 흡연과 같은 역기능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썸질방을 운영하는 목욕장업자가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 심야시간대(22시~05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동법 제4조 7항). 이와 함께 위반 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영업정지·영업장폐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심사하였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썸질방이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⁴³⁾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단의 적합성과 피해의 최소성도 준수했다고 본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썸질방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 규정은 썸질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청소년들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출입만 제한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영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고 있다.”⁴⁴⁾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다. “심야시간에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이 썸질방에 출입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규정으로

41)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4면.

42)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판례집 26-1하, 176, 194면.

43) 헌재 2008. 1. 17. 2005헌마1215, 판례집 20-1상, 111, 118면.

44) 헌재 2008. 1. 17. 2005헌마1215, 판례집 20-1상, 111, 118-119면.

인하여 찜질방 영업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정도는 별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야시간의 찜질방에 조성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⁴⁵⁾

③ 심야교습 제한

헌법재판소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이른바 학원조례의 위헌성 심사에도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였다. 목적의 정당성 원칙과 관련하여 “학원조례조항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자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비정상적인 과외교습경쟁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실시하였다.⁴⁶⁾ 또한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면 학생들이 보다 일찍 귀가하여 휴식과 수면을 취하거나 예습 및 복습으로 자습능력을 키울 수 있고,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과 같은 여러 폐해를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⁴⁷⁾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관련하여 “학원조례조항에 의한 교습시간 제한은 학원교습 자체를 금지하거나 학생들이 교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교습은 보장하면서 심야에 한하여 학원교습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실시하였다.⁴⁸⁾ 한편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늦게 끝나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에 학원교습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은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강제성을 지니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생들은 그 의사에 따라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등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⁴⁹⁾ 또한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운영되어 평일에는 학원 등의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개별 학교의 학사운영 때문이지, 학원조례 조항에서 직접 파생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다.⁵⁰⁾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22:00 또는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

45) 헌재 2008. 1. 17. 2005헌마1215, 판례집 20-1상, 111, 119면.

46) 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1면.

47) 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1면.

48) 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1면.

49) 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2면.

50) 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2면.

지 학원 등에서 교습이 금지되는 불이익에 불과한 반면, 학원조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부차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이다.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실시하였다.⁵¹⁾

3.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

청소년보호정책은 청소년이라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여러 관계부처 간 정책영역이 중첩되어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정책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청소년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보건, 복지, 의료, 근로 등 일반 사회정책 상당수가 포함된다. 특히 보호의 범위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으로서의 보호(care services)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services)가 모두 포함되므로 정책의 범위와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정 종합대책이 곧 해당 정책이라고 본다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수립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통해 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5대 정책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그림 II-2). 정책유형은 모니터링·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 및 인식제고,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로 구분되어 5대 정책영역에 따른 28개 중점과제가 포함되어 있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4.21.), pp.1-5).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내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의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보호정책의 범위와 영역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매 5년 마다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동법 제13조), 올해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이하 제5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에 해당한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은 5대 정책영역 가운데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포함되며, 중점과제로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를 포함한다. 즉, 범부처 종합계획을 근거로 할 때 청소년보호정책은 5대 정책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 및 인식제고,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를 통해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각종 제도와 사업이 정책 범위에

51) 현재 2016. 5. 26. 2014헌마374, 판례집 28-1하, 360, 372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 II-2]).

한편, 2015년에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동법 제14조) 2016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추진실적에 대한 시범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75개 세부과제 가운데 보호영역 중점과제에 해당하는 사업 수는 총 15개로 전체 과제 수 대비 20% 규모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속신규 사업을 포함한 보호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283,287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 수준을 보였다. 17개 시·도의 경우 보호영역 중점과제에 해당하는 사업 수는 총 158개로 전체 과제 수 대비 약 16.8% 정도이며 예산(자체예산)은 전체의 약 6.9% 수준이었다. 즉,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소년사업 수와 비교할 때 보호사업의 수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예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II-1>, <표 II-2>).

비 전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
목표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피해 예방

정책 유형	정책 영역	중점과제(28개)
① 모니터링·제도개선	매체물	· 산변중 유해매체 모니터링 확대 · 유해매체물 제작유통(배포)·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해악물	· 유해악물 신규 유통판매 경로·인터넷 작태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 유해악물 사업·콘텐츠 판매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강화
	유해업소	· 산변중 유해업소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강화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비
	유해행위	· 친족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 강화 · 스마트폰 채팅앱 등 신종경로를 통한 상대방성폭력 단속·작발 강화
	근로보호	·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 청소년·고용업소의 자율적 근로권익보호 활성화
② 대응능력 함양·인식 제고	매체물	· 생애주기별 유해정보·매체 대응 역량 증진교육 체계화 · 매체이용 윤리교육 및 자치활동 활성화
	유해악물	· 유해악물의 청소년 대상 노출 및 확산 차단 · 유해악물 예방교육 확대 강화
	유해업소	·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자율규제 활성화 · 중앙·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
	유해행위	· 폭력 예방 교육내용·방법의 질적 제고 · 폭력가해·피해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강화
	근로보호	· 근로권익 및 직업안전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교육형식의 질적 제고 ·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 강화
③ 피해구제·사후관리	매체물	·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치유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사이버도박 등 중독 청소년 발굴·치유 지원체계 강화
	유해악물	· 청소년의 유해악물 중독진단 및 치료지원 연계 강화 · 공공·민간 전문기관의 유해악물 치료재활 기능 및 역할 확대
	유해행위	·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 강화 · 폭력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 지원 강화
	근로보호	· 부당행위 피해 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청소년 일자리 제공 ·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 기능 강화

추진 체계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유관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 유해환경 개선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6.4.21.), p.6.

【그림 II-2】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비전 및 중점과제

표 II-1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중앙행정기관)

(단위: 백만원, 개)

영역	중점과제	세부 과제수	사업				실적
			전체	연속	신규	예산	
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7	38	37	1	246,195	308,272 (4.4%)
	2.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5	18	18	-	16,977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4	12	12	-	43,282	
②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4	6	6	-	1,188	128,563 (1.9%)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4	18	18	-	124,083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5	14	14	-	5,523	
③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7	20	20	-	5,104,679	6,177,845 (89.2%)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8	17	17	-	513,166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7	22	22	-	603,829	
④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4	11	11	-	11,560	303,591 (4.4%)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8	38	38	-	243,599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3	15	15	-	28,128	
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3	3	3	-	-	9,104 (0.1%)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3	5	5	-	9,423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3	3	3	-	388	
총계		75	240	239	1	6,952,020	6,927,375

*출처: 여성가족부(2016a), p.13; 실적은 여성가족부(2016e), p.13 참조.

*주: 1) 2016년도 연속사업 239개, 신규사업 1개 / 2015년도 종료사업 7개

표 II-2

2016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과제 현황(17개 시·도)

(단위: 개, 백만원, %)

영역	중점과제	세부 과제수	사업수	2016년 자체예산	비율
①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2.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7	244	82,191	23.51
	2.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5	42	1,694	0.49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4	30	1,505	0.43
②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4	52	3,161	0.90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4	26	63,795	18.25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5	12	2,050	0.59
③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7	81	71,963	20.58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8	142	58,085	16.61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7	48	16,370	4.68
④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4	26	4,185	1.20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8	111	15,785	4.51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3	21	4,238	1.21
⑤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3	13	40	0.01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3	82	16,878	4.83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3	13	7,709	2.20
총계		75	943	349,648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16b), p.19.

4. 청소년보호 영역별 국내·외 연구동향⁵²⁾

1) 청소년유해매체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다의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유해매체 규제정책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연구(임영덕, 2011; 이정기·오대영, 2014; 황성기, 2014; 양숙자, 2016)가 다수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현행 규제제도의 개선방안 및 효과적인 보호콘텐츠 마련에 초점을 둔 연구(강진숙, 2010; 권현오, 2012; 임현, 2012; 박광선, 2016)와 정부주도의 규제보다 업체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연구(정의철, 2013; 최희경, 2013; 최종선, 2014; 김일환, 2016)도 일부 이루어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양숙자(2016, pp.729-74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음란물 매체 몰입과 같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은 부모의 비일관적이며 과잉간섭과 같은 양육태도와 또래예착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체 역기능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교육 강화와 건강한 또래관계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의 교육권 및 가족의 자율성(family autonomy)과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개입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들은 부모의 교육권과 가족의 자율성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국가의 개입이 이를 침해하는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황성기, 2014, p.2). 또한 게임, 영화, 음악, 영상물 등 문화콘텐츠 유해성의 경우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정도, 사회·문화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연령등급제와 부모의 동반을 통한 지도감독 여부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섯다운제도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자율성, 부모의 교육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강력한 국가후견주의(hard paternalism)에 따른 개입이라는 비판 등으로 인해 최근 부모선택제도로 선회된 바 있다.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황성기(2014, pp.7-18)는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과 관련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의 필요적 사전동의제도가 「민법」상

52) 이 부분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5대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제한적이거나 2010년 이후 국내외 연구 및 자료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미성년자제도와 비교할 때 특별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동법 제25조 제1항과 관련된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의 경우 연령등급제의 취지와 모순되는 만큼 과연 국가가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할 영역인지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인터넷 게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권과 가족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전 동의제도 및 이용시간 부모고지제도 조치의 경우 사업자의 책임이 일정부분 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가 사업자들의 데이터마ining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경화, 2014, pp.2-3).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강진숙(2010, p.372)은 정부차원의 규제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독일의 자율규제제도의 시사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참여중심 자율규제 운용, 프로그램 등급제도 강화, 보호주의적 측면의 자율규제 의무화와 의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송사 및 포털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활동 활성화, 방송사 및 포털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청소년유해체물의 심의에 있어 심의기준과 심의기준이 불명확하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임현, 2012). 특히 임현(2012, p.138)은 청소년의 실제 시청시간대와 법률 상 보호시간대에 차이가 있고, 실제 청소년 시청시간대 방송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케이블을 통한 시청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 외 청소년보호에 효과적인 보호콘텐츠와 관련하여 권현오(2012, p.39)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청소년이 불법적 서비스와 성인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등 고도의 필터링 서비스가 무료의 부가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청소년의 가입이 저조하므로 청소년의 일괄가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정기·오대영(2014, pp.31-39)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 등 국내·외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청소년유해성을 분석하였는데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는 선정·음란물이 도박·사행성게임물, 범죄·폭력물에 비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는 도박·사행성게임물이 다른 범주의 유해정보보다 많았다. 이상의 결과들은 해외 오픈마켓 유해정보는 선정·음란물을 중심으로 규제의 논거를, 국내 오픈마켓 유해정보는 도박·사행성게임물에 초점을 둔 규제 논거의 개발이 필요하며 규제 방향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랜덤채팅이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유통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1인 방송의 유해성 논란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특히 박광선(2016, pp.125-156)의 연구에서 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청소년이 송신하는 사진 파일의 61.9%가 성인 남성에게 전달되고, 수신하는 사진파일의 43%가 성인남성으로부터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섹스팅(sexting)에 의한 청소년의 성착취와 성매매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고 그간의 규제와 단속이 효과적이지 않아 범정부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과 정부주도의 랜덤채팅 대응 플랫폼 개발·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활동 및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섹스팅을 포함하여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성착취(sexual grooming),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과 관련한 다수의 법률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간주한다(NSPCC, <https://www.nspcc.org.uk>, 인출일: 2017.8.7.). 즉, 자신 또는 친구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이러한 이미지나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다운로드, 보유, 저장하는 행위가 섹스팅과 관련한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다. 또한 성범죄방지법(Sexual Offences Acts, 2003)을 근거로 청소년에 대한 성적학대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라이브방송을 금지하는 등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은 국내·외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온라인 그루밍, 라이브 스티리밍 등으로부터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4월에 ‘아동 착취 및 온라인 보호국(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 CEOP)’을 설립하였고 다부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영국 내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 인출일: 2017.8.7.).

반면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는 섹스팅 관련 법안을 호주 주정부 최초로 주의회에 상정한 바 있는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섹스팅이 성인에 의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미성년자 기소 면제 조항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즉, 영국은 아동·청소년 간의 섹스팅 행위도 위법행위로 간주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반면, 호주는 청소년에게 있어 섹스팅은 성인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청소년 범법자자 양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을 보호하여 뚜렷한 입장 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감독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에 재정을 지원하여 온라인 상 청소년 대상 성적학대 관련 이미지, 영상, 라이브방송 등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IWF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업체(ISP)와 협력하여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유해사이트의 목록을 관리하며, 호스트사이트에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takedown

notice)을 발송하면 보통 수 시간 이내에 제거가 이루어진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필터링, 블로킹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IWF의 유해콘텐츠 차단 노력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인출일: 2017.8.8.).

독일은 정부차원에서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심사청(BPJM), 주미디어감독청(DLM)을 두고, 민간기구인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벌금부과나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청소년에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자적 정보(electronic information)와 통신매체(communication media)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16개 주 간의 협약(Interstate Treaty)을 근거로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자율규제체계에 따라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정의철, 2013; 최종선, 2014; 김일환, 2016).

2) 청소년유해약물

물담배, 말아피는 담배를 포함하여 신종 유해약물의 확산과 판매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어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6.3%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p.37). 흡연으로 기인되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세계적으로 600만 명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5만 8천 여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음에도(WHO, 2008; 정금자·윤영덕·백수진·지선하·김일순, 2013, pp.36-48)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종담배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유해약물의 종류와 구매형태, 광고형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예방정책은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본 협약은 2005년에 국제법의 효력을 가졌고 2017년 5월 현재 180개 국가가 비준하였다. 협약에는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세대 보호를 목표로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이 담겨 있다.⁵³⁾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유도하는 다양한 전략을 확인할 수 있고 10대 청소년을 ‘잠재적 고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53)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HO(2012)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금연길라잡이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subview.jsp?id=nosmokeguide_030103010000 검색일: 2017.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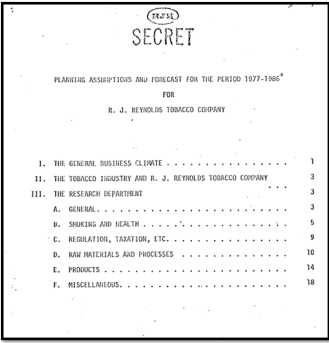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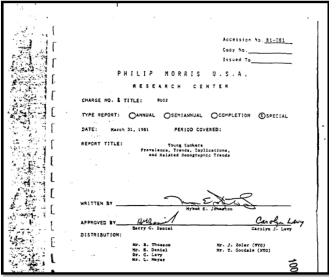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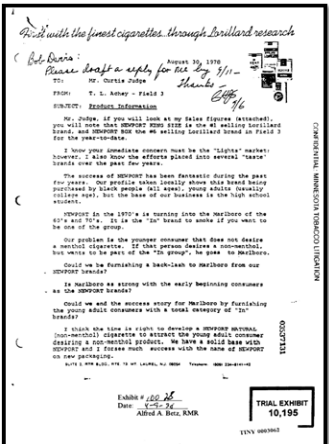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자료는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이 판매업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담배회사, 주류회사 등으로 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II-3] 참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시 담배회사의 부도덕성과 담배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는데, 담배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흡연 청소년(18~25세)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금연계획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ing, Neilands, Glantz, 2009, pp.389-394).

최근에는 물담배, 말아피는 담배(각런, roll-your-own 담배), 머금은 담배, 씹는담배,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블로그, 웹툰 등의 유해약물 간접광고도 증가하여 유해약물의 종류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에 변화가 필요하다(이성규·박주연·김진영·백민정·박승의·백하나, 2015; 이성규, 2011, p.3). 특히 학교기반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적 측면을 보강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진행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청소년의 미래흡연의지 예측모형 등을 활용하여 미래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ark, 2006, pp.407-415; Lee, et al., 2010, pp.283-291).

한편, 여성가족부가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금연침 시술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연침의 금연보조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과학적 근거를 정리·발표하는 ‘코크란(Cochrance)’에 따르면 침술이 장기적 금연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금연보조제들과 비교할 때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hite AR.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및 중독치료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보다 과학적 근거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2016년에 담배처럼 피우는 형태의 비타민 ‘비타스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였다. 비타스틱은 담뱃잎을 원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로 규제하기 어렵지만 청소년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담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라 하겠다.

프랑스의 경우 2014년 조사 결과에서 만 17세 청소년의 90% 이상이 알콜 음료를 먹어본 경험이 있고 조사대상 청소년 10명 중 4명이 향정신성 금지약물인 카나비스(cannabis)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약물사용은 1년의 징역과 3,75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 근처에서 판매, 사용할 경우 7년의 징역형과 150,0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청소년유해약물 예방 교육 시 각종 약물사용에 대한 처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ATTITUDE PREVENTION 홈페이지, <http://www.attitude-prevention.fr/p-revenir-drogue-enfant.html>, 인출일: 2017.8.20.).

담배회사 내부분건 이미지	문건내용	해석과 의미
	"Evidence is now available to indicate that the 14 to 18 year old group is an increasing segment of the smoking population." "RJR must soon establish a successful new brand in this market if our position in the industry is to be maintained in the long term."	RJ레놀즈 담배회사는 흡연자 중 14세에서 18세 연령층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연령층을 공략할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Today's teenager is tomorrow's potential regular customer... The smoking patterns of teenager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Philip Morris."	필립모리스 담배회사는 오늘의 10대가 내일의 단골손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10대들의 흡연패턴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T]he base of our business is the high school student."	로릴라드 담배회사는 자신들의 사업 기반이 고등학생임을 강조함

* 출처: UCSF Library 홈페이지, 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s, <https://www.industrydocumentslibrary.ucsf.edu/tobacco/> (인출일: 2017.9.1.)

【그림 II-3】 담배회사 내부분건(예) : 10대 청소년=잠재 고객

3)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연구는 심야시간 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 친화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강영배, 2013)와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조운오·이미정, 2013; 손애리, 2014)가 대표적이다.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강영배(2013, pp.53-80)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는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 1천 명 당 약 80개소,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및 고용대상층인 15~18세 청소년 1천 명 당 약 300개소에 달하는 반면, 법률에서 설치를 명시한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인구(9~24세) 1천 명 당 0.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청소년 친화환경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한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통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예방, 단속, 규제를 특화 운영하고 있다.

손애리(2014, pp.15-26)는 흡연이 청소년의 성인용 유해업소 출입의 예측모형에서 가장 주요 변수이며 음주와 부모 동거여부가 주요 설명변수이고, 게임용 유해업소 출입의 예측모형에서 가장 주요 변수는 학습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며 음주, 부모 동거여부, 스트레스, 학교생활 만족도가 주요 설명변수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저자는 청소년의 성인용 유해업소 출입 경험률이 6.8%에 달하여 성인영화관, 전화방과 같은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게임용 유해업소 출입 경험률이 81.8%에 달하여 청소년 5명 중 4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운오 외(2013, pp.259-286)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자체가 폭력범죄피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산적 피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청소년이 각각의 유해업소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여 스스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와 흡연행동 개선, 부모가 부재하거나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집중지원, 건강한 여가선용 공간 확보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은 각 주정부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법(Juvenile Curfew Laws)을 제정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외부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할구역(jurisdiction)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활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여행 중인 경우, 공식 학교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경우,

비상사태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통행금지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은 아니지만 지역범죄와 폭력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경우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반 청소년에 대하여 자동소환(automatic citation)이나 체포하는 방식보다 주의(warning)를 주거나 통행금지센터(curfew center)나 청소년교육시설에서 부모나 보호자를 기다리면서 상담, 약물예방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지도가 이루어진다.

반면 영국은 범죄 및 질서위반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의 Section 14(Local Curfew Schemes), Section 15(Contravention of Curfew Notices)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통행금지 시간(오후 9시~오전 6시)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9년에 삭제되었고 현재 특정 시간대에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Protection of Minors in EU, http://www.protection-of-minors.eu/en/GB_overview.php, 인출일: 2017.8.8.). 다만 주류 판매 및 공급에 관한 법률인 라이선스법(Licensing Act 2003)에서 주류 판매 허가 구역(licences premises)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protection of children from harm),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적인 주류 판매 예방, 청소년의 주류 판매 허가 구역에 대한 접근 금지이다. 라이선스를 담당하는 지역당국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펍(pub)과 레스토랑 체인점 역시 청소년의 출입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인출일: 2017.8.9.).

독일도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지만 청소년에게 유해한 일부 장소들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 성인용 바와 클럽, 다량의 주류 판매처 등 청소년유해지역은 부모를 동반해도 18세 이하 청소년은 출입이 원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최대 5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레스토랑, 디스코텍, 클럽 등의 경우 조건을 두고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24시까지 혼자 방문할 수 있지만(18세 이상 출입 가능 업소 제외)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이용시간은 제한받지 않는다. 또한 영화등급분류기구(FSK)에서 6세부터 세분화된 관람기준을 두고 있는데 16세 이상 영화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한다 해도 제한 연령 이해의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다.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으며 이는 콘서트, 주류 및 담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독일 T-Online 매거진, <https://www.t-online.de>, 인출일: 2017.7.30.).

4) 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유해행위는 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폭력성을 조장하거나 건강한 인성발달의 저해가 우려되는 환경의 총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랜덤채팅(random chatting)’을 통한 음란정보 유통이 증가하고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경로로 활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예방과 대응에 관한 연구(박광선, 2016; 박찬걸, 2017)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인 창작자 콘텐츠의 유해성 분석(이하림·유홍식, 2017), 성매매,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박찬걸, 2015; 최해연·곽윤영·배주미, 2015; 정재은·장재홍, 2017)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랜덤채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마련이 시도된 바 있으나 실시간 대화 형식의 서비스 전체에서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위배된다는 인터넷 기업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고 관련 개정법률안은 국회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섹스팅 사건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랜덤채팅 운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골적인 접근행위가 파악되었고 사용자간 사진 파일의 60% 이상이 음란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2016년 2월 22일부터 5월 31일 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유인한 사범(「청소년성보호법」 13조 위반) 340명(139건), 청소년의 성매수 강요 사범(「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위반) 68명(24건), 청소년의 성을 알선한 사범(「청소년 보호법」 제15조 위반) 11명(5건) 등 총 419명(168건)을 검거하고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박광선, 2016, p.125; 박찬걸, 2017).

특히 MCN(Multi Channel Network)이라는 새로운 영상사업이 성장하면서 여기에 소속된 1인 창작자들이 생산하는 영상콘텐츠의 유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하림 외(2017, pp.119-152)가 게임, 엔터테인먼트, 오락 등 3개 장르의 27개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평균 38.3개의 유해내용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욕설, 저속한 표현과 같은 언어적 문제가 가장 많고 폭력적 내용, 선정적 내용이 다수 관찰되었으나 성인 인증 로그인 등의 장치가 없고, 15% 정도만이 시작 부분에 유해성 경고문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1인 창작자의 영상콘텐츠가 ‘방송프로그램’이 아닌 ‘정보’로 분류되어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1인 창작자일수록 더 많은 유해내용을 생성해 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율적 규제에 맡기기에는 유해한 내용의 양과 질이 매우 심각하므로 사업자들에게 1인 창작자들에 대한 교육제공 의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유통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자수에 비례한 상시감시 인력 보유 의무화 같은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온라인데이트협회(Online Dating Association)는 온라인에서 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모여 2013년에 설립한 온라인 데이트 자율규제기구로, 산업계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관련 표준(Code of Practice)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규정에는 일반규정, 정직하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사용자 보호, 사용자의 욕구 충족,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업계 원칙,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금지, 청소년의 온라인 데이트 서비스 이용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 운영 등이 포함된다(Inline policy(2014.9.8.). <http://inlinepolicy.com>, 인출일: 2017.8.8.).

청소년의 폭력피해와 가해경험 간의 상호관련성은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는데 정재은·장재홍(2017, pp.179-209)의 연구에서는 형제폭력, 부부폭력과 학교폭력 가피해경험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부부폭력이 높아질수록 자녀학대와 형제폭력 가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가능성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에 대하여 자녀학대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학교폭력 피해에 대하여 부부폭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폭력피해경험이 장(場)만 옮긴 채 피해와 가해경험이 반복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부모의 혼인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성폭행 피해경험이 있거나 내재화 및 외현된 문제행동이 관찰되었는데 이러한 요인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해연·곽윤영·배주미, 2015, pp.223-236).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처우 시 피해경험에 따른 회복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능한 가족기능을 포함하여 관계의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박찬결(2015, pp.53-54)은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이나 상담소를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한데, 최근 관련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형이 2천 만 원 이상 5천 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된 만큼 벌금액 일부를 신고포상금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5) 청소년근로보호

최근 청소년근로보호 관련 연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에 관한 연구(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이미영·안시영, 2015)와 청소년근로권의 법적 보호방안(송기철, 2012; 최상진, 2017)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학령기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주로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근로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여전히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전반에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송기철(2012, pp.153-172)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 일자리 확충 문제와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다수 발의된 바 있다.

먼저 류지영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1914933, 2015.4.29. 발의)은 연소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년 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000843호, 2016.7.13. 발의)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용득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2000995호, 2016.7.20. 발의)은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 명시, 임금지급 시 지폐 및 본인명의 계좌입금 등 규정을 포함한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는데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1914690호, 2015.4.13. 발의),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1915076, 2015.5.8. 발의)의 경우 청소년이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대상 근로조건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법률안은 위원회대안에 반영되어 2016년 5월에 대안폐기되었다.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000322호, 2016.6.17. 발의)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계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청소년의 수요와 일자리 공급 간의 미스매칭 해소를 목적으로 박홍근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2883호, 2016.10.24. 발의)로 「청년 첫 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진(2017)은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5장 여성과 소년 부분, 「청소년 보호법」, 「직업안정법」등에 산재된 규정을 분리하여 독립적 법률 제정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규제와 함께 청소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보호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본은 2015년 10월부터 우수기업 인정제도(Youth Yell)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이 청년층 고용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국내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상진, 2017, p.105). 또한 일본은 「연소자노동기준규칙」에 위해·위험업무금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청소년의 고용과 직업훈련, 커리어(경력) 형성 촉진, 자립지원 등의 연장선상에서 근로보호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블랙기업’ 지정 및 공표, 위법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집중적 근로감독 시스템 구축 노력은 참고할 만하다(최상진, 2017, pp.74-75).

특히 김지경·최인재(2015, p.53)는 근로보호 영역에 있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청소년고용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책 사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는 근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연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상담 지원건수가 2014년 15,755건에서 2016년 16,79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쟁점

1) 청소년보호정책의 기초 : 인권주체로서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국가와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목적은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좁은 의미의 보호적 시각으로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미성숙을 전제로 하더라도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최소한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율론적 입장이 있다.

세 번째는 주체론적 시각으로, 청소년은 자율적 존재임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권과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미래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호의 목적이라는 미래지향적 시각을 들 수 있다(배규한, 2014, pp.124-125).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은 보호론적 시각과 그에 따른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배규한, 2014, pp.125-132), 이는 「형법」, 「소년법」등에서 보호주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과 맥락이 다르지 않다. 즉, 「형법」에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9조), 이는 이들의 지적·정신적·도덕적 미성숙을 전제로 이들이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년법」에서도 수사 및 집행과정에 다양한 특별규정을 두어 14세 이상의 자에게 보호대상으로서 처벌보다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반면 이와 같은 국가후견주의는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태도에 기반을 둔 부모후견주의의 확장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김지연, 2014; 김지경·최인재, 2015, pp.19-20). 같은 맥락에서 업계의 자율규제 방식보다 정부 차원의 규제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강진숙, 2010), 국가의 강제적 개입이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청소년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유빈, 2014; 박종현, 2014; 황성기, 2014). 이러한 논의는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책의 기초와도 직결된다. 인권 주체로서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청소년보호 이슈와 관련된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적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⁵⁴⁾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은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근간으로 하나, 취약위기청소년의 보호는 결국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과 보호·복지 서비스지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즉,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청소년보호정책의 정책수단은 청소년을 포함한 제반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전제할 때 정책의 효과성을

54)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자유권 제한을 위한 사법적 심사기준인 헌법적 원칙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과 법익의 균형을 위한 네 가지 부분원칙과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절을 참고할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은 문제중심(problem-focused)의 접근에 치우쳐 있고, 유해환경 규제라는 대응적·방어적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청소년이 자신을 보호하고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다소 거리를 보인다(이유진·배규한·이상희, 2014, pp.8-20).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에 청소년의 대응능력 함양 및 인식제고,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 등을 정책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 대상 직접개입은 다소 제한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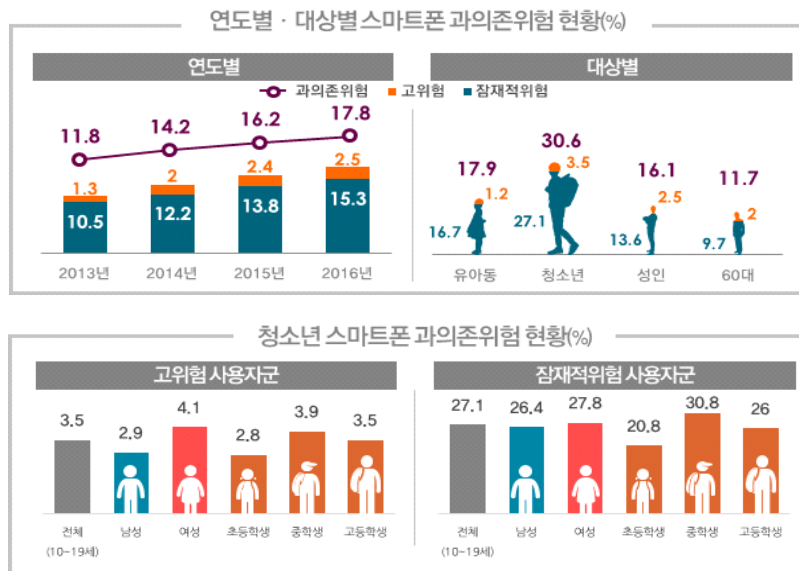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일명 강제적 섯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⁵⁵⁾ 부모선택제는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과몰입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예방책으로 2011년 11월에 도입된 강제적 섯다운제를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한 제도이다. 섯다운제도는 상업적 논리를 떠나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즉,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 섯다운제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원칙에 부합하여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섯다운제를 도입한 주무부처가 부모선택제를 제도입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은 정책수단을 결정하기 전에 헌법적 원칙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미디어 사용 과의존⁵⁶⁾ 및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에 대한 상설 시설 운영 및 치유, 재활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림 II-4]과 같이, 2016년도 정부조사에서 청소년(10~19세)의 약 30%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피해정도가 큰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임이 확인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27). 이에 현재의 치유·치료·재활서비스의 규모와 정도(coverage)가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자의 경우 교육과 상담보다 지인(가족, 친구 등)의 도움이나 문화·스포츠·여행 등 여가활동과 기술적인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주로 교육 및 상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수단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교육과 상담지원이

55) 청소년의 건강권, 수면권을 확보하는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부모(친권자)의 선택권, 교육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정부제안으로 발의되었다(의안번호 : 2004131, 제안일자 : 2016.12.06.).

56) 과의존의 개념은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으로 개인의 삶에서 이들 매체를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부각되며(현저성), 자율적인 조절능력이 저하되고(조절실패), 신체·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9).

여러 부처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계 부처 간의 역할부담과 정책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주요 제도와 지원 등 정책수단의 효과와 작동정도를 점검하고, 환류를 통해 정책수단의 개선 및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p.27, p.30.

【그림 II-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

3) 메가트렌드, 미시환경트렌드와 청소년보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변되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 우리사회의 메가트렌드와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환경의 변화는 청소년보호에 있어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고,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트렌드에 발맞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네트워크 사회로의 빠른 전환과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가 메가트렌드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청소년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증가하면서 주류문화에 대한 도전과 사회참여의 증가, 중독현상과 폭력행위 증가 등이 매체환경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이경상·최화삼·그레이스정, 2013). 또한 ‘배달앱’을 통한 청소년의 주류 구매와 랜덤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19금 콘텐츠도 범람하고 있다. 반면 유해정보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청소년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⁵⁷⁾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성인 인증 없이 돈만 입금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일명 사다리게임의 경우 게임방식이 단순하고 5분 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하루 288번까지 도전할 수 있는데, 판돈이 수 백 만원까지 올라가 고등학생이 2천 만 원의 빚을 진 경우”도 보도되었다(머니투데이 보도자료(2017.3.30.), <http://news.mt.co.kr/>, 인출일: 2017.6.30.). 문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폭행,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게임업체의 핵심서버가 국외에 있어 사이트를 차단해도 다른 주소로 옮겨 재개장하기 때문에 완전 차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용 도박게임이 아니라 청소년이 불법도박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청소년 온라인도박을 유형화해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신종매체의 유해정보와 유통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가 매체 대응역량을 발휘하여 피해와 중독을 예방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유해물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의 음주,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비타스틱(피우는 비타민)의 경우 올해부터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체계의 변화는 청소년보호에 있어 단속과 규제중심의 접근에 한계가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범람하는 각종 유해매체물을 현행 법률로만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매체, 유해약물, 폭력 등 세부내용을 개별법으로 분리하여 강력한 보호정책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이춘화·강지명, 2009), 청소년 스스로 자정능력을 함양하는 접근을 병행하며(김지경·최인재, 2015),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전략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성벽, 2007).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운동을 하던 한 기업이 청소년에게 특수콘돔

5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면서 유해성광고를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6년 4월말 기준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6,203개 가운데 2,442개(39.4%)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를 근거로 유해매체물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김삼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6685, 제안일자 : 2017.4.11).

등 성생활용품의 판매를 금지한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코메디닷컴뉴스 보도자료(2017.5.3.), <http://www.kormedi.com>, 인출일: 2017.6.30.). 콘돔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고 해외 쇼핑물을 이용할 경우 성인용품의 구매가 가능함에도 오프라인 상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19금 검색어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는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것이 논지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생활권 내에 신종, 변형 유해업소 등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신분증 위변조 등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도 갈수록 지능화하여 단속과 적발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귀청소방, 마사지방, 림카페, 립카페에서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데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변종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⁵⁸⁾ 특히 동 법률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는 허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동법 제2조 제5호) 이들 업소의 실제적인 영업형태와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정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적발·단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의 이용을 알선하는 유선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⁵⁹⁾ 이에 청소년보호 이슈와 관련된 메가트렌드 및 미시환경트렌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4) 보호정책 사각지대의 청소년보호 이슈

가족구조의 변화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요인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 거시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도 부모의 보호와 정책지원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발굴과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환경트렌드의 하나로 진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2013). 특히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58) 이들 업소의 경우 상당수가 자유업으로 등록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은 키스방, 유리방, 성인 PC방, 인형체험방, 휴게텔, 대딸방 등이다(2017년 5월 기준). 그러나 현재 이들 업소의 운영형태에 대한 파악과 유해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부재하다.

59) 이에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최근 발의된 상태이다(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6306, 제안일자 : 2017.3.21.).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형태인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피해사례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이른바 ‘전투콜’로 불리는 배달경쟁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아시아경제 보도자료(2017.3.31.), <http://view.asiae.co.kr/news>, 인출일: 2017.6.30.).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배달대행원이 특수고용직에 포함되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9% 수준에 불과하고,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실제 가입과 보상처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특수고용형태로 일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청소년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은 현행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의미이다(김지경·이상준, 2015, p.81). 이로 인해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의무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유해매체에의 노출도 함께 증가하여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성매수범죄와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근거로, 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이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청소년을 피해자와 대상으로 이원화하고 있어 처우 시 차별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⁶⁰⁾ 즉,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하여 대상청소년이 된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의 관점에서 죄를 범한 소년이 되어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이 부과된다. 문제는 보호처분의 취지와 관계없이, 보호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청소년이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감금될 수 있고, 이는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동일하게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미국 일부 주의 경우 형법에서 ‘청소년성매매(juvenile prostitute)’라는 용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렵고 각종 유해환경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가정 밖 상황에 있는 청소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체계의 변화에 따른 보호정책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60)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1478, 제안일자 : 2016.08.08,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5598, 제안일자 : 2017.02.13).

제 III 장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반 및 현황 분석

1. 분석의 개요
2. 추진기반 : 법령 및 예산 추이
3. 정책영역 : 주요사업 및 전달체계
4. 성과관리 : 평가 및 환류체계
5. 소결

제 III 장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반 및 현황 분석⁶¹⁾

1. 분석의 개요

이 장에서는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여건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 추진기반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한 청소년보호 관련 개별법의 현황과 예산 추이를 검토하였다.⁶²⁾ 이를 위해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석하였다.⁶³⁾ 이를 통해 2차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의 근거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한 유해매체,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 청소년폭력·학대 등 관련법의 현황과 편중 정도를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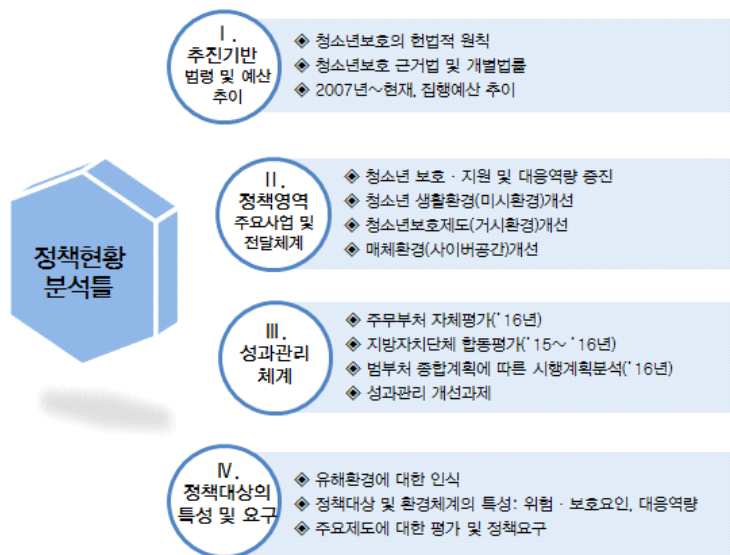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보호 5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주요사업과 전달체계를 검토하였다. 특히 5대 정책영역별 정책수단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이버공간 등 다양한 환경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도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과 2017년도 사업지침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평가 및 환류 체계 등 성과관리 현황을 검토하였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의 2016년도 자체평가 보고서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2015년 실적), 2017년도 평가지표(2016년 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소년보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II-1]이다.

61)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62)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청소년보호의 의미와 헌법적 원칙은 2장을 참조할 수 있다.

63) 5월 기준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취합이 완료되지 않았고, 신규에 비하여 계속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직전년도 시행계획을 분석하였다.



【그림 III-1】 정책현황 분석틀

2. 추진기반 : 법령 및 예산 추이

1) 청소년보호 관계 법령 현황⁶⁴⁾

먼저 각종 청소년보호사업의 법적 근거와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보호 5대 정책영역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현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당해 연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보호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개별 법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만 자료 분석 시점 현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2016년도 시행계획만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분석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64) 여성가족부의 2016년도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석한 것이므로(여성가족부, 2016a; 여성가족부, 2016b; 여성가족부, 2016c) 본 절 내에 포함된 개별 법률에 대한 별도의 출처표기는 하지 않았다.

(1)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법률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4조(사회적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청소년 지원), 제35조(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제45조(시정명령)을 근거로 신·변종 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음란·유해정보 확대의 차단, 단속 및 처벌,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치유와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및 대응강화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제72조(직무)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근거로 유해매체물의 생산, 유통(배포), 판매자에 대한 관리와 일선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 영상물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주변 등 청소년의 주요 생활권 내 불법 전단지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 6(인터넷중독대응센터)과 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41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근거로 초·중·고교생 대상 예방교육,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뿐 아니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취약계층 가정에 대한 방문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의 매체 대응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근거로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정·운영, 인터넷 선물달기와 같은 매체이용 윤리교육 및 자치활동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근거로 장애청소년 대상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운영, 유해매체물 생산·유통(배포)·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등의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활성화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체 과다이용 청소년의 발굴 및 치료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제35조(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을 근거로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치유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등 과의존·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와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를 근거로 사이버도박 및 중독·청소년의 발굴·치유와 보호관찰·수감명령 등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를 근거로 학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의 2(게임과물입의 예방 등)을 근거로 청소년, 학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캠프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기본법」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을 근거로,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지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신고)를 근거로 청소년 유해간행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중점과제별 근거 법령과 사업대상 및 담당 기관 등의 현황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이다(<표 III-1>, <표 III-2>, <표 III-3>).

‘매체물’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총 11종의 근거법과 매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위 11종의 법률 가운데 「공연법」에 따른 공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의 경우 해당 법률과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 III-1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1-1.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1-1-1. 신변종 유해매체 모니터링 확대	- 모니터링 기관 간 연계협력 - 불법, 음란, 유해정보 확대 차단, 단속 및 처벌 강화	① 제4조, 제5조, 제45조	청소년	여가부
		- 신규 매체물 등장, 급속한 매체환경 변화에 신속대응을 위해 심의기관별 심의제도 개선 및 운영 강화 - 산변종 유해매체물 대응을 위한 심의기구 간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① 제45조	매체물 심의기관	
		- 매체물제작유통판매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① 제11조	사업자	
		- 온라인 음란물 유포행위 단속	⑩ 제11조, ⑦ 제74조	유포자	경찰청
		- 다양한 전자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유해 간행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② 제71조, 제72조, ③ 제16조, 제19조, ③ 제19조, ① 제9조	직간접 수혜자 ⁵⁾	문체부
		-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전단지 정비 - 불법 유통광고물 정비	⑭	학교주변	행자부
		- 영상물 사인모니터단 운영 - 등급분류 기준 정비위원회 운영(게임물 사업자 등)	② 제71조, 제72조, ③ 제16조, 제19조, ③ 제19조, ① 제9조	7대광역 거주자 ⁶⁾	문체부
		- 국제 영화등급분류 포럼 정례회를 통한 국제 심의기구 간 정보교류 및 협력	② 제71조, 제72조, ③ 제16조, 제28조6호	등급분류 기구 ⁷⁾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게임물 이용자	
		-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개인인터넷방송, SNS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강화 - 통상심의 절차 및 제도 개선 -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활성화 지원	⑤ 제21조, ⑦ 제44조외7	유관기관/사업자/제공사	방통위
	1-1-2. 유해매체물 생산, 유통(배포),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찾아가는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 운영 (능동적 등급분류제도 인식환경 마련)	② 제71조, 제72조 ③ 제9조	초·중·고 재학생	영등위
		- 게임물등급분류 협의체 운영		관련 협단체	방통위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국가정보화기본법,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⑥ 초·중·고교육법,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청소년 기본법, ⑨ 정신보건법, ⑩ 소년법, ⑪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⑫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⑮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⑯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취약계층(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장애인가정 등) 및 과의존 위험군가정

5) 직접수혜자 : 출판사 및 온라인서점, 간접수혜자 : 청소년 및 일반인 간행물 구매자

6) 영상물에 관심이 있고 IPTV, 영화 등 시청이 용이한 7대 광역시도(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울산) 거주자 30인

7) 영국·네덜란드·일본·미국 등 전 세계 영상물 등급분류 기구

표 III-2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계속)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1-2. 청소년 유해정보 및 매체 대응능력 함양	1-2-1. 생애주기별 유해매체, 정보 대응역량 증진교육 체계화	-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스마트 섬' 운동	④ 제30조의 8,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6	초·중·고 재학생 대국민	미래부
		-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실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학교/상당사	
		-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 지정운영	⑤ 제4조 ⑥ 제30조의 8	초·중·고 재학생	교육부
		- 장애청소년 인터넷리터러시 교육운영 확대	⑦ 제41조, 제44조	초·중·고 장애청소년	방통위
		- 인터넷윤리대전 -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캠페인	⑦ 제41조, 제44조, ④ 제40조, ⑤ 제4조	대국민	
		- 청소년 교육기회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⑪, 동법 시행령 제28조	학교·지역사회·청소년시설	문체부
		-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연구학교 신설	-	초·중·고 15개교	교육부
		- 교직원 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 및 직무연수 운영	⑦ 제41조, 제44조, ④ 제41조, ⑤ 제4조	교원	방통위
		-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및 정보윤리학교 운영	④ 제30조의 6, 30조의 8, 40조, 시행령 30조의 6	초·중·고 학교	미래부
	1-2-2. 매체이용 윤리교육 및 자치 활동 활성화	- 인터넷 선물달기 등 캠페인	⑤ 제4조 ⑥ 제30조	초·중·고 재학생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 윤리교육 프로그램 보급	⑦ 제44조, ④ 제41조, ⑤ 제4조	초·중·고 재학생 교원 학부모	방통위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청소년공감 토크콘서트	④ 제30조의 6, 제30조의 8	중·고교	미래부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국가정보화기본법,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⑥ 초·중·등교육법,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청소년 기본법, ⑨ 정신보건법, ⑩ 소년법, ⑪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⑫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⑮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⑯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취약계층(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장애인가정 등) 및 과의존 위험군가정

5) 직접수혜자 : 출판사 및 온라인서점, 간접수혜자 : 청소년 및 일반인 간행물 구매자

6) 영상물에 관심이 있고 IPTV, 영화 등 시청이 용이한 7대 광역시도(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울산) 거주자 30인

7) 영국·네덜란드·일본·미국 등 전 세계 영상물 등급분류 기구

표 III-3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계속)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1-3. 매체 과다이용 청소년 발굴 및 치료지원 강화	1-3-1.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치유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고위험군 대상 집중 사례지원 - 인터넷스마트폰 위험군 청소년 상담치유 서비스	⑧ 제51조 ① 제5조, 제27조, 제35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여가부 ³⁾
		- 미디어 과다사용 위험 취약계층 대상 가정 방문 상담 강화	④ 제30조의 6, 제30조의 8, 시행령 제30조의 6	취약계층(가구) ⁴⁾	미래부
		- 사이버안전센터 참여학교 확대	⑦ 제3조, 제4조, 제41조	청소년 학부모 교사	방통위
		- 간선 게임문화 가족캠프	⑫ 제12조, 제12조의 2	가족	문체부
		- 학부모 대상 게임인식 제고 교육		학부모	
		- 게임과몰입 종합실태조사 - 게임과몰입 힐링센터 운영		청소년 성인	
	1-3-2. 사이버도박 및 중독청소년 발굴치유 지원체계 강화	- 위험군 청소년 부모의 재·지도를 위한 교육 확대	⑧ 제51조, ① 제5조, 제27조, 제35조	과의존 청소년의 부모	여가부
		-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통합관리센터를 통한 상담 치료 연계	⑨ 제13조	아동 청소년	복지부
		- 보호관찰수감명령 처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	⑩ 제32조	수감명령 처분대상 청소년	법무부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국가정보화기본법,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⑥ 초·중등교육법, ⑦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청소년 기본법, ⑨ 정신보건법, ⑩ 소년법, ⑪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⑫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⑮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⑯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취약계층(한부모,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맞벌이, 장애인가정 등) 및 과의존 위험군가정
5) 직접수혜자 : 출판사 및 온라인서점, 간접수혜자 : 청소년 및 일반인 간행물 구매자
6) 영상물에 관심이 있고 IPTV, 영화 등 시청이 용이한 7대 광역시도(서울·대전·부산·대구·광주·울산) 거주자 30인

(2)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

청소년유해물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사업과 근거 법령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보건법」을 포함한 총 5개의 법률을 근거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를 근거로 흡연·음주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임),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제51조의 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 및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약물 치료재활, 마약류범죄 예방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교사의 유해약물 예방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공공·민간 전문기관의 유해약물 치료재활 기능 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를 근거로 담배 및 주류 광고 등 마케팅 규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5조(기금의 사용 등), 제28조(보고·검사), 제34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근거로 금연구역 운영,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음주·흡연 유해성 캠페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를 근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강화, 위기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를 근거로 유해약물 판매업소 종사자 대상 계도단속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를 근거로 청소년 유해약물 중독진단 및 치료지원 연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동법 제2조 제4항) 가운데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가운데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의 경우,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에 해당 법률과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⁶⁵⁾

65) 이 외 청소년유해약물에는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동법 제2조 제4항 가목)과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상·잔인상·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의 청소년유해물건(동

표 III-4 청소년유해물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2-1. 산변종 유해약물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2-1-1. 유해약물 신규유통판매 (인터넷직거래 등)	- 술담배 등 유해약물 신규 유통판매 경로 파악을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모니터링 대응체계 강화	④ 제5조, 제48조	유해약물 유통업자 ⁶⁾	여가부
		- 흡연 유도 담배 마케팅 규제 강화	③ 제7조	소매인 대국민	복지부
	2-1-2. 유해약물 사업 관련자, 판매업소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 유해약물 판매업소 종사자 대상 계도단속	④ 제28조	주류·담배 판매업소	경찰청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계도 및 감시활동 강화	④ 제5조, 제48조	청소년 유해업소 ⁶⁾	여가부
		-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술담배 판매업소 ⁷⁾	
		- 유해약물 판매업소 종사자 대상 단속활동 강화	④ 제28조	업소 ⁸⁾	
2-2. 유해약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	2-2-1. 유해약물의 청소년 대상 노출 및 확산 차단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및 모니터링 활동 시 신분증 확인 생활화 계도캠페인	④ 제5조, 제48조	업소/협회 업주 일반국민	여가부
		- 금연구역 운영관리 강화	③ 제9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대국민 공공시설	복지부
		- 주류광고 제한 매체를 신종매체로 확대 ⁹⁾	③ 제7조, 제8조	대국민	복지부
	2-2-2. 유해약물 예방교육 확대 강화	-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① 제9조	초·중·고 재학생	교육부
		-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② 제51조의 2	미취학 초·중·고 재학생	삭약처 ³⁾
		-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	② 제2조의2	대국민	삭약처
		- 음주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③ 제8조, 제25조	아동 청소년	복지부 ⁴⁾
		- 흡연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 흡연 유해성 홍보 및 캠페인	③ 제25조	대국민	복지부
		- 음주 유해성 홍보 및 캠페인			
		- 위기청소년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④ 제5조, 제34조	위기 청소년	여가부
		- 교원대상 원격연수과정 운영 ⁹⁾	-	초·중·고 교원	교육부
		- 교사의 유해약물 예방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② 제51조의 2	교직원 1,200명	삭약처
2-3. 유해약물 중독청소년 발굴 및 중독치료 지원체계 구축	2-3-1. 청소년의 유해약물 중독 진단 및 치료지원 연계 강화	- 청소년 유해약물 중독진단 및 치료지원 연계 강화	⑤ 제13조	아동 청소년	복지부
	2-3-2. 공공·민간 전문기관의 유해약물 치료재활 기능 및 역할 확대	- 유해약물 중독청소년 치료재활 지원 강화 및 마약류범칙 예방교육 실시	② 동법 시행령	청소년 마약류 사범 중·고생	대검찰청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학교보건법,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③ 국민건강증진법, ④ 청소년 보호법, ⑤ 정신보건법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3) 마약퇴치운동본부 4) 국가금연지원센터 및 사업수행자,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5) 흡연음주 등 예방교육 담당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7) 청소년보호연맹, 녹색소비자 연대 8) 편의점,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주류 판매점, 가판대 등

9) 현행 주류광제 제한 매체는 도시철도역, TV, 라디오에 한함.

법 제2조 제4항 나목)을 포함한다.

(3)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한 총 5종이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3조의 4⁶⁶⁾,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를 근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단체의 산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및 지장관리, 청소년출입금지업소 감시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을 근거로 산·변종 유해업소 및 불법 풍속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 「학교보건법」 제6조, 제6조의 3을 근거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경찰청, 2016년도에 법률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해당 조항이 삭제된 만큼 근거법령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을 근거로 모범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자율규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제2조 제5항(청소년유해업소)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모두 금지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다만 “이들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동법 제2조 5항).” 따라서 영업행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한 상시 확인과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만큼, 유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과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의 4를 근거로 한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6)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의 4).”

표 III-5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3-1. 산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3-1-1. 산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도단속 강화	- 산변종 유해업소 단속수사 역량강화교육	① 제29조, ② 제4조, ③ 제3조	풍속·범	경찰청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산변종 유해업소 모니터링 강화	① 제5조, 제48조	업소	여가부
		- 산변종 업소에 대한 청소년유해업소 신속 지정관리	① 제5조	업소	여가부
		-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	① 제28조, 제29조, ③ 제3조	불법 풍속업소	경찰청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유해업소 등에 대한 점검단속 확대	① 제33조 4항	업소 및 청소년	여가부
	3-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비	- 불법 풍속업소 단속	① 제29조, ③ 제3조	풍속영업업소	경찰청
		-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단속	④ 제6조, ① 제29조	구역 내 풍속업소	
		- 관계부처 합동 학교주변 유해시설 집중단속	④ 제6조 3항 시행령 제8조	유초등교정화구역	교육부
3-2. 유해업소 자율규제 및 관계기관·민간 협력 활성화	3-2-1.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자율규제 활성화	- 청소년출입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활동 강화	① 제5조, 제48조	청소년 출입금지 출입제한 업소	여가부
		- 청소년출입금지출입제한업소 종사자 대상 청소년보호 법제도 교육	① 제29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경찰청
		- 모방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인터넷·부여	⑤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업소 ³⁾	문체부
	3-2-2. 중앙지자체·경찰 등 관계기관과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	- 관계기관·단체 합동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단속	① 제29조	청소년 출입고용 업소	경찰청
		- 관계기관 및 민간협력을 통한 산변종 유해업소 실태조사 실시	① 제5조, 제48조	산변종 유해업소	여가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시민단체의 청소년 유해업소 모니터링 활동 강화		청소년 일반국민	여가부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④ 학교보건법,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등

(4)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유해행위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유해행위 가운데 폭력(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사업과 근거 법령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법률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항,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

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근거로 친족에 의한 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의 격리·보호 설치, 사건 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를 근거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수형자) 대상 재범방지 및 전문치료 프로그램 개발·적용,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의료비 지원)를 근거로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7조(가해청소년에 대한 조치), 제20조의 2(긴급전화의 설치 등), “소년업무규칙” 제6조(범죄예방교육)를 근거로 청소년 경찰학교 등 폭력예방교육과 폭력가해 및 피해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 신고전화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폭력피해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12조(상담과 전화설치 등),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근거로 청소년상담서비스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39조(소년부송치), 동법 시행령 제8조(대상아동·청소년의 송치), 제9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를 근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대상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치료보호)를 근거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등 치료,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 등 가정폭력 관련시설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부착명령의 집행)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폭력·유해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동법 제2조 제7항), 매체물, 유해약물 등과 같이 관련 법률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표 III-6 청소년유해행위(폭력)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4-1. 폭력피해에 대한 법적보호 강화 및 성매매 신종 경로 차단	4-1-1. 친족에 의한 폭력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강화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적극 개최	①, ②	아동학대 행위자/피해아동	대검
		-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③ 제12조~18조	19세미만 성폭력 피해청소년	여가부
		- 피해자의 각자보호시설 설치운영	② 제52조 1항 4호, 53조의 2 ① 제12조 1항 3호	보호자 분리보호 피해아동	복지부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⑨ 제4조	시설	여가부
	4-1-2. 스마트폰 채팅앱 등 신종경로를 통한 성매매성폭력 단속적발	-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강화	⑪ 제21조, ⑫ 제44조의7	매체	방통위
		- 유관기관 모니터링 육성	⑧ 제17조, ⑫ 제44조의7	대국민	여가부
		- 성매매청소년 구조지원	⑧ 제13~15조, ⑭ 제4조	성매매범	경찰청
4-2. 폭력 예방교육 확대	4-2-1. 폭력 예방교육 내용 및 교육방법의 질적 제고	-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한 체험형 예방교육 실시	④ 제15조 ⑤ 제6조	학생 경찰청	복지부
		- 아동청소년 폭력학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⑦ 제22조	대국민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④ 제15조	일반국민	교육부
		-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주간 운영		초·중·고교	교육부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전문치료 프로그램 개발·적용	③ 제16조, ⑧ 제21, ⑩ 제29조의 2	수감명령 성범죄자	법무부
		- 교정시설 성폭력 수형자 재범방지 교육	③ 제6조, 시행령 제3조		
		- 성폭력 추방주간 운영	⑬ 제30조, 제31조, ③ 제5조, 제5조의2, ⑨ 제4조의3	대국민	여가부
	4-2-2. 폭력가해 피해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강화	④ 제17조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단위학교	경찰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활성화(여가부)	④ 제16조, 제18조		
		- 청소년 스스로 폭력양자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자활활동 지원 강화	④ 제4조	초·중·고 재학생	교육부 ³⁾
		- 명예경찰소년단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교원 육성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초4~6 중1~2 희망자	경찰청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② 아동복지법,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⑤ 소년업무규칙, ⑥ 청소년복지지원법, ⑦ 아동복지법, 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⑪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⑫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⑬ 양성평등기본법, 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3) 여가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포함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지자체 및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포함

6) 직접수혜자는 검찰 및 경찰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법원에서 수감명령을 부과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아웃리치 또는 사이버 포래상담실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이며, 간접수혜자는 가출청소년 및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말함.

표 III-7 청소년유해행위(폭력)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계속)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4-3. 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지원 강화	4-3-1. 폭력피해자 조기발견 및 대응강화	- 117신고전화 및 117 CHAT 인지도 제고	④ 제20조의 2	초·중·고 재학생	경찰청
		- 청소년상담서비스(청소년전화 1388, 모바일문자상담, 사이버상담)	⑥ 제9조, 제12조, 제29조	위기 청소년	여가부
		- 지역사회민간자원 자발적 조직 1388자원단 운영 활성화			
		- 가정폭력·이동학대·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조기발견 체계 강화	④ 제20조의 2	학교폭력 가피해 청소년	여가부 ⁴⁾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시군구 단위 구축 확대 및 성별·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⑥ 제9조, 제12조, 제29조	위기 청소년	여가부 ⁶⁾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③ 제18조	성폭력 피해자/가족	여가부
	4-3-2. 폭력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생활 복귀지원 강화	- 117 상담사 연수	④ 제20조의2, 시행령 제30조	신고센터 상담사	교육부
		- 이동학대 조기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이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⑦ 제45조	18세미만 피해자 ⁵⁾	복지부
		- 학대피해 이동청소년 상담지원·의료지원 기관 협력		아보전	
		-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⑧ 제38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작간접수혜자 ⁶⁾	여가부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③ 제27조, 제28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여가부 경찰청
		- 성폭력·이동학대통합지원센터 배치 경찰관 전문성 강화	③ 제18조		
		- 이동청소년 폭력피해자 지원강화(치료회복/의료비)	⑨ 제18조	가정폭력 피해자/동반자녀	여가부
		- 이동 자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가족기능 회복 교육)	① 제8조, 제36조	수감명령 이동학대 대상자	법무부
		- 이동 자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동학대 재발생 고위험 수형자 가족기능 회복 교육)	① 제8조, 제36조	이동학대 치료명령 수형자	법무부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이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아동복지법,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⑤ 소년업무규칙, ⑥ 청소년복지지원법, ⑦ 아동복지법, ⑧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3) 여가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포함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지자체 및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포함

6) 직접수혜자는 검찰 및 경찰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법원에서 수감명령을 부과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아웃리치 또는 사이버 포래상담실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이며, 간접수혜자는 가출청소년 및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말함.

(5) 청소년 근로권익

청소년의 근로권익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사업과 근거 법령을 보면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를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근로권익 보호 캠페인, 근로실태 점검, 유해환경감시단의 근로권익 홍보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권익교육과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행위 피해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제17조(근로조건에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67조(근로계약)에 따라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합동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은 부재하다. 최근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가 청소년의 주요 구직경로로 활용되고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6항과 연계하여 구직 청소년에게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내 권익보호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III-8 청소년유해행위(근로권익) 관련 사업 및 근거법 현황 분석

중점과제 ²⁾	세부추진과제 ²⁾	사업내용 ²⁾	근거 법령 ¹⁾	대상 체계 ²⁾	담당 ²⁾
5-1.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대응 강화	5-1-1.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 근로계약서 부당사안서 작성 근로감독 - 최저임금 준수 위반 사업장 집중감독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여가부)	② 제6조, 제17조, 제43조, 제66조, 제67조	사업장	노동부
	5-1-2. 청소년고용업소의 자율적 근로권익보호 활성화	- 청소년 고용업소 자율규제 활성화 -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모니터링/조사 - 민관공동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캠페인 - 근로권익 교육방식 및 내용 개선 - 청소년 근로보호 캠페인(여가부)	- - ① 제8조	사업주/협회 사업장 청소년 사업주 등	
5-2.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 인식 제고	5-2-1.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 확대 및 교육방식의 질적 제고	- 기간 간 합업을 통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확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체 간 사이트 연계	-	청소년/취업알선 사이트	노동부
		- 학교 밖 청소년 근로보호 권익교육	① 제8조, 제8조의 2	학교밖 청소년 센터 입소자	여가부
		-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용 리플렛 배포	-	청소년	여가부
		- 2015 개정교육과정 후속지원 사업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초중고교	교육부
5-3. 근로권익 피해구제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5-3-1. 부당행위 피해청소년 원스톱 지원 및 청소년 일자리 제공	-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지원 - 특수고용형태로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산업안전 보호 강화 - 청소년근로실태 점검	① 제8조, 제8조의 2	아르바이트 청소년	경찰청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청소년 고용업소	여가부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청소년	노동부
	5-3-2.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신고센터 기능 강화	-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사례 발생 시 신고할 상황을 위한 홍보 강화	-	청소년	여가부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근로권익 홍보	① 제8조, 제8조의 2	청소년	여가부
		- 지역별 노동권서 중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협업체 구성운영	-	청소년 사업주	노동부
		- 청소년 근로권익신고 및 피해상담구제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	

* 출처: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함.

* 주: 1) ① 청소년 기본법, ② 근로기준법
2) 2015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기준임.

2) 청소년보호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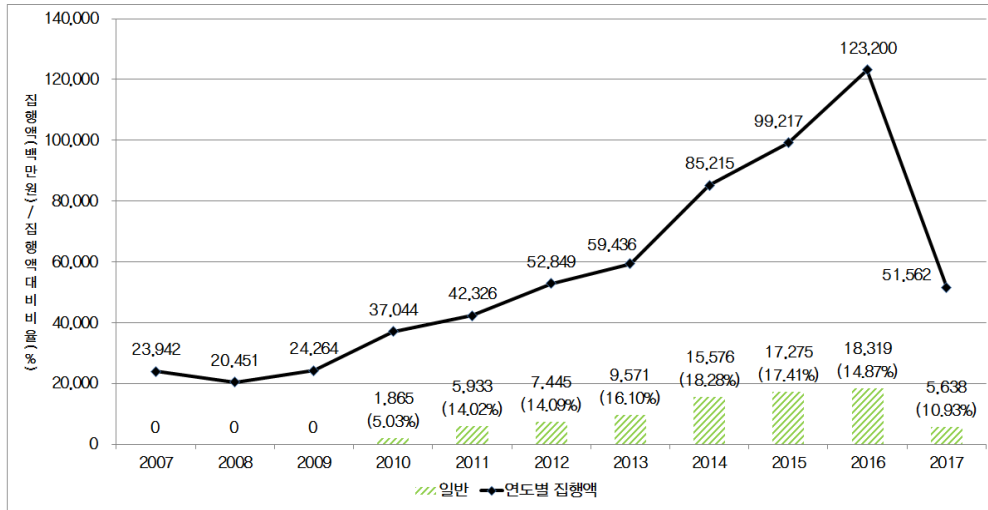
주무부처의 청소년보호 관련 예산 규모와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사업 관련 예산(집행액)을 분석하였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점진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2016년도 집행액은 약 1천 2백 억 원, 2017년 4월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약 500억 원 정도이다. 다만 여기에는 청소년보호정책 5대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대 및 폭력예방, 성보호, 피해청소년

시설보호 및 복지지원 등의 세부사업 예산 집행액도 선별적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복지 등 관련 사업의 예산 집행액이 일부 포함된 결과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정책 사업예산은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집행되는데, 매년 청소년육성기금에 의한 예산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회계에 의한 예산비중은 2011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청소년육성기금에 의한 예산비중은 2012년에 약 8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6년에는 전체 집행예산의 약 5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13년에 4.98% 수준에 불과하던 양성평등기금에 의한 예산비중은 2016년 현재 약 29%로 다섯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III-2], [그림 III-3], [그림 III-4]).

일반회계에 의해 추진된 여성가족부의 각 연도별 청소년보호사업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17~10),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17,16,13),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16~10),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16), 청소년폭력 및 가출예방(15 ~13), 아동·여성인권관련 통합교육(13,1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 활성화(13,12), 성매매 실태조사(13), 청소년 자립지원 및 가출예방(12,11), 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11),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10), 성범죄자 정보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10),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10), 청소년 폭력 및 가출예방(10) 등을 포함한다([그림 III-2]).

일반회계는 기금과 달리 조세를 기반으로 한 재정예산으로, 국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반활동 및 고유사업의 재원이 된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보호사업과 관련한 일반회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해매체환경 감시 등 단속과 모니터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보호정책의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발달·성장·보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 개발’, ‘가정·학교·지역사회·사이버 공간의 유해환경 개선 및 유익환경 조성’, ‘청소년의 안전보장을 위한 피해예방 및 회복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일반회계에 의한 예산사업으로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 자료: 여성가족부(각년도), 예산자료(내부자료) 분석함.

* 주: 1) 각 년도 집행액이며, 2017년은 4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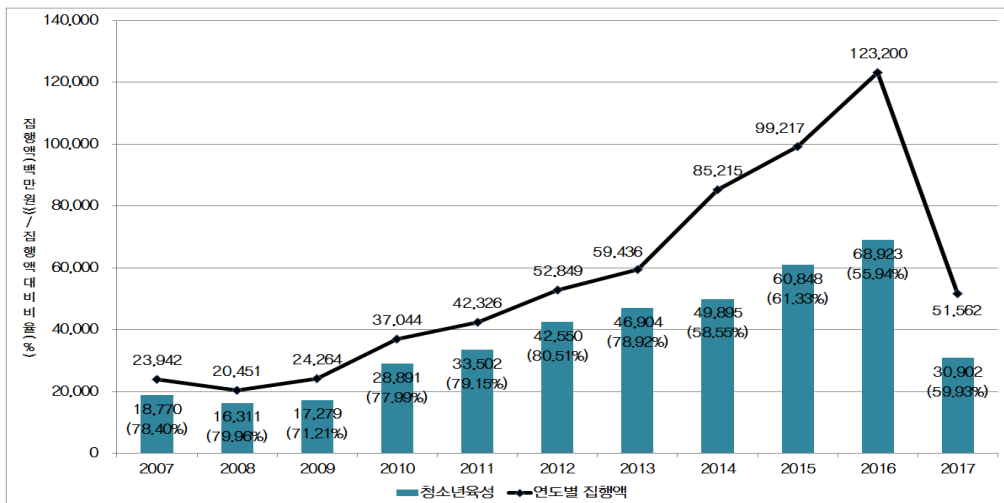
2) 각 년도 집행액은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가출, 폭력, 성보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등 포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등 여성·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 등 보호,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임.

【그림 III-2】 청소년보호사업(일반회계) 예산 추이

다음으로 청소년육성기금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을 보면, 상당수의 청소년보호·복지사업이 육성기금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17~'11), 청소년쉼터 운영지원('17~'07),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17~'10),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17~'09),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17,'16),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15~'13),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운영('15~'09),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12~'07),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10),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09~'07), 위기청소년 지원기반 조성('09~'07), 청소년야학 운영지원('09), 청소년특별지원('09,'08), 아동·청소년 치료재활 전문센터 설치('09,'08), 어려운 청소년 지원('08,'07), 매체물 피해예방 및 재활지원('08,'07), 청소년 매체활용능력 제고('08),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설치운영('08,'07),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공모('08,'07),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07),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07), 청소년 건전사이버 활동지원('07), 사이버윤리 확립('07) 등이다.

각 연도별 사업은 세부사업명의 단순변경 등으로 통폐합된 경우는 다수 발견되나, 청소년보호

정책의 기초 변화에 따라 육성기금에 의해 추진되던 보호사업이 일반회계로 변경 추진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해소, 치료재활센터 운영 및 매체물 피해예방과 재활지원과 같은 중요필수사업이 육성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전향적 추진이 가능한 여건인지를 점검하고 재원확보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보호대책부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가 청소년보호정책 5대 영역에 포함된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사업의 틈새를 발굴·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관심,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공모’, ‘지역사회 모니터링단(또는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자율정화사업 지원’ 등의 신규 사업 개발과 예산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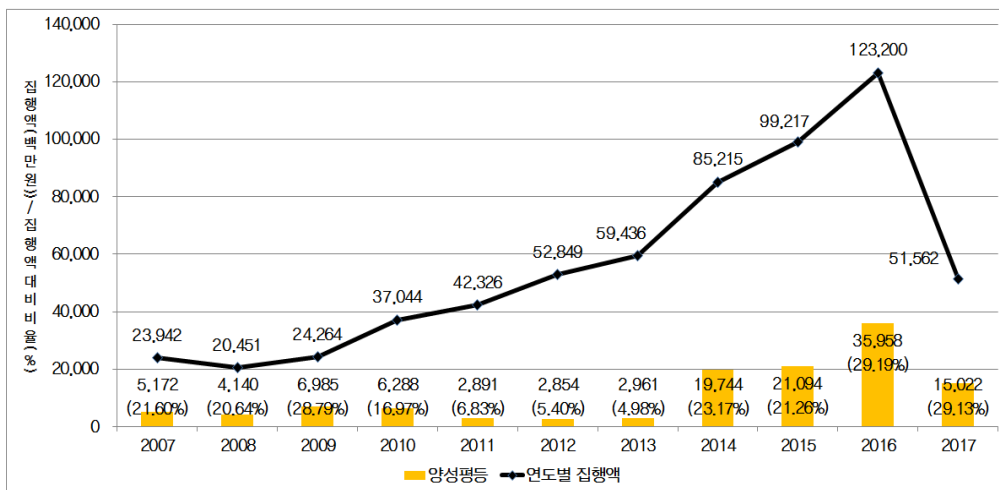
* 자료: 여성가족부(각년도). 예산자료(내부자료) 분석함.

* 주: 1) 각 년도 집행액이며, 2017년은 4월 기준임.

2) 각 년도 집행액은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가출, 폭력, 성보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등 포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등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 등 보호,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임.

【그림 III-3】 청소년보호사업(청소년육성기금) 예산 추이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에 의해 추진되는 각 연도별 청소년보호사업을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17~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17,16),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17~1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17~1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14,09),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11~07) 등이 포함된다. 2007년 이후 양성평등기금에 의한 청소년보호 사업 예산의 비중은 전체 집행액 대비 최소 4.98%(13)에서 최대 29.19%(16)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를 근거로 성 평등, 여성 관련시설 설치·지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된다.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을 특화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체 청소년보호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어플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성매매·성폭력 유입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성보호와 피해예방, 회복지원을 포함한 복지지원 등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료: 여성가족부(각년도), 예산자료(내부자료)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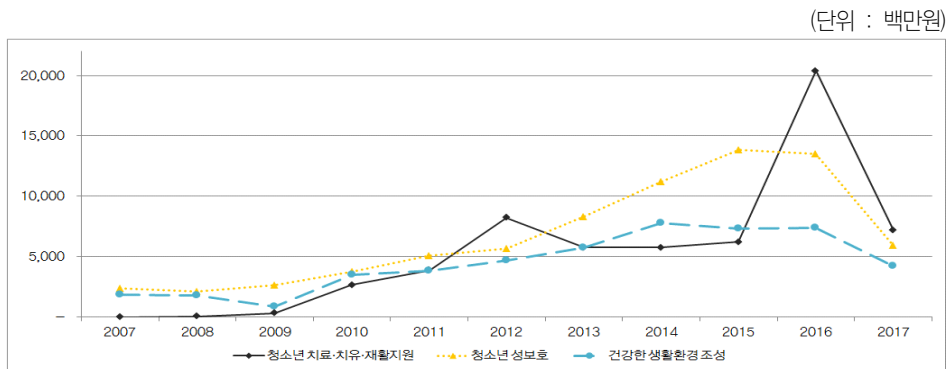
* 주: 1) 각 연도 집행액이며, 2017년은 4월 기준임.

2) 각 연도 집행액은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가출, 폭력, 성보호,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등 포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등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 해소 등 보호, 복지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임.

【그림 III-4】 청소년보호사업(양성평등기금) 예산 추이

한편, 청소년보호 관련 예산을 ‘청소년 치료·치유·재활지원’, ‘청소년 성보호’,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예산 집행액의 추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세 영역 모두 사업예산 집행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치료·치유·재활지원’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예산이 2015년 1,102백만 원에서 2016년에 5,666백만 원 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보호’ 관련 사업예산은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에 소폭 감액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관련 사업예산은 2014년 정점으로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유해환경에 따른 피해청소년에 대한 사후적 치료지원예산은 각 연도별로 예산 비중도 높을 뿐 아니라 매년 증액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건전사이버 활동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등 사전적인 피해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각 연도별 보호사업 내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이러한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매년 투입되는 예산 총액의 증액 폭 역시 크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그림 III-5]).



* 자료: 여성가족부(각년도), 예산자료(내부자료) 분석함.

- * 주: 1) 청소년 치료·치유·재활지원에는 위기청소년 치료재활 지원센터 건립지원, 아동청소년 치료재활 전문센터 설치, 국립중앙아동청소년 치료센터 건립,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포함(각 년도).
 2) 청소년 성보호에는 건전 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성범죄청소년 치료재활, 청소년성문화 센터설치·운영, 성범죄자 교육 및 홍보, 성범죄자정보등록, 열람 및 취업제한, 성희롱예방체계강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사업 포함(각 년도).
 3)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에는 매체물 피해예방 및 재활지원, 청소년 보호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 건전사이버 활동지원, 사이버윤리 확립, 청소년 매체활용능력 제고,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특별점검 평가 및 단속, 청소년 폭력 및 가출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포함(각 년도).
 4) 각 연도별 집행액 기준이며, 2017년은 4월 기준임.

【그림 III-5】 청소년보호 영역별 사업예산 추이

3. 정책영역 : 주요사업 및 전달체계

1) 환경체계 및 정책유형별 현황⁶⁷⁾

청소년보호사업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체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종합대책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석하였다(여성가족부, 2016a; 여성가족부, 2016b; 여성가족부, 2016c). 이를 위해 환경체계를 청소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이버공간 등 일곱 개로 구분한 후 보호사업 각각의 주요 개입대상, 현장, 운영주체를 고려하여 어떤 환경체계를 초점대상으로 하는지 구분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총 139개 과제 가운데 청소년을 직접대상으로 한 과제가 41개(2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34개(24.5%)로 많았고, 사이버공간 21개(15.1%), 중앙정부 15개(10.8%), 학교 14개(10.0%), 지방정부와 가족이 각각 7개(5.0%) 순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총 12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영역은 폭력·학대 등 유해행위 관련 사업이 가장 많았고(16개), 근로보호와 유해매체 관련 사업이 각각 9개, 유해약물 관련 사업이 7개로 파악된다.

가족, 학교 등 미시환경을 대상으로 한 개입 현황을 보면, 가족의 경우 유해행위(5개)와 관련된 사업, 학교는 유해매체 관련 교육사업(10개)에 다소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규제가 가장 많았고(13개), 그 다음은 청소년 근로보호(8개) 사업이 많았다.

지방정부가 사업주체가 되는 등 주요 대상인 사업은 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포함한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업은 전무하였다. 중앙정부가 사업주체인 사업은 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유해행위(7개), 유해약물(6개) 관련 사업을 주로 추진하였고,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7개 중앙행정기관에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유해매체(19개) 관련 사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표 III-9>). 2015년도 시행계획 분석 결과(김지경 외, 2015, pp.36~38) 지역사회 대상 사업이 8개, 사이버공간 관련 사업이 4개임을 감안하면 2016년도 시행계획서

67) 이 부분은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석한 김지경·최인재(2015, pp.36~41)의 분석틀을 준용하여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근거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여성가족부 2016a, 여성가족부 2016b, 여성가족부 2016c)을 분석한 것이다.

지역사회 대상 사업이 34개, 사이버공간 관련 사업이 21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지경 외(2015)의 분석들은 청소년을 제외한 여섯 개 환경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사업(과제) 분류 시 연구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영역이 구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III-9 중앙행정기관 추진과제(2016년)

구분	청소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사이버공간
과제	41개	7개	14개	34개	7개	15개	21개
주요 분야	1.매체물(9) 2.유해약물(7) 3.유해업소(0) 4.유해행위(16) 5.근로보호(9)	1.매체물(1) 2.유해약물(1) 3.유해업소(0) 4.유해행위(5) 5.근로보호(0)	1.매체물(10) 2.유해약물(1) 3.유해업소(0) 4.유해행위(2) 5.근로보호(1)	1.매체물(1) 2.유해약물(6) 3.유해업소(13) 4.유해행위(6) 5.근로보호(8)	1.매체물(3) 2.유해약물(0) 3.유해업소(1) 4.유해행위(1) 5.근로보호(2)	1.매체물(1) 2.유해약물(6) 3.유해업소(0) 4.유해행위(7) 5.근로보호(1)	1.매체물(19) 2.유해약물(0) 3.유해업소(0) 4.유해행위(1) 5.근로보호(1)
담당 부처	(12개) · 경찰청 · 여성가족부 · 미래부 · 문체부 · 방통위 · 대검찰청 · 경찰청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식약처 · 법무부 · 고용노동부	(3개) · 미래부 · 여성가족부 · 법무부	(5개) · 문체부 · 방통위 · 미래부 · 교육부 · 식품처	(6개) · 문체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교육부 · 법무부 · 고용노동부	(5개) · 행정자치부 · 문체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6개) · 방통위 · 보건복지부 · 식약처 · 여성가족부 · 교육부 · 고용노동부	(7개) · 방통위 · 여성가족부 · 경찰청 · 문체부 · 미래부 · 경찰청 · 고용노동부

* 주: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며, 김지경 외(2015, pp.36~41)의 분석들을 준용함.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총 212개 과제 가운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132개로 가장 많았고(62.3%), 그 다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37개(17.5%), 지방정부가 운영주체가 되어 청소년과 다양한 환경체계에 개입하는 사업이 14개(6.6%), 학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각 12개(5.7%), 11개(5.2%),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6개(2.8%) 순이었다(<표 III-10>). 반면 김지경 외(2015, pp.38~39)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 지역사회 및 학교, 가족, 사이버공간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표 III-10 지방정부 추진과제(2016년)

구분	청소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지방정부	사이버공간
과제	37개	11개	12개	132개	14개	6개
정책영역	1.매체물(16) 2.유해약물(7) 3.유해업소(1) 4.유해행위(3) 5.근로보호(10)	1.매체물(2) 2.유해약물(0) 3.유해업소(0) 4.유해행위(9) 5.근로보호(0)	1.매체물(2) 2.유해약물(0) 3.유해업소(3) 4.유해행위(5) 5.근로보호(2)	1.매체물(8) 2.유해약물(46) 3.유해업소(59) 4.유해행위(4) 5.근로보호(15)	1.매체물(0) 2.유해약물(7) 3.유해업소(5) 4.유해행위(1) 5.근로보호(1)	1.매체물(2) 2.유해약물(1) 3.유해업소(0) 4.유해행위(3) 5.근로보호(0)
지자체	(11개) · 서울시 · 부산시 · 광주시 · 대전시 · 세종시 · 충청남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3개) · 광주시 · 충청남도 · 경상남도	(8개) · 광주시 · 대전시 · 대구시 · 세종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경상남도 · 제주도	(17개) · 17개 시·도	(10개) · 서울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5개)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광주시 · 충청남도

* 자료: 여성가족부(2016b, 2016c)의 내용을 분석이며, 김지경 외(2015, pp.36~41)의 분석틀을 준용함.

한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소년보호사업이 정책유형별로 어떤 비중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정책유형을 모니터링·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인식제고, 피해구제·사후관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5대 정책영역 내 사업이 어떤 정책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139개 과제 가운데 모니터링·제도개선 사업이 60개(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응능력 함양인식제고 관련 사업이 51개(36.7%), 피해구제·사후관리 사업이 28개(20.1%) 순이었다. 모니터링·제도개선의 경우 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매체물 영역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유해행위 영역 내 사업이 7개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응능력 함양인식제고는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해행위 영역 내 사업이 가장 많고, 유해업소 관련사업은 전무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구제·사후관리 역시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해행위 영역 내 사업이 가장 많고, 유해업소(0개)와 근로보호(1개) 관련 영역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III-11>).

지방정부의 경우, 총 212개 과제 가운데 모니터랑·제도개선 사업이 122개(57.5%)로 가장 많고, 대응능력 함양인식제고 관련 사업이 61개(28.8%), 피해구제·사후관리 관련 사업이 29개(13.7%) 순이었다. 모니터랑·제도개선 관련 사업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추진되고 있고 특히 유해업소(58개), 유해약물(52개) 영역 내 사업이 가장 많았다. 대응능력 함양인식제고 관련 사업은 14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근로보호(16개), 유해행위(14개), 유해업소(10개) 등의 정책영역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구제·사후관리의 경우 10개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매체물(12개), 근로보호(11개) 정책영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유해약물 및 유해업소 관련 정책영역에서는 관련 사업이 부재하였다(<표 III-12>).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정책유형 가운데 모니터랑·제도개선 관련 사업이 가장 많고, 피해구제·사후관리 관련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모니터랑·제도개선은 주로 매체물에, 지방정부의 경우 유해약물과 유해업소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차별화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해업소에 따른 청소년의 피해구제·사후관리 관련 사업이 전무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능력 함양인식제고 관련 사업이 부재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및 인력 등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2016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수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III-11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보호사업(정책유형별)

구분	모니터링, 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 인식제고	피해구제, 사후관리
과제	60개	51개	28개
정책 영역	1.매체물(20) 2.유해약물(9) 3.유해업소(14) 4.유해행위(7) 5.근로보호(10)	1.매체물(18) 2.유해약물(9) 3.유해업소(0) 4.유해행위(13) 5.근로보호(11)	1.매체물(7) 2.유해약물(3) 3.유해업소(0) 4.유해행위(17) 5.근로보호(1)
부처수	8개	9개	9개
부처 사업수	· 여성가족부(22개) · 교육부(2개) · 행정자치부(2개) · 문화체육관광부(8개) · 보건복지부(4개) · 고용노동부(7개) · 경찰청(8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7개)	· 여성가족부(11개) · 미래창조과학부(5개) · 교육부(10개) · 문화체육관광부(3개) · 보건복지부(5개) · 고용노동부(5개) · 경찰청(3개) · 식품의약품안전처(3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6개)	· 여성가족부(10개) · 미래부(1개) · 교육부(1개) · 법무부(5개) · 문화체육관광부(2개) · 보건복지부(5개) · 고용노동부(1개) · 대검찰청(2개) · 경찰청(1개)

* 자료: 여성가족부(2016a)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며, 김지경 외(pp.36~41)의 분석틀을 준용함.

표 III-12 지방정부 청소년보호사업(정책유형별)

구분	모니터링, 제도개선	대응능력 함양, 인식제고	피해구제, 사후관리
과제	122개	61개	29개
정책 영역	1.매체물(6) 2.유해약물(52) 3.유해업소(58) 4.유해행위(5) 5.근로보호(1)	1.매체물(12) 2.유해약물(9) 3.유해업소(10) 4.유해행위(14) 5.근로보호(16)	1.매체물(12) 2.유해약물(0) 3.유해업소(0) 4.유해행위(6) 5.근로보호(11)
지자체수	17개	14개	10개
지자체 사업수	· 17개 시도	· 부산시(4개) · 대구시(1개) · 광주시(6개) · 대전시(6개) · 울산시(2개) · 세종시(2개) · 경기도(1개) · 강원도(2개) · 충청남도(8개) · 전라북도(3개) · 전라남도(3개) · 경상북도(8개) · 경상남도(10개) · 제주도(3개)	· 서울시(3개) · 대구시(1개) · 인천시(1개) · 광주시(9개) · 울산시(1개) · 강원도(1개) · 충청남도(3개) · 경상북도(1개) · 경상남도(5개) · 제주도(2개)

* 자료: 여성가족부(2016b, 2016c)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며, 김지경 외(pp.36~41)의 분석틀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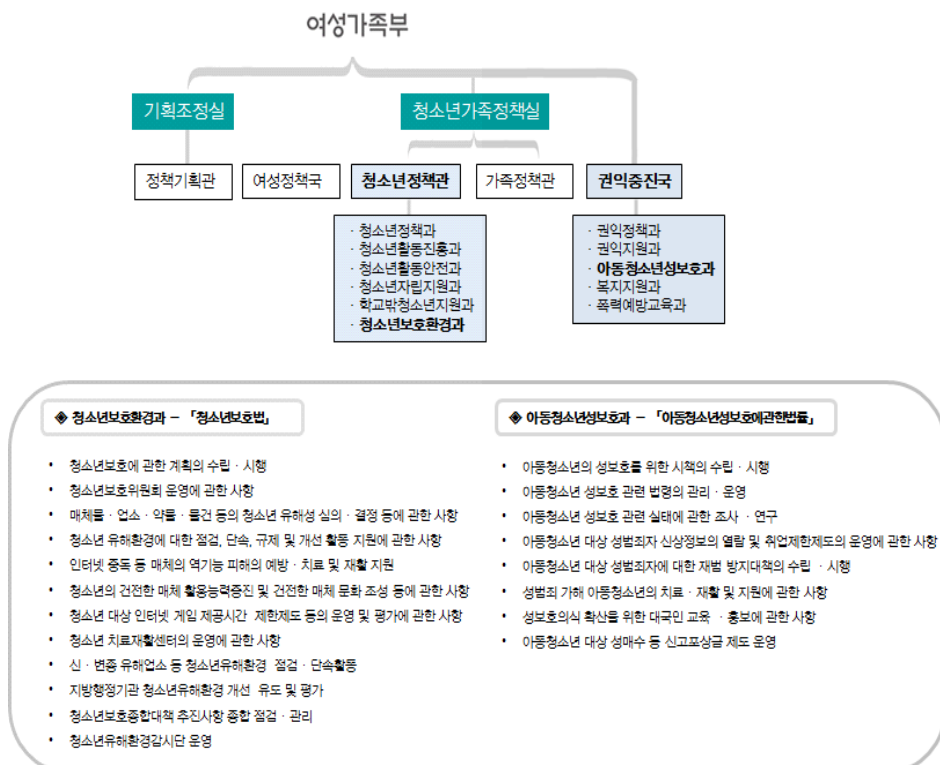
한편, 김지경 외(2015, pp.39~41)는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분석함에 있어 정책수단을 ‘규제’, ‘교육·홍보·예방’, ‘사후관리’로 구분하였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교육·홍보·예방’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의 경우 규제 뿐 아니라 예방의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도 시행계획에서도 예방 관련 사업 비중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도 시행계획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후관리 관련 사업은 각각 9개, 6개에 불과하였으나(김지경 외, pp.39~41), 2016년에는 각각 28개, 29개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정책 및 사업추진체계⁶⁸⁾

먼저 정책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청소년보호정책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청소년가족정책

68) 현행 청소년보호 전달체계 및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는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실(청소년정책관) 내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등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청소년 성보호 관련 업무는 권익증진국 내 아동청소년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 환경과는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 매체·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유해매체 피해의 예방·치료·재활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 단 운영 등의 주요사업을 시행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성보호 관련 시책 수립·시행, 실태조사,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지원,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그림 III-6]). 다만 학교폭력과 같은 유해행위에 대한 담당부서가 다소 모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행위는 학교 밖 청소년과,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등으로 사안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원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랜덤채팅’으로 인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아동청소년성 보호과와 청소년보호환경과의 공조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조직도 일부 수정.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인출일: 2017.6.21.)

[그림 III-6]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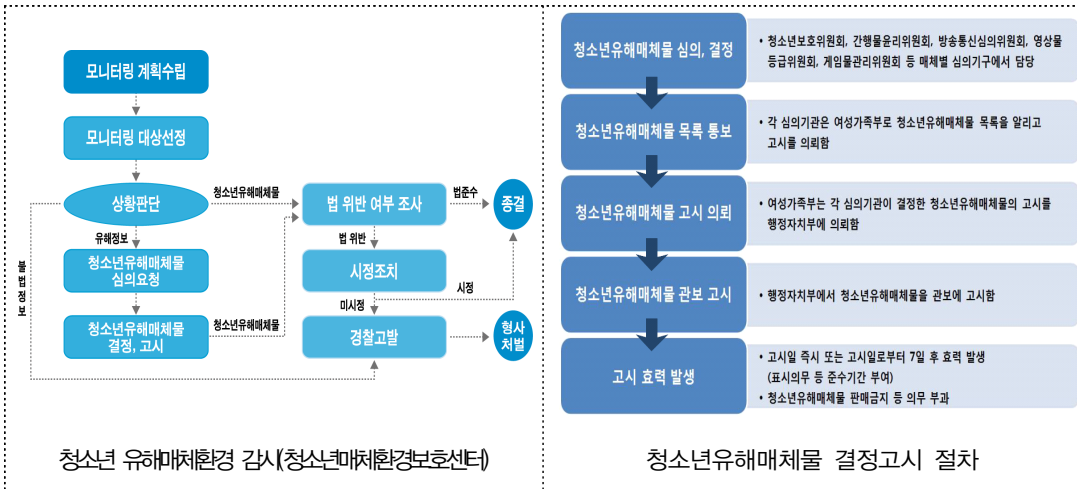
다음으로 주요 청소년보호사업의 추진체계를 온오프라인의 청소년유해환경 점검·감사·단속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온라인 상 청소년유해매체 감시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및 유해음반 심의 등이 대표적이다.⁶⁹⁾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며⁷⁰⁾ 「청소년 보호법」 제5조부터 제27조를 근거로 인터넷, 게임, 음반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유해매체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피해예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설치되었다. 모니터링 요원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거나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요청을 하게 된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종결 또는 시정조치 요청과 경찰고발이 이루어진다 ([그림 III-7]). 특히 청소년의 모바일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사이트 뿐 아니라 모바일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 현황 점검, 유튜브(YouTube) 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음악 및 성인용품판매사이트 홍보물에 심의·차단 요청, 온라인쇼핑몰의 청소년보호 담당자 대상 교육 등의 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2016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확인제도 이행여부 점검에 따른 이행률은 95.4%,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이행률은 99.1% 수준을 보인다. 이 외 총 6,332개 인터넷신문사이트 중 31개 사이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고 불법인터넷게임물(1,972건), 홍보커뮤니티(662건), 게임아이템거래 게시글(1,703건)에 대한 차단, 심의·차단요청 총 827건, 자율규제 요청 총 19,262건 등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17b, pp.210-211). 다만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터넷방송, 팟캐스트, 웹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는 「청소년 보호법」 제7조, 제9조, 제21조를 근거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각 매체별 심의기구에서 담당한다. 각 심의기관에서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을 알리고 고시를 의뢰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음반·음악파일의 매체물에 대해서만 심의하며, 여성가족부는 타 심의기관에서 통보받은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관보 고시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6년도의 경우 청소년보호위원

69) 그간 청소년유해매체 감시활동에 따른 성과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08.12),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09.02), 키스방 등 광고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10.11),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셋다운제) 도입(11.11),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본인확인인무 도입(12.09) 등이 대표적이다(여성가족부, 2017b).

70) 2017년 9월 현재 부서장(센터장, 겸직) 포함 15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회에서 총 804건 심의결정, 타 심의기관(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정 사항 총 9,071건에 대한 관보 고시 의뢰가 이루어졌다(여성가족부, 2017b, pp.214-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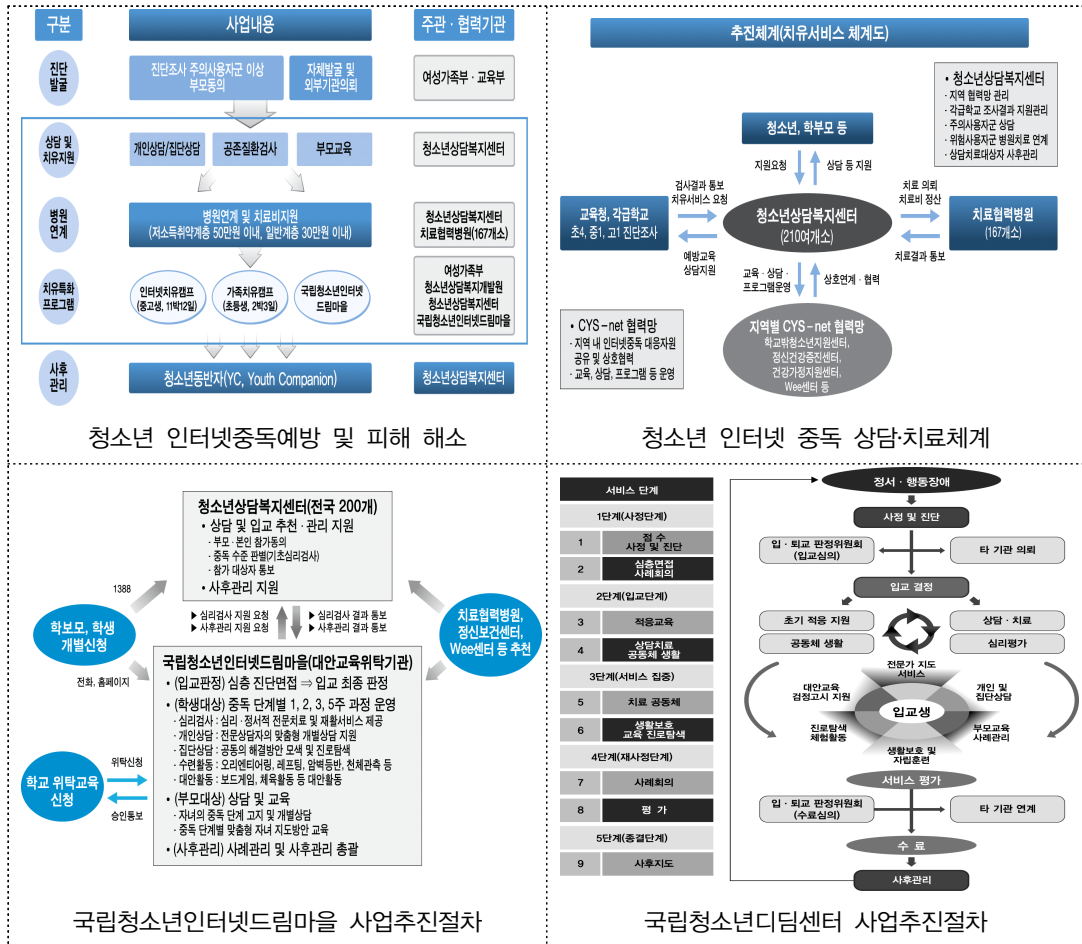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 2017b, p.209, p.215.

【그림 III-7】 청소년유해매체 감시 및 결정고시 절차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피해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초4, 중1, 고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라 중독 위험수준별 개인·집단상담과 치유헤프프로그램(인터넷치유헤프, 가족치유헤프), 치료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설 치유헤프프로그램(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이용하거나 센터에 배치된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후관리로 모니터링, 청소년동반자(YC) 및 멘토 지원, 사후모임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2017년 현재 청소년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는 2013년 하반기부터 배치가 이루어졌고 2017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 센터에 총 31명이 배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b, p.204).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및 제32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를 근거로 2012년에 개원하였으며 2016년부터 5년 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4박 5일, 1개월, 4개월 등 맞춤형 치유헤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숙박형 시설로, 가정자원이 취약한 경우 가정에 주 1회, 총 10회 정도 ‘패밀리 멘토’가 방문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⁷¹⁾



* 출처: 여성가족부, 2017b, p.195, p.199, p.202, p.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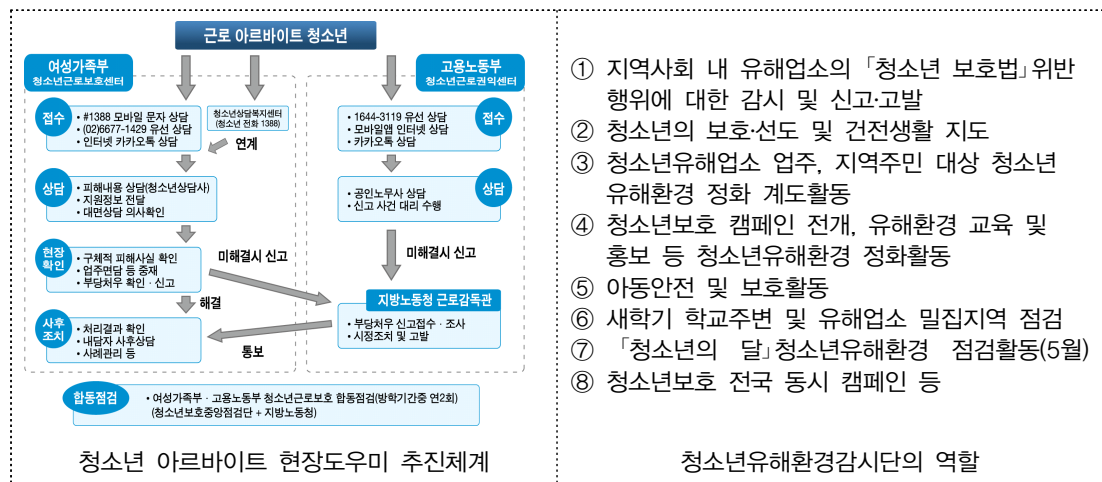
【그림 III-8】 인터넷·스마트 중독예방·해소 및 정서·행동문제 사업추진체계

마지막으로 근로보호와 관련하여 2014년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이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폰 문자상담(#1388)과 현장도우미를 통해 근로권의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첩(고용관련 서류, 사업자 준수사항 등) 배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도우미 서비스 이후 청소년의 근로상담 및 지원건수는 2014년 15,755건에서 2016년에 16,794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에

71) 2016년에는 청소년 총 1,040명, 패밀리 멘토 총 20가정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청소년 1,055명, 35개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17b, p.196).

「청소년 기본법」개정 시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동법 제52조 제2항)’ 조항이 포함되면서 청소년 근로교육 및 홍보를 위한 근거가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를 근거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유해환경 정화개선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민간조직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전국에 273개 감시단에서 총 19,099명의 시민이 월 4~8회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감시단은 약 30~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b, p.193).⁷²⁾



* 출처: 여성가족부, 2017b, p.192

【그림 III-9】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추진체계(시범사업)

이상에서 언급한 청소년보호사업의 추진과정과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청소년정책의 연혁과 주요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포함하여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II-10]이다.

72) 감시단에는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YMCA, YWCA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며,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순찰감시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고발활동, 청소년 지도, 업주·지역주민 등 대국민 계도활동 등을 실시한다.

행정조직	계획	법령	주요개정내용	주요성과
'85. 2 ~ '88. 6 청소년대책위원회 (2차: 국무총리실)	'85 ~ '87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	'97 ~ '11 청소년보호법 제정	'99.2.5. 일부개정 · 청소년유해매체물뿐만 아니라 청소년유 해업소, 청소년유해악물 및 청소년유해행 위 등의 규제·처벌규정 신설, 개정 '01.5.24. 일부개정 ·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조정 (당해연도 중 만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 에서 제외함) '04.1.29. 일부개정 · 청소년유해매체 심의대상 확대 (특수일간신문 → 일반일간신문)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필요 경우 주민등 록증 등 증표 제시 요구·가부 시 출입 제한	'97년~ 청소년유해매체를 결정·고시 시행 '9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 정화활동사업 '05년~ (~'19) 출연청소년 대상 금연침묵무로수습사업,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 방 및 치료상담지원 '07년~ 집중치료를특화프로그램 운영 '08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물인터넷 일 심의, 성인화상제거 및 애인대행사이트 청 소년 유해매체를 지정 '10년~ 유아 대상 유해악물 조 기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카스방 등 광고를 청소년유해매 체 지정 '11년~ 인터넷게임간접이용 제도(선택문제) 도입 '12년~ 청소년유해매체를 제공자 대상 본인확인 의무 도입, 국립중앙 청소년대립센터 운영 '13년~ 청소년아르바이트현장 도우미 지원사업, 청 소년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청 소년근로보호사업, 청 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청소년 미디어중독 진단·상담 사 배치 '14년~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 마을 설립 및 운영 '15년~ 환각물질 중독 청소년 치료 보호 '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인터넷 게임 간접이용제도의 부모 선택제 전환 '17년~ 청소년유해물·간접타 스틱·지정근거 마련 숙박업소 출입자 나이 확인 강화
'88. 6 ~ '90. 9 체육부 청소년국	'92 ~ '01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05.3.24. 일부개정 ·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 신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통합, 일원화) '05.12.29. 타법 및 일부개정 · 청소년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 변경 · 청소년보호관련 가정의 역할, 책임강화 '11.5.19. 일부개정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규정 신설 ·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 제한 · 인터넷게임중독 등 피해 청소년 지원 '11.9.15. 전부개정 ·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규정 신설 '13.3.22. 일부개정 · 청소년유해환경 정의 신설 '14.5.28. 일부개정 ·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16.3.2. 일부개정 ·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도용·강박으로 인한 규정 위반 시 과징금면제조항 신설 '16.12.20. 일부개정 · 청소년유해악물 유사제품 유해물건 지정 · 숙박업소 출입자 나이확인 청소년 출입 제한 '07.8.3. 전부개정 · 청소년 대상 상벌제에 대한 신고·지침 반의사불벌죄도 변경 · 상벌죄자 등록 및 열람 등의 대상 확대 ·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보호결정 '09.6.9. 전부개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상벌 자 신상정보 공개 '10.4.15. 일부개정 · 지역 내 상벌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 대상 상벌죄자의 범위 확대 '11.9.15. 일부개정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확대 '12.12.18. 전부개정 · 상벌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제도 확대 · 상벌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16.5.29. 일부개정 · 상벌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대상 재범률 조사 실시 근거 마련	
'90. 9 ~ '93. 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실	'93 ~ '02 제1, 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1 ~ 청소년 보호법 전부개정		
'93. 3 ~ '98. 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97)	'03 ~ '07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98. 2 ~ '05.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08 ~ '12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05. 4 ~ '08. 2 (국가)청소년위원회	'13 ~ '17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08. 2 ~ '10.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13 ~ '15 제1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10. 3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16 ~ '18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00 ~ '07 청소년의 상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07년 ~ '09년 청소년의 상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09년 ~ '12년 아동·청소년의 상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12년 ~ 아동·청소년의 상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자료: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정책 연혁, p.3; 여성가족부(2017a), p.3, 일부 인용; 관련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인출일: 2017.9.14); 주요성과는 여성가족부(2017b) 참조

【그림 III-10】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과정 및 주요사업성과

4. 성과관리 : 평가 및 환류체계

1)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중앙행정기관 평가지표

청소년보호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의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의 정책평가는 2006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의한 평가가 통합체계화되었고, 각 부처의 소관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근간으로 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인출일: 2017.7.10.).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하여 이들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정부업무평가는 정책평가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이지만 한국에서는 대체로 혼용한다(이윤식, 2011, p.16).

정부업무평가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총괄하는데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2017년은 제3기(2016~201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개별법에 의하여 경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공공기관평가는 논의에서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평가의 경우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되는데,⁷³⁾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주요정책과 기관역량 등을 평가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제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특정평가의 평가부문은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 공통사항 등으로, 평가부문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기관종합평가를 시행하는 방식이며 각각의 평가부문별로 평가방향과 평가대상, 평가항목과 지표 등 평가방법이 상이하다(<표 III-13>). 이 가운데 본 과제와 직접관련성이 높은 국정과제평가의 경우, 140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하여 연내(年內)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평정을 통해 각 기관별로 평가등급이 부여된다.

73) 2016년의 경우 특정평가 대상은 42개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대상이었다(국무조정실, 2016, pp.4~15.).

표 III-13 특정평가 : 국정과제 평가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내용	비고	배점
집행이행도	•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집행했는지 여부	정성/정량	20
성과지표 달성도	•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여부	정성/정량	40
정책효과	•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종합평가 •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만족도 개선정도 포함)	정성/정량	40

* 출처: 국무조정실(2016), p.6.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과 재정사업, R&D사업, 조직·인사 등 행정관리역량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부분은 주요정책, 통합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이며, 74) 각 부처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평가지표를 설정,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부처의 장은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예산·조직·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년도 예산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과 조직관리, 개인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6, pp.15-16).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지표 예시는 <표 III-14>와 같다.

74) 주요정책은 각 부처의 업무특성에 따라 자율적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통합재정사업은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공통평가지표를 사용하되 사업유형을 반영한 특성화지표를 가미한다. 행정관리역량은 조직·인사·정보화 관리 관련 역점 정책을 중심으로 행자부·인사처가 공통평가지표를 개발·제시한다(국무조정실, 2015; 국무조정실, 2016, p.16).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 집행수립 및 집행의 적절성 (30점)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 현장의견 수렴 여부 및 관리과제 설정의 적절성 정도
	②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③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④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민간기관 등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2. 성과달성도 (35점)	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 정도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성 설정
3. 정책효과성 (20점)	①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상위목표(성과 목표) 달성여부 및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국민의 정책체감 정도
4. 정책개선 노력도(15점)	① 자체평가위원 역량제고 노력정도	• 자체평가 역량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중 정책(평가)자료제공 및 의견수렴, 정책현장 방문 등 노력 여부
	② 전년도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반영실적	• 14년도 자체평가 결과의 개선조치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15년도 사업추진 시 개선조치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
	③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정부3.0 방식을 적용한 정책추진의 노력 정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6d), pp.2-5.

* 주: 1) 평가대상은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32개 관리과제로(여성정책 8개, 청소년정책 8개, 가족정책 6개, 권익증진정책 10개), 2015년 자체평가 결과,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 과제는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의 문제로 미흡과제에 포함, 16년도 자체평가 관리과제명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및 매체 역기능 해소'임.

예를 들어 2015년도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결과 가운데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관리과제의 평가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II-15>이다.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5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국가차원의 청소년보호사업 전반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목표치는 추진실적을 제시하는데 그쳐 보호사업의 범위(coverage)를 모두 포괄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정책성고가 무엇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표 III-15 여성가족부 자체평가 결과 예시(청소년보호정책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실적)	개선보완사항 ¹⁾
15. 청소년 유해 환경 대응능력 강화	① 유해약물예방 모니터링 업소 중 청소년대상 신분증 미확인비율(%) 감소	18.0(17.6)	정책내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지표개발을 통한 정책성과 발굴 및 확산 필요
	② 유해약물 예방교육 만족도(%)	78.0(88.1)	
	③ 금연침 무료시술 치료효과율(%)	76.0(76.1)	
	④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실적(천건)	45(46)	
	⑤ 청소년유해환경 단속건수(건)	530(601)	
16.매체역기능 해소 및 건전 이용환경 조성	① 인터넷치유캠프 참여청소년 중독 개선율(%)	70.3(70.3)	초등생 등 저연령층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의 증가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조기예방 및 치유를 위한 대응 강화 필요
	②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위반시정 등 개선이행율(%)	92.5(93.8)	
27. 여성아동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①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91.5(88.6)	16년 폭력예방교육 점검강화 등을 통한 교육 내실화 공동노력
	② 위험환경 개선학교 비율(%)	69(77.4)	
28. 청소년 성보호 예방 활동	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만족도(점)	89.3(89.6)	농산어촌 지역, 유해환경 밀집 등 취약지역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및 전문가 양성 확대
	② 성매매 피해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인원 수(명)	1,030(1,055)	
29. 청소년 성보호 정책지원	① 성범죄자 재범장지 교육전후 성의식 향상도(점)	0.62(0.639)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을 위해 랜덤택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등 방안모색
	② 성범죄자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 기관교육 인원 수(명)	9,775(13,436)	

* 출처: 여성가족부(2016d), pp.16-17.

* 주: 1) 여성가족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해당 관리과제의 주요성과 및 개선보완사항에서 발췌·요약함.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⁷⁵⁾

현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도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평가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표 III-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도 평가지표를 보면(2016년 실적) 전체 9개 영역 가운데 ‘문화가족’ 영역(4개 시책, 9개 지표, 23개 세부지표)에 ‘청소년 안전(6-3-2)’ 지표를 포함한다. 세부지표에는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75) 전문가 대상 의견조사에서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수 자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노력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16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청소년보호지표

평가시책	6-3.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가지표	6-3-2. 청소년 안전		평가지표 가중치	11.5	
세부지표	㉗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④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㉙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방법	㉗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적발 유형별 가중치) ×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 적발 유형별 가중치 적용기준				
	구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행위	청소년유해약물· 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금지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가중치	3.0	2.0	1.0	0.3
	④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체험형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찾아가는 현장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수) + (사도 자체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수))/사도 내 아동·청소년 수 × 100					
㉙ 사도별(시군구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원노력 우수사례 1건 제출,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출처: 행정자치부(2017), pp.220-229를 요약함.

* 주: 1) 6-3-3. 청소년 지원 지표에는 ㉗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활성화 노력도,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평가)가 포함됨.

청소년보호정책의 환류체계로는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6년에 첫 시범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청소년보호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⁷⁶⁾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조성’ 영역은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사회 내 참여주체 간의 연계와 모니터링이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영역의 경우 추진체계 구성단계에서 업무분장 및 업무연계와 같은 체계적인 구성이 필요하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영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간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차별성 제고와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e, p.56).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시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과 성과분석을 통한 환류체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76) 2016년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은 개별사업평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사업평가, 대표사업평가, 핵심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시행되었으며, 대표사업평가의 경우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여성가족부, 2016e, pp.3-5).

5. 소결

1)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사업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개선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단위에서 추진되는 청소년보호사업 가운데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감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청소년보호사업은 「청소년 보호법」을 포함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는 16개 법률,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업소는 5개 법률을 근거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각 부처가 개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이라는 대상과 보호내용에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역할분담과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전제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단위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단위에서 대상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나 사업 간 경합이 유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정책 효율과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먼저 정책수단과 예산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청소년보호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초점대상과 예방, 치료·개입, 사후관리의 개입지점 및 예방교육홍보, 발굴지원, 법·제도 등 수단에 대한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조정·조율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사업에 있어 누수누락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유해매체, 약물, 업소 등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하여 명시한 법률 가운데 「공연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경우 해당 법률과 관련 사업이 전무하였다. 또한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주세법」, 「담배사업법」,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법률에 따른 청소년보호사업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행계획에 미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과정과 성과관리 체계 전반이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2)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의 다양화와 균형 있는 추진 필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초점대상과 정책영역, 내용 및 방법에도 일부 중복이 발견되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관련 사업에, 지자체는 지역사회 기반의 유해업소 관련 사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사업은 모니터링·제도개선 사업이 가장 많았는데 중앙정부의 경우 피해구제·사후관리 사업 수의 2배 이상에 달하였고, 지자체는 4배 이상에 달하였다. 다만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제도개선은 매체물에, 지방정부는 유해약물과 유해업소에 집중되어 있어 중앙과 지역단위의 정책유형은 대체로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중앙 및 지자체 사업 가운데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피해구제·사후관리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 역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정책수단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예방·개입·사후관리가 연장선상에서 균형 있게 추진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보호사업 예산 적정성 검토 및 일반회계 사업 확대 필요

국가차원의 청소년보호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일반회계와 비교할 때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의존도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청소년보호사업 가운데 일반회계 사업은 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해매체환경 감사단속 및 모니터링 등의 사업으로 나타났는데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반영한 일반회계 사업의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보호권 보장,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학교·지역사회·사이버공간 등 환경에 대한 개입, 청소년의 건강·안전보장을 위한 피해예방과 회복지원,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 개발에 대한 신규사업비 확보가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청소년보호사업 예산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청소년 치료·치유·재활지원, 청소년 성보호,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관련 예산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시설(센터) 건립 등을 제외하면 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건전사이버 활동지원 등 직접사업의 예산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상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예산이 보호범위(coverage)와 비교할 때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가 청소년의 이용과

접근정도가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 팟캐스트, 웹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대상 범위와 요원의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보호사업의 중요도와 수요를 고려한 적정 예산의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정책기준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의한 신규 사업 개발이 요구된다.

4) 청소년보호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근거 마련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사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환류에도 태생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내에 분석·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합동평가를 통해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검토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이지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도 시행되고 있으므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복과 효율에 대한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정책대상의 특성 및 정책 평가

1. 조사개요
2.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경험의
특성 : 2차 자료 분석
3. 보호요인의 영향력과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4.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 과제
: 전문가 의견조사
5. 소결 및 시사점

제 IV 장

정책대상의 특성 및 정책 평가⁷⁷⁾

1. 조사개요

1) 2차 자료 분석

(1) 데이터 및 표본의 특성

이 연구에서는 ‘2016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의 크기는 17,522명으로 남자가 53.7% 여자가 46.3%였다. 연령은 만 9세부터 20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14.6세였다. 연령대를 2년 단위로 묶어서 살펴보면, 17~18세가 2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5~16세가 24.9%, 13~14세와 11~12세가 각각 19.4%, 16.1% 순이었다. 9~10세, 19~20세는 각각 8.4%와 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체 표본에서 학교를 통해 표집한 일반청소년의 비율은 89.3%였으며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표집된 위기청소년의 비율은 10.7%였다. 일반청소년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의 비율은 전체 표본에서 각각 24.5%, 28.1%, 36.7%(일반고 27.0%, 특성화고 9.7%)였다. 위기청소년은 보호관찰소를 통해 표집된 청소년이 전체의 6.3%로 가장 많았고 소년원과 청소년쉼터를 통해 표집된 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3.2%, 1.2%였다. 거주지역을 도시화정도로 구분해보면, 중소도시 거주자가 50.5%로 과반이 넘었고 그 다음은 대도시 44.1%, 읍면지역 거주 5.4% 순이었다.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IV-1>과 같다.

77)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소연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집필하였다.

표 IV-1 2차 자료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성별	남	9,418	53.7%	53.7%
	여	8,104	46.3%	100.0%
	소계	17,522	100.0%	—
연령	9~10	1,478	8.4%	8.4%
	11~12	2,824	16.1%	24.6%
	13~14	3,401	19.4%	44.0%
	15~16	4,367	24.9%	69.0%
	17~18	5,195	29.7%	98.6%
	19~20	240	1.4%	100.0%
	소계	15,646	100.0%	—
위기청소년 여부 및 1차 표집단위 (학교 및 기관 유형)	일반 청소년	초등학교	4,292	24.5%
		중학교	4,923	28.1%
		일반계고	4,727	27.0%
		특성화계고	1,704	9.7%
		소계(일반청소년)	15,646	89.3%
		소년원	558	3.2%
	위기 청소년	보호관찰소	1,111	6.3%
		쉼터	207	1.2%
		소계(위기청소년)	1,876	10.7%
		소계	17,522	100.0%
거주지역 특성 (도시화 정도)	대도시	6,898	44.1%	44.1%
	중소도시	7,909	50.5%	94.6%
	읍면지역	839	5.4%	100.0%
	소계	15,646	100.0%	—

(2) 측정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관련 경험을 9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7개는 유해환경접촉, 2개는 근로보호에 관한 것이며 범주 및 각 범주에 포함된 항목은 각각 <표 IV-2>, <표 IV-3>과 같다.

먼저, ‘유해매체 접촉’ 범주에는 성인용 영상물 시청, 성인용 간행물 구독, 도박성 게임 이용 등 5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범주에는 집 컴퓨터, 학교 컴퓨터,

스마트폰 등 4종에 대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항목이 포함되었다. ‘타인 정보도용’ 범주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을 묻는 2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유해물질 이용’ 범주에는 평생 및 최근 1개월 동안의 음주 경험, 평생 및 최근 1개월 동안의 흡연경험 등에 대한 5개 문항이, ‘유해업소 이용’ 범주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과 같이 성인만 이용가능한 업소나 청소년도 이용가능하나 심야시간대 출입이 금지된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 출입 경험을 묻는 9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폭력 피해’ 범주에는 또래로부터 때리거나 괴롭히겠다는 위협을 당함,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또는 물건으로 인해 다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왕따(따돌림)를 당함 등 실제적 피해는 물론 사이버상의 폭력을 당한 경험을 묻는 항목까지 총 7개 문항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性)적 피해’ 범주에는, 스토킹, 고의적 신체접촉이나 밀착, 성적 모욕감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 등 총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청소년 근로보호의 경우 ‘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중 부당행위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자에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경험, 후자에는 급여를 늦게 받음,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함 등 7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표 IV-2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및 부당행위 경험 측정

구분	변수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 급여를 늦게 받음 •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음 •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 받음 •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함 • 고용주/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력을 당함 •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력을 당함 • 부당하게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지 못함

표 IV-3 유해환경 접촉 및 관련 항목 측정

구분	변수
유해매체 접촉	·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 성인용 간행물 구독 경험 · 성인용 온라인 게임 이용 경험 ·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 · 조건만남 메신저/채팅앱 이용 경험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 집 컴퓨터에 설치 여부 · 태블릿 PC/스마트패드(아이패드, 갤럭시탭 등)에 설치 여부 · 학교컴퓨터에 설치 여부 · 스마트폰에 설치 여부
타인 정보도용	· 아이디 도용 경험 ·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
유해물질 이용	· 음주경험 (평생) · 음주경험 (최근 1개월) [음주 유경험자에 한함] · 흡연경험 (평생) · 흡연경험 (최근 1개월) [흡연 유경험자에 한함] · 환각성 물질
유해업소 이용	· 전자오락실 · 술집 (소주방, 호프집 등) · PC방 (심야시간대 이용) · 노래방 (심야시간대 이용) · 찜질방 (심야시간대 이용) · 비디오/DVD방 · 유흥주점/단란주점 · 나이트클럽/음악클럽 · 멀티방/룸카페
폭력 피해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또는 물건으로 인해 다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 왕따(따돌림)를 당함 · 강제심부름(빵셔틀 등)을 당함 ·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성(性)적 피해	· 스토킹을 당함 · 성적 모욕감/괴롭힘을 당함 · 고의적 신체접촉/밀착을 당함 · 강제적 성관계 시도를 당함 · 사이버상의 스토킹/성희롱을 당함

(3) 분석방법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및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이 성별과 학교급(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카이제곱(χ^2) 검증을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활용 측면에서 ‘학교급’ 변수의 경우 일부 문항의 응답 대상에 초등학생이 제외된 경우가 있어 중·고교생의 응답만 분석하였고, 고등학생의 응답은 문항의 특성에 따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교생의 응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⁷⁸⁾

2) 설문조사

(1) 자료수집 및 표본설계⁷⁹⁾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부터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 방문하여 설문조사 형태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2016년 교육기본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일반계고·특성화고·자율고·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인 1~3학년 학생이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480,064명이며,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294,448명(28.9%), 중학생 1,446,158명(32.3%), 고등학생 1,739,458명(38.8%)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역(16개 광역시도)과 학교(6개)를 층화변수로 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으로 총 3,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의 특성을 고려한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6년 교육기본통계의 전국 학생 및 학교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5개 권역)과 학교구분(6개, 초·중·일반고·자율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단, 고교 유형 중 자율고·특성화고·특수목적고는 권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표본배분과 관련하여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78) 자율고, 특목고는 일반계고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79) 본 설문조사는 2017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통합조사는 전국 단위 학교기반 설문조사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본 조사가 포함된 유닛(unit)에는 2개의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동일한 표본설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발췌한 것이며, 표본설계 및 조사조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기초분석보고서와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사업결과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달라지지 않으므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하에 변형비례배분을 적용하였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과 학교급을 교차하여 산출된 18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하고,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학생수가 목표표본(3천명)을 넘도록 하였다.

표본추출 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 그리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고 각 학년별 한 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11개 학교, 2,937명(초등학생 876명, 중학생 989명, 고등학생 1,072명(일반계고교교생 651명, 특성화고교생 251명, 자율고교생 99명, 특목고교생 71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원 표본 유지 비율은 89.2% 수준이며,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일부 조정한 후 분석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은 총 2,937명이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 <표 IV-4>이다. 전체 표본에서 성비는 남자가 47.2%, 여자가 52.8%이며, 연령은 9세부터 19세까지로 15~16세가 2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3~14세 22.8%, 11~12세 21.3%, 17~18세 17.3%, 9~10세 13.3%로, 19세 0.1% 순이었다. 학교급은 고등학생이 36.5%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33.7%, 초등학생 29.8% 순이었다.

가족구조적 특성은 부모가 모두 있는 양친(兩親)가정이 전체의 90.8%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 8.2%, 부모가 모두 부재한 경우가 1.0%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별로는 대도시 거주자가 46.2%로 과반에 육박하였고, 중소도시 거주자가 42.5%, 읍면지역 거주자는 11.3% 순이었다.

표 IV-4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유효(%)	누적(%)
성별	남	1,387	47.2%	47.2%
	여	1,550	52.8%	100.0%
	소계	2,937	100.0%	—
연령	9~10	390	13.3%	13.3%
	11~12	627	21.3%	34.6%
	13~14	671	22.8%	57.5%
	15~16	736	25.1%	82.5%
	17~18	509	17.3%	99.9%
	19	4	0.1%	100.0%
	소계	2,937	100.0%	—
학교급	초등학교	876	29.8%	29.8%
	중학교	989	33.7%	63.5%
	고등학교	1,072	36.5%	100.0%
	소계	2,937	100.0%	—
가족구조	부모 부재 가정	30	1.0%	1.0%
	한부모 가정	241	8.2%	9.2%
	양친(兩親) 가정	2,661	90.8%	100.0%
	소계	2,932	100.0%	—
거주지역 특성 (도시화 정도)	대도시	1,332	46.2%	46.2%
	중소도시	1,225	42.5%	88.7%
	읍면지역	325	11.3%	100.0%
	소계	2,882	100.0%	—

(3) 주요 변수의 측정 방법

①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업소 이용 정도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업소 이용 정도를 측정한 변수는 유해환경 접촉의 위험요인과 잠재적 보호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유해매체 이용’의 경우, 성인용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매체 6가지 각각에 대한 이용빈도를 7점 척도(①없음~⑥주1회 이상)로 측정한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유해물질 사용’과 ‘유해업소 이용’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전자의 경우 술, 담배 등 유해물질에 대한 6개의 질문이, 후자의 경우는 전자오락실, 술집, 멀티룸 등 유해업소에 대한 8개 질문이 사용되었다. 응답범주로 7점 척도가 사용되었고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의 합산값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IV-5 유해매체, 유해물질, 유해업소 이용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유해매체 이용	• 성인용 영상물 (19세 이상 시청가능한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 • 성인용 간행물 (19세 이상 이용가능한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 • 성인용 온라인 게임 •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게임 • 조건 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 • 폭력·선정적인 개인 인터넷 방송	• 7점 리커트 척도 ① 없음 ① 년1회 ② 6개월에 1회 정도 ③ 3~4개월에 1회 정도 ④ 월1회 정도 ⑤ 월 2~3회 정도 ⑥ 주1회 이상
유해물질 사용	• 술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 등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 • 담배 • 전자담배 • 환각성 물질 (부탄가스, 본드 등 화학 물질) • 고카페인·에너지음료(HOT6, RedBull, 박카스 등) • 흡입 형태의 비타민	•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유해업소 이용 (술집을 제외하고는 심야시간대 이용만 측정)	• 전자오락실 • PC방 • 노래방(코인노래방 포함) • 멀티룸(룸카페 포함) • 비디오·DVD방 • (인형)뽑기방 • 찜질방 • 술집 (소주방, 호프집 등)	

② 폭력가해 행위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간 폭력에 있어 '가해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폭력가해 행위 경험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갈취 등 폭력적 행위를 묻는 5개 문항이 사용되었다⁸⁰⁾. 각 문항별로 조사대상 청소년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정도를 7점 리커트척도(①없음~⑥주1회 이상)로 측정하였고 합산값이 분석에서 활용되었다.

80)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 167001호)에서 학교폭력 피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7개 진술문 중 5개를 선택하여 가해경험을 기술하는 내용으로 수정·변경하였다.

표 IV-6 폭력가해행위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폭력적 행위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함 • 손, 발, 혹은 물건 등으로 때림 •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 왕따(따돌림)를 시키거나 그런 행위에 동참함 •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런 행위에 동참함	• 7점 리커트 척도 ① 없음 ① 년1회 ② 6개월에 1회 정도 ③ 3~4개월에 1회 정도 ④ 월1회 정도 ⑤ 월 2~3회 정도 ⑥ 주1회 이상 •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③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한 유형이며 위험요인과 잠재적 보호요인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변수는 이분변수(binary variable)로 1은 과몰입, 0은 과몰입이 아님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과 관련한 문항이 모두 4개였고,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척도(①전혀 없었다~④자주 있었다)가 응답범주로 사용되어, 그 값을 합산할 경우, 0점에서 16점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과몰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평균 3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과몰입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합산 값이 12점 미만일 경우 0으로, 12점 이상인 경우 1로 부호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V-7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과몰입	나는 지난 해 • 밤늦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한 적이 있다 •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님(보호자)께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숙제를 못함, 약속을 어김, 학원 결석 등) •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후회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 4점 리커트 척도 (①전혀 없었다~④자주 있었다) •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한 값에 기초하여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① 과몰입 아님 (합산값이 12점 미만) ① 과몰입(합산값이 12점 이상)

④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 개인 차원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선정된 개인차원의 특성은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이다. 학교성적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한 개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또는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일 때 1값을 부여하고, 그 외 다른 응답에 대해 0을 부여함으로써 이분변수로 만든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V-8 개인적 차원의 위험요인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	학교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 4점 리커트 척도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① 만족(만족+매우 만족) ①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는 편)

⑤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 가족 차원

가족차원의 위험요인으로 선정된 특성은 총 3개로, 이 가운데 ‘방과 후 보호자 부재’와 ‘비양친(非兩親) 가정’은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이다. ‘방과 후 보호자 부재’ 변수의 경우 조사대상 청소년이 어른 없이 혼자 지내거나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만 있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 1값을 부여하고, 그런 날이 ‘거의 없다’ 등 그 외의 경우 0값을 부여하였다. ‘비양친(非兩親) 가정’ 변수의 경우 양친이 모두 있는 경우 0, 부모 모두 부재하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1로 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이며 값이 커질수록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V-9 가족 차원의 위험요인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 4점 리커트 척도 (①거의 없다~④거의 매일) •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① 거의 없다 ① 하루 이상
비양친(非兩親) 가정	(함께 살고 있는 가족원을 모두 파악한 후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사용함)	• 이분변수 ① 양친가정 ① 비양친 가정(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 모두가 없는 가정)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형편(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 7점 리커트 척도 (①낮은수준~⑦높은 수준) •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짐을 의미)

⑥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 지역사회 차원

지역사회차원의 위험요인으로 선정된 변수는 모두 4개이며 이 가운데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 환경’의 경우 2개 값만 갖는 이분변수이다.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는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 여부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 한 후, ‘보통’부터 ‘매우 안전하다’까지의 3개 범주를 0으로 부호화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부정 의견을 1로 부호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접근성’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 같은 물질을 얼마나 쉽게 구하는지, 심야시간에 PC방, 노래방 등의 업소에 얼마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2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업소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 용인’은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심야시간대 PC방이나 노래방과 같은 업소에 보호자 없이 출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 성인들의 태도를 묻는 2개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이 두 문항 역시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응답의 합산값이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값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 성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해체' 변수는 지역사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나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하는지 등을 묻는 3개 질문을 통해 지역의 규범 와해와 무질서 같은 해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분석에는 합산한 값이 사용되었는데, 그 값이 클수록 지역의 해체적 특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10 지역사회 차원의 위험요인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 환경	학교주변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① 안전하다(보통~매우 그렇다) ① 안전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지역사회 내)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접근성	우리 지역(동네)에는 •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 심야시간대(밤 10시 이후)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출입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PC방, 오락실, 노래방, 찜질방 등이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유해 물질 및 업소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우리 지역(동네)에는 • 청소년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는다 • 심야시간대(밤10시 이후) 청소년이 보호자 동행 없이 PC방, 오락실, 노래방, 찜질방 등에 출입해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는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지역사회 해체	우리 지역(동네)에는 •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 술에 취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⑦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 개인 차원

본 연구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과 관련한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선정된 개인적 차원의 특성은 ‘도덕적 태도’와 ‘저항기술’이다. 도덕적 태도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도덕적인 가치와 행위를 수용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가끔 할 수도 있다’와 같이 도덕률에 반하는 4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4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⁸¹⁾. 역코딩 후 합산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저항기술은 유해물질 사용을 원하는 또래나 주변인의 압력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거절하기(refuse), 이유를 밝히며 거절하기(explain), 문제 상황 피하기(avoid),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leave)와 같은 행동전략을 다룬 4개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합산 값이 클수록 효과적인 저항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⁸²⁾.

또한 이 연구에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이 종속변수로 사용된 분석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앱/소프트웨어 사용’을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추가하여 검증하였는데, 소프트웨어 및 앱 등 청소년 보호 기능 8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자와 부모가 사용하는 기능의 개수를 파악하였다. 이 변수는 최소 0에서 최대 8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81) 도덕적 태도에 대한 4개의 문항은 Communities that Care® Youth Survey(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n.d.), 에서 도덕질서에 대한 믿음(belief in moral order)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우리사회의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수정 및 변경한 것이다.

82) 이와 같은 행동전략과 저항기술 측정방법은 Hecht와 동료들(2003)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Kullis, et al., 2008; Marsiglia, et al., 2009 등)이 제안한 바 있으며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중요성과 긍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표 IV-11 개인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도덕적 태도	내 생각에는 •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 주인에게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깐 사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가끔 할 수도 있다 • 주인을 알 수 없는 약간의 돈(1만원 정도)을 주었다면 그냥 가져도 괜찮다	• 4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 •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코딩한 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저항 기술	나는 아마도 •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싫다'고 말할 것이다 •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거절하고 그 이유를 말해줄 것이다 •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거리를 둘 것이다 •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벗어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 4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 •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청소년보호를 위한 앱/소프트웨어 사용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의 기능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 시간 제한 설정 -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부모님이 확인 가능 - 청소년 자녀가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부모님이 확인 가능 -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설정 - 청소년 유해사이트 및 콘텐츠 자동 차단 - (부모가) 청소년 자녀가 있는 위치 검색 가능 - 위급상황 도움 요청 - 청소년 자녀가 검색한 고민거리나 주제를 감지하여 부모에게 알림	• 응답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의 개수를 합하여 분석에 사용

⑧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 가족 차원

가족차원에서의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부모의 지도감독’, 그리고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존중’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세 변수 모두 가족의 특성을 기술한 3개의 문장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여 그 합산값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는 청소년 자녀가 인지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친밀성 정도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대표 진술문으로 ‘부모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를 꼽을 수 있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적절하게 훈육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부모님은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시다’ 등이 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존중’은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실제 연령보다 너무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태도의 정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부모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은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하신다’ 등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표 IV-12 가족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부모의 지도감독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시다 •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 •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아신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부모의 (청소년) 자녀 존중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신다 • 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의견을 내도록 격려하고 경청하신다 •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으려 하신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⑨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 친구 차원

또래 친구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친구의 친사회적 성향'과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통제)'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친구의 친사회적 성향은 응답자의 친한 친구가 사회적응적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냐를 의미하는데 '나의 친구들은 대체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킨다'를 포함한 3개의 진술문을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는 유해물질 사용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런 행동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주변 친구들이 긍정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의 친구들은 내가 만약 담배나 술을 하려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를 포함한 두 개의 문항을 제시하였고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표 IV-13 친구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친구의 친사회적 성향	나의 친구들은 •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다 •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 대체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킨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	나의 친구들은 • 내가 만약 담배나 술을 하려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 내가 만약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러 가려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⑩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 학교 차원

학교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교사로부터의 지지', '학교 내 다양한 참여기회',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응답자)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격려하며, 자신에게 지지적인 교사가 (학교에)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등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문항이 측정을 위해 활용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후 합산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 학교는 운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수업 및 동아리 활동 기회가 있다’ 등 2개 진술문, 그리고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 학교는 학생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 등 2개 진술문이 활용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였으며, 2개 문항의 합산 값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세 변수 모두 값이 클수록 측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특성과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IV-14 학교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교사로부터의 지지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는 •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시다 •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격려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우리 학교는 • 교내에 운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수업 및 동아리 활동 기회가 있다 • 학생활동이나, 교칙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우리 학교는 • 학생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 •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⑪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 지역사회 차원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의 특성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기회’와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고, 그 기회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동네)에는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와 같은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합산값이 사용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다양한 친 사회적 활동 기회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은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만족스러우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측정을 위해 ‘우리 지역(동네)에는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청소년으로서 생활하기에 만족스럽다’ 등 3개의 문항을 개발하였고 5점 리커트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합산값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지역사회환경이 만족스러운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15 지역사회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우리 지역(동네)에는 •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많다 •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우리 지역(동네)에는 •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 오랫동안 이 곳에서 살고 싶다 • 청소년으로서 생활하기에 만족스럽다	• 5점 리커트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 3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에 사용

⑫ 통제변수

본 연구의 모든 회귀분석에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성별은 명목변수로 여자0, 남자1로 부호화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를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2개의 더미변수를 만들어 동시에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IV-16 통제변수 측정

변수	측정 문항	응답범주
성별	성별은?	• 2개 범주를 가진 명목척도 • 여자를 0으로 남자를 1로 부호화하여 분석에 사용
연령	학생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 만 연령 그대로 분석에 투입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3개 범주를 가진 명목척도 ① 대도시(특별·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읍·면·리) • 중소도시를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는 2개의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4) 분석 방법

먼저 위험요인과 잠재적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종속변수가 2개 값만을 갖는 2분 변수(binary variable)인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이 활용되었다. 특히 위험요인 및 잠재적 보호요인에 대한 통계적 검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든 요인을 한 모형에 동시에 포함하여 영향력을 검증하지 않고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형에 각 위험요인 또는 잠재적 보호요인을 하나씩 추가하는 개별적인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정책 및 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이 어떠한지’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과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경험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인식과 경험에 있어 학교급의 차이 파악은 카이제곱(χ^2) 검증을 활용하였다.

3) 면접조사

비재학생 및 부모 대상 면접조사는 주요 청소년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피해청소년의 조기 발굴 방안, 청소년의 주체적인 대응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제로 반 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각각 90분~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먼저 1회기에서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학생과 비교할 때 청소년보호 이슈에서 차이를 고려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2회기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였다. 각 회기는 연구자가 질문을 하고 참여자가 응답을 주고받기보다, 연구자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에 심화질문을 이어가거나 참여자 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간담회와 같은 집단 논의(Group Discussion)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는데, 면접조사 참여에 대한 의사를 구두로 밝혔지만 면접조사 전에 연구 및 조사의 목적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청소년의 경우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모집하였고 단체의 담당자가 본 연구 및 조사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였고 면접조사에 참여를 희망한 청소년 5명을 선착순으로 섭외하였으며, 면접 당일 최종적으로 3명이 참석하였다. 학부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섭외하였고 5명이 참석하였다.

표 IV-17 비재학생 및 부모 면접조사 대상

회기	구분	연령	성별	비고
1	y01 비재학생	17	여	비재학 2개월
	y02 "	17	남	비재학 1개월
	y03 "	16	여	비재학 6개월
2	p01 부모		여	지역아동센터장
	p02 "		여	-
	p03 "	-	여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p04 "		여	-
	p05 "		여	-

표 IV-18 비재학생 및 학부모 주요 면접 내용

구분	주요 면접 내용
공통	· 청소년보호정책 및 주요 보호제도에 대한 참석자 간 자유 논의 (약 15분) · 청소년보호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법률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보호제도의 청소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 「청소년 보호법」에 가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 예방과 피해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 랜덤채팅이나 폭력· 선정적인 1인 창작자 콘텐츠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 신고 등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유해환경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비재학생	· (재학생에 비하여)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 (재학생에 비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정도와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학생에 비하여) 청소년보호 이슈에서 차이를 감안해야 할 부분은? · (재학생에 비하여) 폭력 등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를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지? ·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이 정해질 때 청소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학부모	· (청소년보호를 위해) 부모와 가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견은? · (청소년보호를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적 규제와 부모의 교육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 (청소년보호를 위해)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적 노력은 무엇인지? · (청소년보호를 위해) 부모와 가정이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은? ·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이 정해질 때 부모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

4)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보호정책과 관련한 쟁점과 현안을 유목화하고 도출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청소년보호정책 5대 영역을 고려하여 전문가 섭외하고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활용하였다. AHP는 여러 개의 대안을 상호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요소를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문제를 구조화·체계화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를 유목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량·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사결정자)의 응답이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할 수 있다(조근태·조용곤·강현수, 2005, pp.59-61;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2015, pp.229-230 재인용).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총 2차에 걸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조사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유해행위, 근로보호 등 5대 정책영역과 관련한 제도 전반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기반과 관련한 5개의 문항,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보호사업과 정책수단 및 예산 관련 문항 11개, 청소년보호사업 성과지표 및 전달체계에 대한 문항 3개, 응답자 관련 기타 문항 2개 등 총 21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1차 조사를 통한 전문가의 응답내용을 여러 차례 읽고 유목화 하는 작업을 통해 총 3개 영역에 대한 7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이후 2차 조사 시 유목화한 과제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응답자의 검토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용어의 수정과 세부과제에 포함된 응답내용의 배치가 조정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3개 정책영역과 7개 정책과제, 14개 세부과제 각각에 대한 이원비교를 위해 의사결정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하고, 각 요소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특히 상대적인 중요도는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등 같은 계층에 포함된 요소 간의 국지적 우선순위(local priorities, L)와 이를 종합한 복합적 우선순위(global priorities, G)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통해 이원비교 과정에서 응답의 논리성, 일관성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데이터는 MS Exc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⁸³⁾ 전문가 의견조사에는 현장·학계·정책담당자 등 총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표 IV-19>다.

표 IV-19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연번	구분	전문분야(중복응답)	청소년보호 경력	성별	비고
01	학계	매체	15년	남	
02	학계	약물, 매체	11년	남	
03	학계	약물, 매체	20년	남	
04	학계	매체	15년	남	
05	학계	약물, 매체, 행위	30년	남	2차 조사 불참
06	학계	행위, 근로보호	22년 3개월	여	
07	학계	매체, 근로보호	20년	남	
08	학계	행위	9년 6개월	여	
09	현장	근로보호	13년	남	
10	현장	약물, 매체, 업소	10년	여	
11	현장	매체	16년	남	
12	현장	약물, 매체	25년	남	
13	현장	행위	3년 2개월	여	
14	현장	행위, 근로보호	10년	남	
15	정책담당	매체	10년 8개월	남	

2.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경험의 특성 : 2차 자료 분석

1)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및 근로부당행위 경험 : 성별 차이

(1) 유해매체 접촉 경험 : 성별 차이

다음의 <표 IV-20>은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 현황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것으로, 최근 1년 동안 각 매체별 유경험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해매체 접촉’ 범주에 포함된 5개 항목 모두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경험률이 높았고, ‘조건만남 메신저/채팅앱 이용경험’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3) AHP의 기본개념과 분석과정 및 절차, MS Excel을 활용한 AHP 분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근태 외(2005), 김지연 외 (2015, pp.229-244), 국회예산정책처(2007, pp.104-112), 블로그 <http://yjhyjh.egloos.com/366791>(인출일: 2017.8.18)를 참고·활용하였다.

표 IV-20 유해매체접촉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성인영상물 시청경험	있다	52.9%	32.6%	43.5%	$\chi^2=724.529^{***}$
	없다	47.1%	67.4%	56.5%	(1, N=17,415)
성인용간행물 구독경험	있다	26.5%	19.0%	23.0%	$\chi^2=135.632^{***}$
	없다	73.5%	81.0%	77.0%	(1, N=17,386)
성인용온라인게임 이용경험	있다	21.8%	6.1%	14.5%	$\chi^2=866.118^{***}$
	없다	78.2%	93.9%	85.5%	(1, N=17,502)
도박성 게임 이용경험	있다	9.2%	3.5%	6.5%	$\chi^2=225.941^{***}$
	없다	90.8%	96.5%	93.5%	(1, N=17,499)
조건만남 메신저/채팅앱 이용경험	있다	4.5%	3.9%	4.2%	$\chi^2=3.465$
	없다	95.5%	96.1%	95.8%	(1, N=17,489)

먼저 ‘성인영상물 시청’의 경우 그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43.5%였는데, 남자는 과반이 넘는 52.9%였던 반면 여자는 32.6%로 남자의 약 2/3 수준이었다($\chi^2(1)=724.529$, $p<.001$).

‘성인용간행물 구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3.0%로, 남자의 경험률은 26.5%로 4명 중 한 명 이상이 유경험자인 반면 여자는 19.0% 수준이었다($\chi^2(1)=135.632$, $p<.001$).

‘성인용온라인 게임 이용’ 경험은 성별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대조되는데, 전체 청소년의 경험률은 14.5%이며 남자는 21.8%, 여자는 6.1%로 격차를 보였다($\chi^2(1)=866.118$, $p<.001$).

‘도박성 게임 이용’ 유경험자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6.5%로, 남자는 9.2%, 여자는 3.5%로 남자가 여자보다 2.7배 정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chi^2(1)=225.941$, $p<.001$).

‘조건만남 메신저/채팅앱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4.2%로, 남자와 여자의 유경험 비율은 각각 4.5%, 3.9%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chi^2(1)=3.465$, $p<.05$).

(2)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성별 차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하여 유해사이트 접속 경험이 더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응답한 사례는 대체로 조사대상자의 약 1/4 수준이었던

데, 학교컴퓨터의 경우 응답 비율이 약 2배 정도 더 높았다. 다만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조사대상자의 약 1/3에 달하여,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컴퓨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사례는 과반이 넘는 52.4%(남자 61.4%, 여자 43.3%)였으며, 설치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남녀 청소년은 각각 35.4%, 53.8%였다. 이러한 성별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328.991$, $p<.001$).

집 컴퓨터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24.6%였다. '설치되었다'는 응답률은 남녀 각각 29.1%, 20.1%로 학교컴퓨터의 경우 보다 다소 낮았고 설치 여부를 모른다는 남녀청소년의 응답율은 각각 35.9%, 53.1%로 '학교컴퓨터'와 유사하였다. 이 항목에서의 성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310.700$, $p<.001$).

표 IV-21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학교컴퓨터	설치	61.4%	43.3%	52.4%	$\chi^2=328.991^{***}$
	비설치	3.2%	2.9%	3.0%	(2, N=9,421)
	모름	35.4%	53.8%	44.6%	
집 컴퓨터	설치	29.1%	20.1%	24.6%	$\chi^2=310.700^{***}$
	비설치	35.0%	26.8%	31.0%	(2, N=10,257)
	모름	35.9%	53.1%	44.4%	
태블릿PC/스마트패드	설치	29.8%	20.3%	24.9%	$\chi^2=121.958^{***}$
	비설치	39.9%	35.2%	37.5%	(2, N=5,100)
	모름	30.3%	44.5%	37.6%	
스마트폰	설치	29.6%	22.1%	26.0%	$\chi^2=190.142^{***}$
	비설치	40.1%	36.4%	38.3%	(2, N=12,569)
	모름	30.3%	41.5%	35.7%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패드' 항목 역시 '집 컴퓨터'와 매우 유사하였고, 성별 간 차이 역시 유의미하였다($\chi^2(2)=121.958$, $p<.001$).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1/4 수준인 24.9%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자 29.8%, 여자 20.3%로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비설치' 응답은 남자 39.9%, 여자 35.2%,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30.3%, 44.5%였다.

‘스마트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6.0%였는데, 남자 29.6%, 여자 22.1%로서,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설치하지 않았다’는 부정응답 역시 남자 40.1%, 여자 36.4%로, 남자가 더 많았다. 반면 설치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여자가 41.5%로서 30.3%의 남자(30.3%)보다 많았다($\chi^2(2)=190.142$, $p<.001$).

(3) 타인정보 도용 경험 : 성별 차이

지난 1년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아이디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각각 11.1%, 5.1%였다. 먼저 타인의 아이디 도용 경험이 있는 여자는 전체의 5.2%였으나 남자는 3배가 넘는 16.2%에 달하였다($\chi^2(1)=529.371$, $p<.001$).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은 남녀 각각 7.1%, 2.8%로, 이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chi^2(1)=167.678$, $p<.001$).

표 IV-22 타인 정보도용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아이디 도용 경험	있다	16.2%	5.2%	11.1%	$\chi^2=529.371^{***}$
	없다	83.8%	94.8%	88.9%	(1, N=17,484)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	있다	7.1%	2.8%	5.1%	$\chi^2=167.678^{***}$
	없다	92.9%	97.2%	94.9%	(1, N=17,477)

(4) 유해물질 이용 경험 : 성별 차이

다음의 <표 IV-23>은 유해물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과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유해물질을 이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최소 0.9%(환각성 물질)에서 최대 43.1%(술)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생애경험률 유무만 고려하면 환각성 물질을 제외한 모든 유해물질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이용경험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먼저 음주 경험을 보면, 평생 동안 술을 마신 경험이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43.1%로, 여자는 37.0%, 남자는 과반에 달하는 48.1%를 기록하였다($\chi^2(1)=164.971$, $p<.001$). 음주 유경험자에 한하여 최근 1개월간 음주경험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긍정응답률이

56.1%에 달하였는데 남자(57.6%)가 여자(53.8%) 보다 4% 정도 많았다($\chi^2(1)=7.856$, $p<.01$).

흡연의 경우, 평생 동안 담배를 피워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2.9%였다. 여자의 경우 10.9%로 열 명 중 한 명 정도였으나 남자는 33.0%로 세 명 중 한 명의 비율을 보였다($\chi^2(1)=909.304$, $p<.001$).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최근 1개월 동안의 흡연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자 69.1%, 여자 63.0%가 흡연경험을 가지고 있었다($\chi^2(1)=8.708$, $p<.01$).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6.0%였는데 여자(6.8%)보다 남자(23.7%)의 경험률이 세 배 이상에 달하였다($\chi^2(1)=692.599$, $p<.001$). 전자담배 유경험자의 최근 1개월 동안의 전자담배 이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남자 60.0%, 여자 56.2%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chi^2(1)=2.029$, $p>.05$). 만약 최근 1개월 동안의 경험률이 지속적인 사용자 비율과 유사하다고 본다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3배 이상 많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성별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사용자 비율은 전자담배 유경험자의 약 60% 정도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환각성 물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0.9%로, 남녀 간의 이용 경험에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chi^2(1)=0.012$, $p>.05$).

표 IV-23 유해물질 이용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음주경험 (평생)	있다	48.1%	37.0%	43.1%	$\chi^2=164.971^{***}$
	없다	51.9%	63.0%	56.9%	(1, N=13,184)
음주경험 (최근1개월) [음주 유경험자에 한함]	있다	57.6%	53.8%	56.1%	$\chi^2=7.856^{**}$
	없다	42.4%	46.2%	43.9%	(1, N=5,663)
흡연경험 (평생)	있다	33.0%	10.9%	22.9%	$\chi^2=909.304^{***}$
	없다	67.0%	89.1%	77.1%	(1, N=12,209)
흡연경험 (최근1개월) [흡연 유경험자에 한함]	있다	69.1%	63.0%	67.8%	$\chi^2=8.708^{**}$
	없다	30.9%	37.0%	32.2%	(1, N=3,025)
전자담배 흡연경험 (평생)	있다	23.7%	6.8%	16.0%	$\chi^2=692.599^{***}$
	없다	76.3%	93.2%	84.0%	(1, N=13,207)
전자담배 흡연경험 (최근1개월) [전자담배 흡연 유경험자에 한함]	있다	40.0%	43.8%	40.7%	$\chi^2=2.029$
	없다	60.0%	56.2%	59.3%	(1, N=2,107)
환각성물질 이용경험	있다	0.9%	0.9%	0.9%	$\chi^2=0.012$
	없다	99.1%	99.1%	99.1%	(2, N=13,200)

(5) 유해업소 이용 경험 : 성별 차이

총 9개 항목으로 분류된 유해업소 각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용 경험률을 요약한 것이 <표 IV-24>이다. 경험률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총 9개 중 6개 항목에서 남자의 경험률이 여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2개 항목(노래방, 멀티방/룸카페)은 여자가 남자보다 경험률이 높았고, 한개 항목(전자오락실)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다.

표 IV-24 유해업소 이용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전자오락실	있다	36.1%	36.0%	36.0%	$\chi^2=0.001$
	없다	63.9%	64.0%	64.0%	(1, N=13,059)
술집 (소주방, 호프집 등)	있다	13.7%	6.8%	10.5%	$\chi^2=161.152^{***}$
	없다	86.3%	93.2%	89.5%	(1, N=13,033)
유흥업소/단란주점	있다	5.2%	2.7%	4.1%	$\chi^2=52.746^{***}$
	없다	94.8%	97.3%	95.9%	(1, N=13,101)
PC방 (심야시간대이용)	있다	85.3%	54.4%	71.3%	$\chi^2=1,526.595^{***}$
	없다	14.7%	45.6%	28.7%	(1, N=13,200)
노래방 (심야시간대이용)	있다	74.0%	88.2%	80.5%	$\chi^2=421.285^{***}$
	없다	26.0%	11.8%	19.5%	(1, N=13,129)
찜질방 (심야시간대이용)	있다	41.7%	33.3%	37.9%	$\chi^2=96.921^{***}$
	없다	58.3%	66.7%	62.1%	(1, N=13,138)
비디오/DVD방	있다	5.1%	4.3%	4.7%	$\chi^2=4.847^*$
	없다	94.9%	95.7%	95.3%	(1, N=13,106)
멀티방/ 룸카페	있다	8.2%	19.1%	13.1%	$\chi^2=334.452^{***}$
	없다	91.8%	80.9%	86.9%	(1, N=13,103)
나이트클럽/ 음악클럽	있다	3.0%	1.4%	2.3%	$\chi^2=34.426^{***}$
	없다	97.0%	98.6%	97.7%	(1, N=11,230)

'전자오락실' 이용 경험은 조사대상자의 36.0%로, 남자 36.1%, 여자 36.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chi^2(1)=0.001$, $p>.05$).

소주방, 호프집 등 술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0.5%로, 남자가 13.7%인

반면 여자는 절반 수준(6.8%)으로 차이를 보였다($\chi^2(1)=161.152$, $p<.001$).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용 경험은 전체의 4.1%로, 남자 5.2%, 여자 2.7%로 남자가 약 2배 정도 많았다($\chi^2(1)=52.746$, $p<.001$).

PC방을 심야시간대에 이용한 경험은 전체의 71.3%에 달하였는데 여자(54.4%)보다 남자(85.3%)가 약 30%정도 많았다($\chi^2(1)=1,526.595$, $p<.001$).

반면 심야시간대 노래방 이용 경험은 전체의 80.5%로 10명 중 8명을 넘었는데 여자(88.2%)가 남자(74.0%)보다 약 14%가량 많았다($\chi^2(1)=421.285$, $p<.001$).

심야시간대 찜질방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37.9%로, 남자(41.7%)가 여자(33.3%)보다 약 8%정도 많았다($\chi^2(1)=96.921$, $p<.001$).

비디오방 또는 DVD방의 경우 전체 청소년의 4.7%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여자(4.3%)보다 남자(5.1%)가 조금 많았다($\chi^2(1)=4.847$, $p<.05$).

멀티방이나 룸카페 유경험자 비율은 비디오/DVD방 이용 유경험자의 비율 보다 약 세 배 정도 높은 13.1%로, 여자(19.1%)가 남자(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chi^2(1)=334.452$, $p<.001$).

나이트클럽이나 음악클럽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3%로, 여자(1.4%)보다 남자(3.0%)가 두 배 이상 많았다($\chi^2(1)=34.426$, $p<.001$).

(6) 폭력 피해 경험 : 성별 차이

다음의 <표 IV-25>는 최근 1년 동안 다른 학생이나 친구, 선후배 등으로 부터 다양한 종류의 폭력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비율을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총 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남자의 유경험 비율이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2개 항목(왕따를 당함, 사이버 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25 폭력피해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있다	8.9%	5.5%	7.3%	$\chi^2=73.520^{***}$
	없다	91.1%	94.5%	92.7%	(1, N=17,506)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건으로 인해 다침	있다	4.3%	1.8%	3.2%	$\chi^2=90.631^{***}$
	없다	95.7%	98.2%	96.8%	(1, N=17,50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있다	1.6%	0.7%	1.2%	$\chi^2=34.248^{***}$
	없다	98.4%	99.3%	98.8%	(1, N=17,506)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있다	3.0%	1.0%	2.1%	$\chi^2=80.873^{***}$
	없다	97.0%	99.0%	97.9%	(1, N=17,505)
왕따(따돌림)를 당함	있다	1.6%	1.6%	1.6%	$\chi^2=0.093$
	없다	98.4%	98.4%	98.4%	(1, N=17,503)
강제심부름 (빵셔틀 등)을 당함	있다	0.7%	0.3%	0.5%	$\chi^2=15.714^{***}$
	없다	99.3%	99.7%	99.5%	(1, N=17,504)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있다	0.9%	0.8%	0.9%	$\chi^2=0.273$
	없다	99.1%	99.2%	99.1%	(1, N=17,506)

먼저, 언어폭력의 경우 전체의 7.3%에서 유경험률이 확인되었다. 남자의 8.9%, 여자의 5.5%가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chi^2(1)=73.520$, $p<.001$).

또래, 선후배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3.2%로 여자의 1.8%, 남자의 4.3%가 다른 학생이나,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건 등으로 인해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1)=90.631$, $p<.001$).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1.2%였는데, 여자(0.7%)보다 남자(1.6%)의 경험률이 크게 높았다($\chi^2(1)=34.248$, $p<.001$).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1%로, 이 역시 여자(1.0%)보다 남자(3.0%)가 많았다($\chi^2(1)=80.873$, $p<.001$).

강제심부름 유경험자는 전체의 0.5%로,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또래나 선후배가 빵셔틀 등 또래나 선후배가 강제심부름을 시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여자(0.3%)보다 남자(0.7%)가 2배 이상 많았다($\chi^2(1)=15.714$, $p<.001$).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사이버 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1.6%와 0.9%로, 두 항목에서 모두 남녀 청소년의 유경험 비율이 유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7) 성(性)적 피해 경험 : 성별 차이

성(性)적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의 경험률을 살펴보면, 총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2개 항목(스토킹을 당함 & 고의적 신체접촉이나 밀착을 당함)에서는 남자의 피해경험률이 여자 보다 높았고, 나머지 한 개 항목(사이버 상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함)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관찰되었다.

표 IV-26 성(性)적 피해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스토킹을 당함	있다	0.6%	0.4%	0.5%	$\chi^2=5.654^*$
	없다	99.4%	99.6%	99.5%	(1, N=17,497)
성적 모욕감/ 괴롭힘을 당함	있다	1.4%	1.5%	1.4%	$\chi^2=0.771$
	없다	98.6%	98.5%	98.6%	(1, N=17,497)
고의적 신체접촉/ 밀착을 당함	있다	1.4%	0.6%	1.0%	$\chi^2=22.060^{***}$
	없다	98.6%	99.4%	99.0%	(1, N=17,497)
강제적 성관계 시도를 당함	있다	0.2%	0.2%	0.2%	$\chi^2=0.032$
	없다	99.8%	99.8%	99.8%	(1, N=17,495)
사이버상의 스토킹/ 성희롱을 당함	있다	0.3%	0.8%	0.5%	$\chi^2=22.491^{***}$
	없다	99.7%	99.2%	99.5%	(1, N=17,496)

스토킹 유경험자 비율이 0.5%로, 여자(0.4%) 보다 남자(0.6%)가 약간 많았다($\chi^2(1)=5.654$, $p<.05$). 고의적 신체접촉이나 밀착을 당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전체의 1.0%였다. 이와 같은 성(性)적 행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남자의 피해경험률(1.4%)이 여자(0.6%) 보다 2배 이상 많았다($\chi^2(1)=22.060$, $p<.001$).

반면 사이버 상에서의 스토킹이나 성희롱의 경우 유경험자 비율은 0.5%로, 여자청소년의 피해경험률(0.8%)이 남자(0.3%) 보다 약 2.5배 많았다($\chi^2(1)=22.491$, $p<.001$).

한편 말이나 눈짓 혹은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4%, 강제적 성관계 시도를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0.2%였다. 두 개 항목 모두 남녀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8)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성별 차이

지난 1년간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유경험 비율은 12.2%로, 여자(9.0%)보다 남자(14.9%)가 많았다($\chi^2(1) = 106.685$ $p < .001$).

표 IV-27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금지업소 아르바이트경험	있다	14.9%	9.0%	12.2%	$\chi^2=106.685^{***}$
	없다	85.1%	91.0%	87.8%	(1, N=13,220)

(9)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 성별 차이

최근 1년 동안 근로를 하면서 부당행위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다음의 <표 IV-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범주에 포함된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다른 범주에서 나타난 경향과 달리 여자의 피해율이 남자 보다 높았다.

표 IV-28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 성별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남	여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급여를 늦게 받음	있다	14.3%	17.0%	15.4%	$\chi^2=3.360$
	없다	85.7%	83.0%	84.6%	(1, N=2,590)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음	있다	7.4%	12.6%	9.5%	$\chi^2=20.010^{***}$
	없다	92.6%	87.4%	90.5%	(1, N=2,591)
초과근무를 요구 받음	있다	13.5%	22.8%	17.2%	$\chi^2=37.718^{***}$
	없다	86.5%	77.2%	82.8%	(1, N=2,588)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함	있다	7.0%	7.9%	7.4%	$\chi^2=0.618$
	없다	93.0%	92.1%	92.6%	(1, N=2,590)
고용주/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함	있다	4.4%	4.3%	4.3%	$\chi^2=0.010$
	없다	95.6%	95.7%	95.7%	(1, N=2,590)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함	있다	5.2%	7.1%	5.9%	$\chi^2=4.026^*$
	없다	94.8%	92.9%	94.1%	(1, N=2,590)
부당하게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지 못함	있다	4.5%	4.0%	4.3%	$\chi^2=0.378$
	없다	95.5%	96.0%	95.7%	(1, N=2,590)

급여를 늦게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전체의 15.4%로, 여자(17.0%)가 남자(14.3%)보다 약 3%p 정도 많았다($\chi^2(1)=3.360$, $p<.05$).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9.5%였다. 이러한 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남자(7.4%)보다 여자(12.6%)가 많았다($\chi^2(1)=20.010$, $p<.001$).

일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시간이나 날이 아니었지만 초과근무를 요구 받은 남녀 청소년은 각각 13.5%, 22.8%로 성별 차이가 있었으나($\chi^2(1)=37.718$, $p<.001$), 초과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한 경험은 남자(7.0%)와 여자(7.9%)의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혹은 물리적 폭행을 경험한 경우, 부당하게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한 경우는 남녀 각각 4.4%, 4.3%였다. 두 항목의 경험률에 있어 성별 차이는 관찰되지는 않았다.

고객(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9%로, 여자(7.1%)가 남자(5.2%)보다 많았다($\chi^2(1)=4.026$, $p<.05$).

2)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 및 근로부당행위 경험 : 학교급 차이

(1) 유해매체 접촉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해매체 접촉 범주에는 5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다음의 <표 IV-2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유해매체 접촉 경험률은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경험률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급 내에서는 일반고에 비하여 특성화고 재학생의 유경험 비율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9 유해매체 접촉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교	특성화고교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성인용 영상물 시청경험	있다	18.6%	42.8%	56.2%	60.3%	42.1%	$\chi^2=1580.403^{***}$
	없다	81.4%	57.2%	43.8%	39.7%	57.9%	(3, N=15,550)
성인용 간행물 구독경험	있다	11.7%	22.6%	28.5%	30.4%	22.3%	$\chi^2=447.954^{***}$
	없다	88.3%	77.4%	71.5%	69.6%	77.7%	(3, N=15,522)
성인용 온라인 게임 이용경험	있다	9.4%	14.5%	12.8%	19.3%	13.1%	$\chi^2=117.151^{***}$
	없다	90.6%	85.5%	87.2%	80.7%	86.9%	(3, N=15,627)
도박성 게임 이용경험	있다	2.6%	3.6%	5.6%	8.8%	4.5%	$\chi^2=131.887^{***}$
	없다	97.4%	96.4%	94.4%	91.2%	95.5%	(3, N=15,623)
조건만남 메신저/채팅앱 이용경험	있다	2.7%	3.6%	3.4%	4.2%	3.3%	$\chi^2=11.404^{**}$
	없다	97.3%	96.4%	96.6%	95.8%	96.7%	(3, N=15,615)

‘성인영상물 시청’ 항목에서 유경험자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18.6%, 중학생 42.8%, 일반고교 56.2%, 특성화고교 60.3%로 학교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chi^2(3)=1580.403$, $p<.001$).

‘성인용 간행물’을 구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생 11.7%, 중학생 22.6%, 일반고교 28.5%, 특성화고교 30.4%였다($\chi^2(3)=447.954$, $p<.001$).

‘성인용 온라인 게임’ 이용 경험은 초등학생 9.4%, 중학생 14.5%, 일반고교 12.8%, 특성화고교 19.3%였다($\chi^2(3)=117.151$, $p<.001$).

‘도박성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는 유경험자 비율은 초등학생 2.6%, 중학생 3.6%, 일반고교생과 특성화고교생의 비율은 각각 5.6%, 8.8%였다($\chi^2(3)=131.887$, $p<.001$).

‘조건만남을 위해 메신저나 채팅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생의 2.7%, 중학생의 3.6%로 집계되었다. 일반고교생의 유경험자 비율(3.4%)은 중학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특성화고교생의 비율은 4.2%로 4개 집단 중 가장 높았다($\chi^2(3)=11.404$, $p>.01$).

(2)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학교급에 따른 차이

다음의 <표 IV-30>은 유해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현황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한 4개 항목 모두에서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이나 개인 소유의 기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응답과 설치 여부를 '잘 모른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4개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주체가 청소년 본인이기 보다 보호자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30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학교컴퓨터	설치	46.0%	45.9%	58.1%	66.2%	52.0%	$\chi^2=211.302^{***}$
	비설치	3.6%	3.0%	2.4%	2.2%	2.9%	(6, N=9,112)
	모름	50.3%	51.1%	39.5%	31.6%	45.0%	
집 컴퓨터	설치	26.4%	21.7%	21.5%	25.8%	23.3%	$\chi^2=410.618^{***}$
	비설치	17.6%	31.4%	40.8%	39.3%	31.2%	(6, N=9,632)
	모름	56.0%	46.9%	37.7%	34.8%	45.5%	
태블릿PC/스마트 패드	설치	30.3%	24.2%	17.4%	24.4%	23.7%	$\chi^2=343.047^{***}$
	비설치	20.7%	34.5%	52.8%	43.3%	37.4%	(6, N=4,753)
	모름	49.0%	41.3%	29.7%	32.3%	38.9%	
스마트폰	설치	33.6%	23.5%	18.6%	25.6%	25.1%	$\chi^2=522.163^{***}$
	비설치	23.9%	38.2%	49.7%	45.2%	38.4%	(6, N=11,314)
	모름	42.5%	38.3%	31.7%	29.1%	36.6%	

먼저, 학교 컴퓨터의 경우,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고 보고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은 각각 46.0%와 45.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같은 응답을 선택한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은 각각 58.1%와 66.2%로서, 고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hi^2(6)=211.302$, $p<.001$).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초등학생의 26.4%, 중학생의 21.7%, 일반고 재학생의 21.5%, 특성화고 재학생의 23.3%로 집계되었다. 즉, 조사대상 청소년의 1/5 내지 1/4 정도가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 항목에서 학교급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chi^2(6)=410.618$, $p<.001$), 이러한 차이는 '설치되었다'는 응답범주 보다 설치 여부를 '모른다'는 것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범주에서 더 뚜렷하였다.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모른다는 응답은 초등학생(56.0%)과 중학생(46.9%) 집단에서 높았으며, '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등학

생 집단(일반고 40.8% & 특성화고 39.3%)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패드’ 항목에서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다($\chi^2(6)=343.047$, $p<.001$). 초등학교의 30.3%, 중학교의 24.2%, 일반고 재학생의 17.4%,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24.4%가 태블릿PC 또는 스마트패드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응답하였다. 집 컴퓨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초등학교(49.0%)과 중학교(41.3%) 집단에서 많았으며, ‘설치하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의 비율은 고등학교 집단(일반고 52.8% & 특성화고 43.3%)에서 특히 높았다.

이러한 패턴은 ‘스마트폰’ 항목에서도 관찰되었다($\chi^2(6)=522.163$, $p<.001$). 스마트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초등학교의 33.6%, 중학교의 23.5%, 일반고 재학생의 18.6%, 그리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25.6%로 집계되었다. 스마트폰에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교(42.5%)과 중학교(38.3%) 집단에서 높았던 반면 ‘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고등학교 집단(일반고 49.7% & 특성화고 45.2%)에서 높았다.

(3) 타인정보 도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다음의 <표 IV-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에 있어서도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교가 4.8%로 가장 낮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이 15.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와 일반고 재학생의 비율은 각각 12.1%, 11.6%였다($\chi^2(3)=214.455$, $p<.00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그 비율은 0.7%였으나, 중학교의 경우 4.2%로 크게 높아졌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은 각각 6.5%, 7.7%였다($\chi^2(3)=237.174$, $p<.001$).

표 IV-31 타인 정보도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아이디 도용 경험	있다	4.8%	12.1%	11.6%	15.2%	10.3%	$\chi^2=214.455^{***}$
	없다	95.2%	87.9%	88.4%	84.8%	89.7%	(3, N=15,615)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	있다	0.7%	4.2%	6.5%	7.7%	4.3%	$\chi^2=237.174^{***}$
	없다	99.3%	95.8%	93.5%	92.3%	95.7%	(3, N=15,609)

(4) 유해물질 이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다음의 <표 IV-32>는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의 유해물질 이용경험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유해물질 이용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중에서는 특성화고 재학생이 일반고 재학생에 비해 경험률 및 이용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환각성 물질에 있어서 이러한 학교급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음주, 흡연, 전자담배 흡연에 있어 중학생의 경험률은 고등학생 보다 낮았으나 한 번이라도 그러한 유해물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들의 최근 1개월 동안 이용경험은 일반고 재학생 보다 더 높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저연령대에 유해물질을 접한 청소년의 수는 비록 소수이나 유경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유해물질 이용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을 가진 저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사시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IV-32 유해물질 이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음주경험 (평생)	있다	20.5%	45.2%	58.8%	36.6%	$\chi^2=1059.367^{***}$
	없다	79.5%	54.8%	41.2%	63.4%	(2, N=11,315)
음주경험 (최근1개월) [음주유경험자에 한함]	있다	44.0%	52.2%	58.8%	51.8%	$\chi^2=44.020^{***}$
	없다	56.0%	47.8%	41.2%	48.2%	(2, N=4,124)
흡연경험(평생)	있다	6.0%	13.2%	27.6%	12.2%	$\chi^2=556.685^{***}$
	없다	94.0%	86.8%	72.4%	87.8%	(2, N=11,335)
흡연경험(최근1개월) [흡연유경험자에 한함]	있다	50.5%	49.5%	61.2%	53.7%	$\chi^2=16.167^{***}$
	없다	49.5%	50.5%	38.8%	46.3%	(2, N=1,384)
전자담배흡연경험 (평생)	있다	3.5%	9.4%	19.9%	8.4%	$\chi^2=455.184^{***}$
	없다	96.5%	90.6%	80.1%	91.6%	(2, N=11,333)
전자담배흡연경험 (최근1개월)[전자담배 흡연 유경험자에 한함]	있다	38.0%	30.2%	36.5%	33.8%	$\chi^2=5.063$
	없다	62.0%	69.8%	63.5%	66.2%	(2, N=1,384)
환각성물질 이용경험	있다	0.5%	0.4%	0.4%	0.4%	$\chi^2=0.825$
	없다	99.5%	99.6%	99.6%	99.6%	(2, N=11,330)

유해물질 중 술의 경우, 평생 동안 음주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중학생 20.5%, 일반고 재학생 45.2%, 특성화고 재학생 58.8%로 학교급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chi^2(2)=1059.367$,

$p<.001$). 음주 유경험자들의 최근 1개월 음주 경험에 있어서는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험률이 58.8%로, 44.0%, 52.2%의 경험률을 보인 중학교, 일반고 재학생 보다 높았다($\chi^2(2)=44.020$, $p<.001$).

담배의 경우 중학생의 6.0%, 일반고 재학생의 13.2%, 특성화고 재학생의 27.6%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음주와 마찬가지로 중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높았고 비 일반계고 재학생의 경험률이 높았다($\chi^2(2)=556.685$, $p<.001$). 흡연 유경험자 가운데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도 학교급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chi^2(2)=16.167$, $p<.001$), 특성화고 재학생이 61.2%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과 일반고 재학생이 각각 50.5%와 49.5%였다.

평생 동안 전자담배 흡연 경험에 있어서도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chi^2(2)=455.184$, $p<.001$). 중학생의 3.5%, 일반고 재학생의 9.4%, 특성화고 재학생의 19.9%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전자담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자담배 흡연 유경험자들에 한하여 최근 1개월 동안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평균 33.8%가 그렇다고 긍정응답을 하였다. 다만 학교급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2)=5.063$, $p>.05$).

환각성 물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의 0.4%로 집계되었는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2)=0.825$, $p>.05$).

(5) 유해업소 이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유해업소 이용 범주에는 모두 9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다음의 <표 IV-33>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최근 1년 간 해당 유해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학생이 가장 낮았고 특성화고 재학생이 가장 높았다.

전자오락실을 최근 1년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이 각각 38.1%, 38.2%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중학생은 33.3%였다($\chi^2(2)=27.977$, $p<.001$).

소주방이나 호프집 같은 술집을 이용한 경험은 중학생 집단에서 15%였으나 일반고, 특성화고 재학생 비율은 각각 4.8%, 10.9%로서 중학생 대비 3배, 7배에 달하였다($\chi^2(2)=274.913$, $p<.001$).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중학생의 0.5%, 일반고 재학생의 1.5%, 특성화고 재학생의 2.4%로 일반 술집 경험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학교급별 차이에 있어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chi^2(2)=45.221$, $p<.001$).

심야시간대 PC방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중학생 12.6%, 일반고 재학생 18.3%, 특성화고 재학생 27.0%였다($\chi^2(2)=171.720$, $p<.001$).

표 IV-33 유흥업소 이용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전자오락실	있다	33.3%	38.1%	38.2%	36.0%	$\chi^2=27.977^{***}$
	없다	66.7%	61.9%	61.8%	64.0%	(2, N=11,213)
술집 (소주방, 호프집 등)	있다	1.5%	4.8%	10.9%	4.2%	$\chi^2=274.913^{***}$
	없다	98.5%	95.2%	89.1%	95.8%	(2, N=11,178)
유흥업소/ 단란주점	있다	0.5%	1.5%	2.4%	1.2%	$\chi^2=45.221^{***}$
	없다	99.5%	98.5%	97.6%	98.8%	(2, N=11,230)
PC방 (심야시간대이용)	있다	12.6%	18.3%	27.0%	17.2%	$\chi^2=171.720^{***}$
	없다	87.4%	81.7%	73.0%	82.8%	(2, N=10,120)
노래방 (심야시간대이용)	있다	14.0%	24.9%	27.0%	20.5%	$\chi^2=201.544^{***}$
	없다	86.0%	75.1%	73.0%	79.5%	(2, N=10,109)
찜질방 (심야시간대이용)	있다	9.9%	11.1%	17.6%	11.6%	$\chi^2=66.647^{***}$
	없다	90.1%	88.9%	82.4%	88.4%	(2, N=10,063)
비디오/DVD방	있다	2.1%	3.1%	4.1%	2.8%	$\chi^2=21.539^{***}$
	없다	97.9%	96.9%	95.9%	97.2%	(2, N=11,235)
멀티방/ 룸카페	있다	10.0%	13.3%	13.7%	11.9%	$\chi^2=29.909^{***}$
	없다	90.0%	86.7%	86.3%	88.1%	(2, N=11,233)
나이트클럽/ 음악클럽	있다	0.2%	0.5%	1.3%	0.5%	$\chi^2=32.492^{***}$
	없다	99.8%	99.5%	98.7%	99.5%	(2, N=11,230)

노래방을 심야시간대에 이용한 경험은 중학생은 전체의 14.0%였는데,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은 각각 24.9%, 27.0%로 중학생 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chi^2(2)=201.544$ p<.001).

심야시간에 찜질방 이용 경험은 특성화고 재학생의 경우 17.6%로, 중학생(9.9%) 및 일반고 재학생(11.1%) 보다 많았다($\chi^2(2)=66.647$, p<.001).

최근 비디오방이나 DVD방의 선호가 낮아진 실태를 반영하듯 이러한 업소를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도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중학생 2.1%, 일반고 재학생 3.1%, 특성화고 재학생 4.1% 정도였다($\chi^2(2)=21.539$, p<.001).

반면 멀티방이나 룸카페 유경험자 비율은 세 집단 모두 10%를 상회하여 대조를 보였다. 최근 1년간 멀티방이나 룸카페를 이용한 청소년의 비율은 중학생 10.0%, 일반고와 특성화고 재학생이 각각 13.3%, 13.7%에 달하였다($\chi^2(2)=29.909$, p<.001).

모두 9개로 분류한 유해업소 가운데 청소년 유경험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나이트클럽/음악 클럽이었다. 중학생 0.2%, 일반고 재학생 0.5%, 특성화고 재학생 1.3%가 최근 1년간 그러한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2)=32.492$, $p<.001$).

(6) 폭력 피해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이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7개 항목 중 2개(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 사이버 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초등학교생과 특성화고 재학생의 유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이며, 향후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표 IV-34 폭력피해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음	있다	7.9%	6.7%	5.8%	8.9%	7.0%	$\chi^2=25.457^{***}$
	없다	92.1%	93.3%	94.2%	91.1%	93.0%	(3, N=15,630)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건으로 인해 다침	있다	4.3%	2.8%	1.7%	2.9%	2.9%	$\chi^2=54.695^{***}$
	없다	95.7%	97.2%	98.3%	97.1%	97.1%	(3, N=15,628)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있다	1.1%	1.2%	0.7%	1.1%	1.0%	$\chi^2=7.472$
	없다	98.9%	98.8%	99.3%	98.9%	99.0%	(3, N=15,630)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있다	2.5%	1.5%	1.2%	2.2%	1.8%	$\chi^2=28.945^{***}$
	없다	97.5%	98.5%	98.8%	97.8%	98.2%	(3, N=15,629)
왕따(따돌림)를 당함	있다	2.6%	1.4%	0.9%	1.7%	1.6%	$\chi^2=46.082^{***}$
	없다	97.4%	98.6%	99.1%	98.3%	98.4%	(3, N=15,627)
강제심부름 (빵셔틀 등)을 당함	있다	0.3%	0.3%	0.6%	0.7%	0.4%	$\chi^2=9.334^*$
	없다	99.7%	99.7%	99.4%	99.3%	99.6%	(3, N=15,629)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있다	0.9%	0.7%	0.7%	1.2%	0.8%	$\chi^2=4.828$
	없다	99.1%	99.3%	99.3%	98.8%	99.2%	(3, N=15,630)

지난 1년간 다른 학생,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보고한 청소년의 비율은 특성화고 재학생(8.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초등학교생(7.9%), 중학생(6.7%), 일반고 재학생(5.8%) 순이었다($\chi^2(3)=25.457$, $p<.001$).

또래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은 초등학생(43%)의 유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재학생과 중학생 집단이 각각 2.9%, 2.8%로 유사하였으며 일반고 재학생(1.7%)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chi^2(3)=54.695$, $p<.001$).

또래로부터 때리거나 괴롭히겠다는 위협을 당한 비율은 초등학생(25%)이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재학생(2.2%), 중학생(1.5%), 일반고 재학생(1.2%) 순이었다($\chi^2(3)=28.945$, $p<.001$).

왕따(따돌림)를 당한 경험은 앞서 살펴본 '위협 피해'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초등학생(26%)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 재학생(1.7%), 중학생(1.4%), 일반고 재학생(0.9%) 순이었다($\chi^2(3)=46.082$, $p<.001$).

빵셔틀과 같은 강제심부름을 당한 피해자 비율은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일반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응답률이 각각 0.6%, 0.7%인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0.3% 수준이었다($\chi^2(3)=9.334$, $p<.001$).

한편 또래에게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은 전체의 1.0%였으며, 사이버 상에서 또래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전체의 0.8%였다. 두 항목 모두 학교급간 차이는 미세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7) 성(性)적 피해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性)적 피해 경험 가운데 학교급 간 차이가 유의한 항목은 세 개였다. '성적인 모욕감이나 괴롭힘', '고의적 신체접촉/밀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이버 상에서의 스토킹/성희롱'은 특성화고 재학생의 피해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말이나 눈짓 혹은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초등학생(1.9%), 중학생(1.5%)의 경우 일반고(1.0%), 특성화고(1.1%) 보다 피해경험률이 높았다($\chi^2(3)=15.340$, $p<.01$).

타인으로부터 고의적 신체접촉이나 밀착을 당한 경험은 초등학생의 피해율(1.9%)이 가장 높았고 일반고 재학생(0.7%)이 가장 낮았다. 중학생, 특성화고 재학생의 피해율은 각각 1.0%, 0.9% 수준이었다($\chi^2(3)=10.680$, $p<.05$).

사이버 상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도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3)=7.899$, $p<.05$), 특성화고 재학생(0.7%)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0.2%)이 가장

낮았다. 중학생, 일반고 재학생의 응답 비율은 각각 0.5%, 0.4%였다.

성(性)적 피해 항목 중 학교급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항목은 ‘스토킹’($\chi^2(3)=7.688$, $p>.05$)과 ‘강제적 성관계 시도’($\chi^2(3)=1.231$, $p>.05$)였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최근 1년간 스톱킹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청소년은 전체의 0.4%, 강제적인 성관계 시도를 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0.1%였다.

표 IV-35 성(性)적 피해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스토킹을 당함	있다	0.7%	0.3%	0.4%	0.4%	0.4%	$\chi^2=7.688$
	없다	99.3%	99.7%	99.6%	99.6%	99.6%	(3, N=15,623)
성적 모욕감/ 괴롭힘을 당함	있다	1.9%	1.5%	1.0%	1.1%	1.4%	$\chi^2=15.340^{**}$
	없다	98.1%	98.5%	99.0%	98.9%	98.6%	(3, N=15,624)
고의적 신체접촉/ 밀착을 당함	있다	1.4%	1.0%	0.7%	0.9%	1.0%	$\chi^2=10.680^*$
	없다	98.6%	99.0%	99.3%	99.1%	99.0%	(3, N=15,623)
강제적 성관계 시도를 당함	있다	0.1%	0.1%	0.1%	0.1%	0.1%	$\chi^2=1.231$
	없다	99.9%	99.9%	99.9%	99.9%	99.9%	(3, N=15,621)
사이버상의 스토킹/성희롱을 당함	있다	0.2%	0.5%	0.4%	0.7%	0.4%	$\chi^2=7.899^*$
	없다	99.8%	99.5%	99.6%	99.3%	99.6%	(3, N=15,622)

(8)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최근 1년간 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특성화고 재학생(18.8%)이 가장 많았고 일반고(7.1%), 중학생(1.9%) 순이었다($\chi^2(2)=589.451$, $p<.001$).

표 IV-36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금지업소 아르바이트경험	있다	1.9%	7.1%	18.8%	6.6%	$\chi^2=589.451^{***}$
	없다	98.1%	92.9%	81.2%	93.4%	(2, N=11,347)

(9)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최근 1년간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과 관련한 7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된 반면, 3개 항목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항목 모두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화고 재학생의 피해률이 가장 높았고 근로가 금지된 연령대가 포함된 중학생 집단의 피해률이 가장 낮았다.

표 IV-37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변수	구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계	교차검증 (자유도, N)
급여를 늦게 받음	있다	7.9%	13.2%	16.3%	13.9%	$\chi^2=8.651^*$
	없다	92.1%	86.8%	83.7%	86.1%	(2, N=1,469)
급여를 못받거나 적게 받음	있다	5.6%	8.5%	9.5%	8.6%	$\chi^2=2.648$
	없다	94.4%	91.5%	90.5%	91.4%	(2, N=1,469)
초과근무를 요구 받음	있다	3.4%	19.0%	20.2%	17.6%	$\chi^2=28.473^{***}$
	없다	96.6%	81.0%	79.8%	82.4%	(2, N=1,468)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함	있다	2.8%	5.6%	8.8%	6.7%	$\chi^2=10.237^{**}$
	없다	97.2%	94.4%	91.2%	93.3%	(2, N=1,469)
고용주/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함	있다	2.2%	3.8%	5.1%	4.2%	$\chi^2=3.126$
	없다	97.8%	96.2%	94.9%	95.8%	(2, N=1,469)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함	있다	1.7%	5.6%	8.2%	6.3%	$\chi^2=10.879^{**}$
	없다	98.3%	94.4%	91.8%	93.7%	(2, N=1,470)
부당하게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지 못함	있다	1.1%	3.5%	3.8%	3.3%	$\chi^2=3.161$
	없다	98.9%	96.5%	96.2%	96.7%	(2, N=1,469)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를 늦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학교급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는데($\chi^2(2)=8.651, p<.001$), 특성화고 재학생 16.3%, 일반고 재학생 13.2%, 중학생의 7.9%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급여를 아예 못 받거나 적게 받은 경험은 중학생 5.6%, 일반고 재학생 8.5%, 특성화고 재학생 9.5%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chi^2(2)=2.648, p>.05$).

초과근무 요구는 청소년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근로부당 행위로 확인되었는데, 중학생(3.4%)보다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일반고, 특성화고 재학생의 피해경험률이 각각 19.0%, 20.2%였다($\chi^2(2)=28.473$, $p<.001$). 초과 근무를 했지만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한 경험에서도 학교급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chi^2(2)=10.237$, $p<.01$). 특성화고 재학생(8.8%)이 일반고 재학생(5.6%)과 중학생(2.8%)에 비해 높은 수준의 피해경험률을 보였다.

아르바이트 도중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험은 특성화고(8.2%), 일반고(5.6%), 중학생(1.7%) 순이었다($\chi^2(2)=10.879$, $p<.01$).

고용주 혹은 관리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응답자의 4.2%($\chi^2(2)=3.126$, $p>.05$), 부당하게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은 3.3%($\chi^2(2)=3.161$, $p>.05$) 수준이었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가운데 특성화고 재학생의 피해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3. 보호요인의 영향력과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1) 유해매체 이용의 위험요인

유해매체 이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38>과 같다. 모형A1은 통제변수만 투입된 기본모형으로, 투입된 변수 중 성별, 연령, 거주지역의 도시화정도에서는 중소도시 대비 농어촌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유해매체 이용 정도가 높았고($B=4.532$, $p<.001$),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해매체 이용 정도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B=.466$, $p<.001$).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비교할 때, 대도시 거주 청소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B=0.512$, $p>.05$), 농어촌 거주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정도는 유의미하게 높았다($B=1.154$, $p<.01$).

모형A2부터 모형A9까지의 8개의 분석모형은 통제변수에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 방과후 보호자 부재 등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선정한 위험요인을 각각 하나씩만 투입한 결과이다.

투입된 모든 위험요인은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정도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성적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유해매체 이용 정도가 더 높음($B=0.521, p<.05$)
- 방과 후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유해매체 이용 정도가 더 높음($B=0.754, p<.01$)
- 부모가 모두 없거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친(兩親)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유해매체 이용 정도가 높음($B=1.244,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증가함($B=0.253,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정도가 높아짐($B=1.548,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유해매체, 물질, 업소 접근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증가함($B=0.580,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유해매체, 물질,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 용인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증가함($B=0.472,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해체의 특성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증가함($B=0.306, p<.001$)

표 IV-38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의 위험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A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4.532	0.370	0.252	17.955***	.165***
	연령	0.466	0.136	0.071	6.578***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512	0.042	0.271	1.888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1.154	0.065	0.396	2.917**	
모형A2	학교성적(불만)	0.521	0.042	0.263	1.977*	.166*
모형A3	방과 후 보호자 부재	0.754	0.059	0.260	2.897**	.167**
모형A4	비양친(非兩親) 가정	1.244	0.063	0.403	3.088**	.168**
모형A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0.253	0.054	0.095	2.650**	.168**
모형A6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환경	1.548	0.067	0.474	3.263**	.169**
모형A7	지역사회 내 유해 물질 및 업소 접근성	0.580	0.179	0.068	8.552***	.194***
모형A8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0.472	0.150	0.064	7.329***	.187***
모형A9	지역사회해체	0.306	0.143	0.045	6.845***	.184***

위험요인으로서 부모의 부재는 면접조사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부모부재의 부정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반면 이러한 사안에 부모와 정부 간의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다.

- 조손가정 이런데는 정말 (보호자의 지도감독 효과를 기대하기)어려워요. (이웃에)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집에 가봤자 애가 정 붙일 데가 게임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11시간 게임을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애한테 너 그러면 있잖아 죽는거 알지? 애가 딱하는 말이 관찰아요. 50분 하고 10분 쉬어요. (P01)
-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걸 만들어 달라 얘기하는데 게임보다 더 재밌는건 없어요. 게임은 게임이고 그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의식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누구의 책임이냐.. 부모의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냐.. (P03)

특히 비재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자퇴할 때 청소년의 권리차원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랜덤채팅의 유해성에 대한 심의와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청소년의 미성숙을 근거로 연령에 따른 차별적 규제가 아닌,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는 보호권 측면에서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학교에서 여러 가지 길을 더 생각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퇴하면 인생 망한다 뭐 그런 인식 말고.. 그게 청소년 권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Y03)
- (랜덤채팅) 저는 사회적 약자로서 청소년 관련 심의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냐면 어릴수록 자기가 보는 매체나 또래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1인 매체, 접근성이 무한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Y01)
- 합법적인 음란물을 성인은 그거 보고 아 이런 음란물이고 내가 실제 하면 안 되는거고 이걸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잖아요. 그걸 청소년이 하지 못할 거라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잘 못합니다 라고 반증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Y01)

(2) 유해물질 사용의 위험요인

다음의 <표 IV-39>는 유해물질 사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변인 및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형 B1은 기본모형이며 통제변수만 투입된 것이다. 이 가운데 성별, 연령에서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관찰되었는데 여자에 비해 남자의 유해물질 사용 정도가 많았고($B=0.917, p<.001$),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해물질 사용 정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B=0.373, p<.001$). 반면 거주 지역의 도시화 정도는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9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의 위험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B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0.917	0.119	0.170	5.409***	.047***
	연령	0.373	0.174	0.048	7.847***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054	0.007	0.182	0.299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443	0.039	0.266	1.662	
모형B2	학교성적(불만)	0.044	0.006	0.177	0.249	.047
모형B3	방과 후 보호자 부재	0.640	0.081	0.174	3.678***	.052***
모형B4	비양친(非兩親) 가정	0.797	0.065	0.269	2.959**	.051**
모형B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0.051	-0.018	0.064	-0.801	.047
모형B6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환경	0.339	0.023	0.317	1.071	.046
모형B7	지역사회 내 유해 물질 및 업소 접근성	0.273	0.135	0.046	5.980***	.063***
모형B8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0.174	0.088	0.043	4.001***	.054***
모형B9	지역사회해체	0.202	0.151	0.030	6.781***	.068***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과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관련성이 확인된 위험요인은 방과 후 보호자 부재, 비양친 가정, 지역사회 내 유해물질 및 업소에 대한 접근성, 유해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그리고 지역사회해체이다. 한편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B=0.044$, $p>.0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B=-0.051$, $p>.05$), 안전하지 않은 학교 주변환경($B=0.339$, $p>.05$)은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방과 후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유해물질 사용 정도가 높음($B=0.640$, $p<.001$)
- 부모가 모두 없거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친(兩親)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유해물질 사용 정도가 높음($B=0.797$,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유해매체, 물질, 업소 접근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증가함($B=0.273$,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유해매체, 물질,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 용인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증가함($B=0.174$,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해체의 특성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증가함($B=0.202$, $p<.001$)

이와 관련하여 면접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술, 담배 사용을 지위비행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술, 담배를 포함한 유해물질의 폐해가 성인과 비교할 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청소년한테 뭐 담배나 술 그런 거 금지하는 거 비디오방 같은데 출입 못하게 하는거 그 논리는 청소년 이 뇌도 발달이 안 된 상태라는 가정도 있을 테고 실제로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크니까요. 근데 간 기능이 얼마정도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음주 안돼 이르지 않는다구요. 위험 성에 대해 자기가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청소년보호지 년 모를테니까 내가 벌주 겠어 식으로 나오는거 자체가 혐오의 발달이라고 봐요 저는. (Y01)

(3) 유해업소 이용의 위험요인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위험요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IV-40>과 같다. 모형 C1은 통제변수만 포함된 기본모형이다. 통제변수 가운데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여자에 비해 남자의 유해업소 이용 정도가 많았다($B=2.331$, $p<.001$). 통제변인이 투입된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각각 하나씩 추가하여 검증한 분석결과는 모형 C2부터 모형 C9에서 확인할 수 있다. 8개의 위험요인 중 방과 후 보호자 부재, 지역사회 내 유해물질 및 업소에 대한 접근성, 유해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그리고 지역사회해체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B=0.586$, $p>.05$), 비양친가정($B=0.674$, $p>.0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B=-0.144$, $p>.05$), 안전하지 않은 학교 주변환경($B=0.963$, $p>.05$)은 청소년 유해업소 사용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과 후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유해업소 이용 정도가 높음($B=1.147,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유해매체, 물질, 업소 접근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증가함($B=0.576,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유해매체, 물질,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 용인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증가함($B=0.485,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해체의 특성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증가함($B=0.312, p<.001$)

표 IV-40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의 위험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C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2.331	0.156	0.334	6.975***	.025***
	연령	0.037	0.009	0.094	0.398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690	-0.046	0.359	-1.920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573	-0.026	0.524	-1.093	
모형C2	학교성적(불만)	0.586	0.039	0.349	1.679	.027
모형C3	방과 후 보호자 부재	1.147	0.074	0.344	3.336***	.031***
모형C4	비양친(非兩親) 가정	0.674	0.028	0.536	1.258	.027
모형C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0.144	-0.025	0.127	-1.139	.026
모형C6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환경	0.963	0.034	0.628	1.532	.027
모형C7	지역사회 내 유해 물질 및 업소 접근성	0.576	0.145	0.090	6.368***	.045***
모형C8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0.485	0.126	0.086	5.648***	.041***
모형C9	지역사회해체	0.312	0.119	0.059	5.242***	.039***

면접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이용과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자주 목격되며, 경찰단계에서 적절한 초기대응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DVD방, 멀티방 이런 데 피해청소년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P03)
- 작은 업소 이렇게 운영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성추행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면 뭐 경찰도 귀찮아하고 (이게)별일 아닌 거야.. (P05)

특히 비재학생의 경우 학교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보호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사안에 있어 청소년을 성인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하는 접근은 청소년이 피해사실을 쉽게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학교 바깥으로 나오면 갑자기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가 확 나오곤 하니까 문제 될 수 있는데 까놓고 말해서 학교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학교를 나왔으니까 지역사회가 될 수 있고 정부가 될 수 있고 시민으로서 보호해 주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호대상으로서 충분히 보호받고 있느냐의 문제지 비재학, 재학 문제로는(볼 수 없어요). (Y01)
- 저는 보호가 오히려 청소년을 더 깊은 곳으로 내몰리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속도 안 걸리려고.. 경찰이나 공권력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무슨 일이 나도 신고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자기도 잡혀가니까 (Y03)

(4) 폭력가해행위의 위험요인

폭력가해행위의 위험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표 IV-41>). 먼저 모형 D1은 통제변수만 투입된 기본모형이며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여자에 비해 남자의 폭력가해행위 정도가 높았다($B=1.809, p<.001$). 모형 D2부터 모형 D9는 통제변수에 8개의 위험요인이 각각 하나씩만 투입된 것으로 유해물질 사용의 위험요인과 동일한 4개 위험요인(방과 후 보호자 부재, 지역사회 내 유해물질 및 업소에 대한 접근성, 유해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지역사회해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은 변수는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B=0.105, p>.0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B=0.097, p>.05$), 안전하지 않은 학교 주변환경($B=0.015, p>.05$)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과 후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폭력가해행위 정도가 높음($B=0.528, p<.05$)
- 부모가 모두 없거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친(兩親)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폭력가해행위 정도가 높음($B=0.703,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유해매체, 물질, 업소 접근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 정도가 높아짐($B=0.424,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유해매체, 물질,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 용인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증가함($B=0.414,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해체의 특성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증가함($B=0.265, p<.001$)

표 IV-41 청소년 폭력가해행위의 위험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D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1.809	0.190	0.211	8.573***	.039***
	연령	-0.058	-0.022	0.059	-0.974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029	0.003	0.227	0.130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428	0.031	0.331	1.293	
모형D2	학교성적(불만)	0.105	0.011	0.220	0.475	.039
모형D3	방과 후 보호자 부재	0.528	0.053	0.217	2.429*	.043*
모형D4	비양친(非兩親) 가정	0.703	0.046	0.336	2.093*	.041*
모형D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0.097	0.027	0.080	1.212	.040
모형D6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환경	0.015	0.001	0.396	0.038	.039
모형D7	지역사회 내 유해 물질 및 업소 접근성	0.424	0.168	0.057	7.458***	.065***
모형D8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0.414	0.169	0.054	7.704***	.067***
모형D9	지역사회해체	0.265	0.158	0.037	7.089***	.062***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청소년의 집단면접에서도 사회전반의 폭력적 문화와 이에 대한 용인이 청소년의 폭력 등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자녀학대를 포함한 가정 내 폭력은 여전히 쉽게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폭력적 상황에서 친권자(보호자) 보다 아동과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우리사회가 잘못된 부분이.. 욕을 많이 했더니 시원해졌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왜 욕으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욕 실컷하면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되는거 아니예요? (P03)
- (보호자 동의로 가름하는 것에 대해)한국은 가정 내 학대가 공론화되는 게 굉장히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Y01)

(5)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위험요인

<표 IV-42>는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위험요인에 대한 검증결과이다. 앞의 분석과 달리 종속변수인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이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이기 때문에 일반 선형회귀분석이 아닌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기본모형인 E1에는 통제변수만 포함하였는데 성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앞의 분석에서 남성이 여성 보다 유해매체 및 문제행동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경우 여자청소년의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text{Exp}(B)=0.711$, $p<.01$).

표 IV-42 청소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위험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Exp(B)	표준오차	Wald값	Nagelkerke R^2
모형E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0.342	0.711	0.129	6.973**	.007
	연령	0.036	1.036	0.036	1.002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006	1.006	0.137	0.002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113	1.119	0.197	0.327	
모형E2	학교성적(불만)	0.720	2.055	0.144	24.907***	.030
모형E3	방과 후 보호자 부재	0.409	1.505	0.128	10.252**	.016
모형E4	비양친(非兩親) 가정	0.410	1.507	0.183	5.019*	.011
모형E5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0.127	1.135	0.048	7.043**	.013
모형E6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환경	0.550	1.733	0.207	7.073**	.013
모형E7	지역사회 내 유해 물질 및 업소 접근성	0.152	1.164	0.034	20.063***	.024
모형E8	유해 물질 및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용인	0.132	1.142	0.032	17.161***	.022
모형E9	지역사회해체	0.146	1.157	0.023	40.695***	.043

모형 E2부터 E9는 통제변수가 투입된 상황에서 8개의 위험요인을 하나씩만 추가한 결과 다음과 같이 모든 위험요인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 학교성적에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음($\text{Exp}(B)=2.055$, $p<.001$)
- 방과 후 보호자가 부재한 가정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음($\text{Exp}(B)=1.505$, $p<.01$)
- 부모가 모두 없거나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 양친(兩親)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음($\text{Exp}(B)=1.507$,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아짐($\text{Exp}(B)=1.135$,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아짐($\text{Exp}(B)=1.733$,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유해매체, 물질, 업소 접근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아짐($\text{Exp}(B)=1.164$,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유해매체, 물질,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 용인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아짐($\text{Exp}(B)=1.142$,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해체의 특성이 커질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높아짐($\text{Exp}(B)=1.157$, $p<.001$)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면접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련하여 현행 규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특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게임 방송을 봐요. 유튜브에 나오는 방송들 “열두 시 넘어서 막합니다. 그럴 때 뚫는 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방송에서 다 소개해주고 애들이 먼저 찾아다니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해도 실효성에 대해 고민을 해야해요. (P03)
- 이렇게 피튀기고 이런걸 어떻게 하니(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게 외국꺼라서 아직 정식 발매가 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규제가 아직 안되는 상황이.. (P02)

2)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1) 유해매체 이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 검증이 이루어진 잠재적 보호요인은 모두 12개이며 다음의 <표 IV-43>은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에 대한 12개의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를 제시한 것이다. 다변량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위험요인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의 도시화정도가 통제변수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모형 F1에는 통제변수만 포함되었고 종속변수가 유해매체 이용이므로 모형 A1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성별($B=4.532$, $p<.001$), 연령($B=0.466$, $p<.001$), 그리고 중소도시 대비 농어촌 거주($B=1.154$, $p<.01$)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모형 F2부터 모형 F13은 통제변수만 투입된 상황에서 잠재적 보호요인을 각각 하나씩 추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통제변수의 영향력이 모두 고려된 상황에서 추가투입 된 잠재적 보호요인은 모두 종속변수와 모두 부(-)적으로 관련성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43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F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4.532	0.370	0.252	17.955***	.165***
	연령	0.466	0.136	0.071	6.578***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512	0.042	0.271	1.888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1.154	0.065	0.396	2.917**	
모형F2	도덕적 태도	-0.576	-0.201	0.058	-9.995***	.208***
모형F3	저항기술	-0.560	-0.231	0.051	-10.996***	.213***
모형F4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0.303	-0.087	0.072	-4.209***	.172***
모형F5	부모의 지도감독	-0.251	-0.095	0.054	-4.655***	.174***
모형F6	부모의 자녀존중	-0.253	-0.113	0.045	-5.555***	.177***
모형F7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	-0.252	-0.083	0.063	-4.032***	.172***
모형F8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	-0.603	-0.189	0.066	-9.178***	.198***
모형F9	교사로부터의 지지	-0.182	-0.096	0.038	-4.727***	.174***
모형F10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416	-0.127	0.070	-5.964***	.179***
모형F11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0.356	-0.097	0.077	-4.647***	.174***
모형F1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169	-0.071	0.050	-3.394***	.170***
모형F13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0.223	-0.091	0.052	-4.337***	.174***

잠재적 보호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576$, $p<.001$)
- 청소년의 저항기술이 적절할수록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560$,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청소년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303$,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251$,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253$,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이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252$,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가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603$,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182$,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 내 다양한 참여기회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416$,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가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356$,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169$, $p<.001$)
- 지역사회환경이 만족스러울수록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이 감소함($B=-0.223$, $p<.001$)

특히 학부모 면접조사에서는 청소년 스스로의 보호역량을 함양하는 지원 확대와 (학교)교사들이 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과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과 질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요. 게임은 게임이고 그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의식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아무도 안 시켜주죠. 누구의 책임이나 부모의 책임이나.. (학교)선생님들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몰라 게임을. 그러니까 막 편하게 야 하지만 나쁜거래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거든요. (P03)
- 강사가 콘텐츠 게임역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아니 이게 게임역사가 왜 필요냐고.. 게임의 긍정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역사 그것도 (적절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P03)

이와 함께 비재학생들은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용인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폭력물 등의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을 포함한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제한하기 이전에 이러한 유해매체가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 단속은 단죄죠. 그냥. 저는 공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문화 자체가 계속 자극적인 걸 찾다보니까 혐오가 아무렇지 않은 게 돼버리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Y01)
- 1인 이상한 창작물 보는 이유가 자기보다 망한 삶 지켜보는 게 좋아서라고.. 사람들 다들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 자체를 해결해야 그런 문화도 사라지고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Y03)
- 폭력적인 미디어라고 일컫는 어떤 소비하는 문화.. 하위문화가 퇴보했다고 보거든요. 뽐기 문화 이런 청소년문화도 상당히 퇴보했다고 보는데 폭력적 미디어 소비하는 문화적 현상 자체도 그렇게 결이 다른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라 봐야 되지 않은지. (Y02)

(2) 유해물질 사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의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성 검증 분석방법과 절차는 ‘유해매체 사용’의 경우와 동일하다. 종속변수인 유해물질 사용이 연속변수이므로 다변량 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표 IV-44>). 모형 G1은 종속변수가 유해물질 사용이고 통제변수만 포함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모형 B1과 동일하다. 모형 B1에서와 같이 성별($B=0.917, p<.001$), 연령($B=0.373, p<.001$)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형 G2부터 모형 G13는 통제변수에 잠재적 보호요인을 각각 하나씩 추가한 것이다. 12개의 잠재적 보호요인 가운데 ‘부모의 지도감독($B=-0.037, p>.05$)’, ‘교사로부터의 지지($B=-0.020, p>.05$)’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속변수와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의 영향력이 모두 고려된 상태에서

추가로 투입된 잠재적 보호요인과 종속변수(유해물질 사용)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4 청소년 유해물질 사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G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0.917	0.119	0.170	5.409***	.047***
	연령	0.373	0.174	0.048	7.847***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054	0.007	0.182	0.299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443	0.039	0.266	1.662	
모형G2	도덕적 태도	-0.185	-0.103	0.040	-4.683***	.058***
모형G3	저항기술	-0.543	-0.356	0.033	-16.381***	.160***
모형G4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0.152	-0.069	0.048	-3.149**	.051**
모형G5	부모의 지도감독	-0.037	-0.022	0.036	-1.008	.047
모형G6	부모의 자녀존중	-0.073	-0.052	0.031	-2.380*	.049*
모형G7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	-0.252	-0.133	0.041	-6.081***	.064***
모형G8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	-0.340	-0.170	0.044	-7.669***	.074***
모형G9	교사로부터의 지지	-0.020	-0.017	0.026	-0.769	.047
모형G10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191	-0.093	0.047	-4.053***	.055***
모형G11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0.178	-0.077	0.052	-3.433***	.052***
모형G1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110	-0.073	0.033	-3.294**	.051**
모형G13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0.132	-0.086	0.034	-3.828***	.053***

-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185$, $p<.001$)
- 청소년의 저항기술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543$,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청소년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152$,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이용이 감소함($B=-0.037$,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073$,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이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 ($B=-0.252$,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가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340$,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 내 다양한 참여기회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 ($B=-0.191$,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가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178$,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110$, $p<.01$)
- 지역사회환경이 만족스러울수록 청소년의 유해물질 사용이 감소함($B=-0.132$, $p<.001$)

이와 함께 학부모 면접조사에서도 유해물질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정화하는 것과 별도로 교육적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 지역사회 내의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충하는 적극적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저는 학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뭐냐하면 생활스포츠..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체력이 확 떨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요, 발산을 해 줘야하는데 막 웅크려 앉아 있으니까.. 좀 즐기고 재밌는 시간으로.. 친화환경 같이 가면 좋겠다하는.. (P07)
- 흡연.. 그걸 규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흡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끔.. (P02)

청소년들도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특히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이러한 권리 차원에서의 충분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 스스로의 보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교육.. 저는 공교육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비재학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나 그런 거에서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 해 주는 게 바깥 사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Y01)

(3) 유해업소 이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표 IV-45>). 종속변수(청소년 유해업소 이용)가 연속변수이므로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H1은 기본모형이며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만 투입되었다. 이 모형은 앞서 제시된 C1과 동일한데, 모형 H1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된 변수는 성별($B=2.331$, $p<.001$)이 유일하였다.

도덕적 태도를 비롯하여 12개의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검증 결과는 모형 H2부터 모형 H13에서 볼 수 있다. 통제변수와 잠재적 보호요인 하나씩만 투입된 것이며 12개의 모형 가운데 9개 모형에서 추가투입된 잠재적 보호요인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반면 부모의 지도감독($B=0.053$, $p>.05$), 부모의 자녀존중태도($B=-0.038$, $p>.05$)와 학교 내 다양한 참여기회($B=-0.176$, $p>.05$) 변수는 종속변수(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 효과의 의미와 통계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45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H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2.331	0.156	0.334	6.975***	.025***
	연령	0.037	0.009	0.094	0.398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690	-0.046	0.359	-1.920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573	-0.026	0.524	-1.093	
모형H2	도덕적 태도	-0.477	-0.137	0.077	-6.164***	.044***
모형H3	저항기술	-0.778	-0.261	0.067	-11.554***	.087***
모형H4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0.214	-0.050	0.095	-2.242*	.028*
모형H5	부모의 지도감독	0.053	0.016	0.072	0.735	.025
모형H6	부모의 자녀존중	-0.038	0.014	0.061	-0.636	.026
모형H7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	-0.211	-0.057	0.083	-2.553*	.028*
모형H8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	-0.257	-0.066	0.088	-2.917**	.030**
모형H9	교사로부터의 지지	-0.139	-0.060	0.051	-2.722**	.029**
모형H10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176	-0.044	0.093	-1.892	.025
모형H11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0.260	-0.057	0.102	-2.545*	.029*
모형H1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215	-0.073	0.066	-3.257**	.031**
모형H13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0.215	-0.071	0.068	-3.145**	.030**

-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477, p<.001$)
- 청소년의 저항기술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778,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214,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이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211,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가 클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257,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커질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139,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가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260,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이 감소함($B=-0.215, p<.01$)
- 지역사회환경이 만족스러울수록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정도가 낮아짐($B=-0.215, p<.01$)

이와 관련하여 면접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문제점과 한계도 있지만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소규모 영세업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 유해환경감시단 해보면 좋은 점도 많아요. 주점들이 사장님들이 장사도 안돼서 죽을 맛인데 와서 이렇게 우리를 신경질 나게 한다.. 근데 조그만 주점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P03)
- 애들이 놀 만한 데가 없잖아요. PC방 외에는.. 생활스포츠 이런 거 하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P04)
-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센터 거기도 모든 게 회원제고 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자유자재로 좀 놀 수 있어야 하는데 항상 뭔가 풀로 차 있는.. 뭔가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P01)

(4) 폭력가해행위의 잠재적 보호요인

청소년 폭력가해행위의 잠재적 보호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음의 <표 IV-4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모형 I1에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 변수만 포함되었다. 이 모형은 폭력가해행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변수만 투입된 모형 D1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성별($B=1.809$, $p<.001$)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었다.

폭력가해행위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는 모형 I2부터 모형 I13까지에서 볼 수 있는데 통제변수만 포함된 기본모형에 특정 잠재적 보호요인을 하나씩 추가한 것이다. 12개의 잠재적 보호요인 가운데 10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B=-0.068$, $p>.05$)와 교사로부터의 지지($B=-0.047$, $p>.05$) 변수는 청소년 폭력가해행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청소년 폭력가해행위와 부(-)적으로 관련성이 입증된 잠재적 보호요인과 종속변수와의 통계적 관련성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483$, $p<.001$)
- 청소년의 저항기술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316$,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156$,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144$,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이 클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220$, $p<.001$)

표 IV-46 청소년 폭력가해행위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β	표준오차	t값	R ²
모형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1.809	0.190	0.211	8.573***	.039***
	연령	-0.058	-0.022	0.059	-0.974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029	0.003	0.227	0.130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428	0.031	0.331	1.293	
모형2	도덕적 태도	-0.483	-0.216	0.048	-9.972***	.084***
모형3	저항기술	-0.316	-0.167	0.043	-7.292***	.064***
모형4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0.068	-0.025	0.060	-1.129	.040
모형5	부모의 지도감독	-0.156	-0.076	0.045	-3.448***	.045***
모형6	부모의 자녀존중	-0.144	-0.083	0.038	-3.779***	.045***
모형7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	-0.220	-0.093	0.052	-4.235***	.047***
모형8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	-0.514	-0.207	0.055	-9.397***	.079***
모형9	교사로부터의 지지	-0.047	-0.032	0.032	-1.435	.040
모형10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250	-0.098	0.059	-4.269***	.048***
모형11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0.300	-0.104	0.064	-4.683***	.049***
모형1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132	-0.071	0.042	-3.170**	.044**
모형13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0.147	-0.076	0.043	-3.402***	.045***

- (청소년이 인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가 클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514$,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 내 다양한 참여기회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250$,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가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300$, $p<.001$)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가 있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폭력행위 정도가 낮아짐($B=-0.132$, $p<.01$)
- 지역사회환경이 만족스러울수록 청소년의 폭력가해행위가 감소함($B=-0.147$, $p<.001$)

한편 학부모 면접조사에서는 또래의 친사회적인 행동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활동 및 체험프로그램이 가출, 자살생각과 같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감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자기는 자살도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뮤지컬을 통해서 발산하는 법과 또 연기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 것들을 표출해 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경기도도 꿈의 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무료로 진행되는 거라서 금속공예? 이런 것도 있고 주말반도 있고 발표도 하고.. (P02)
- (가출 한 적이 있는 친구가)가출해 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너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P06)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도 특히 청소년의 폭력과 같은 위험행동에 있어 학교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규정이나 지도방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의 운영규정과 지도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규정과 지도방식을 청소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 학교에서 내가 비재학생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선택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들을 충분히 제대로 인품해 주고 있는가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꼈구요. 학교에서 (자퇴) 의지를 밝힌 순간 너는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 안 해도 되는 사람 취급 들어가거든요. (Y01)

(5)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잠재적 보호요인

<표 IV-47>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잠재적 보호요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모형 J1은 기본모형이며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거주지역의 도시화 정도만 포함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형 E1과 동일한데, 성별($\text{Exp}(B)=0.711$, $p<.01$)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V-47 청소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모형	변수	B	Exp(B)	표준오차	Wald값	Nagelkerke R ²
모형J1 (기본모형)	성별 (여=0, 남=1)	-0.342	0.711	0.129	6.973**	.007
	연령	0.036	1.036	0.036	1.002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0.006	1.006	0.137	0.002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0.113	1.119	0.197	0.327	
모형J2	도덕적 태도	-0.211	0.810	0.031	46.208***	.049
모형J3	저항기술	-0.062	0.940	0.025	6.007*	.013
모형J4	부모-자녀간 친밀한 관계	-0.077	0.926	0.035	4.962*	.011
모형J5	부모의 지도감독	-0.082	0.922	0.027	9.256**	.015
모형J6	부모의 자녀존중	-0.058	0.944	0.022	6.731**	.013
모형J7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	-0.085	0.918	0.032	7.311**	.014
모형J8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	-0.120	0.887	0.033	12.923***	.019
모형J9	교사로부터의 지지	-0.045	0.956	0.019	5.363*	.012
모형J10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038	0.962	0.035	1.181	.008
모형J11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0.063	0.939	0.039	2.595	.010
모형J1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0.049	0.952	0.025	3.822	.010
모형J13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0.049	0.952	0.026	3.579	.010
모형J14	청소년보호를 위한 앱/소프트웨어 사용	-0.080	0.923	0.071	1.262	.008

잠재적 보호요인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모형 J2부터 모형 J14이며 청소년 유해매체 접촉 및 문제행동의 다섯 가지 유형 중 유일하게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이 종속변수로 사용된 분석에서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앱이나 소프트웨어 사용’이 하나 더 추가되어 총 13개 잠재적 보호요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새로 추가된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 검증 결과는 모형 J1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청소년보호를 위한 앱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text{Exp}(B)=0.933$, $p>.05$)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학교 내 다양한 참여기회($\text{Exp}(B)=0.962$, $p>.05$),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Exp(B)=0.939, $p>.05$),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기회(Exp(B)=0.952, $p>.05$),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Exp(B)=0.952, $p>.05$) 역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들이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유해물질 사용, 유해업소 이용, 그리고 폭력가해행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만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경우 그러한 긍정적인 기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개인차원, 가족차원, 친구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은 예외 없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과 부(－)적 관련성을 보여 앞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교차원의 변수 가운데 ‘관계’적 특성이 강한 교사로부터의 지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과 부(－)적 관련성이 잠재적 보호요인의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 (Exp(B)=0.810, $p<.001$)
- 청소년의 저항기술이 적절할수록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 (Exp(B)=0.940,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Exp(B)=0.926, $p<.05$)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Exp(B)=0.922,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청소년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Exp(B)=0.944,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이 클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Exp(B)=0.918, $p<.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가 클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Exp(B)=0.887, $p<.001$)
- (청소년이 인식하는) 교사로부터의 지지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가능성이 낮아짐(Exp(B)=0.956, $p<.05$)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면접조사에는 교내 체육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보호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자기가 끌등을 한데요, 뒤에 아무도 없데. 시험기간에도 어차피 (공부)안하고 애들이나 방해하고.. 그래도 그래도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체육을 좋아하는데 그걸 하고 있어서 학교를 다닌다고 그래요..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어떻게 하면 이런 걸 못하게 하나 그런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게 대해서 좀 우리가.. (P04)
- 부모하고 시민사회가 그니까 부모가 못하더라도 아이 스스로 역량이 키워지도록 누군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거잖아요. (P03)

특히 면접대상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제보다 사회문화 전반의 개선과 정화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은 피해자, 성인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탈피하고 매체의 역기능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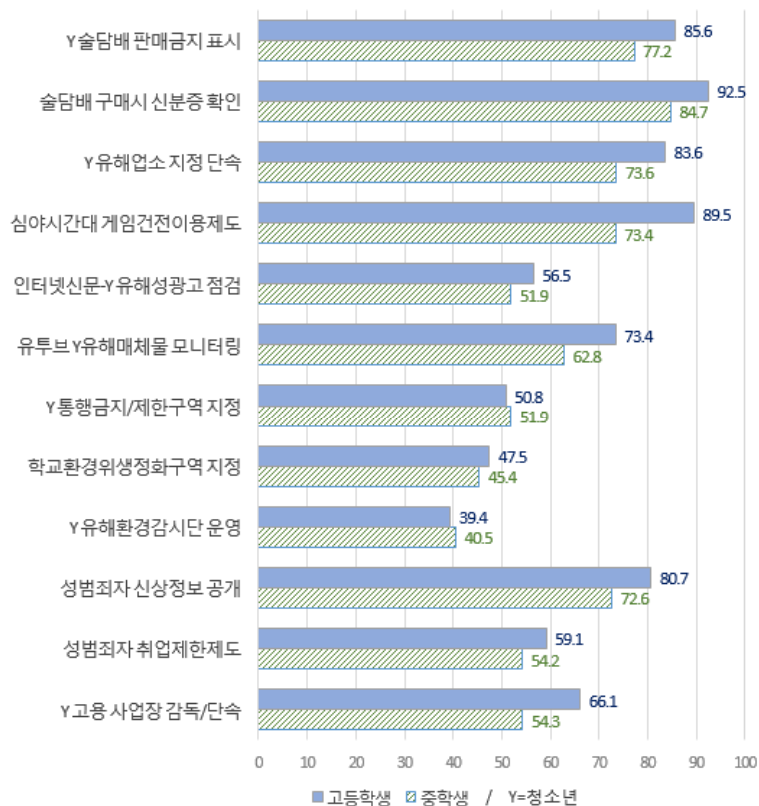
- 규제나 단속도 청소년 때문이 아니라 혐오나 이런 차원에서(접근해야 하고).. 이런 콘텐츠는 빼고 하자 이런식으로 규제가 되어야 되는거지 굳이 막 청소년을 보호하자 해서 규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Y03)
- (랜덤채팅) 청소년이 무조건 피해를 받는 입장이다 라는 건 좀 바뀌야 되는 것 같아요. (Y03)

3)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1) 청소년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 인지율

청소년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 여부와 인지율의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그림 IV-1]). 모든 항목에서 고등학생의 인지율이 중학생 보다 높았으나 청소년 통행 금지/제한 지역 지정($\chi^2(1)=0.26, P>.05$),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 지정($\chi^2(1)=0.93, p>.0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chi^2(1)=0.23, p>.05$)의 경우 학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각 항목들에 대한 인지율이 대략 50%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 열 명 중 절반 이상이 이 사업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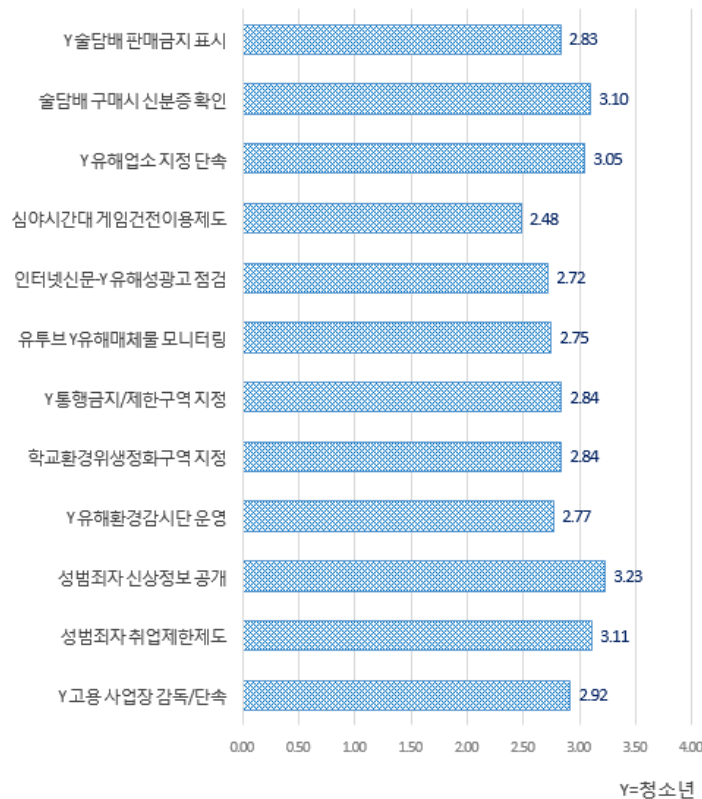
반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chi^2(1)=23.70$, $p<.001$),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chi^2(1)=31.09$, $p<.001$),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지정단속($\chi^2(1)=30.31$, $p<.001$), 심야시간대 게임 건전이용제도(첫다운제)($\chi^2(1)=87.91$, $p<.001$), 인터넷신문 청소년 유해성 광고 점검($\chi^2(1)=4.22$, $p<.05$), 유튜브(You Tube) 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chi^2(1)=26.10$, $p<.00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chi^2(1)=18.15$, $p<.00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chi^2(1)=4.93$, $p<.05$),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감독/단속($\chi^2(1)=29.36$, $p<.001$)에 대한 인지율은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인지율이 높았던 보호사업 및 활동 다섯 가지를 인지율이 높은 순서대로 제시하면, 청소년이 대상 술/담배 구입시 신분증 확인(중 84.7% 고 92.5%), 심야시간대 게임건전이용제도(첫다운제)(중 73.4% 고 89.5%),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중 77.2% 고 85.6%),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 단속(중 73.6% 고 83.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중 72.6% 고 80.7%) 순이며 이들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70%를 상회하여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IV-1】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 인지율

(2) 청소년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의 유용성 평가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12가지)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4점 척도, ①전혀 도움이 안 됨~④매우 도움이 됨). 응답자의 평균값은 최저 2.48점부터 최고 3.23점의 범위를 보였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평가된 항목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M=3.23, sd=0.80)였다. 그 다음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M=3.11, sd=0.83), 청소년이 술/담배 구입 시 신분증 확인제도(M=3.10, sd=0.83), 청소년 유해업소(출입, 고용금지 등) 지정 단속(M=3.05, sd=0.76) 순이며 이 항목들의 평균값은 3.0점(‘도움이 됨’)을 상회하였다.



【그림 IV-2】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의 유용성 정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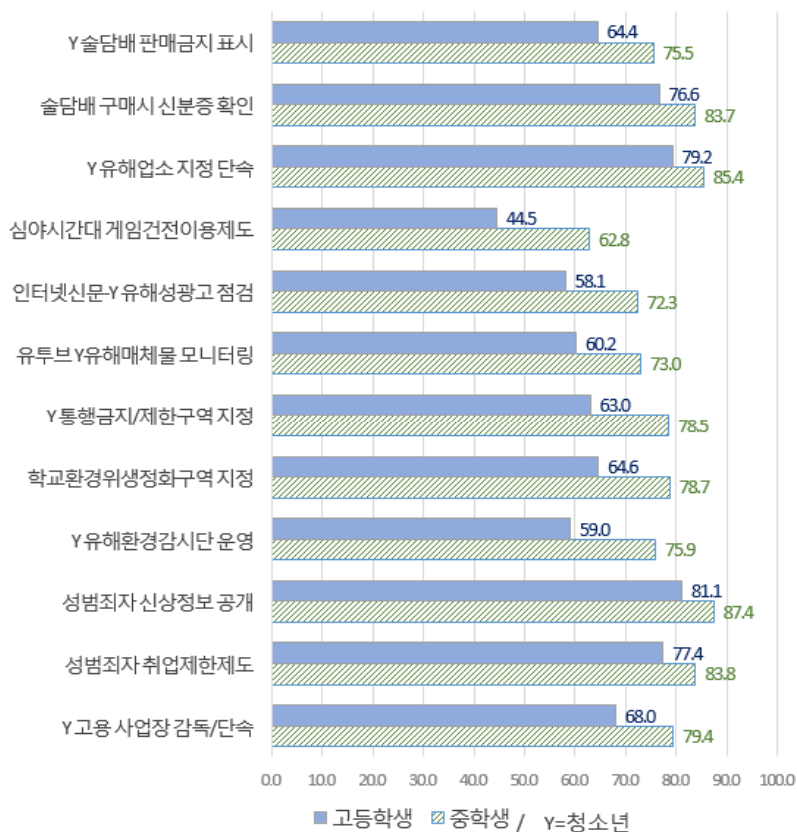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감독/단속($M=2.92$, $sd=0.84$),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지정($M=2.84$, $sd=0.8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M=2.84$, $sd=0.80$),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M=2.83$, $sd=0.83$),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M=2.77$, $sd=0.83$), 유튜브(You Tube)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M=2.75$, $sd=0.89$), 인터넷신문 등 청소년 유해성 광고점검($M=2.72$, $sd=0.89$) 순이었다. 심야시간대 게임전전이용제도(셧다운제)의 경우 평균점수가 2.48점($sd=1.0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면접조사에서 셧다운제도와 관련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부모와 상의 하에 결정하는 방식이 시대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부모의 교육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별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청소년보호사업에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의미하는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관점에서 유해시설의 구획화를 포함한 도시, 건축 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그냥 위험해 하지만 너화는 아직 보호 받아야 하는 청소년이야 이런식으로 계속 정책을 했는데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애들이 저하는 권리가 있어요. 보호받을 규제 대상이 아니예요. 저희도 목소리 내고 싶어요 이런게 점점 나오는거죠. 아이들 스스로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유해한 걸 했을 때 어떤한 영향을 내가 받는지 이런거를 교육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어른들이 너화를 좋게 성장하라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제와 달지도 않고.. 관심을 돌리려는데 대체제가 없고.. (P06)
- 부모가 선택해서 하는 거.. 현 시대에 맞는 거 같아요. 선택권은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고.. 보호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른을 위한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이건 와 달지도 않는거야.. (P01)
- 중요한 거는 부모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부모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현대해체가정은 좀.. (P03)
- 사각지대 그 애는 부모가 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라고 할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네들은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P04)
- 자영업자들 CCTV 의무적으로 다는 것도.. 아이들도 취약자들도 뭔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CCTV 앞으로 오잔хай요. 이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가짜라도 (가해자들은)저게 찍히면 어쩌나하는 게 있으니까.. (P01)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사업에 있어 청소년의 알 권리, 보호받을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 매체를 규제하는건 발상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Y02)
- (자퇴 전)숙려기간이 자퇴 하고 나서 생길 일들 국가가 나한테 보장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숙려기간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돼 라고 하시니까 저는 되게 그럼 이걸 왜 하는 거지 싶었죠. (Y01)
-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 같은 게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문을 닫더라고요. 학생이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아닌 (Y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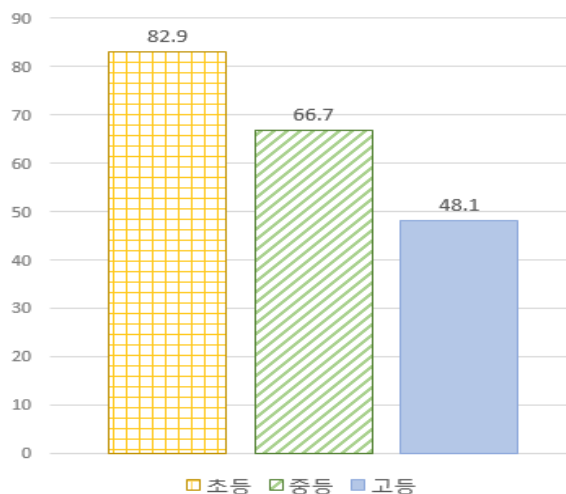
【그림 IV-3】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의 유용성 여부 평가

[그림 IV-3]은 청소년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응답비율을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응답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중 87.4%, 고 81.1%, $\chi^2(1)=14.82$, $p<.001$)이며 그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출입 지정단속(중 85.4%, 고 79.2%, $\chi^2(1)=13.45$, $p<.001$),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중 83.8%, 고 77.4%, $\chi^2(1)=13.25$, $p<.001$),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중 83.7%, 고 76.6%, $\chi^2(1)=16.06$, $p<.001$) 순이었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감독 및 단속(중 79.4% 고 68.0%, $\chi^2(1)=34.08$, $p<.001$),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지정(중 78.7% 고 64.6%, $\chi^2(1)=49.42$, $p<.001$), 청소년통행 금지/제한 구역 지정(중 78.5%, 고 63.0%, $\chi^2(1)=59.03$, $p<.00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운영(중 75.9%, 고 59.0%, $\chi^2(1)=65.67$, $p<.001$),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중 75.5% 고 64.4%, $\chi^2(1)=29.84$, $p<.001$), 유튜브(YouTube)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중 73.0%, 고 60.2%, $\chi^2(1)=37.78$, $p<.001$)에 대해서도 중학생의 70%이상, 고등학생 60%이상이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궁긍정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사업은 심야시간대 게임건전이용(셋다운)제도로 중학생 62.8%, 고등학생 44.5%만이 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chi^2(1)=68.64$, $p<.001$). 인터넷신문 등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 점검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청소년들의 비율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중 72.3% 고 58.1%, $\chi^2(1)=45.38$, $p<.001$).



【그림 IV-4】 청소년보호를 위해 소프트웨어 앱 유효성 평가

[그림 IV-4]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이 청소년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응답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긍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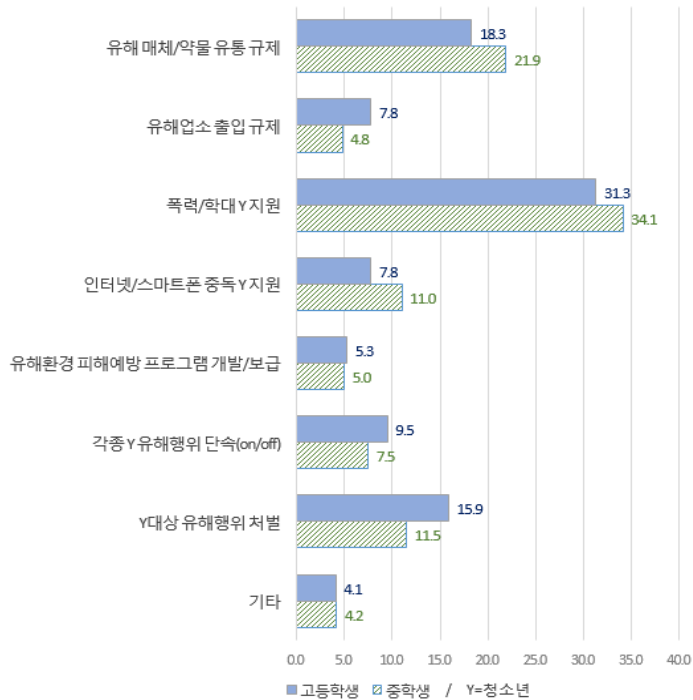
비율이 낮아지는 반비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chi^2(2)=47.62, p<.001$).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10명 중 9명 이상(82.9%)이 긍정응답을 한 반면 중학생은 10명 중 6명(66.7%), 고등학생은 10명 중 4명(48.1%)으로 긍정응답 비율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와 서비스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인기에 접어들 후기청소년의 경우 차단, 단속, 접근 금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보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한편,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는데, 청소년보호가 시민으로서의 존중,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함께 논의될 때 교육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청소년이 청소년일 때 그 자체를 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거지 얘기 미래의 성인으로서 그 가치를 따져서 존중받아야 되는게 아니거든요. (Y01)
- 교육이 더 중요한 쪽이라고 보고.. 그게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게 사실은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문제지 고등학생은 이미 그 지점을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Y01)
-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은 하나의 인간이라기보다 약간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거 같아서.. 방향 자체가 청소년을 규제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효과없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거 같거든요.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Y03)

(3) 청소년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림 IV-5]). 학교급에 따라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chi^2(7)=25.97, p<.001$), 각 항목을 선택한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긴 결과 각 항목의 순위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동일하였다. 전체 응답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책은 ‘폭력 및 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중 34.1%, 고 31.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 유통 규제’(중 21.9%, 고 18.3%),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처벌’(중 11.5%, 고 15.9%)이었다. 반면 인터넷/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 지원(중 11.0%, 고 7.8%), 각종 청소년 유해행위 단속(중 7.5%, 고 9.5%),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규제(중 4.8%, 고 7.8%)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수준을 보였다.



【그림 IV-5】 청소년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면접조사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낙인(stigma)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전용공간과 같은 활동 공간을 확보하거나 인권교육 등 활동프로그램 확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해체가정들..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예산문제라기 보다 관심의 정도가 낮지 않은가.. (P03)
- 낙인효과 이런거 때문에.. 아빠하고만 사는 애인데.. 솔직히 애한테 뜯근없이 딱 뽑아서 (프로그램 참여) 하라고 하니까.. 이런건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P06)
- 찜질방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아이들 많이 오는 시간대.. 그런데서 아이들을 좀 (전용공간과 같은)장소도 배려하고.. 아이들이 이용을 (편하게)못하니까.. (P01)
- 진짜 애가 원하는 진로를 찾는 과정까지.. 나는 그건 상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상담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좀 활기찬 어떤 시스템.. 청소년 인권교육도 필요하고 부모 교육.. 어른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P03)

이와 함께 부모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주로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관계개선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 부모교육 거기를 적극 참여했습니다. 게임 심리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다니니까 싸움이 되는거야 나중에는 좀 과장해지더라고.. 교육 받으면서 아이 심리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아이도 뭔가를 이렇게 찾아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이 진짜 너무(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심리를 많이 알았습니다. (P05)

한편, 학부모 가운데 일부는 유해매체물 지정과 같은 규제 뿐 아니라 교육용 자료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피해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여성가족부가 그 음반에서 유해매체물 지정 큰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애들 노래 들어보면 욕설이 전부예요. (P03)
- 교육용 자료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거.. 단어가 봤을 때 너무나 어렵게 말해 놓으니까.. (P01)
- 지역아동센터 전국에 5천 개 인데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있고.. 저희가 의무교육이 25시간 받는 거 있거든요. 한 시간이라도.. (보호)정책이라든지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을 텐데.. (P01)
- 학교에서 그 시간에 (유해환경 피해 예방)교육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 국어, 수학 이런 것만 해야 돼요.. 보건 이런 것도 수업에 들어가니까.. 스마트폰 유해환경 이런거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P04)
- 2015년 교육과정 바뀌면서 초등학생은 미디어도 들어가고.. 코딩교육도 한다고.. 난리 붐을 일으키고..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세 살, 네 살 애네들 역량강화가.. 이미 노출 다 된 상태에서 큰 아이한테 역량강화라는게 어불성설이에요. 막 어린이집부터 하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P02)
- (유해환경 피해예방 교육)어린이집,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P07)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현재 청소년보호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청소년의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접근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시민으로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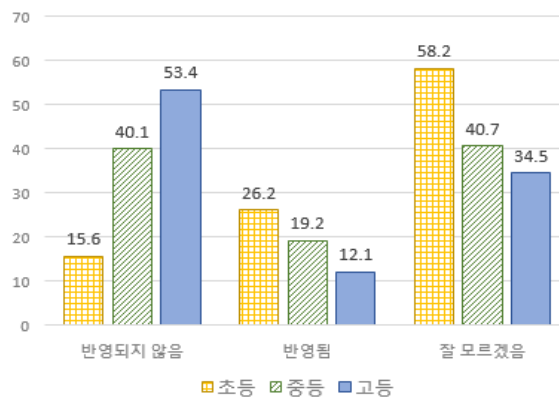
- 우리나라 청소년보호정책의 포커스 자체가 좀 잘 못 잡혀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보호라는 게 그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억제하는 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권리를 보다 더 잘 이행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게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Y02)

- 학교에서 술, 담배 위험하다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네가 빠졌을 때 다시 꼬집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이 사실 청소년보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니가 청소년이고 아직 생각이 짧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믿음이 없어요. 공교육도 문제지만 정부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Y01)
- 학교에서 니가 어떻게 치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알려주면.. 딱 그정도라도.. (Y03)
- 행정상 처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 참여하려면 보호자 동의를 있어야 되는 점(이 불편해요). (친구가)집에서 나왔는데 보호자 동의를 얻을 수 없잖아요. (Y02)

(4)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 반영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 및 법률 제정 시 청소년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3.6%(N=1,280)에 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솔직하게 응답한 결과로 보이며, 주제 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 및 법률 제정 시 청소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①전혀 반영되지 않았다~④적극 반영된다)로 질문한 결과(N=1,653) 평균값은 2.20(sd=0.87) 수준이었으며, 학교급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F(2, 1650)=101.49, p<.001$).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값이 2.71(sd=0.92)로서 대체로 ‘반영되는 편’이라는 의견을 보인 반면, 중학생의 평균값은 2.18(sd=0.82)로 낮아졌고, 고등학생은 1.96(sd=0.75)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세 집단 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세 집단의 평균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IV-6】 청소년보호관련 정책·법률 제정 시 청소년의견 반영여부

[그림 IV-6]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내용을 ‘반영된다’, ‘반영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카이제곱 분석결과 학교급 간에 응답 차이가 매우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chi^2(4)=301.92$, $p<.001$).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이나 법률 제정 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긍정응답을 한 비율은 초등학생 26.2%, 중학생 19.2%, 고등학생 12.1%로서 긍정평가가 초등학생의 경우 4명 중 한 명 정도인 반면 중학생은 5명 중 한 명, 고등학생의 경우는 10명 중 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정평가 비율은 초등학생 15.6%, 중학생 40.1%, 고등학생 53.4%으로 학교급에 따라 함께 높아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비율은 초등학생 58.2%, 중학생 40.7%, 고등학생 34.5%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현행 청소년 참여기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내용,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다양한 소통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청소년 의견수렴 같은 경우는 참여기구라는 걸 명목상..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Y02)
- 내가 한 시민으로서 보호 받으면서 이 사회에서 살기위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Y01)
- (정부)가 소통해야죠. 공중파정도가 아닐까.. SNS쪽이 편하긴 한데 저소득층의 경우엔 그것도 어려울 수 있거든요. (Y01)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각 단계에서 권리주체인 청소년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며, 청소년보호 사안에 있어 친권자(보호자)의 의견에 앞서 청소년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의견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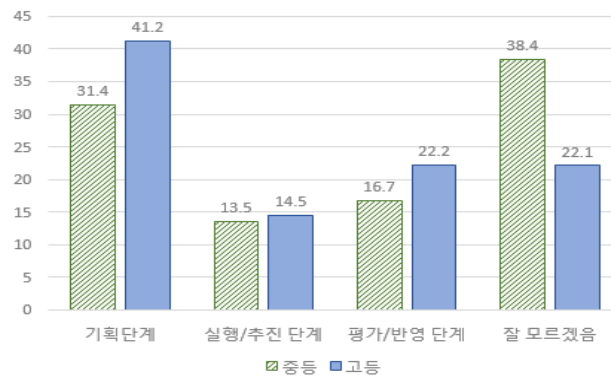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왜 (보호)정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철학이 저는 그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청소년을 굳이 보호하려고 하고 악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그렇게 고민하는가는 답이 그 사람들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본인인 채 그 인생을 보장해 주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빨리 키워가지고 다른 층위의 사람으로 만들까의 문제가 아닌데.. 나이 문제를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야 되는 혜택이 있고 교육이 있고 준비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으려면 당연히 보장되는.. 내가 뭘 보장 받아야 되

고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청소년보호 첫걸음이 아닐까하고 생각해요. (Y01)

-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청소년도 규제하는 부분이.. 미디어 부분에서는 19금 안 걸리게 하려고 내용 바꾸는 거 있고.. 모두에게 악법이다 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보호라는 그 자체가 혐오 이런 거 다 따져봐야 하는.. (Y03)
- 섯다운제가 부모동의 받는 거로(바뀌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걸로 넘어가든 거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수단자체가 없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내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거면.. 부모님이나 보호자 허락 받고 그게 가능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라고 봐요. 니 가까운 사람 이니까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게지 하는데.. 실제 말해야 할 사람 권리를 뺏어 가 놓고.. 지금 상황은 본인 동의 자체가 완전히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Y01)

(5) 청소년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보호 정책/사업 추진 단계

다음의 [그림 IV-7]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청소년들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보여준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학교급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chi^2(3)=67.77, p<.001$). 중학생, 고등학생의 응답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잘 모르겠음’ 항목이며 중학생은 전체의 38.4%, 고등학생은 22.1%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과 사업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IV-7】 청소년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청소년보호정책 · 사업 추진 단계

특히 ‘청소년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단계’로는 ‘기획단계’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중학생 31.4%, 고등학생 41.2%가 이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반영(feedback)단계’(중 16.7%, 고 22.2%), ‘실행/추진 단계’(중 13.5%, 고 14.5%) 순이었다. 이는 정책, 제도, 사업,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모색하는 단계부터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일부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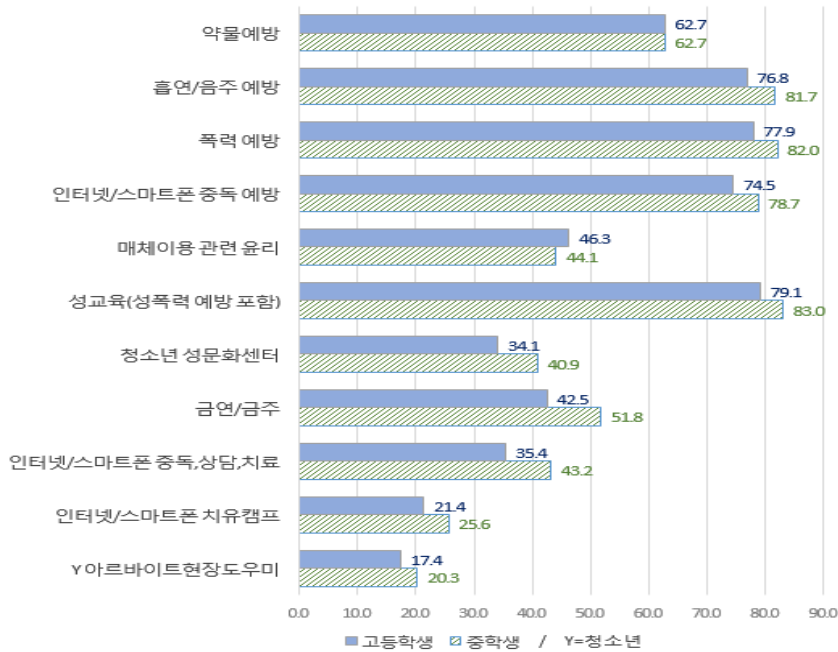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는 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청소년을 정책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제가)한부모가정인데 일반적인 청소년 그 망에서 다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닌가.. (Y01)
- 이 모든 논의는 청소년도 하나의 권리 주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봐요. 그것만 해도 바뀌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어요 (Y02)
- 그 문제에 있어서 제일 처음 나와야 하는 건 선거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문고나 그런 게 있긴 한데.. 좀 체계적으로 꼭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본인 해당되는 어떤 계층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기고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 정도 일 것 같아요. 정부가 국민이랑 얼마나 소통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Y01)
- 참여기구도 특별회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특별회의 했을 때 문제가 가장 컸던 게 뭐냐면 하는 사람만 하는 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이 첫 번째고.. 예산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된 거 기억하는데 참여기구 예산도 도 단위 특별회의가 1년에 500만원.. 도 단위면 각 지역에서 오는 교통비만 해도 반 이상 써 버리고 500만원 부족해서 제주도 분들은 전국 회의 때 못 오시거나 그런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Y02)
-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예산? 이런 게 문제고 특별회의 말고 참여위원회 같은 거 참여위원이랑 운영위원은 교통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참여위 홍보도 필요한 것 같구요.. 그런 세심한 부분들 좀.. 00시 같은 경우 회의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같은 걸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만 던져주면 아무 것도 논의가 안되더라고요 (Y02)
- 청소년층은 다른 약자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벗어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니까 잠깐 참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잠깐 동안 보장되지 못한 내 권리는 어른이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Y01)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난 1년간 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그림 IV-8). 카이제곱 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학생의 참여율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았고, 그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각 항목별 참여율의 순서 등 전체적인 경향성의 학교급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중, 고교생 모두 70%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교육/프로그램은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 포함)(중 83.0%, 고 79.1%, $\chi^2(1)=5.18$, $p<.05$),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중 82.0%, 고 77.9%, $\chi^2(1)=5.32$, $p<.05$), 흡연/음주 예방 교육/프로그램(중 81.7%, 고 76.8%, $\chi^2(1)=7.51$, $p<.0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프로그램(중 78.7%, 고 74.5%, $\chi^2(1)=5.02$, $p<.05$)이었다.

참여율이 대체로 40~60%대인 프로그램은 유해약물 예방교육/프로그램(중 62.7%, 고 62.7%, $\chi^2(1)=.001$, $p>.05$), 금연/금주 프로그램(중 51.8%, 고 42.5%, $\chi^2(1)=17.53$, $p<.001$), 매체이용 관련 윤리교육(중 44.1%, 고 46.3%, $\chi^2(1)=.96$, $p>.05$)이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중 40.9%, 고 34.1%, $\chi^2(1)=10.00$, $p<.01$)과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중 43.2%, 고 35.4%, $\chi^2(1)=12.65$, $p<.001$)의 참여율은 중학생의 경우 40%, 고등학생은 30%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의 이용 경험이 가장 적은 프로그램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해피워크매니저)지원(중 20.3%, 고 17.4%, $\chi^2(1)=2.87$, $p<.05$)과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중 25.6%, 고 21.4%, $\chi^2(1)=4.90$, $p<.05$)로 참여율은 20% 수준이었다.



【그림 IV-8】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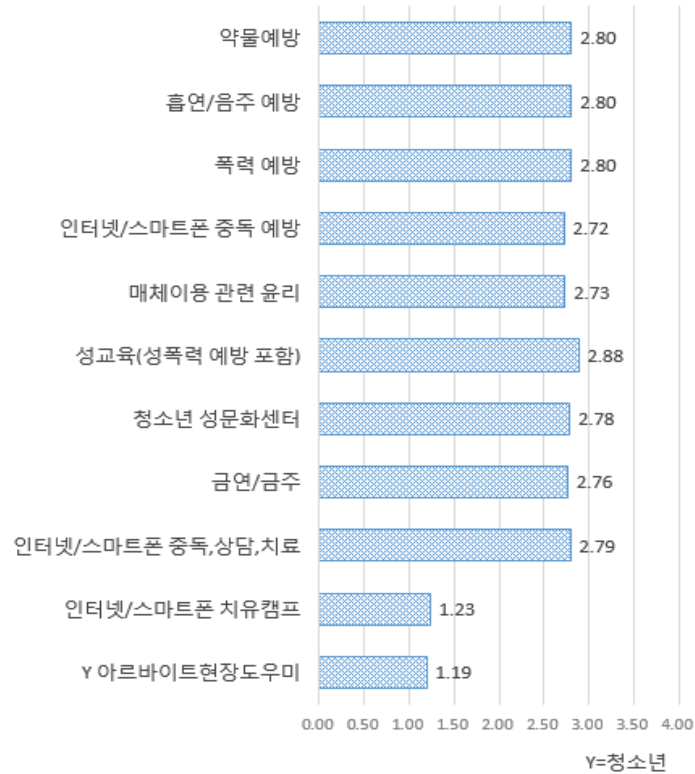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면접조사에서는 기존 청소년보호사업에 있어 청소년의 접근성, 선호를 고려한 보다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수련시설이나 꿈드림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실상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인터넷도 2주 정도 사전교육 듣고 면접도 하고 이력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 그런 사례 많이 봤고요. (Y02)
- 시설(쉼터) 안에 수용하는 청소년 수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닌가.. 한 방에 4명 씩 자고 그러잖아요. (Y03)
- 쉼터는 11시 무조건 취침해야 되고 11시 이후는 전자기기 압수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청소하는 거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 구성원이 합의하는게 아니라 센터에서 일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같다고 생각 들어요. 단체복 있는데도 있지 않나요? (Y02)

(7)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의 유용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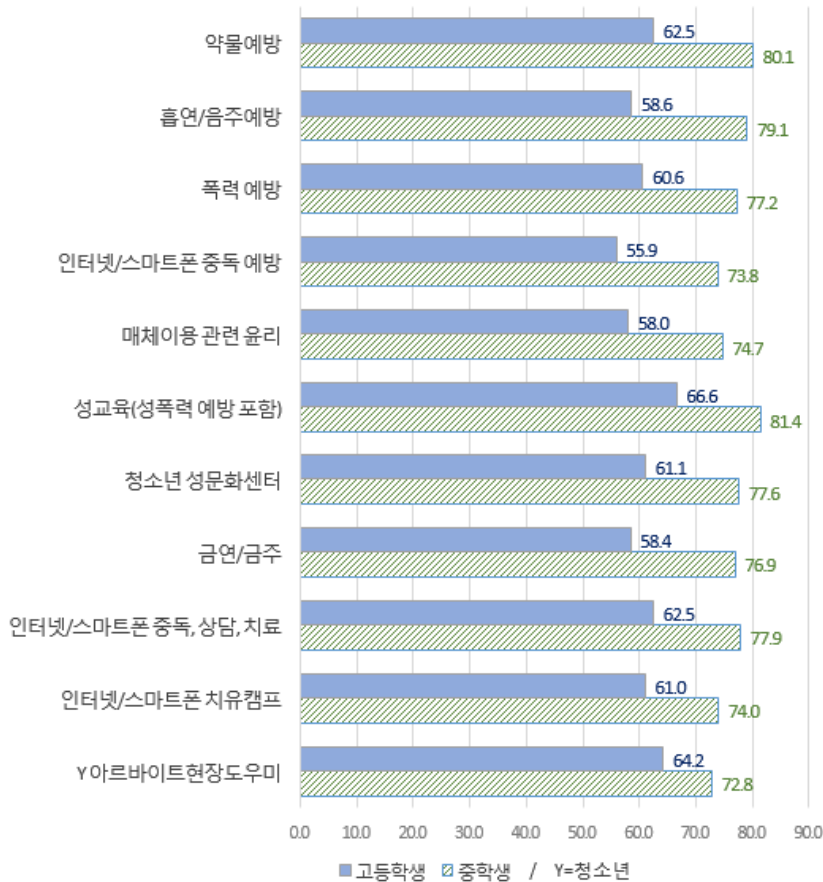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11개)을 제시하고 4점 척도(①전혀 도움이 안됨~④매우 도움이 됨)에 따라 각 사업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를 응답하도록 하였다([그림 IV-9]).



【그림 IV-9】 청소년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 교육의 유용성 정도 평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평균값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은 성교육(성폭력 예방 포함)($M=2.88$, $sd=0.85$), 폭력 예방($M=2.80$, $sd=0.86$), 흡연/음주 예방($M=2.80$, $sd=0.87$), 약물예방($M=2.80$, $sd=0.8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치료($M=2.79$, $sd=0.84$),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M=2.78$, $sd=0.82$), 금연/금주($M=2.76$, $sd=0.87$), 매체이용 관련 윤리($M=2.73$, $sd=0.87$),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M=2.72$, $sd=0.88$) 순이었다. 반면 청소년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해피워크 매니저)지원 사업, 인터넷/스마트폰 치유크amp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각각 $1.23(sd=0.39)$ 과 $1.19(sd=0.42)$ 점으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가 요구된다.



【그림 IV-10】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의 유용성 여부 평가

한편,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11개)에 대한 평가를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단순화한 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 중학생, 고등학생 응답 비율을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그림 IV-10).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70~80%가 각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는데 고등학생은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학생을 기준으로 긍정평가 비율이 높은 교육 및 프로그램은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중 81.4%, 고 66.6%, $\chi^2(1)=58.22$, $p<.001$), 유해약물 예방교육/프로그램(중 80.1%, 고 62.5%, $\chi^2(1)=76.67$, $p<.001$), 흡연/음주 예방 교육/프로그램(중 79.1%, 고 58.6%, $\chi^2(1)=99.29$, $p<.00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중 77.9%, 고 62.5%, $\chi^2(1)=57.30$, $p<.001$), 청소년 성문화센터 프로그램(중 77.6%, 고 61.1%, $\chi^2(1)=64.20$, $p<.001$), 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중 77.2%, 고 60.6%, $\chi^2(1)=64.90$, $p<.001$), 금연/금주 프로그램(중 76.9%, 고 58.4%, $\chi^2(1)=79.72$, $p<.001$),

매체이용 관련 윤리교육(중 74.7%, 고 58.0%, $\chi^2(1)=63.38$, $p<.001$),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중 74.0%, 고 61.0%, $\chi^2(1)=38.84$, $p<.001$),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중 73.8%, 고 55.9%, $\chi^2(1)=71.90$, $p<.001$),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해피워크매니저)지원(중 72.8%, 고 64.2%, $\chi^2(1)=17.15$, $p<.001$) 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에서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만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계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너 진로 선택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인생게임 갖고해요 그러는거예요. 어디 가서 (도움받을 곳) 없으니까.. 자기는 알고 싶은데.. 너무 슬프잖아요. (P03)
- 중학교 정도 되면 제재가 다 필요 없고 부모 주민등록번호 아주 귀신같이 외워가지고요 그거로 해요. 자구 집에서 제재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거짓말이 늘어요. 자구 마찰이 돼서 싸우는 거야. 000이도 집 나가고 싶었다고.. 가출하고 싶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P05)
- 인터넷으로.. 금지곡이라고 하는데도.. 들어 다 들어.. 다 뚫려있다는 얘기.. (P05)
- 작사, 작곡 할 때도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언어를 규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뭔가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P01)

특히,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지원사업,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비재학생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자료 보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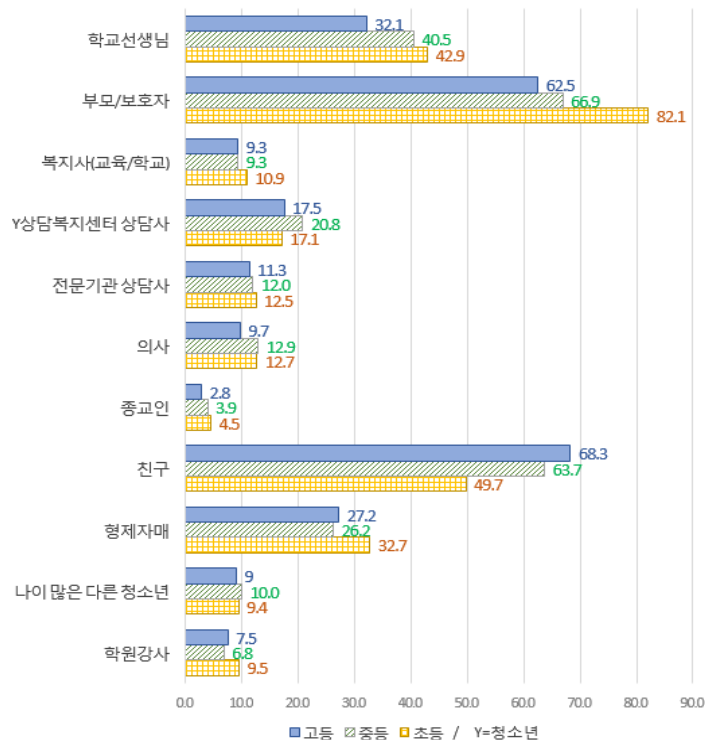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 지원하는거(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딸려서 나온 그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홍보해서 신청 받아서 하잖아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쉼터가 있을 거 같아요. (Y02)
- 저는 수련관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일하시던 공무원 분이 자기 재량으로 알려주시던 거였어요. 나는 도움 받았고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모든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분이 계신건 아니잖아요. (Y01)

(8) 유해물질 사용 관련 고민을 나누고 싶은 대상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누구에게 이야기할 것인지, 총 11개의 보기를 제시하고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그림 IV-11]). 가장 많은 선택을 응답 비율을 보인 사람은 부모(또는 보호자)로 초등학생 82.1%, 중학생 66.9%, 고등학생 62.5% 수준이었다($\chi^2(2)=93.61$, $p<.001$).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대상은 친구인데 이 항목 역시 학교급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74.32$, $p<.001$). 초등학생의 49.7%, 중학생의 63.7%, 고등학생의 68.3%가 친구를 고민 이야기상대로 선택하였다. 초등학생은 친구를 선택한 비율(49.7%)이 부모(82.1%) 보다 낮았던 반면 고등학생은 친구를 선택한 비율(68.3%)이 부모(62.5%) 보다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대상은 학교 선생님이다. 초등학생의 42.9%, 중학생의 40.5%, 고등학생의 32.1%가 학교 교사를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로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학교급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chi^2(2)=27.55$, $p<.001$). 대략적으로 청소년 10명 중 대략 3~4명이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교사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형제자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겠다는 청소년의 비율 역시 학교급 별 차이는 유의미하였는데($\chi^2(2)=10.89$, $p<.01$), 응답률은 대략 20~30% 수준이었다(초 32.7%, 중 26.2%, 고 27.2%).



【그림 IV-11】 유해물질 사용 관련 고민을 나누고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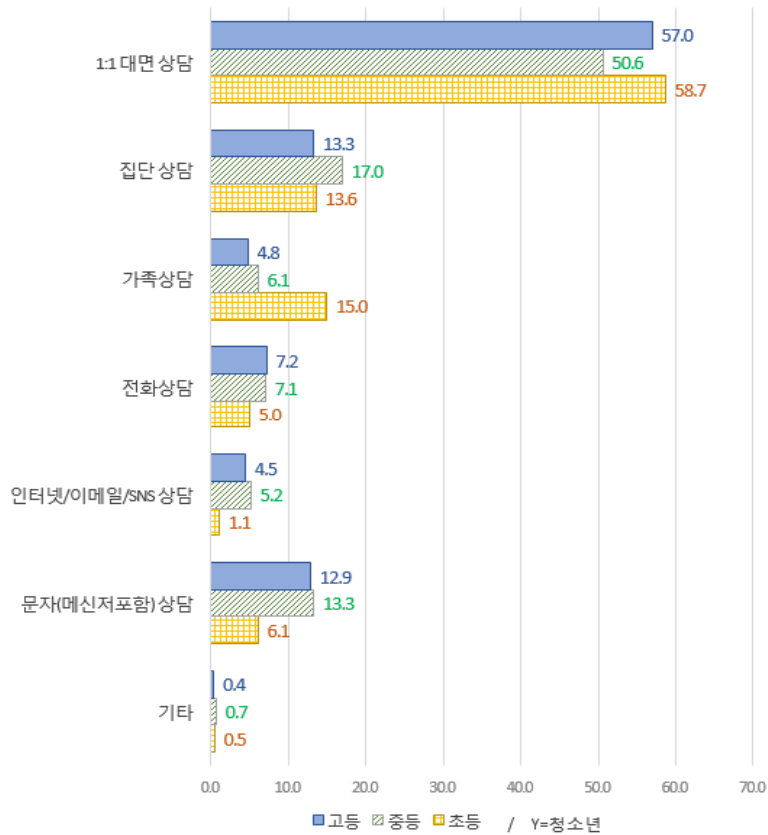
상담 및 치료 분야 전문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겠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대략 10% 수준이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초 17.1%, 중 20.8%, 고 17.5%, $\chi^2(2)=5.45$, $p>.05$), 의사(초 12.7%, 중 12.9%, 고 9.7%, $\chi^2(2)=6.35$, $p<.05$), 전문기관 상담사(초 12.5%, 중 12.0%, 고 11.3%, $\chi^2(2)=0.67$, $p>.05$), 학교사회복지사(또는 교육복지사)(초 10.9%, 중 9.3%, 고 9.3%, $\chi^2(2)=1.77$, $p>.05$) 순이었다. 다만 고민 이야기대상으로 상담전문직을 선택한 것은 접근가능성(availability)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순 선호도로 이해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 외 청소년이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을 이야기할 대상으로 나이가 많은 청소년(예: 선배)(초 9.4%, 중 10.0%, 고 9.0%, $\chi^2(2)=0.59$, $p>.05$), 학원강사(초 9.5%, 중 6.8%, 고 7.5%), 종교인(초 4.5%, 중 3.9%, 고 2.8%, $\chi^2(2)=5.03$, $p>.05$)을 선택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4~10%의 비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9) 유해물질 사용 관련 선호하는 상담 방법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상담 방식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 6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IV-12]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 방식(1순위)을 학교급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각 상담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학교급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2)=137.20$, $p<.001$).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상담 방법은 1:1 대면상담이었는데 초등학생의 58.7%, 중학생의 50.6%, 고등학생의 57.0%가 이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은 상담 방식은 초등학생과 중고생의 응답에 차이가 관찰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상담을, 중고생의 경우 집단상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즉, 초등학생은 가족상담을 원하는 비율이 15.0%로, 중학생(6.1%), 고등학생(4.8%) 보다 높았던 반면, 중고생 그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17.0%)의 경우 집단상담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초 13.6%, 고 13.3%). 특히 뚜렷한 차이를 보인 상담방식은 문자상담이었는데 초등학생(6.1%) 보다 중학생(13.3%)과 고등학생(12.9%)의 선호가 뚜렷하였다. 인터넷/이메일/SNS를 활용한 상담 방식도 중학생(5.2%)과 고등학생(4.5%)이 초등학생(1.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화상담에 대한 선호는 초등학생 5.0%, 중학생 7.1%, 고등학생 7.2% 수준으로 문자(메신저 포함) 방식 보다 대체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림 IV-12】 유해물질 사용 관련 선호하는 상담 방법

이와 함께 상담 방법 뿐 아니라 청소년의 물리적 접근성과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 중요한 건 접근성예요. 우선은, 그 수단 자체의 특징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나 수련관 쪽이 그나마 (이용하기)쉬운 거 같아요. 온라인은 구체적으로 도움 받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부당파해 이런 거는 익명으로 끝을 보기 어렵잖아요. (Y01)

4.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안과 과제 : 전문가 의견조사

먼저 개방형으로 조사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후 유목화 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3개 정책영역에 따른 7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과제는 <표 IV-48>과 같다. 각 영역에 따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V-48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결과 : 주요영역 정책과제·세부과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청소년보호 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1.1.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사전관리 강화	1.1.1.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선
		1.1.2. 청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요소 사전관리 강화
	1.2. 청소년 보호법 내 적극적 보호사업 추진근거 마련	1.2.1.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전, 건강 포함 선제적 보호 근거 마련
		1.2.2.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및 사후관리의 근거 강화
2.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2.1.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	2.1.1.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 참여 확대
		2.1.2.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와 대응체계 개선
	2.2. 지역사회 내 피해청소년 발견지원체계 강화	2.2.1.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 강화
		2.2.2. 피해청소년 회복지원 사업 확대
	2.3.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활성화	2.3.1.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확대
		2.3.2. 시민사회의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확대
3. 청소년보호 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3.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축	3.1.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전달체계 구축
		3.1.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3.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분석 근거 마련	3.2.1. 청소년보호사업 평가환류 근거 마련 및 내실화
		3.2.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지표 개선관리

1) 영역 1 :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모니터링과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 내에 건강, 안전을 포함하여 선제적·적극적 보호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핵심이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기반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협약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보호권을 존중하여야 하고, 「청소년 보호법」 역시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⁸⁴⁾ 즉, 국가의 청소년보호 사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화하고 청소년의 건강·안전을 포함한 보호 영역 확대와 적극적인 보호사업 추진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영역에는 두 개의 정책과제와 총 네 개의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다.

(1) 정책과제 1 :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사전관리 강화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사전관리 강화’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먼저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유해환경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소 모호하여 이를 개선하고, 신·변종 유해업소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매체물 등에 대하여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보장 차원에서 규칙적·반복적인 조사·추적·관리 등이 요구된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청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요소 사전관리 강화’로, 점점·단속치유제 할 등 사후관리 뿐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신종매체물·간·업소 등의 청소년유해성을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하여 피해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84)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 58차회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사국(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률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며, 아동에 관한 당사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법적 및 행정적 결정에서 아동이익최선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 법률, 행정, 사법절차,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대한민국)에 촉구한다.”고 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p.7-8).

(2) 정책과제 2 : 「청소년 보호법」내 적극적 보호사업 추진근거 마련

‘청소년보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영역의 두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 보호법」 내 적극적 보호사업 추진근거 마련’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세부과제는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전, 건강 포함 선제적 보호 근거 마련’이다. 산업종 유해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사행행위규제법」 등 해당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할 경우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행위자(비청소년)를 활용하는 수사기법을 전면 도입하여 규제와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사업이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의 접촉과 접근을 제한하는 것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다면적·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당한 개입범위와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및 사후관리의 근거 강화’로, 유해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과 청소년의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여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에 대응능력 제고를 독립조항으로 하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각종 사업추진의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된다. 또한 피해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따른 효과를 모니터링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영역 1’에 대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와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V-49>이다.

표 IV-49

청소년보호정책 개선과제(1) :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전문가 의견 요약)
1.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1.1.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사전관리 강화	1.1.1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선	-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유튜브, 웹툰, 인터넷방송(키즈 채널 포함), 팟캐스트 등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면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에 대한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친권자의 의사가 청소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 청소년이 자주 접하는 눈, 게임, 장소 등 유해환경 접촉 동향을 청소년의 안전, 권리보장 맥락에서 규칙적반복적으로 조사추적하고 관리해야 함. - 신변종 업소가 빠르게 증가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규제하고 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법 제정시행까지의 간극이 있으므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청소년유해환경 모니터링단이 온라인 도박업소(불법스포츠 토토, 사다리, 달팽이 경주 등)를 점검모니터링 해야 함. - 현행 청소년 음주흡연 모니터링의 경우 사업기획 및 수행 과정에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업주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전면 재검토 필요 - 유해환경 모니터링 시 청소년에 대한 폭력의 경우 모니터링 내용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1.1.2 청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요소 사전관리 강화	- 사후관리(점검단속치유재활) 뿐 아니라 사전예방(예방교육 예방활동건전 환경 홍보)의 균형 있는 정책추진 필요 - 사회적 감시가 활성화될 때 청소년유해업소매체 등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수 있음. - 청소년이 어플/채팅 등을 통해 몸자진동영상등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기만 해도 사이버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의 피해예방 및 확산차단 필요 - 청소년유해매체물 모니터링, 관리주체가기관이 매체 유형별로 나누어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통합적 모니터링·심의를 위한 개선 필요 - 신종매체물간·업소 등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청소년유해영향분석)을 통한 사전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건전한 청소년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그 의미가 변질될 위험이 있는 문화놀이(코인노래방, 뽑기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즉각적 규제가 가능한 제도 마련 필요
	1.2. 청소년 보호법 내 적극적 보호사업 추진근거 마련	1.2.1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전, 건강 포함 선제적 보호 근거 마련	-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시 국가의 정당한 개입범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합의를 함의된 유해환경유해요인들에 청소년의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영역에 한정해야 할 것임. - 신변종업소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의 검토가 필요하고, 규제 관련 해당 법률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전문가 의견 요약)
			(식품위생법, 게임산업진흥법, 사행행위규제법 등)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취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직접 규정하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 필요 - 청소년 보호법(제33조, 34조)에서 “청소년보호=청소년유해환경 규제+청소년의 접촉·접근제한+청소년(정신)건강 및 안전보호”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한 근거 강화 필요 - 실효성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복자활동정책 간 경계와 범위를 고려할 때 현행 규제·접근 제한 중심의 정책에서 제외된 부분 즉, 청소년 정신건강, 근로보호, 안전 영역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보호 근거 우선 마련 필요 -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행위자(비청소년)를 활용한 수사기법을 전면 도입하여 규제·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1.2.2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및 사후관리의 근거 강화	- 온라인상 성희롱·욕설·협박 등 피해 시 대리신고가 불가능하고, 사이버경찰청에 본인인증 후 신고를 하는 등 청소년이 신고를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청소년 대상 교육·홍보 강화 필요 - 유해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대응능력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 및 청소년의 대응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 청소년 보호법 제34조에 대응능력 제고를 독립조항으로 하여 매체물에 대한 대응능력(청소년 대상 매체교육 강화, 사업근거 명시, 매체 생산유통업에 대한 매체교육 지원 및 협조의 근거 명시 등) 향상의 법적근거를 강화해야 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에 따라 청소년보호정책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적절히 통합하도록 전면 검토하고,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피해청소년의 사후관리 지원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부재함.

2) 영역 2 :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는 정부·민간의 협업을 기반으로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피해예방과 피해청소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3,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아동에게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 과정에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의 견해가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8).⁸⁵⁾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시 국가 차원의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피해 예방 및 피해청소년 조기 발굴·지원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피해청소년의 발견·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 영역에서는 두 개의 정책과제와 총 여섯 개의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다.

(1) 정책과제 1 :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세부과제가 포함된다. 먼저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정책 추진 시 청소년이 권리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기획·시행·모니터링 전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가동되고 있으나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정책 추진 단계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전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와 대응체계 개선’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에게 무엇이 유해하고 왜 유해한지를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 함양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유해환경 노출이 취약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방법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유해환경에 접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지전략을 갖추고, “내 주변 유해환경을 스스로 개선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85)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 58차회기)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사국(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률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며, 아동에 관한 당사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법적 및 행정적 결정에서 아동이익최선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 법률, 행정, 사법절차,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대한민국)에 촉구한다.”고 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pp.7-8).

(2) 정책과제 2 : 지역사회 내 피해청소년 발견·지원체계 강화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영역의 두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사회 내 피해청소년 발견·지원체계 강화’이다. 두 가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 세부과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피해청소년 발견·지원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법」 제3조부터 제5조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주요 보호사업의 추진 의무를 명시하는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요청 시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거나 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요구된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피해청소년 회복지원 사업 확대’로,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뿐 아니라 성매매, 친족성학대 등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의한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등으로 국한되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을 위한 센터의 기능 및 역할, 수혜율 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3) 정책과제 3 :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자율규제시스템 활성화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영역의 세 번째 정책과제는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활성화’이다. 여기에서는 두 개의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는데, 먼저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확대’가 요구된다. 자율규제(compliance) 혹은 규제된(조절된) 자율규제는 비정부 부문이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방송법에서 사전검열 예방, 민간산업 활성화, 규제 남용 등을 막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규제(Regulierte Selbstregulierung)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영화부문, 온라인 매체부문, 방송 부문 등에서 별도의 민간자율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자율규제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중장기적 전략으로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제도 도입, 유해업소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성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시민사회의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확대’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형 사업을 확대·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의 효과적인 청소년보호사업을 발굴·확산·보급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영역 2’에 대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와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V-50>이다.

표 IV-50 청소년보호정책 개선과제(2) :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전문가 의견 요약)
2.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2.1.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	2.1.1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 참여 확대	-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시 청소년은 권리주체라는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책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절차적 보장이 개선되어야 함. - 정책 기획, 시행 및 모니터링 전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전을 마련하고 과제를 제안(Do it youth-self)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에도 청소년을 대변할 구성원이 부재하여 검토가 필요함.
		2.1.2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와 대응체계 개선	- 청소년 스스로의 보호 및 대응능력 함양은 “Just Say No”와 같이 무엇이 왜 유해한지에 대한 유해인지능력, 유해대처능력 등 유해환경 및 유해요인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을 지원해야 함. -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의 개발·현장 적용이 요구됨. -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 대응능력을 발휘하도록 예방접종과 같이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인터넷윤리, 스마트폰 이용윤리 등 미디어(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 - 청소년의 자유권을 보장하면서 비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지전략을 갖추고, 유해환경을 접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신고하는 등 주변 유해환경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해야 함.
	2.2. 지역사회 내 피해청소년 발견·지원체계 강화	2.2.1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 강화	- 국가차원의 피해청소년 발견·지원체계 강화를 기반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 및 책무 강화가 요구됨. - 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청소년 대상 수강명령 시 부모교육 의무화 등 검토 필요 - 교원의 교내 흡연 규제 및 금연 지원 등 강화 필요 - 업소 종사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추진 필요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전문가 의견 요약)
			- 과도한 국가후견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소년과 부모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호정책의 기본틀 구축 필요 - 청소년보호라는 정책이슈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 홍보도 필요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학교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주요 보호사업 의무화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 - 보호자에 의한 예외적 허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권 제한의 최소제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입법 필요
		2.2.2 피해청소년 회복지원 사업 확대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청소년보호·재활센터는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등에 불과하여 정책대상이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에 대상이 국한됨. - 친족성학대 피해청소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센터 간의 협업이 요구되며,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 지원기관이 부재하고 성인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됨. -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등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준하여 피해청소년의 회복지원사업 추진 필요
	2.3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활성화	2.3.1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확대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 자율규제를 강조하지만 유해업소의 자율규제 활성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함.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과 유해업소 자율규제 협력체계 구성, 유해업소 연합회 상설기구화 등 국가가 이들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협력체계 구성 필요 -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와 같이 업계와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규제 방법 개선 논의가 필요함. -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가 어떤 의미이며,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 개발 필요 - 유해매체물 자율심의 및 규제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자체심의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시행 필요 - 사업자들이 개발단계에서부터 청소년보호 노력을 다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조치 유도 - 현재 종사자 대상 법제도 교육에 불과하므로 신규 사업 개발 필요
		2.3.2 시민사회의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확대	-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아이디어 중심 공모형 사업을 개발·확대 운영·평가 필요 - 정부재정과 독립적이면서 정부정책의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민사회, 단체 육성도 필요 - 시민단체의 효과적인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한 발굴·지원 - 예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내 청소년기관에서 '건강한 청소년 기본생활습관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프로그램 지원 확대 필요

3) 영역 3 :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환류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보호정책의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과 추진결과 및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의 근거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 단위의 청소년보호사업에 일부 중복이 발생하고 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성과관리와 정책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 영역과 사업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정책과 사업을 연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 관련 성과지표의 설정과 관리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 이슈와 규제 내용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논의 과정 자체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영역에서는 두 개의 정책과제와 네 개의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다.

(1) 정책과제 1 :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축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축’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되는데, 첫 번째 과제는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전달체계 개선’으로,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 전달체계를 분리해서 살펴볼 때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분석·평가·환류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마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컨트롤타워 기능 구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중복사업에 대한 연계·조정과 성과지표에 따른 과정 및 결과평가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규제생태계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가 이견을 수렴해 가는 논의과정 자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하거나 협의기구를 통해 공론화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주도의 일방향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청소년보호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과정으로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2) 정책과제 2 : 청소년보호사업 성과분석 근거 마련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영역의 두 번째 정책과제는 ‘청소년보호사업 성과분석 근거 마련’이다. 여기에도 두 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되는데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청소년보호사업 평가·환류 근거 마련 및 내실화’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정책 분석 및 환류를 위한 근거가 부재하여 청소년보호사업의 예산을 포함한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세부과제는 ‘청소년보호사업 성과지표 개선·관리’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청소년보호사업과 관련한 지표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단위에서 정책성과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 시 일부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적과 성과가 모호하고, 국가 차원의 청소년보호사업의 성과지표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영역 3’에 대한 정책과제 및 세부과제와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V-51>이다.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전문가 의견 요약)
3.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3.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축	3.1.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전달체계 개선	-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시행계획과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체계가 부재하고, 사업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도 모호하며 과정 및 결과평가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성과지표를 진단분석·사후관리·환류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전제되어야 함. -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중복된 청소년보호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함. - 미디어교육, 유해약물 예방 및 대응사업, 폭력피해 예방교육 등의 경우에도 부처 간 유사사업이 많아 부처별 사업내용을 조정해야 함. - 정책 추진체계와 사업 전달체계를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보호환경에서 청소년 성보호 관련 사업까지 총괄하여 보호종합대책 전체 내용을 관리해야 함. - 유해정보/콘텐츠/매체 모니터링의 경우 '불법 콘텐츠 통합모니터링센터' 도입 필요, 매체별로 다른 위원회들이 모니터링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불법행위에 감사·긴급 개입이 작동하는 체계 필요
		3.1.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규제생태계는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이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과학적/실증적 증거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 결정을 유도해 나가는 등 논의과정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사업의 성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접근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정책 및 성과에 대한)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가치/의견 충돌이 있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변화·통합수정에 반영해야 함.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더해지는 누적된 대책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전 방위적 사회적 기구 설립과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의 장이 요구됨.
	3.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분석 근거 마련	3.2.1 청소년보호사업 평가·환류 근거 마련 및 내실화	- 「청소년 보호법」내 중앙 및 지자체의 청소년보호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환류하는 근거 마련 필요 -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다 현행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실화에 집중해야 함. - 현재 청소년보호사업의 적정 추진 정도,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과정평가 및 효과평가가 필요함. -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사업 후 효과 등에 대한 관리체계 필요 - 배달대행업 청소년 보호사업, 청소년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사업 등의 평가와 평가근거 마련 필요

① 영역	② 정책과제	③ 세부과제	④ 주요내용(전문가 의견 요약)
		3.2.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지표 개선관리	- 1차대책(환경 관리), 2차대책(위험대상자 관리), 3차대책(피해청소년 회복과 재피해 방지)의 균형 있는 추진이 필요함 (각 대책의 우선성을 논할 수 없음). - 법률에서 규정한 가장사회·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유통 규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청소년 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규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성과지표를 관리해야 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 흡연율이 증가하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 상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확대를 권장한 만큼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함.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청소년유해환경 자체정화 및 자율 규제 실적 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청소년친화환경지수 개발 등을 통해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장치 필요 - 실적과 성과를 구분해야 함. 전년대비 몇 % 상향조정 식의 목표치 설정은 심각한 문제이고 사업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함.

다음으로 정책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우선순위는 각 영역 내 상대적 우선순위인 국지적 우선순위(L)와 전체 과제 간의 우선순위인 복합적 우선순위(G) 각각에 대하여 우선순위벡터 합이 높은 순을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항목의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가 0.1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 있어 전문가들의 응답이 신뢰도를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세 가지 영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제1영역인 ‘청소년보호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제2영역인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제3영역인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순이었다. 다음으로 7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제3영역의 정책과제인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제1영역인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사전관리 강화’, 제2영역인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14개 세부과제 간의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제1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인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사전관리 강화’의 세부과제인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선’이 1순위 과제로 도출되었다. 2순위는 제2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인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의 두 번째 세부과제인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와 대응체계 개선’이었다.

3순위는 역시 제1영역 첫 번째 정책과제의 두 번째 세부과제인 ‘청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요소 사전관리 강화’로 나타났다. 4순위는 제3영역의 첫 번째 정책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세부과제인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전달체계 개선’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현행 청소년보호정책에서 온·오프라인 상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전관리 활성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변종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출현 속에서 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환경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 책임, 권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확대 및 이를 통한 대응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한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3개 영역에 따른 7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과제 간의 중요도 점수와 순위를 요약한 것이 아래 <표 IV-52>이다.

표 IV-52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과제별 중요도

① 영역		② 정책과제	L	G	③ 세부과제	L	G	순위
1. 청소년보호 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보호정책 추진	0.416	1.1.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과 사전관리 강화	0.613	0.255	1.1.1.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선	0.558	0.142	1
					1.1.2. 청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요소 사전관리 강화	0.442	0.112	3
		1.2. 청소년 보호법 내 적극적 보호사업 추진근거 마련	0.387	0.160	1.2.1.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안전, 건강 포함 선제적 보호 근거 마련	0.539	0.086	6
					1.2.2.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및 사후관리의 근거 강화	0.461	0.074	7
2. 청소년과 민간의 참여와 책무 강화	0.382	2.1. 청소년의 참여와 유해환경 대응능력 강화	0.530	0.202	2.1.1.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 참여 확대	0.437	0.088	5
					2.1.2.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와 대응체계 개선	0.563	0.113	2
		2.2. 지역사회 내 피해청소년 발견·지원체계 강화	0.261	0.099	2.2.1.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와 책무 강화	0.633	0.063	8
					2.2.2. 피해청소년 회복지원 사업 확대	0.367	0.036	11
		2.3. 공공민간 협업 기반의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활성화	0.209	0.079	2.3.1.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	0.443	0.035	12
					2.3.2. 시민사회의 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확대	0.557	0.044	10
3. 청소년보호 정책 성과관리 체계 구축	0.202	3.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 타워 마련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구축	0.794	0.160	3.1.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마련 및 전달체계 개선	0.608	0.097	4
					3.1.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0.392	0.062	9
		3.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분석 근거 마련	0.206	0.041	3.2.1. 청소년보호사업 평가·환류 근거 마련 및 내실화	0.578	0.024	13
					3.2.2. 청소년보호사업 성과지표 개선·관리	0.422	0.017	14

* 주: 1) 각 항목의 일관성지수가 0.1 미만으로 확인되어 응답의 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함. 의 신뢰성을 의미하는 지수로 0.1미만이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함. 2) L: Local(해당 항목이 지니고 있는 가중치), G: Global(상위계층의 합에 중위와 하위계층의 값을 종합한 가중치), * 자료: 김지연 외, 2015, p.244 참고.

5. 소결 및 시사점

1) 청소년의 성별, 연령,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 필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경험에서 청소년 10명 가운데 7~9명이 최근 1년 간 '심야시간 대 노래방이나 PC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수의 청소년이 노래방이나 PC방을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더라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규제임을 의미한다. 또한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금지 규제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거나 청소년 스스로가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의 장(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한 잔 이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제사나 차례 등에서 몇 모금 마셔본 것을 제외)이 전체의 40%가 넘었고, 음주 유경험자 가운데 56.1%는 최근 1개월 내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애기간 중 흡연 경험률은 약 23%로, 유경험자 중 무려 67.8%가 최근 1개월 내 흡연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담배, 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한 번 경험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고(16.0%), 유경험자 중 약 40%가 최근 1개월 내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배, 술이 성인에 비해 아동, 청소년에게 더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청소년의 흡연, 음주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물질의 중독과 폐해 등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적 개입(preventive intervention)의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청소년보호 이슈에 있어서도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해환경 접촉 경험에 있어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학교급(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일관성 있게 증가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교에 비해 특성화고교 재학생의 유해환경 접촉 경험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대응은 성별, 학교급(연령대) 뿐 아니라

고등학생의 경우 위험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과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IV-53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경험 분석결과 요약

범주	유해환경 접촉 경험	경험률	성별차이	학교급 차이
유해 매체 이용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43.5%	남 > 여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성인용 간행물 구독경험	23.0%	남 > 여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성인용 온라인 게임 이용 경험	14.5%	남 > 여	초 < 일반고 < 중 < 특성화고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	6.5%	남 > 여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조건만남 메신저/채팅앱 이용경험	4.2%	n.s. ²⁾	초 < 일반고 < 중 < 특성화고
타인 정보 도용	아이디 도용 경험	11.1%	남 > 여	초 < 중 = 일반고 특성화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	5.1%	남 > 여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유해 물질 사용	음주경험(평생)	43.1%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음주경험(최근1개월) ¹⁾	56.1%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흡연경험(평생)	22.9%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흡연경험(최근1개월) ¹⁾	67.8%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전자담배 흡연경험(평생)	16.0%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전자담배 흡연경험(최근1개월) ¹⁾	40.7%	n.s. ²⁾	n.s. ²⁾
	환각성물질이용경험	0.9%	n.s. ²⁾	n.s. ²⁾
유해 업소 이용	전자오락실	36.0%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술집 (소주방, 호프집 등)	10.5%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유흥업소/단란주점	4.1%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PC방 (심야시간대이용)	71.3%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노래방 (심야시간대이용)	80.5%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찜질방 (심야시간대이용)	37.9%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비디오/DVD방	4.7%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멀티방/룸카페	13.1%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나이트클럽/음악클럽	2.3%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 주: 1) 유경험자에 한함

2) n.s. (=not significant): 분석결과 성별 또는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의 경우 폭력피해와 성적피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표 IV-54>) 초등학교의 피해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져 폭력피해 보고가 감소되는 가능성도 일부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예방적 개입은 영유아기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연령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특성화고교를 최우선으로 폭력피해자의 발견과 회복지원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성(性)적 피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낮았으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성적인 모욕감을 느끼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이나 밀착을 당했다고 보고한 청소년이 응답자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로 고통 받는 청소년이 적어도 수 만 명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⁸⁶⁾. 또한 강제적 성관계 시도를 당했다는 비율(0.2%)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최소 수 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애경험으로 확대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증대할 수 있다. 한편, 성적피해 경험에 있어 성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스토킹을 당함’, ‘고의적 신체접촉 및 밀착을 당함’에서 남자청소년의 피해경험률이 여자청소년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피해에 있어 예방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별에 관계없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접근과 내용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54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분석결과 요약

범주	폭력피해	경험률	성별 차이	학교급 차이
폭력 피해	언어적 폭력	7.3%	남 > 여	일반고 < 중 < 초 < 특성화고
	신체적 폭력	3.2%	남 > 여	일반고 < 중 = 특성화고 < 초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1.2%	남 > 여	n.s.
	위협을 당함	2.1%	남 > 여	일반고 < 중 < 특성화고 < 초
	왕따(따돌림)를 당함	1.6%	n.s.	일반고 < 중 < 특성화고 < 초
	강제심부름(빵셔틀 등)을 당함	0.5%	남 > 여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사이버상의 따돌림/괴롭힘을 당함	0.9%	n.s.	n.s.
성적 피해	스토킹을 당함	0.5%	남 > 여	n.s.
	성적 모욕감/ 괴롭힘을 당함	1.4%	n.s.	일반고=특성화고 < 중 < 초
	고의적 신체접촉/ 밀착을 당함	1.0%	남 > 여	일반고 < 특성화고 = 중 < 초
	강제적 성관계 시도를 당함	0.2%	n.s.	n.s.
	사이버상의 스토킹/성희롱을 당함	0.5%	남 < 여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 주: n.s. (=not significant): 분석결과 성별 또는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86) 통계청의 2016년 9~24세 청소년 인구(9,467,000여명)에 근거하여 산출함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97&board_cd=INDX_001).

한편 청소년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및 근로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경험을 파악한 결과(카이제곱(χ^2)분석) 조사대상 중고등학생의 약 10% 이상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는데 ‘급여를 늦게 받음’,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음’ 및 ‘예정에 없이 초과근무를 요구 받음’ 등의 피해가 가장 빈번하였고, 여자청소년이 또래 남자청소년에 비하여 피해경험률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 대상 근로권익교육 시 여자청소년 선호 업종에 대한 중점 단속과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등 배려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55 청소년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및 근로부당행위 경험 분석결과 요약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 근로부당 행위 경험	경험률	성별차이	학교급 차이
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경험	12.2%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급여를 늦게 받음	15.4%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급여를 못 받거나 적게 받음	9.5%	남 < 여	n.s.
초과근무를 요구 받음	17.2%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함	7.4%	n.s.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고용주/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함	4.3%	n.s.	n.s.
손님(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당함	5.9%	남 < 여	중 < 일반고 < 특성화고
부당하게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지 못함	4.3%	n.s.	n.s.

* 주: n.s. (=not significant): 분석결과 성별 또는 학교급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우선 지원 영역 :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환경의 중요성”이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3개의 위험요인 모두 다섯 가지 유형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증가와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생활권 즉,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할 경우 청소년보호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족차원의 위험요인도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될 수 없다. 특히 방과 후 보호자 부재와 비양친 가정의 경우 각각 5개와 4개의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일 정도로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일관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가족차원의 두 요인 모두 청소년에 대한 성인 가족원의 지도감독 부재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대상 방과 후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을 보완하는 관계기반(relationship-based)의 돌봄, 문화,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개인차원에서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 변수의 경우 ‘유해매체 이용’,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는데, 두 종속변수 모두 콘텐츠를 접하는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자신의 학교성적에 대한 불만이 매체 과몰입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이 곧 학업에 대한 소홀이나 학교부적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위험요인의 영향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청소년이 스트레스와 불만을 매체 이외의 신체활동이나 체험, 경험을 통해 발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미시·거시 환경체계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IV-56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차원	위험요인	유해매체 이용	유해물질 사용	유해업소 이용	폭력행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통제 변수	성별 (남성)	+	+	+	+	-
	연령	+	+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				
개인 차원	학교성적(불만)	+				+
가족 차원	방과 후 보호자 부재	+	+	+	+	+
	비양친(非兩親) 가정	+	+		+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
지역 사회 차원	안전하지 않은 학교주변환경	+				+
	지역사회 내 유해매체, 물질, 업소 접근성	+	+	+	+	+
	유해매체, 물질, 업소에 대한 지역사회용인	+	+	+	+	+
	지역사회해체	+	+	+	+	+

* 주: +는 각 위험요인 또는 통제변인이 해당 종속변수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는 반대로 부(-)적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을 분석한 결과 먼저 청소년의 ‘도덕적 태도’, ‘저항기술’이 다섯 가지 유형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즉,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로서 바른 도덕적 가치관과 자신을 보호하는 사회기술 (social skills) 역량을 갖추는 것이 유해환경의 접촉을 차단하는 노력 못지않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족차원에서 3개의 요인을 검토하였는데 세 요인 모두 여러 가지 유형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려웠다. 먼저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와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존중이 각각 ‘폭력가해행위’와 ‘유해업소이용’을 제외한 4개 유형의 종속변수와 부(-)적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우리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여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폭력가해행위의 감소와 관련이 없는 이유는 친밀성과 폭력이 공존하는 한국가족의 문화적 특성(News Power(2005.5.14.), <http://m.newspower.co.kr/3534>, 인출일: 17.9.30.)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적 행위를 학습하고 사회화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보다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여기는 부모의 태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중앙일보 보도자료(1996.8.19.), <http://news.joins.com/article/print/3313884>, 인출일: 2017.10.9.). 부모의 자녀존중이 청소년 자녀의 유해업소 이용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PC방이나 노래방에 출입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자녀 스스로가 유해한 업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고 존중하는 부모라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한편 부모의 지도감독은 다섯 가지 유형 중 유해매체 이용, 폭력가해행위 및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해서 보호적 기능이 있었지만 나머지 두 개 유형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지도감독이 이와 같이 다소 비일관된 결과를 산출한 이유는 이 변수가 청소년 자녀의 보호에 일정 부분 기능을 발휘함에도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심해질수록 부모의 지도감독 정도도 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의 영향력을 반감시켰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차원의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가족의 긍정적 특성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개입이 ‘가족’을 기반으로, 혹은 ‘가족’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표 IV-57).

3) 청소년보호의 잠재적 보호요인 : 또래, 학교, 지역사회, 긍정적인 관계

또래 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섯 개 종속변수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즉, 친사회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문제행동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 감소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서 건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도모하며 또래관계를 활용한 접근이 청소년 개인에 대한 접근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3개는 평균적으로 종속변수 3.3개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가운데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을 제외한 네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폭력가해 행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규제와 교육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교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해물질 사용 및 폭력가해행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가 ‘행동 규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차원의 잠재적 보호요인 2개 모두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을 제외한 4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의 감소와 관련성을 보여 청소년보호에 있어 지역사회환경의 중요성이 재입증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친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만족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가꾸는 노력 자체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을 접촉하는 기회를 차단함과 동시에 관련 욕구를 감소시키고 청소년 스스로가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잠재적 보호요인 효과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이 다른 유형의 문제행동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지역사회나 학교차원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반면 대인관계 변수의 경우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즉,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자녀존중 및 교사로부터의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개입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핵심 성과지표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표 IV-57).

표 IV-57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 검증

차원	잠재적 보호요인	유해매체 이용	유해물질 사용	유해업소 이용	폭력 가해행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과몰입
통제 변수	성별 (여=0, 남=1)	+	+	+	+	+
	연령	+	+			
	대도시 (참조집단: 중소도시)					
	농어촌 (참조집단: 중소도시)	+				
개인 차원	도덕적 태도	-	-	-	-	-
	저항기술	-	-	-	-	-
가족 차원	부모-자녀 간 친밀한 관계	-	-	-		-
	부모의 지도감독	-			-	-
	부모의 자녀존중	-	-		-	-
또래 차원	친구들의 친사회적 성향	-	-	-	-	-
	문제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제어	-	-	-	-	-
학교 차원	교사로부터의 지지	-		-		-
	학교 내 다양한 참여 기회	-	-		-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	-	-	-	
지역 사회 차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참여 기회	-	-	-	-	
	만족스러운 지역사회 환경	-	-	-	-	

* 주: -는 각 위험요인 또는 통제변인이 해당 종속변수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키며 +는 반대로 정(+)적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4) 청소년의 청소년보호사업 평가와 요구

이 연구에서 총 12개로 분류된 청소년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 대부분에 대하여 과반 이상의 청소년이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술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심야시간 게임전전이용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청소년 10명 중 7~8명이 알고 있을 정도로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구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같이 지역사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인지율은 약 50% 내외 수준을 보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보호사업 및 보호활동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청소년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항목(4점 척도)에서 평균 3점 수준을 보였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술·담배 구매 시 신분증 확인, 청소년유해업소 지정·단속의 경우 3점 이상이였다. 반면 심야시간 대 게임건전이용제도는 2.48로 최하점을 보여 청소년 보호효과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은 폭력 및 학대 청소년 지원(중 34.1%, 고 31.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유해 매체·약물 유통 규제(중 21.9%, 고 18.3%),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처벌(중 11.5%, 고 15.9%)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 구제와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해물의 유통을 규제하거나 당사자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 및 법률 제정 시 청소년의 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는 다소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과반에 가까운 43.6%의 청소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솔직한 평가 결과로 보이는 반면, 무관심한 측면으로도 해석되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또한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질문에는 평균 2.20점(4점 척도) 수준을 보여 그간 보호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직·간접적인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규제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기 청소년보호는 접근 자체를 차단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행사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성인기 진입을 앞둔 후기청소년기의 경우 규제보다 스스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자신을 지키는 역량을 갖추는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 관련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가장 적절하다(중 31.4%, 고 41.2%)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정도를 보면, 최근 1년간 성교육(성폭력 예방포함),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폭력예방, 흡연·음주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을 보여 다수의 청소년이 관련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소년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상담치료 등의 참여율은 약 20~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사업의 대상이 피해청소년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당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데, 재학생 10명 중 약 2~3명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것 역시 재학생의 유해환경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참여 청소년의 평가는 2점대 후반으로(4점 척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긍정응답률의 경우 중학생(70~80%)이 고등학생(50~60%)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령별로 차별화된 대상 집단으로 이해하고 교육과 사업을 차별화, 내실화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이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을 때 고민을 나누고 싶은 상대는 ‘부모(보호자)’가 가장 많았는데 학교급에 따라 62.5%(고)부터 82.1%(초) 수준의 범위를 보였다. 그 다음은 ‘친구’로 49.7%(초)부터 68.3%(고) 수준이었다. 주목할 부분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보다 친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점인데, 초등학생들의 경우 부모를 선호하는 비율이 친구선호 비율을 압도하였으나(82.1% vs. 49.7%), 중학생의 경우 친구선호 비율이 부모선호 비율과 대등한 수준을 보였으며(66.9% vs. 63.7%), 고등학생은 친구선호 비율이 부모선호 비율을 초과(62.5% vs. 68.3%)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유해물질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로 상담을 받을 경우 과반 이상의 청소년이 1:1 대면상담을 선호하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가족상담을, 중고교생은 집단상담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유해물질이나 스마트폰 과몰입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개별상담과 병행하여 청소년의 관계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존재를 포함한 교육과 개입의 시도가 장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별로 차별화하여 초등학생은 부모대상 예방교육이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권장되며, 중고교생의 경우 또래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단상담이나 활동(group work)이 적합함을 시사한다.

제 V 장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1. 제안배경
2. 정책 추진과제

제 V 장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⁸⁷⁾

1. 제안배경

1) 주요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2차 자료 분석, 초·중·고교생 대상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분석이 활용되었다. 먼저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 자료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다종다양한 신·변종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출현에 대응함에 있어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노력과, 청소년의 자율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고려한 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청소년과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 규제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민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개선과 보호요소를 강화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제의 추진 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예비적 헌법심사와 같은 적법절차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사안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에 국한된 결과라는 한계가 있으나, 중앙정부차원의 보호사업에 유사중복이 있고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이 누락된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모니터링·제도개선'에 다소 집중된 경향을 보였는데 부처의 경우 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 지자체는 유해약물 및 업소 모니터링 사업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신종담배, 랜덤채팅, 1인 창작자 영상콘텐츠 등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87)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정부의 심의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향후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시책 추진 시 피해예방, 피해청소년 발굴지원, 회복과 사후관리 사업이 연장선상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수단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차 자료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2016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매체 접촉과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유해물질 이용은 여자청소년에 비하여 남자청소년이 많았고, 유해업소 이용 및 폭력피해 경험, 그리고 성적 피해경험의 경우 각 항목에 따라 남녀 간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반면 근로 중 부당행위경험은 7개 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 여자의 피해경험률이 높아 성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경험은 학교급(연령)과 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심야시간 대 노래방이나 PC방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음주 유경험자 2명 중 1명이 최근 1개월 이내에 음주를 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각종 제재조치의 효과성과 유해물질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인 청소년이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스스로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교육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의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였는데, 2016년도 집행액은 약 1천 2백 억 원 정도로 일반회계보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복지사업비가 일부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의한 신규 사업 개발과 예산 확충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 증진 등 예방사업비와 치료 및 회복지원 사업비의 증액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사업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의 사업에 있어 유사중복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 부처 간 역할분담과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가 절차로서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과정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증적 조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초·중·고교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가족·또래·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개인차원에서의 도덕적 태도와 유해환경 접촉 권유에 대한 저항기술, 가족차원에서 부모의 지도감독과 자녀에

대한 존중태도, 또래차원의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와 위험행동을 제지해 주는 친구의 존재, 학교차원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와 적절한 운영규정과 지도방식,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에 대한 접근성과 해체 정도와 같은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피해를 예방하는 잠재적 보호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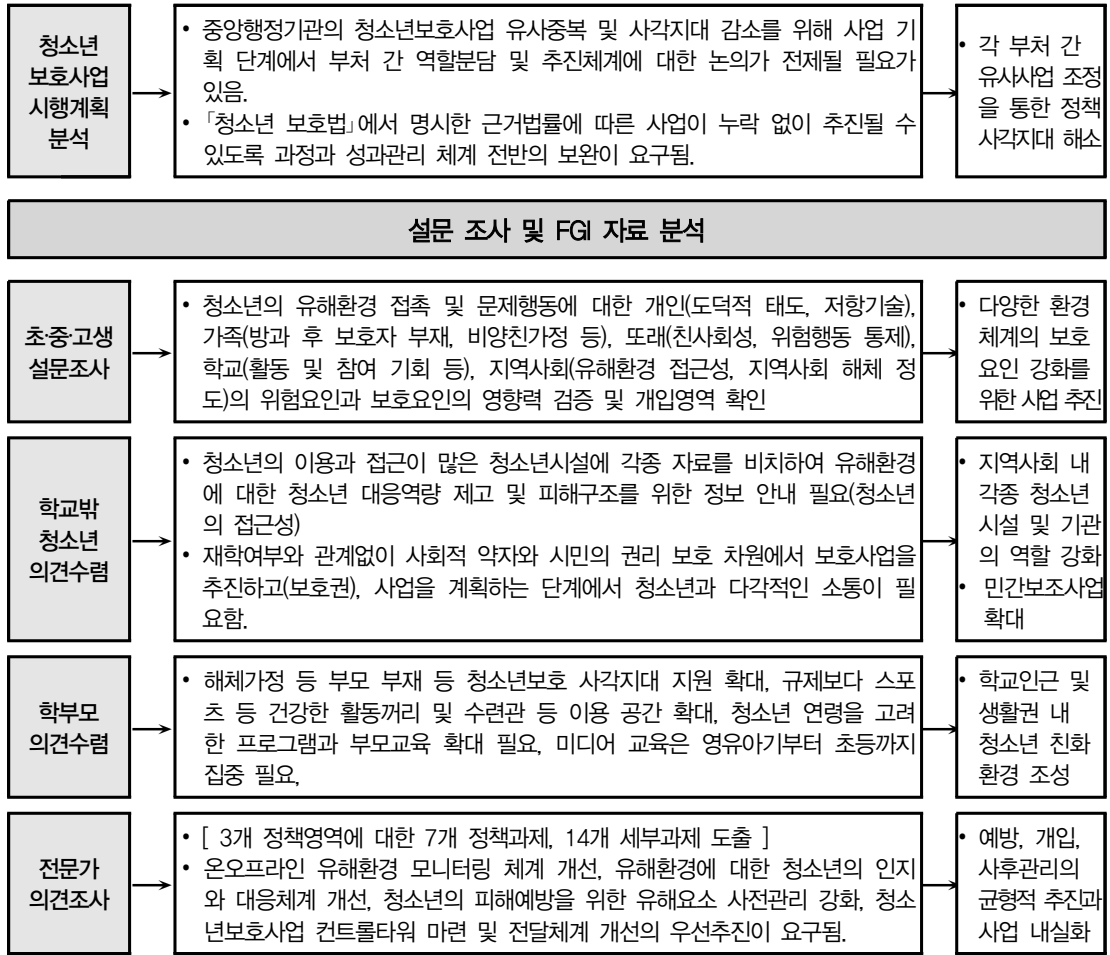
다음으로 제한적이나마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의 공통질문을 포함하고 비재학생의 경우 청소년보호 이슈에서 재학생과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을, 학부모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느끼는 보호정책의 체감효과와 정책적 요구, 가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에 포함하였다. 비재학생 대상 집단면접에서는 청소년의 이용과 접근이 많은 생활권 내 청소년활동 및 복지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 등)에서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보호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청소년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부모와의 면접조사에서는 부모의 지도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제재를 하는 방식보다 스포츠 등 건강한 청소년 활동거리와 공간 확충, 자녀의 연령대를 고려한 부모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 3개 정책영역에 대한 7개 정책과제와 14개 세부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유해환경 모니터링 체계 개선,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와 대응체계 개선, 청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요소 사전관리 강화,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마련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이 우선추진 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방법에 대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도식화 한 것이 <표 V-1>이다.

표 V-1 분석자료와 주요결과 요약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주요결과 및 시사점	정책 방향
문헌분석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제 추진 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에 고려와, 예비적 헌법심사 등 적법절차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 가는 과정이 절차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것임. • 산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자율권, 부모의 교육권, 가족의 자율성을 고려한 보호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전 마련이 요구됨. • 청소년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자율적 규제와 제재, 보상 등 다양한 장치(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청소년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정책추진 정당성 확보 •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의 다양화
국내외 정책자료 분석	• 청소년유해매체 규제는 정부차원의 규제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주요국의 사례를 참여하여 청소년 참여중심 자율규제 운용, 자율규제를 위한 지원확대가 요구됨. • 신종담배 등의 인터넷 유통을 차단하고 유해약물의 종류와 모니터링 대상 확대가 요구됨. • 청소년유해업소 규제와 관련하여 심야시간 대 특정지역의 청소년출입금지 연령 및 시간은 국가별 차이가 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심의 정책접근이 요구됨. • 랜덤채팅, 1인 창작자 영상콘텐츠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를 강화하고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범죄화 논의 필요 •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간 역할분담이 요구됨.	• 산변종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 자치법규 중심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 강화
2차 자료 분석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유해매체 접촉, 유해사이트 차단, 유해물질 이용은 남자가 많고, 유해업소와 폭력피해 경험, 성적 피해경험은 일부 항목에서 남자가 많았음. 반면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은 7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여자의 피해율이 높아 성별 차이를 보임. • 유해환경 피해경험은 학교급 및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며 각종 교육사업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청소년의 성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예방·교육 홍보사업 추진
여성가족부 예산자료 분석	• 2008년 이후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며 2016년도 집행액은 약 1천 2백 억 원(일부 복지사업비 포함)임. • 청소년육성기금 의존도가 크며 일반회계에 의한 신규사업 확대 필요 • 청소년의 매체활용능력 증진 등 예방과 치료사업의 균형 있는 추진이 요구됨	•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의한 신규사업 확대



2)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자료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를 모색하였다.

(1) 청소년이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보호사업 추진 : 청소년보호권 보장 강화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로 20년이 지난 현재,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과 관련된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청소년보호정책이 ‘청소년을 정책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화’한다는 일각의 지적이다. 이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 평가와 환류의 전반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와, 정책수단과 유형이 여전히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과 접근을 제한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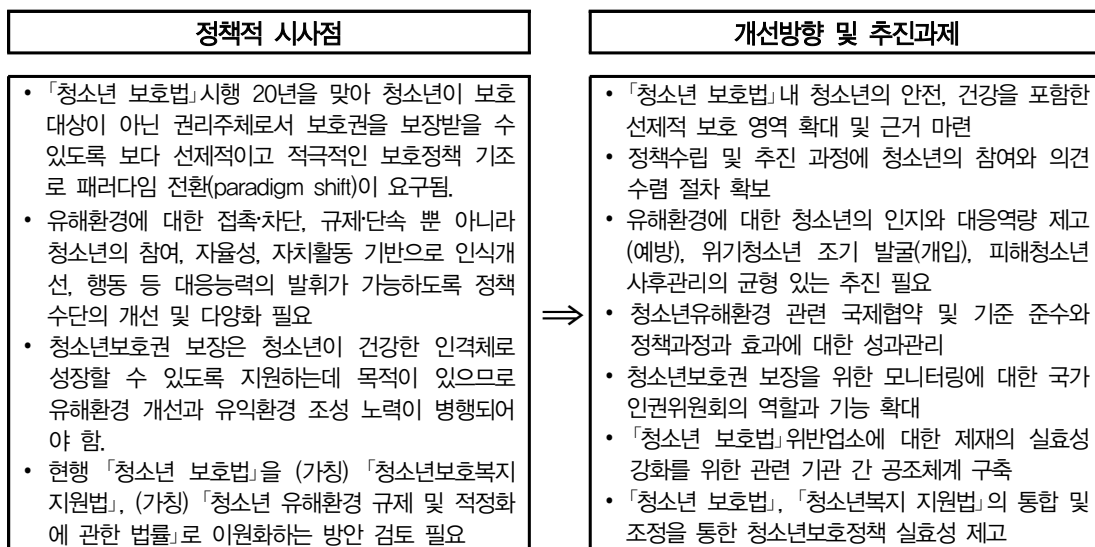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우리나라의 제3,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는 “아동과 관련이 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대한민국헌법」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10조). 즉,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 보호법」과 이를 근거로 추진되는 청소년보호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정책을 통해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신변중 유해환경의 출현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과 범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아울러 일련의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 청소년이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절차를 정례화 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접근이 요구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아동청소년인권과)의 역할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조약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청소년의 보호권 보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단계적인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관련하여 먼저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의 안전, (정신)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보호범위(coverage)가 제한적이고, 피해청소년의 발굴과 보호·지원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이 권리주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참여 절차를 확보하고, 유해환경의 폐해에 대한 인해와 인식의 개선이 대응역량 발휘와 피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과정과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일 방안으로 청소년참여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제의 합목적적인 정당성을 포함하여 입법목적과 청소년의 자유권 간의 현실적인 이해득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가능하도록 예비적 헌법심사와 같은 절차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유해환경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이나 기준을 근거로 정책성고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국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청소년의 자율성과 자치활동이 기반이 된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해환경에 대처하는 청소년의 역량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의 정화와 유익환경 조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제거하는 것 자체가 청소년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유익 환경 조성은 청소년정책이라는 큰 틀 내에서 설계와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청소년이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보호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청소년의 보호권을 강화하는 정책수단과 개입영역에 있어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간에 일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유해환경의 범위를 청소년의 성장에 따른 발달적(developmental) 위기와 상황적(situational) 위기를 모두 포함하면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관점에서 보호와 복지는 동일한 개념이다. 이에 청소년의 보호권 보장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두 법률을 (가칭) 「청소년보호복지 지원법」과 (가칭)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및 적정화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정하거나 일부 사안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



【그림 V-1】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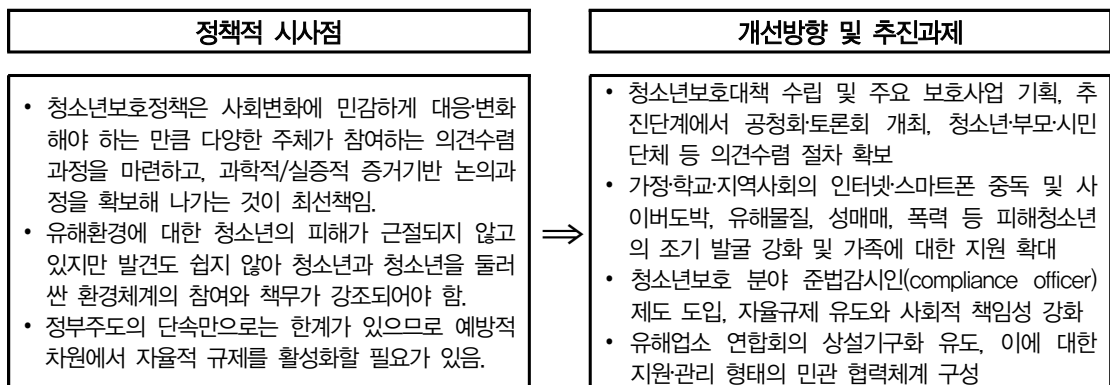
(2) 시민사회의 참여와 공공·민간의 협력 기반 강화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무쌍함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률을 근거로 단속과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제재 중심 접근은 인권주체인 청소년의 자율권 제한과 국가후견주의의 한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피하기 어렵고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지지와 참여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그 동안 보호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 주로 부각된 반면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은 크게 조망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예방적 차원에서 업계와 사업주 차원의 자율규제에 대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이에 우리사회가 청소년보호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참여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유해업소 연합회 등의 상설기구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관리 형태의 협력체계 구성 노력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한 주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집단과 끊임없는 갈등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사업자의 권한과 한계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실효성을 고려할 때 사업자보다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보호정책은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변화, 조정, 개선을 거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기반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가정·지역사회(지방)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인터넷·스마트폰 도박·게임 중독을 포함한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청소년의 조기 발견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률에 피해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와 학교의 책무를 포함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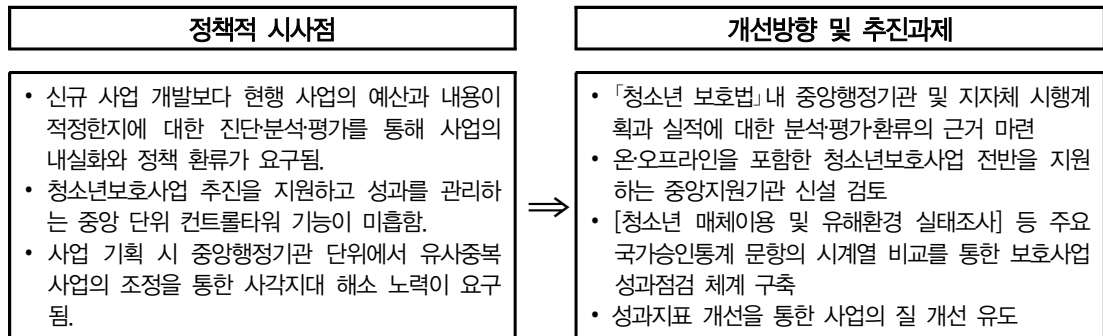
【그림 V-2】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2)

(3) 청소년보호사업의 적정성 분석·평가 : 컨트롤타워 기능 마련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보호사업의 내용과 예산, 수혜 규모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진단·분석·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신규 사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신규 보호사업 개발보다 현행 보호사업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청소년보호체계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 시행계획과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의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보호사업에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 상 청소년보호사업을 지원하고 보호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조정·조율과 성과를 관리하는 중앙 단위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하고 성과지표의 설정·관리에도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사업의 성과와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시계열적인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인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적극 활용이 요구된다. 다만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비재학생의 상황과 의견이 배제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동일 문항 일부를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 정도와 재학생과의 비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보호사업 추진 전반에서 과정 및 성과평가가 미흡하였고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보호사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주요 보호사업의 과정과 성과를 관리하고 사업 개선을 위한 과학적 근거(evidence)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위의 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V-3】 정책적 시사점에 따른 개선방향(3)

2. 정책 추진과제

1 제도개선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⁸⁸⁾

표 V-2 법률 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강화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1. 보호시책 추진 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 강화		○	신규	○		여성가족부
1-2.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3. 청소년 대상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4. 청소년 보호사업 분석평가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5. 학교의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6.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발굴 및 회복지원 근거 강화		○	신규	○		"

1) 1-1. 보호시책 추진 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 강화

(1) 1안 : 「청소년 보호법」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3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가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보호시책 수립 및 추진의 각 단계에서 청소년의 주체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88) 여기에서 제안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관련 여섯 가지 사안은 현행 법률의 취지와 목적,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어 법체계 상 부합하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국한하지 않고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청소년보호의 개념을 광의적, 거시적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청소년보호정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보호법」 간의 통합 및 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논의로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2항(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표 V-3>).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보호 관련 법제 추진 시 청소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검토하여 적법절차(適法節次)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과 공론화가 가능하고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전반의 의견 청취와 이견(異見) 조율이 가능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표 V-3 「청소년 보호법」 제34조 제3항 신설(안)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청소년 보호시책이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2안 : 「청소년 보호법」내 별도 조항 신설

2안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종

합대책 수립·시행에 따른 각 단계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참여 절차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2안도 1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나, 1안과 비교할 때 별도의 조항으로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표 V-4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2항 신설(안)

현행	개정안
본조신설	제33의2(청소년보호시책 추진 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시행 및 각종 보호시책의 수립과 추진 단계에서 청소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1항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절차와 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1-2.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 법적 근거 마련

(1) 1안 : 「청소년 보호법」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청소년의 보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현행 청소년 관련 주요 법률에서 배제된 부분인 청소년의 안전(安全) 및 정신건강보호의 법적 근거를 「청소년 보호법」 내에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호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내에 ‘안전’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의 전반적인 안전과 정신건강보호 영역은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본 법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이를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해환경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는 결국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과지표로서의 의미도 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현재의 청소년보호·복지·활동정책 간의 경계와 범위를 고려할 때 실효성 측면에서 그간 보호영역에서 제외된 안전, 정신건강, 근로보호 영역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시 국가의 정당한 개입범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장애가 된다고 합의된 유해환경과 유해요인들로부터 청소년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노출 시 청소년이 적절한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의 안전, 정신건강보호를 포함하여 예방중심의 적극적인 보호정책 추진과 보호영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호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범위와 역할, 그리고 정책수단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국가주도의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영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보호시책이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V-5>).

표 V-5 「청소년 보호법」 제5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각종 청소년 보호시책이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u>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2) 2안 : 「청소년 보호법」내 별도 조항 신설

2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5장(청소년보호사업의 추진)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는 「청소년 기본법」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와 관련하여 청소년이 각종 위험과 차별대

우와 착취, 학대와 폭력, 유해물로부터의 정신·심리·신체적 피해, 각종 폐습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시책과 각종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환경 이외의 생활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의 모든 요소가 포함된 청소년의 생활권보호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의 정신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은 급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류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적인 피해예방과 구제가 가능하도록 예방과 치료, 사후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도록 한다. 2안의 경우 앞의 1안과 비교할 때 주요 관련 법률과의 연계 속에서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정책유형과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 장점이다(<표 V-6>).

표 V-6 「청소년 보호법」 제36조 신설(안)

현행	개정안
본조신설	제36조(청소년 안전과 정신건강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보호권 보장을 위한 시책과 지원 사업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환경 이외 생활환경의 모든 요소에 있어 청소년의 안전 조치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3. 청소년의 정신건강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각종 예방·치료·사후관리 시책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보호를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1-3. 청소년 대상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 프로슈머의 역량강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 가운데 미디어 환경은 제도가 그 변화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 시시때때로 규제와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근절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청소년이 1인 창작 콘텐츠를

포함하여 각종 미디어의 소비자일 뿐 아니라 생산자 즉, 프로슈머(prosumer)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매체이용과 활용에 대한 윤리교육을 통해 포괄적인 피해예방과 피해를 당했을 때 조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대응역량을 증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 내 산·변종 유해업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업소에 대한 단속과 규제 뿐 아니라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특성과 피해를 이해하여 이용을 자제하고 보호주체로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광범위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되고 있다(동법 제15조). 성폭력 예방교육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종사자와 학생에게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권유를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 때, 양심(良心)으로 대변되는 도덕성이 있을 때, 지위비행을 포함한 위험행동을 제지하는 또래의 존재 등이 유해환경에 대한 잠재적 보호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의 특성과 폐해를 인지하는 수준을 벗어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회기술을 습득하고, 인성 함양과 친사회적 태도를 습득하는 다양한 기회에 노출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선호와 교육효과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교내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34조 제3항의 신설 규정(안)을 제시한 것이 아래 <표 V-7>이다.

현행	개정안
본조신설	제34의3(청소년의 유해환경 피해예방 교육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은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폐해에 대한 이해, 지원제도 소개 및 홍보, 그 밖에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피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제2조에 다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안전대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환경 피해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1-4. 청소년보호사업 분석·평가 법적 근거 마련

2014년에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청소년(육성에 관한)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동법 제13조).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 환류를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되었다(동법 제14조). 이를 근거로 2016년에 처음으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현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과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나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평가 시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내용을 간소화하는 등 절차 상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⁸⁹⁾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안 및 시행규칙의 조문신설(안)을 제안하면 <표 V-8>, <표 V-9>와 같다.

89) 청소년보호사업의 분석·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과제 2-2(성과지표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를 참조할 수 있다.

표 V-8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점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대책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종합대책의 수립·시행과 제2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좌동)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종합대책에 관한 분석·평가 2.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보호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보호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보호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②좌동 ④ ③좌동 ⑤ ④좌동 ⑥ ⑤좌동

표 V-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의 간접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 1-5. 학교의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보호법」에 가정의 역할(동법 제3조), 사회의 책임(동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의 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사회통념에서 볼 때 사회의 책임에서 학교의 책임을 가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에 있어 학교가 주요한 안전망이며 보호체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교직원의 교내 흡연을 규제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등 학교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학교와 교직원이 유해환경의 폐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속한 발굴 등 보호체계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인정된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학교의 책임)의 신설(안)을 제안한 것이 <표 V-10>이다.

표 V-10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개정(안)

현행	개정안
본조신설	제4의2(학교의 책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행에 필요한 조치 2. 제34조의3(청소년의 유해환경 피해예방 교육 등)에 따른 교육과 가중 사업 3. 학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교직원의 교내 금연 및 절주 등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조치와 지원

6) 1-6.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발굴 및 회복지원 근거 강화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청소년을 동법 시행령 42조에서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보호자)등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후속조치와 관련된 지원 근거는 다소 미흡하다. 이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 가운데 회복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를 조기에 발굴하지 못하고, 비슷한 문제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교육적 선도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

가 자녀에게 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등 보호자의 역할이 일정부분 요구된다. 이에 보호자에게 자녀의 법 위반사실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보호자로서 어떤 역할을 이행해야 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호자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의한 교육적 선도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하여 지자체 단위의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 검찰단계에서도 다양한 선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소년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의 보호체계에서 회복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발굴하는 경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나 찬반에 대한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사안의 쟁점은 동 법률에 의한 ‘대상아동·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과는 달리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법률 개정안 반대측), 청소년의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 제반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로 규정하여 처벌이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법률 개정안 찬성측) 간의 대립이다. 그러나 양측 모두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전문적인 처우(treatment)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부터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의 목적을 실현하는 적합한 방법인지, 보호처분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제한적이거나 이와 같은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각 단계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과 부모가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사안별로 제재와 특화된 처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표 V-11>).

현행	개정안
제42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법 위반사실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 등 법 준수 의무자를 강박(強迫)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2.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이하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결정하는 경우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상담가, 의사, 변호사 등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5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이하 "통보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보대상 청소년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통보대상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3.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통보대상 청소년을 통보한 여성가족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 좌동 1~2 좌동 ② 좌동 ③ 2항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상아동·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법 제50조에 따라..(중략).. 한다. 1~3 좌동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를 포함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신청서 양식 ⑤ ④의 내용 좌동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친권자등은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통보대상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를 신청할 수 있다. ⑦ 통보대상 청소년을..(중략)..한다. 다만 청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0) 개정안 제42조3의 내용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개정안 제42조4의 4 이하의 내용은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추후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을 통해 개정이 요구된다.

표 V-12 청소년보호 추진체계 정비 추진과제(안)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2-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신규	○		여성가족부
2-2. 성과지표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	○		개선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2-3. 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및 인력 확충	○		개선	○		여성가족부
2-4. 청소년·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		개선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1) 2-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효과평가를 포함하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문가 의견조사에도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보호사업 상당수가 대상, 내용, 방식에 유사중복이 있어 이를 조정하고 성과관리 및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보호사업 가운데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정화’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모두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역기능으로 사회문제 시되고 있는 랜덤채팅 앱은 정작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보호사업 각각에 있어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도 다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부처 단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각 중앙부처의 역할을 조정하고 성과지표를 관리하며 제도의 사각지대와 신규 사업을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등 거버넌스의 재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그림 V-4]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와 같은 분절적인 규제단속 중심의 접근, 보호중심 접근을 통합적 안전망 구축과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 현행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물 모니터링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 인터넷방송, 스마트폰 앱 등 모니터링(채팅 앱 제외)
- 여성가족부 → 인터넷 · 게임 · 음반 모니터링



분절적 규제 · 단속 + 보호 중심 접근

■ 개선

- 경찰청 → 사이버잠복제도 운영, 온라인 상 음란물 유포행위 단속
(성과지표: 청소년 피해율)
 - 교육부 → 미디어리터러시 및 정보통신윤리 관련 교육자료와 매뉴얼 개발 · 보급, 교육과정 기반 예방교육 (성과지표: 청소년 미디어 교육 수혜율,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 문화체육관광부 → 랜덤채팅 플랫폼 보급 · 적용, 자율규제조직 구성 지원
(성과지표: 자율규제 참여업체 수)
 - 미래창조과학부 → 랜덤채팅 플랫폼 개발,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이버 잠복기술 개발
(성과지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완성도, 범죄억제 기반 마련 정도)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 인터넷방송, 스마트폰 앱(채팅 앱 포함) 모니터링, 모니터링 전문요원 양성
(성과지표: 모니터링 범위 확대)
 - 보건복지부 → 유해매체 피해청소년 상담 · 치료 · 연계
(성과지표: 피해청소년 치유율, 기관 연계)
 - 법무부 → 보호처분 청소년 대상 교육,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성과지표: 교육 수혜율,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행위 · 처벌에 대한 인지도)
 - 여성가족부 (컨트롤타워) →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시행계획 및 실적 분석 · 평가
(성과지표: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개선, 청소년 대응역량 강화)
- +
- 지방자치단체 → 피해청소년 발굴 · 지원
(성과지표: CYS-Net 연계협력 지원 사례)



통합적 안전망 구축 + 정보통신기술 및 역량강화 접근

【그림 V-4】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정화’ 거버넌스 개선(안)

특히, 각 부처가 주요사업의 영역과 정책수단을 결정함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유사중복 및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된 ‘관계기관 점검 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 점검 회의가 실행력을 갖추고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청소년보호대책의 수립·시행)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소년보호사업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에 실적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시 법제 개선, 모니터링, 예방·교육, 발굴·개입, 피해자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정책수단과 개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성과는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추진기반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보호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성과지표를 설정, 관리하여 정책효과와 협업의 시너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청소년보호환경과) 내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방안(1안)과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은 재정건전성, 실행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크게 두 가지 대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내에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두 번째는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2안)이다. 전자는 부처 간 조율을 전제로 하지 않아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후자는 범부처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과 강력한 실행력이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위상과 구조라는 장점이 있다. 전자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에 ‘(가칭)청소년보호종합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거나(3안), 현재 개발원 내에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보호센터의 기능을 대폭 변경하고 인력을 확충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안(4안),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⁹¹⁾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5안)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 (1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의 사업실적 분석평가 기능 신설
→ 「청소년 보호법」내 분석평가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분석평가업무는 위탁 등의 형태로 추진 가능하나 부처 내 담당인력 배치 필요
- (2안)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별도 조직 신설
→ 범부처 사업 조정 및 연계를 위한 최적의 구조라는 장점이 있음.
→ 청소년정책 내에서 보호사업이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부처 간 조율을 전제로 함.
- (3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o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내 ‘(가칭)청소년보호종합센터’ 조직 신설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조직을 신설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시도 및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 및 활동 전달체계와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한 구조
- (4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 청소년매체환경보호보호센터를 ‘(가칭)청소년보호종합센터’로 확대 개편
→ 온·오프라인 보호사업 총괄 기능으로 변경 추진
→ 기존의 인터넷, 음반, 게임 모니터링 기능 + 총괄 기능에 따른 인력 총원 전제
- (5안)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확대 개편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 청소년보호정책 분석평가에 따른 인력 총원 전제
→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조직이나, 위탁운영의 한계 상존

91)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사업위탁으로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에 설치되어 있다.

2) 2-2. 성과지표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

(1)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

청소년보호정책의 성과는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수행한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일련의 예방적 개입에 대한 정책효과를 의미한다. 즉,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보호 시책이 청소년의 안전과 정신건강, 건전한 성장에 기여했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의 자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그리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의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보호사업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먼저 부처 단위의 자체평가는 청소년보호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과 문제점이 있다.⁹²⁾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결과의 환류가 용이한 것은 장점이나, 내부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고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둘째, 각 부서별(과 단위)로 평가대상이 구분되는 경향으로 인해 관리과제(단위사업)의 목표달성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보호정책 전반의 성과와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성과지표 중심으로 계량화, 서열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정책 이슈와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어렵고, 이는 정책개선의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획일화된 정책평가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정책관리에 용이한 자료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청소년보호정책의 제반 특성이 고려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보호정책은 환경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실현하기 때문에 성과측정을 목적으로 통제·비교집단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수요자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단기(1년) 성과에만 치중하여 정책투입을 통한 환경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파악하고 정책에 환류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보호정책은 ‘고용증진’과 같이 계량화된 정책목표와 정량지표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고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분리하기도 어렵다.

본 연구에 따른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부처의)성과지표에서 실적(output)이 도외시 될 수는 없으나, 사업예산과 투입되는 인력 정도를 고려하고 사업 내용과 질 개선을 유도해야

92)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방식의 한계는 강신욱, 강혜규, 노대명, 이현주, 이병재, 2015, pp.36-38을 참고하였다.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보호정책 영역별 성과관리지표와 관련하여 먼저 유해매체의 경우 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노출·접근정도, 제도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률, 교육 및 사업 이후 인지도와 인식의 변화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 외 유해업소의 경우 단속 건수를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조치 이후 개선 이행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자율규제 조직 수와 교육 참여 등에 대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해약물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 예방 교육 및 사업 효과(인지도, 인식변화 등),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고, 유해행위는 피해청소년지원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교육 참여에 따른 인지도, 만족도, 태도의 변화 등의 의견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근로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대상 근로권익교육 내용의 적절성, 업주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률, 교육대상자별 교육 수혜율과 법규인지도 등의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보호정책 성과관리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매체, 약물, 업소 행위 등 유해환경별 규제와 단속, 모니터링 등 소극적 정책성과와 청소년이 대응능력 제고 등 적극적 보호정책성과를 구분하여 성과지표를 구성함으로써 보호정책의 균형을 여기서부터 관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타 부처와의 연계, 협력 건수를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실적(output) 관리 필요성도 인정되나, 전년대비 몇 % 상향조정하는 목표치 설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즉, A(100~90), B(89~80), C(79~70) 등 구간을 등급화하고 투입된 인원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과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사업예산이 동결되거나 감액되어도 성과를 올려야 하는 구조는 매우 부적절함.
- 보호정책의 성과를 단일 지표로 관리할 수 없고 주요 보호사업별로 실적 및 성과지표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추진체계, 사업의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별도 연구가 필요할 것임.
- **유해매체** : (청소년 대상 조사를 통한)유해매체별 노출률, 유해매체 예방교육 실시 횟수 및 참여인원, 자율규제 기구가 수행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위반 시정 등 개선 이행률(사후관리), 교육/사업의 효과(인지도, 인식변화 등), 교육요원의 전문성
- **유해업소** : 유해업소 단속 실적, 청소년 보호법 위반 검거인원, 시정조치 이후 사후이행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감시순찰 및 모니터링 건수, 해당업소 규제율, 자율규제조직 수, 자율규제 교육참여율
- **유해약물** : 청소년 흡연율,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횟수 및 참여인원, 예방교육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또한 적절한 콘텐츠로 제공되었는지 평가 필요, 금연이나 금주교육의 효과(위해도 인지수준, 인식변화 등)
- **유해행위** : 폭력 및 학대 피해예방교육 실시 횟수 및 참여인원,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수), 피해청소년지원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대상별 인지도, 수용도, 만족도, 인식/태도 변화
- **근로보호** : 근로권익교육 실시 횟수 및 참여인원, 지방노동사무소(청소년근로보호센터 포함)의 청소년 근로 민원 건수 대비 지원 건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연계 건수, 근로권익교육 내용의 적절성,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업주)의 시정명령 이행률, 교육대상자별 교육수혜율, 법규인지도, 법규준수율

※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1차)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한편, 국가승인통계로 2016년부터 2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여성가족부)’를 활용하여 청소년보호정책 수립 및 주요 보호제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통해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고 지표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청소년의 성장발달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성과지표로서 인터넷게임 중독률(인터넷중독실태조사), 흡연율(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학교폭력 피해경험률(학교폭력실태조사) 등 타 부처 주관의 대표성 있는 조사결과도 함께 관리될 필요가 있다(<표 V-13>). 또한 조사주기를 고려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시에도 보완적인 성과지표로 부분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인식을 묻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과 실적 반영에 있어 현실과의 괴리를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정량, 정성지표에 대한 부가지표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청소년보호정책의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예시를 제시한 것이 <표 V-14>이다. 실적과 성과를 구분하여 사업실적은 가급적 과정지표에 포함하고, 국가승인통계의 조사문항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영역별 대표지표를 성과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계량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용이하지 않은 보호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행률, 개선이행률 등의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타 부처에서 생산되는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대표성 있는 조사의 문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려되어야 부분은 성과목표이다. 과정지표의 경우 ‘전년 대비 실적 증가’와 같은 성과목표치 설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대비 산출물의 적정성 정도를 평가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예산규모를 고려한 등급제 방식이나 최근 2~3년간의 실적 평균을 관리하는 방식, 정성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V-13 청소년의 성장·발달 유해요인 관리 성과지표(안)

영역	성과지표	목표치 근거(안)	출처
1. 청소년 유해매체	①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률(%)	최근 3년 평균수준 관리	인터넷중독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② 성인물 이용 시 나이 확인 절차 작동 여부(%)	이용 경로별 직전 조사 실적 기준으로 관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③ 신변종 유해매체물 이용 시 나이 확인 절차 가동 여부(%)	직전 조사 실적 기준 감소 관리	"
	④ 성인용 영상물 접촉 환경에 대한 인식(%)	"	"
2. 청소년 유해약물	① 유해약물예방 모니터링 업소 중 청소년대상 신분증 미확 인 비율(%)	"	여성가족부 자체평가 지표
	② 청소년 흡연 생애경험률 / 최근 1개월 경험률(%)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복지부 외)
	③ 주류 및 담배 구입 시 나이 확인 여부(%)	직전 조사 실적 기준 증가 관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④ 전자담배 구입 시 성인 인증을 위한 나이 확인 여부(%)	"	"
3. 청소년 유해업소	①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나이 확인 여부(%)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②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 인식(%)	직전 조사 실적 기준 감소 관리	"
	③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비율(%)	적발 대비 조치 비율	교육환경보호구역 운영 (교육부, 교육청)
4. 청소년 유해행위	① 성폭력범죄 발생률(%) (13~20세 인구 10만명당)	직전 조사 실적 기준 감소 관리	범죄분석* (대검찰청)
	②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	학교폭력실태조사* (교육부)
	③ 청소년보호지원률(%)	최근 3년 평균 이상으로 관리	치안실태* (경찰청, 신규)
5. 청소년 근로보호	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직전 조사 실적 기준 증가 관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② 부당처우 경험(%)	직전 조사 실적 기준 감소 관리	"
공통 1. 교육 경험 및 체감 효과	①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및 체감효과(%)	최근 3년 평균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신규 문항
	②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경험률 및 체감효과(%)		
	③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 및 체감효과(%)	직전 조사 실적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④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경험률 및 체감효과(%)	"	"
	⑤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	"
	⑥ 매체이용교육 경험률(%)	"	신규 문항 포함
	⑦ 근로인식 및 직업윤리	"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공통2. 청 소년의 대 응역량	① 기출청소년 지원기관 인지 여부(%)	전년도 실적 기준 증가 관리	"
	②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이용방법 인지 여부(%)	"	"
	③ (근로)부당처우 경험 시 신고 비율(%)	"	"
	④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	"
	⑤ 청소년폭력 피해 사실 알림 비율(%)	"	"
	⑥ 청소년성폭력 피해 사실 알림 비율(%)	"	"

* 주: 1) * 표시 지표는 타 부처 지표이므로 정책영향(효과) 점검을 위한 부가지표로 관리할 것을 제언함.

정책 영역	과정지표/성과지표(안)	성과지표/대표지표(안)
매체물	· 성인물 이용 시 나이확인절차 작동 여부* ·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 · 섯다운제 이행률 · 청소년유해표시 및 본인인증의무 미이행 업체 시정 및 고발(건) · 불법인터넷게임 차단(건) · 업체 대상 청소년보호 교육(건, 명)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실적(건, 회) · 인터넷치유크amp(건, 명) · 가족치유크amp(건, 명) · 캠프 참가청소년 만족도 및 치유효과 · 중독위험군 청소년 부모대상 교육(건, 명)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실적(회, 명) · 대국민 인식 및 문화개선 홍보(건) · 민관협력 및 부처 간 연계협업사례(정성)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률 감소* · 청소년의 매체이용교육 경험률 증가*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위반 개선 시정 이행률 · 청소년의 유해매체폐해 인지율 증가 ·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상담사 1인당 담당 청소년수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청소년 사후조치 지원율 · 캠프 참가청소년 중독 개선율 · 전년대비 자율규제조직 지원 관련 예산증가 정도 및 활동 우수사례(정성)
유해 약물	· 주류 및 담배 구입 시 나이확인 여부* · 청소년 음주예방 캠페인(횟수, 명) · 대국민 인식 및 문화개선 홍보(건) · 민관협력 및 부처 간 연계협업사례(정성)	·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생애경험률 감소* · 청소년 음주폐해예방교육 경험률 증가* ·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경험률* ·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체감효과* · 전년대비 자율규제조직 지원 관련 예산 증가 정도 및 활동 우수사례(정성)
유해 업소	·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조치비율* ·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 인식률*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나이확인 여부* · 청소년유해업소 등 단속실적(단속횟수, 건) · 대국민 인식 및 문화개선 홍보(건) · 민관협력 및 부처 간 연계협업사례(정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직무교육(회, 명)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업소 감소 ·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률 · 전년대비 자율규제조직 지원 관련 예산 증가 정도 및 활동 우수사례(정성)
유해 행위	· 청소년폭력피해 사실 알림율*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실적(건, 회) · 디딤센터 수료청소년 만족도 및 치유효과 · 정서행동장애청소년 패밀리멘토 지원(가족) · 대국민 인식 및 문화개선 홍보(건) · 민관협력 및 부처 간 연계협업사례(정성)	·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감소*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률 감소 · 전년대비 자율규제조직 지원 관련 예산 증가 정도 및 활동 우수사례(정성)
근로 보호	· 근로 중 부당행위 경험 시 신고율* ·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연계(건) · 지방노동사무소(청소년근로보호센터 포함) · 청소년 근로상담(건) · 청소년 근로권익 구제(건) · 청소년 근로자 표준계약서 배포(건) · 대국민 인식 및 문화개선 홍보(건) · 민관협력 및 부처 간 연계협업사례(정성)	· 근로 중 부당처우 경험률 감소* · 근로권익교육 경험률 증가* ·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률 · 전년대비 자율규제조직 지원 관련 예산 증가 정도 및 활동 우수사례(정성)

* 주: 1) * 표시 지표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포함한 국가승인통계조사에 포함된 문항임.

2) 과정지표에서 실적 또는 목표치는 예산의 증감정도가 고려되어야 하고, 전년 대비 실적(건, 명) 증가 방식은 지양해야 함.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선(안)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16년 실적) 가운데 청소년보호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향후 지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대표성, 적절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적발건수, 참여율과 같이 매년 실적을 높여야 하는 지표를 지양하고, 단속 및 적발건수보다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정도와 교육내용의 질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기존의 평가지표가 유해업소, 폭력행위에 집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학교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폭력 근절 노력이나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정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피로감은 줄이면서도 시계열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국가승인통계의 일부 문항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에 대한 인식’,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나이 확인 여부’,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참여율과 교육의 적절성’ 등의 문항을 17개 시도별 청소년의 응답률을 부가지표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특성과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한 청소년보호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를 통한 사업 추진이 권장되는 만큼 한시적이거나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 및 지원 관련 조례’ 시행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유해업소 적발건수’ 지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건)’에 대한 최근 3년 평균과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률’을 합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주요 생활권인 학교인근 유해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세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을 신규 지표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가운데 청소년보호지표 개선(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V-15>이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중 청소년보호 지표 검토 의견]

- 실적(output) 관리 필요성도 인정되나, 전년대비 몇 % 상향조정하는 목표치 설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즉, A(100~90), B(89~80), C(79~70) 등 구간을 등급화하고 투입된 인원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내용과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사업예산이 동결되거나 감액되어도 성과를 올려야 하는 구조는 매우 부적절함.
- 적발건수를 성과지표로 잡기보다 적발 이후 조치건수 또는 내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적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시설 설치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하므로 성과지표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는 적절성, 대표성이 미흡함. 가)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는 (적발)대상이 많은 지자체에서 유리한 지표이고, 유해환경 적발과 (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참여가 증가하면 청소년보호정책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지 (모호하고), 단일 지표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정책 지표 개발이 필요함.
- 건수/참여율을 매년 높여야 하는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3년 평균을 기준으로 구간화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 필요
-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폭력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 개발 및 피해예방 노력 전반에 대한 평가 필요
- 청소년보호정책 5대 영역(매체, 약물, 업소, 행위, 근로보호)에 해당하는 지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청소년보호 이슈를 반영하여 (매년 전략적으로)포함하는 것도 필요함(성매매, 사이버폭력,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등).
-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의 경우 지자체의 유해환경 규제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체로 적절하나,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표는 (지자체 평가지표로서)부적절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표가 필요한. 또한 학교폭력보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 실적, 청소년폭력 예방 및 근절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등으로 변경 필요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의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명령 이행률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 건수와 함께 (교육방식)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는 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아 적절한 성과지표라 할 수 없음. 예방교육의 경우 실적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적절한 성과지표 할 수 없고,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의 의식과 인지수준, 변화를 평가해야 함.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사례는 적절하지 않고 “청소년 친화적 조성 노력 우수 사례”로 변경하여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노력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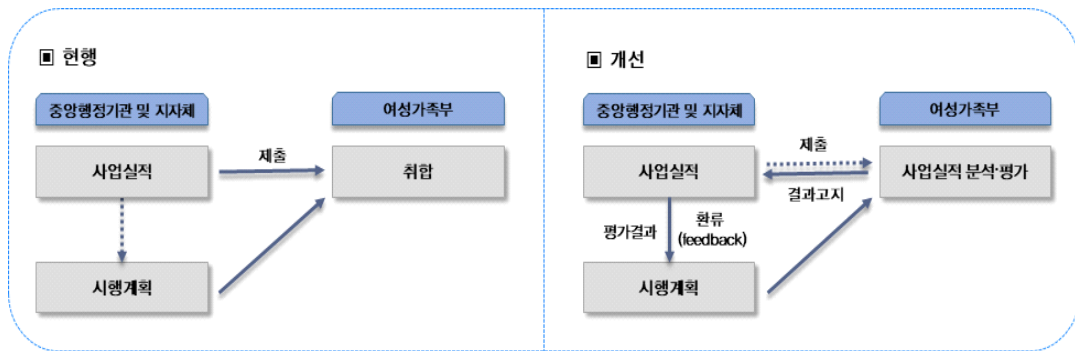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1차)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

표 V-15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청소년보호지표 개선(안)

평가시책	0-0. 청소년가족 시책강화												
평가지표	0-0-0. 청소년 안전		평가지표 가중치	000									
세부지표	㉡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 분포 인식(%) [보완지표]			정책영역 : 업소									
	㉢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나이 확인 여부(%) [보완지표]			정책영역 : 업소									
	㉣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 및 지원 관련 조례 시행 여부			정책영역 : 업소, 약물, 행위, 매체, 근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건) 및 시정명령 이행률			정책영역 : 업소, 약물, 행위, 매체, 근로									
	㉥ 유해환경 피해청소년 조기 발굴 및 사후관리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정책영역 : 업소, 약물, 행위, 매체, 근로									
	㉦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역량 개발 및 피해예방교육 참여율과 적절성			정책영역 : 업소, 약물, 행위, 매체, 근로									
	㉧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시설 합리적 규제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정책영역 : 업소									
측정방법	㉡ 2016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해당문항에 대한 17개 시도별 응답률 기입												
	㉢ 상동												
측정방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한 청소년유해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피해예방, 회복지원, 근로보호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을 포함해야 함. 단, 교육청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실적도 인정함.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및 시정명령 이행률												
측정방법	- 적발건수는 (지자체)단속건수 + (민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합계 ※ 최근 3년 평균치로 평가												
	-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 (적발 유형별 가중치) × (유해업소수별 가중치)												
측정방법	- 적발 유형별 가중치 적용기준												
	<table><tr><td>구분</td><td>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행위</td><td>청소년유해약물· 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td><td>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td><td>금지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td></tr><tr><td>가중치</td><td>3.0</td><td>2.0</td><td>1.0</td><td>0.3</td></tr></table>				구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행위	청소년유해약물· 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금지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가중치	3.0	2.0	1.0
구분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 고용 행위	청소년유해약물· 물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행위	청소년 출입 및 출입시간 위반	금지 표시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가중치	3.0	2.0	1.0	0.3									
측정방법	- 활동건수(3년 평균) + 시정명령 이행률(당해 연도) 합계로 평가												
	㉥ 유해업소, 약물, 폭력 및 학대 행위, 매체, 청소년아르바이트 등 피해청소년의 조기 발굴 체계 구축 및 피해 재발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노력 우수사례 1건 제출,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국정과제 54번 관련)												
측정방법	㉦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참여율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중 체험형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수 + 찾아가는 현장 성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수) + (사도 자체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청소년 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 해소사업 상담 및 치료 실인원(가족치유크amp 참가자수 포함)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지원 아동·청소년 수)/사도 내 아동·청소년 수) × 100 ※ 최근 3년 평균치로 평가												
측정방법	- 적절성은 2016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해당문항(교육내용의 적절성, 도움 정도)에 대한 17개 시도별 응답률 기입												
	㉧ 사도별(시군구 포함)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시설 합리적 규제 노력 우수사례 1건 제출, 합동평가단에서 정성평가(국정과제 54번 관련)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행계획과 실적보고 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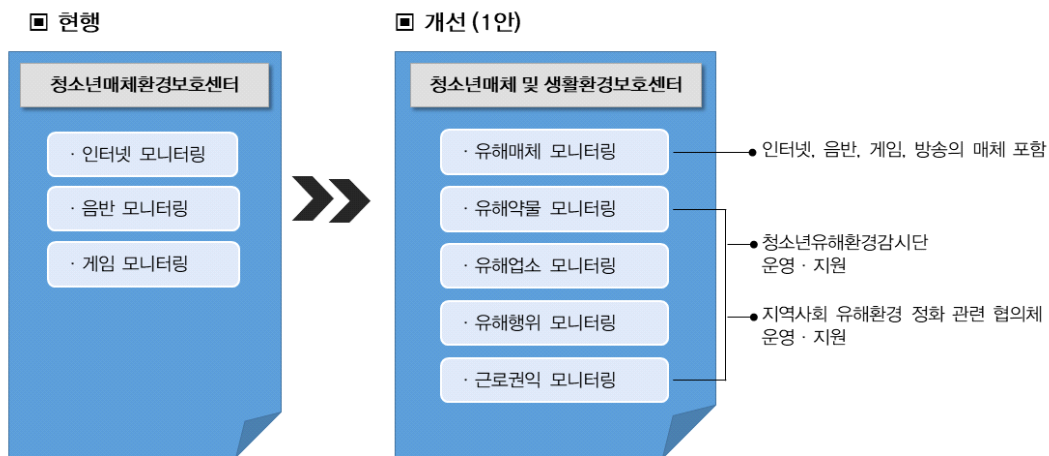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보호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과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그림 V-5]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취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고지(안내)하고, 이를 타 부처와 지자체가 당해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환류·반영하는 체계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V-5】시행계획 및 사업실적 관리체계 개선(안)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성과지표와의 관련성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계획의 틀 혹은 양식의 변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사업의 정책영역을 포함하여 근거 법률, 정책유형을 명시하도록 하고, 실적과 성과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경된 양식에는 사업개요에 사업대상 및 사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해당 사업의 신규계속변경 여부,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감정도,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전문성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표 V-16>).

신종 영상 및 간행물의 생산과 유통경로에 대한 보다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폭력과 같은 유해행위의 경우에도 모니터링이 미흡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청소년의 매체환경과 생활환경 전반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확대하여 현행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가칭)청소년매체 및 생활환경보호센터로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그림 V-6]). 이와 함께 유해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아동권리팀)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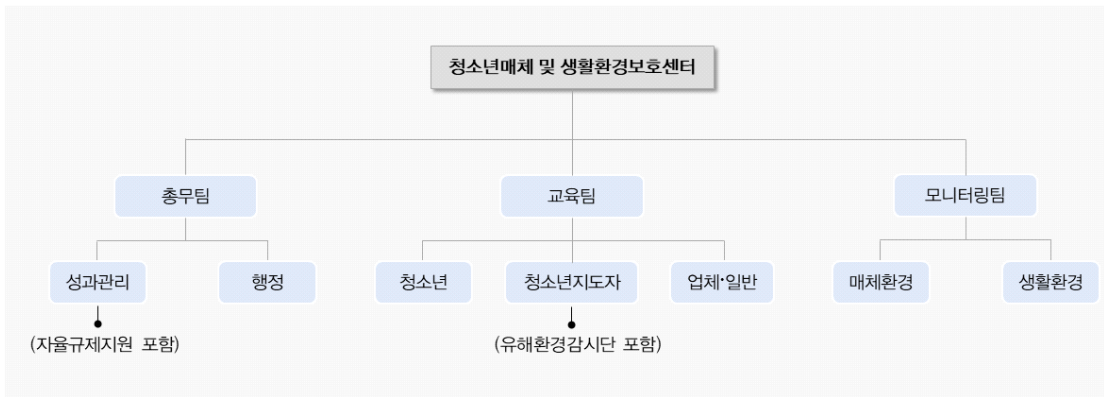


【그림 V-6】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확대(1안)

(2) 2안 : 모니터링 + 교육 + 성과관리 기능 확대

2안은 현행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기능을 모니터링 뿐 아니라 교육과 성과관리 기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즉, 2안은 1안의 모니터링 영역 확대를 전제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업체(업소) 대상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 등에 대한 교육과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능을 포함한 보호사업의 성과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그림 V-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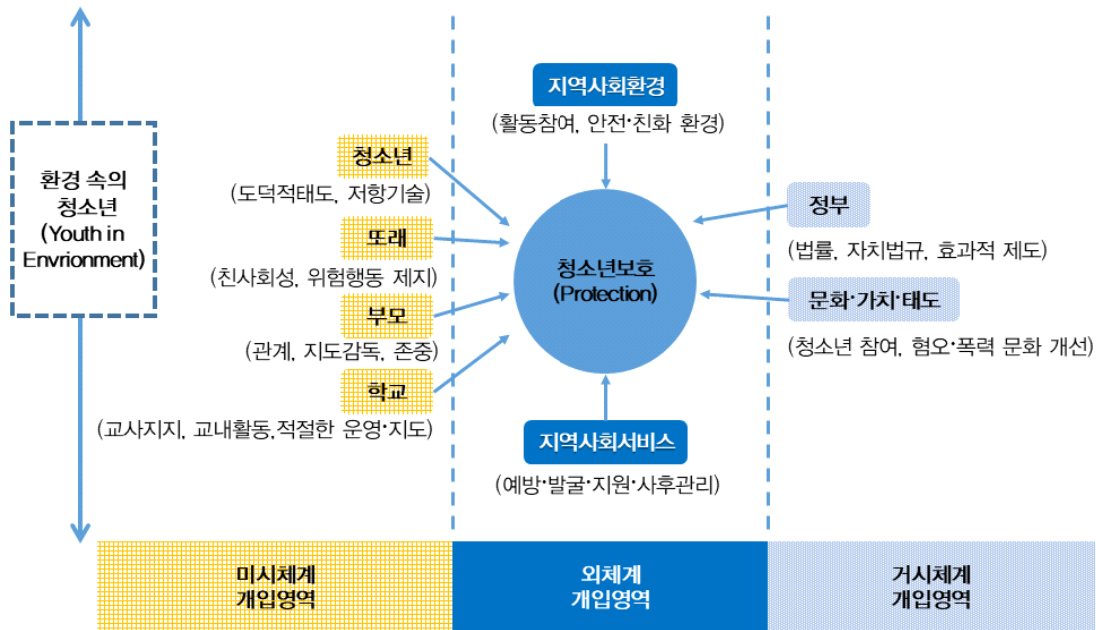
▣ 개선 (2안)



【그림 V-7】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확대(2안)

4) 2-4. 청소년·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당사자인 청소년을 포함하여 미시환경체계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외체계에 해당하는 지역사회환경과 지역사회 서비스, 거시체계에 해당하는 법제와 문화·가치·태도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보호에 있어 이들 환경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전제로 참여를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된 청소년보호의 잠재적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각각의 환경체계에 대한 개입영역과 내용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 [그림 V-8]이다.



【그림 V-8】 청소년보호를 위한 개입영역

(1) 청소년 : 참여기구 등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청소년 스스로가 보호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기반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보호사업 추진 시 청소년의 참여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정책은 청소년의 자율권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청소년의 이해와 의견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시 청소년의 다각적인 참여 경로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정책추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하겠다.

한편,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에 청소년의 우선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평가반영(feedback)단계’, ‘실행단계’ 순이었다. 이에 기획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정례화 하는 방안으로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한 보호사업 관련 정책과제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추진과제 1-1 참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친화적 정책추진을 목적으로 부처와 지자체에 설치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현재 중앙 1곳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89개가 구성·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이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차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규 보호사업(안)에 대한 토론회와 워크숍을 활성화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호정책 추진 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12조를 근거로 한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년보호사업을 제안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정책화해가는 일련의 절차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대표 청소년의 의견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담보하고, 온·오프라인의 다각적인 소통과 양질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비를 포함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운영 기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신규 보호사업인 경우 기획단계에서 전국적 규모의 의견조사를 실시하거나 격년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시 한시적으로 관련 문항을 포함하는 방안,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2) 가정 : '청소년 이익 최우선' 보장을 위한 부모(보호자)의 책무 이행 강화

부모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에는 "친권자(보호자)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제지하고, 필요 시 지도·단속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동법 제3조). 그러나 친권자가 이와 같은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보호자가 책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교육, 안전, 건강, 도덕성'에 대한 부모의 책무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고 보호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청소년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친권박탈까지 될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약물 사용이나 불법 거래로 인한 해택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부모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신변중 유해물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보호받을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 이면에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청소년 이익 최우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한 가정의 구조와 기능이 갈수록 취약해져

가는 상황에서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수단은 국가가 청소년보호 책무를 부모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보호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지원과 노력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성이 인정되나 부모의 도덕적 해이로 청소년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보호에 있어 부모의 책무 이행을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프랑스 사례: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부모의 책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독립된 법은 없고 민법, 형법 등 관련법에서 다수 사항을 규정함. 특히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교육, 안전, 건강, 그리고 도덕성 등에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책임을 회피할 경우 2년의 징역형과 3만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형법 227-17).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유해약물 사용에 호의적이거나 선호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다만 이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친권 박탈이 가능**하며 법적 판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 보다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함(민법 378-1). 부모가 자녀의 약물 사용 및 불법 거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선물, 금전 등의 혜택이 있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되며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자녀의 이익을 우선하여 결정**됨.

* 출처 : DROGUES INFO SERVICE 홈페이지, <http://www.drogues-info-service.fr/Tout-savoir-sur-les-drogues/La-loi-et-les-drogues/Les-drogues-interdites#.We15i-RymQ>. (인출일 : 2017.8.20.)

(3) 학교 :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전략과 실행

이 연구를 통해 교내에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가 있고 지지적인 교사가 존재하며, 청소년이 학교의 운영과 지도방식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과 피해예방을 위한 잠재적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가 청소년의 주요 보호체계이며, 학업 이외의 활동과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사의 지지적인 태도와 합리적인 교칙 및 학생지도 방식을 취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망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가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방식보다 청소년의 발달 증진을 지원하는 전략을 취할 때 보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노력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소년의 심야시간 대 노래방 이용률이 다른 업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노래방은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황여정·김지경·이윤주, 2016, p.267), 이러한 제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청소년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업소이용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업소이용 방법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율을 관리함과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의 자정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 친사회적 성향의 친구, 위험행동을 제지하는 친구의 존재가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검증된 만큼 ‘또래관계’를 활용하는 보호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자치회나 청소년동아리를 활용하여 교내에서 학생 주도의 보호활동을 활성화하고, 또래상담을 통해 교우들의 유해환경 접촉과 위험행동을 제지하고 피해청소년의 발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출입제한(금지)업소, 청소년유해물 등의 특성과 폐해를 이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 시 신고 등 적절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 기반(school-based)의 청소년 대응역량 개발 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 : 조례기반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및 참여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이 지역사회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할 경우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잠재적인 보호요인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보호시책에 있어 청소년의 생활환경 보호 노력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 기본법」 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보급과 경비를 지원하고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생활권에 해당하는 지역사회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뿐 아니라 자치법규를 통한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⁹³⁾ 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전략은 매우 권장할 만하다.

93)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2015.11.9. 제정),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6.6.22. 제정),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6.10.20. 제정),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7.2.1. 제정) 등을 참고할 수 있다(법제처 <http://www.law.go.kr> (인출일 : 2017.10.25.)).

한편, 청소년의 근로보호와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조례 제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적극 대응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15년 8월에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조례’를 최초 제정한 이래 2017년 현재 8개 광역시·도에서 14개의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다(<표 V-17>).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처우 등 노동인권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기반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인권센터(부산광역시)’와 같은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특화사업 추진을 권장하여 사업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근로보호 및 노동인권 관련 조례 등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여부를 한시적이나마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정책과제 2-2 참조).

표 V-17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자치법규 현황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1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제5140호	2016.01.04
2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5285호	2016.07.19
3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22호	2017.06.09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4577호	2015.10.01
5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1430호	2016.12.12
6	경기도 김포시	김포시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1398호	2017.06.30
7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4492호	2015.08.14
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제4822호	2016.12.30
9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3043호	2016.08.22
10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1727호	2017.05.22
11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302호	2017.06.30
12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59호	2017.06.15
13	충청남도 서산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63호	2016.12.20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90호	2017.04.28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85호	2017.08.03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10.25.).

* 주 : 2017년 10월 기준

표 V-18 청소년보호사업 운영 내실화 추진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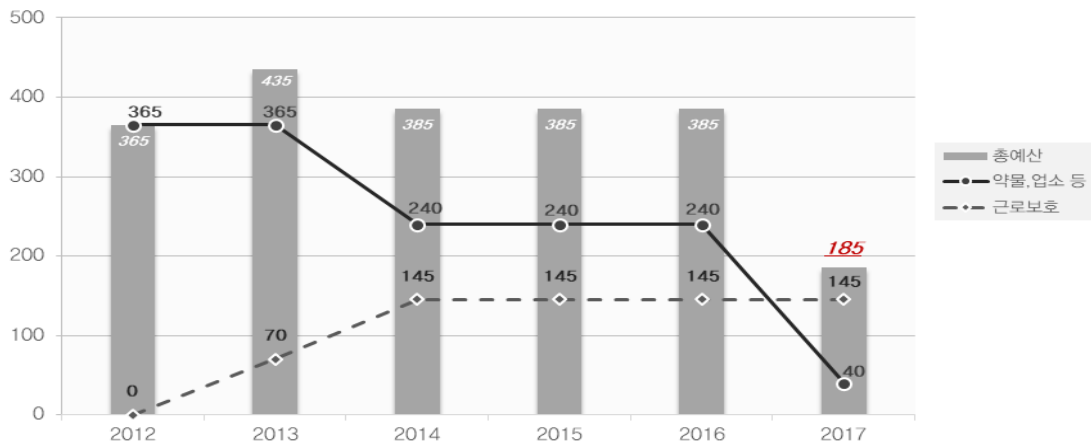
세부추진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3-1.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 사업 확대	○			○		여성가족부
3-2. 유해환경 규제 실효성 제고	○			○		여성가족부 방통위
3-3.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	○				○	여성가족부 방통위 지자체
3-4. 유해환경 피해청소년 발굴 및 회복지원 강화	○			○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자체
3-5. 지역사회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요소 강화	○			○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자체

1) 3-1.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 사업 확대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지만 신분증 도용과 같은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법 위반문제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위험행동에의 참여 권유를 거절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school and community-based) 인성교육 및 사회기술훈련을 포함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에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전문 인력 양성, 상담·치료·재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책성과의 관리가 미흡하고, 해당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편, 제한적이거나 관련 예산 규모를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해 보고자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 사업을 포함한 민간보조사업비 예산 추이(2012~2017.3월까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근로보호 관련 예산(집행액)이

2013년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듬해에 사업비 집행액이 두 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규모는 답보상태를 보였는데, 같은 기간 민간보호사업비 전체 집행액도 답보수준을 보였다.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의 생활권 내에 산·변종 유해업소 등이 난립하고 있지만 약물, 업소, 폭력 등 행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14년에 전년 대비 약 35% 정도 감액되어 이후 현상유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민간보조사업 예산 총액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이슈나 쟁점에 따라 관련 사업이 편성되면 기존의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야 하는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분야 민간보조사업비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매체·약물·업소·행위·근로보호 등 5대 정책영역에 대한 사업비의 균형 있는 편성을 통해 적합성(adequacy)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청소년동아리 및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주도의 규제·단속 중심 보호사업의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청소년활동복지시설이 청소년보호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지역 특화 청소년보호사업의 개발·발굴·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인출일: 2017.9.19.

* 주: 각년도 자료는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2-17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3-24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3-109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4-16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4-29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2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5-71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2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6-57호, 여성가족부 공고 제2017-6호의 내용을 분석한 것임(공고 외 자료의 누락 가능성이 있고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음).

【그림 V-9】 청소년보호분야 민간보조사업비(2012~2017.3월 집행액 기준, 백만원)

[청소년의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활동 사례]

- 청소년 인터넷 방송 감시활동 : 1인 인터넷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및 모니터링
 - 주제 : 인터넷방송(1인 방송) 감시단 활동
 - 대상 : 중·고교생 15명(13~18세), 대학생 등
 - 내용 :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기본교육 : 인터넷 방송 알기) → 또래들의 인터넷 방송 경험 조사 → 모니터링 기준 선정(언어, 선정, 안전, 인성, 진로) → (지도자의 사전 모니터링) → 유튜브, 아프리카TV 대상 1인 인터넷 방송이 청소년 문화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활동 → 감시단 활동 보고 및 건전한 인터넷방송을 위한 제안 → 평가활동
 - 운영기관 : 강남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한 공간 이야기 “세이프 로드”
 - 주제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
 - 대상 : 청소년(14~19세), 지역주민 150명, 청소년운영위원회(자원인력) 등
 - 내용 :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기본교육 : 셉티드 디자인 교육, 캐릭터 디자인 교육) → 디자인 구상하기(세이프 로드 디자인하기 : 캐릭터 만들기, 바닥놀이 도안 그리기, 가로등 디자인하기) → 셉티드 적용하기(청소년 인구 밀집지역을 변화시킬 테마 구성, 청소년보호구역 이미지 만들기, 바닥놀이 그림, 안내 등 놀이문화 공간 조성, 야광돌, 디자인 가로등 활용 안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 조성) → 캠페인 활동(청소년보호구역 필요성 공유, 셉티드 디자인 효과성 등) → 평가활동
 - 운영기관 : 만안청소년수련관
-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프로젝트 : 알바생(알(면) 바(뀌는) 생(활))
 - 주제 : 근로 청소년 권익보호 및 지역사회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활동
 - 대상 : 청소년(14~24세), 대학생(멘토), 청소년 고용주, 노무사 등
 - 내용 : 연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 → 청소년 근로환경보호단 결성(멘토 포함) 및 청소년 근로환경 모니터링 → 청소년 안심 알바 가능 사업장 지도 제작배포 → 평가활동
 - 운영기관 : 창동청소년문화집
-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활동 및 캠페인
 - 주제 :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예방 교육, 도박중독 치유 동아리 활동
 - 대상 : 청소년(9~18세), 활동가 및 강사 등
 - 내용 : 청소년 인터넷도박 잠재적 위험군을 위한 지도자(교사 포함) 양성 → 초·중·고교 학급단위 찾아가는 인터넷·스마트폰도박 중독 예방 교육 →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 동아리 결성·활동 → 청소년 인터넷 도박중독 예방 캠페인 활동 → 평가활동

*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2017 청소년보호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참조(내부자료)

2) 3-2. 유해환경 규제 실효성 제고 : 시민의 권리와 인권보호

(1) 영상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섹스팅 규제

수년 전부터 랜덤채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규제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인터넷기업협회 등의 반대가 있었고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다.⁹⁴⁾ 그러나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청소년의 섹스팅(sexting) 이용 증가에 따라 청소년 범법자도 동시에 증가하는 현 세대를 법체계가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한 랜덤채팅에서 유통되는 사진 파일을 분석한 연구에서 전체 파일의 약 62%가 음란물로 확인되어(박광선, 2016, p.143),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익명성의 부작용을 개개인의 윤리의식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경우 2014년에 호주 주정부 최초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섹스팅이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섹스팅 관련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 간의 섹스팅을 청소년의 성행동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일 수 있음에도⁹⁵⁾ 청소년의 섹스팅 행위가 성인의 그것과 같은 수준의 범죄행위로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호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의 범위와 규제의 수위는 사회 전반의 문화와 가치, 태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보호’가 아닌 ‘시민의 인권과 권리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때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섹스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 근거한 ‘영상물에 대한 권리’ 맥락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상대방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이미지와 영상물 유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실제 유포가 되지 않더라도 유포를 이유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의 없이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촬영하는 행위도 형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 즉,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취하는 전략보다, 시민의 인권과

94) 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9333, 제안일자 : 2014.2.10.),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6737, 제안일자 : 2013.9.6).

95) 청소년의 섹스팅 행위는 법률적 측면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임상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섹스팅 자체가 청소년에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연구결과(Judge, 2012)를 참고할 수 있다.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섹스팅(Sexting) 관련 주요국의 규제 사례]

- 호주 : 빅토리아 주정부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섹스팅(sexting)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미성년자 기소 면제 조항 포함**(성인 간 섹스팅 기소대상 제외), 전송되는 이미지가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담은 사진이거나 타인의 사적 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섹스팅 관련 법안을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의회에 상정함.
- 영국 : 영국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와 영상의 제작, 다운로드, 저장 행위를 포함하여 **청소년 간의 성적 이미지 또는 영상의 전달행위도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을 보호함.
- 프랑스 : sexting, revenge porn(vengance pornographique), sextorsion(sex + extorsion)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짐. revenge porn은 타인의 사적 사진 및 영상을 인터넷 등 사회연결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sextorsion은 상대방의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포하지는 않아도 형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간주됨(징역 5년, 75,000유로 벌금형)**. 불특정인을 상대로 webcam 등을 활용하여 이미지가 촬영된 경우 가중처벌 대상임(징역 7년, 100,000유로 벌금형).
- ※ 프랑스는 민법에 영상물에 대한 권리(droit à l'image)를 포함함. 이에 따라 학교나 방과후 활동 등록 시 자녀의 사진이 소속된 그룹이나 단체 활동을 위해 공개적으로 게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됨. 특히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출처: 한호일보(2014.08.28.)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07> (인출일: 2017.10.12.).

(2) 청소년의 피해예방 및 권리 보장을 고려한 세심한 규제제도 설계

규제는 불편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역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전제로 청소년의 연령 등 발달단계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근거를 기반으로 규제의 영역과 수준을 촘촘하게 구성하되, 유해환경의 변화 정도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방송매체에 대한 최고심의위원회(CSA)’의 역할 중 하나가 TV방송의 각종 폐해로부터 (미성년)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CSA는 방송의 폭력성, 선정성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을 전제로 청소년의 연령대를 10세, 12세, 16세, 18세로 세분화하여

시청 가능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요일별 방송시간과 내용까지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기반 각종 매체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SNS 등 방송이 아닌 영역까지 규제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유해환경의 개념은 시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공급자가 자신의 역할을 고수하기보다 청소년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함께 규제에 있어 청소년의 연령을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되는 자율권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역시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제19조 등에서 청소년의 연령과 요일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실제 방송시간대와 법률 상 보호시간대에 차이가 있고, 실제 청소년 시청시간대 방송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경우가 많은데다 케이블을 통한 시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임현, 2012, p.138). 이는 사실상 청소년보호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방송 전반의 다양한 유해성에 대한 자정 및 제재와 자율적인 규제 노력이 권장되어야 하고, 청소년의 알권리와 병행하여 스스로의 보호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TV 방송 및 매체 규제 사례]

- 1970년대부터 매체를 통한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사회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1989년 **방송매체에 대한 최고심의위원회(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가 설립된 이후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매체의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임. CSA는 각 방송채널이 오후 6시부터 밤 10시 30분 사이에 폭력성을 조장하거나 에로틱한 영상을 송출할 수 없도록 하고, 1996년부터는 각 방송물에 대한 분류(드라마, 코믹, 수사물 등)를 통해 **카테고리별로 방송시간대를 지정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규제함. 이는 **한국의 경우 종편채널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임**.

특히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요일별로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함.

- **10세 미만 프로그램**(-10 ans 표시)은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에 방송
- **12세 미만 프로그램**(-12 ans 표시)은 22시 이전 영화채널을 제외한 채널에서 방송하며 예외적으로 화금·토요일, 방학시작 전일을 제외한 요일은 20시 30분 이후에 방송 가능
- **16세 미만 프로그램**(-16 ans 표시)은 비영화채널에서 22시 30분 이전에 방송(비영화채널에서 -18 ans 프로그램 방송은 허용되지 않음).

- ※ 프랑스는 수요일에 수업이 없는 지역이 많아 요일별로 상세하게 규제하며,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저녁 8시 이후에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으므로 시간대별로 규제함.

- 최근 CSA는 TV보다 인터넷기반 사회연결망을 통한 청소년의 피해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고, 유럽연합 차원의 프로그램인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부모통제 캠페인(Safer Internet)을 총괄 운영함.

- 반면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교육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을 전담함(CSA는 부모, CNIL은 청소년 대상 사업 담당).

- 2017년 4월 25일자로 유럽연합 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기반 시청각 매체 및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럽차원의 법규를 도입함. 미성년자 대상 각종 프로그램(비디어 영상물 포함)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담배, 알콜 광고 등이 일체 금지되며 인터넷 상 유해광고, 폭력, 증오, 테러리즘 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하고 이를 유럽연합 전체가 공유함.

* 출처: 1)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홈페이지. <http://www.csa.fr/Les-reponses-du-Conseil-aux-questions-frequeemment-posees-FAQ>; Mieux protéger les mineurs contre la violence en ligne, (인출일: 2017.8.20.)

2) 유럽연합 내 교육문화위원회 홈페이지. Mieux protéger les mineurs contre la violence en ligne, <http://www.europarl.europa.eu/news/fr/headlines/security/20170407STO70804/mieux-protéger-les-mineurs-contre-la-violence-en-ligne>. (인출일 : 2017.08.20.)

(3) 유해업소 단속정보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 시정명령 이행률 관리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속내용과 횟수 등 단속정보에 대한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50m까지의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업소의 운영과 행위 등이 금지됨에도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은 반복된 단속만 할 뿐 해당 업소를 철거·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마사지업과 같이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업종의 경우 위반 횟수 및 단속내용을 세무서와 공유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폐쇄 등 사안별로 즉각적이고 가중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유해시설 합리적 규제 노력'과 같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률을 정책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정책과제 2-2 참조).

(4) 소비자, 판매자가 아닌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청소년음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제레, 차례 등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음주 상태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음주의 폐해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류에 대한 제한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광고의 기준과 방법 정도만을 제시되어 있고, 인터넷TV(IPTV), SNS 등 신종 매체에 대한 관련 기준은 부재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을 채택하였고 프랑스, 호주, 핀란드, 캐나다 등 주요국의 주류 정책은 주류 소비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는 규제에 초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해 TV, 인터넷, 인쇄매체 등을 통한 주류 광고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청소년 주류 구매자와 주류 판매업자를 단속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경향을 고려할 때 주류 제조사와 광고 제작사, 그리고 아이돌 모델 기용을 금지하기 위한 연계기획사 등에 대한 규제(자율규제 포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월간음주율(감소), 청소년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증가), 청소년의 음주 관련 범죄율(감소), 청소년의 음주폐해 인지율(증가), 국가차원의 절주홍보물 인지도(증가), 청소년의

주류구매 경험률(감소), 청소년의 주류광고인지도(감소), 청소년의 건전음주를 위한 서약자(증가) 등을 과정 및 성과지표(대표지표)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

-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총회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Global Strategy of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을 채택함.
- 10대 정책 권고에는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응책 마련 촉구, 보건서비스 영역에서의 노력, 지역사회활동 강화, 음주운전 예방, 알코올 이용가능성 제한, 주류마케팅 규제, 가격정책 시행, 폐해감소 대책 확보, 불법주류 규제,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 수립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출처: 이해국 외(2011).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2020. http://www.google.co.kr/url?sa=t&rc=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Rp-iGroTXAhVET7wKH-YBzAHwQFggkMAA&url=http%3A%2F%2Fseoul.mentalhealth.kr%2Fboard5%2FService%2FSimple%2Findex.jsp%3Fcmd%3DfileDown%26test_num%3D23&usg=AOvVaw2ijPdd487ocX1YtwLLKEqe (인출일 : 2017.10.25.)

3) 3-3.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 : 온오프라인 청소년 안전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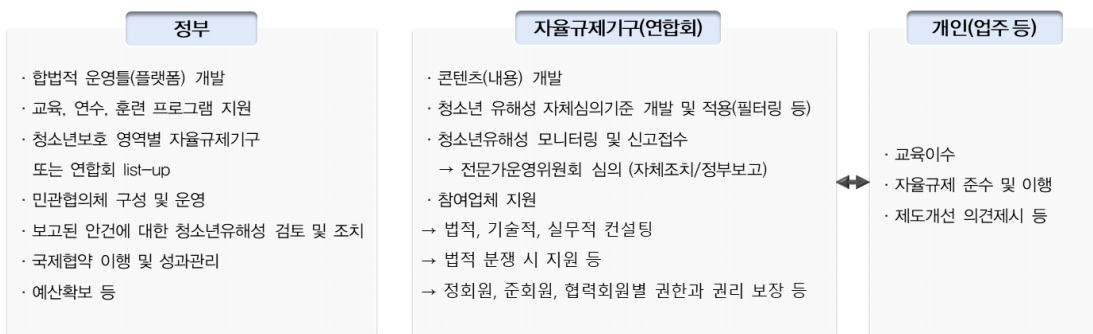
지난 10년 간 유럽의 인터넷 규제의 틀은 사업자 혹은 비정부기구(NGO)가 마련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나 규정(rule)을 통해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불법적인 정보 등을 처리하는 핫라인 네트워크(INHOPE)와, 미디어이용능력(media literacy) 제고를 통해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대중운동 네트워크(INSAFE)가 중심이 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두 네트워크의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최우정(2015.12.14.), http://journal.kiso.or.kr/?p=6967#identifier_1_6967, 인출일: 2017.10.19.).

우리나라도 2016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자율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홍보, 자율규약 제·개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이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사업 영역별, 업종별 자율규약(안)을 마련하고 보급함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기반 확충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유해매체의 유통과 관련하여,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 음란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을 개발·시행토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랜덤채팅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민간 사업자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표준화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적용을 의무화(박광선, 2016, p.146)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법적인 틀 내에서 운용의 구조를 제안하면 사업주 혹은 정보제공자가 운영 내용을 채우고 준수하는 체계가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 또는 자율규제 방식의 규제이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규제와 비교할 때 효과 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고, 청소년보호라는 사회구성원의 책무 이행에 동참한다는 시민의식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한 운영의 틀을 마련하면 민간이 메가트렌드를 반영하여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변종 유해환경의 출현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멀티미디어 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운영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사실상 규제의 중심 주체가 정부가 아닌 FSM이라는 자율규제기구라는 점이 특징인데, 자체 전문가를 보유하여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기능을 갖추고, 회원기관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법적 분쟁 시 회원기관의 권리보호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자율규제방식의 규제는 정부와 민간이라는 양자구도가 아닌 정부와 민간의 완충지대로서 민간협의체인 자율규제기구를 두고, 자율규제기구가 모니터링과 심의와 같은 기존의 정부 역할을 일부 담당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정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 자율규제기구,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간략하게 도식화 한 것이 [그림 V-10]이다.



【그림 V-10】 규제된 자율규제 협력 체계(안)

한편 업소의 경우에도 “우리 업소(담배 소매업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담배 판매 시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술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제64조(과태료)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담배 소매업단체나 유통업단체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인 규제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업소연합회를 통해 표시물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우 단속적발에 앞서 ‘청소년 유해성’의 판단 기준과 제재내용을 포함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모니터링 매뉴얼’을 개발보급(배포)하여 제한적이거나 관련 업소연합회 또는 업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일체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청소년유해성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 청소년의 이용을 차단하는 적절한 필터링 조치 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사업자가 연매출의 일정부분을 인터넷게임중독치유 및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위한 부담금이나 자율규제 관련 사업비 등으로 출자하는 방식을 통해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독일 사례]

- 방송법에서 정부와 비정부부문이 공동으로 ‘조절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설정함.
- 사전검열 방지, 민간산업 활성화, 규제남용을 목적으로, 민간주도의 자율기구에 의한 규제를 원칙으로 하며 영화부문은 영화등급분류기구(Die 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 FSK), 온라인 매체영역에서는 멀티미디어 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 방송영역에서는 텔레비전자율규제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Fernsehen, FSF)가 대표적임.
- FSM은 유해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 활동하며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신고 및 서비스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동 추진,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연령분류체계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 제공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 출처: 최우정 (2015.12.14.),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KISO((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JOURNAL, 21, http://journal.kiso.or.kr/?p=6967#identifier_1_6967, (인출일 : 2017.10.19.).

[영국 사례]

- 랜덤채팅과 관련, 온라인데이트협회(online dating association, ODA)는 2013년에 다수 민간업체들이 모여 설립한 온라인데이트서비스 자율규제기구로, 온라인데이트서비스와 관련한 산업계 공동의 책임을 공유하고 온라인데이트 관련 표준 운영규정(code of practice)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함.
- 운영규정 가운데 ‘사용자 보호’ 부문에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금지, 청소년의 온라인데이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적절한 단계(조치) 운영 등을 명시함.
- 이하모니(eHarmony), 프리데이팅(FreeDating), 더데이팅랩(The Dating Lab) 등 유명 회사들이 동참

* 출처: Inline Policy (2014. 9. 8) 홈페이지, <http://inlinepolicy.com/2014/online-dating-growth-regulation-and-future-challenges/>, (인출일 : 2017.8.8.).

- 인터넷감독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은 유럽연합이 재정지원을 하지만 독립적인 온라인 콘텐츠 자율규제기구로, 주요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과 협력하여 인터넷 상 아동·청소년의 성학대 관련 콘텐츠(이미지, 영상, 라이브방송)에 대한 감시활동과 유해사이트 목록을 관리함.
- 온라인 상 관련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서 해당 콘텐츠의 법률 위반 여부를 분석한 후 행정기관에 고지함.
- 동시에 해당 콘텐츠의 호스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공고문(takedown notice)을 발송하며, 대체로 몇 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가 제거됨.
- 민간이 문제가 된 콘텐츠를 반드시 차단, 삭제할 의무가 없음에도 필터링 또는 블로킹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등 IWF의 청소년유해콘텐츠 차단 노력에 동참함.

* 출처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2016. 3. 1) “2.11 Good Practice” 부분,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safety-online-a-practical-guide-for-providers-of-social-media-and-interactive-services/child-safety-online-a-practical-guide-for-providers-of-social-media-and-interactive-services>, (인출일 : 2017.8.8.).

4) 3-4. 유해환경 피해청소년 발굴 및 회복지원 강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 속에서 유해한 요소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해청소년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중앙 및 지자체 모두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 피해구제·사후관리 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하였는데, 이들 청소년을 위한 치유와 사회복귀 지원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의 중독 문제와 학교폭력 등 폭력피해, 그리고 근로권익 침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회복을 지원하고 조속히 사회와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중학생의 34.1%, 고등학생의 31.3%가 응답한 ‘폭력 및 학대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거나, 주변에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혹은 규제와 단속 보다 피해자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피해구제에 방점이 있을 뿐 사후관리 측면이 미약하고,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귀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립시설 1개소 정도만 설치되어 있어 피해청소년의 규모와 사안을 고려하여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소년원생,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등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같은 고위험군 청소년은 유해환경에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아 피해도 큰 상황이므로 집중적인 개입과 치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피해청소년 지원을 위해 친족성학대피해청소년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센터 간의 협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기관 신설 및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피해청소년의 회복지원과 관련하여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2004년 10월 14일부터 발효되고

있는데(조약 제1688호),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최소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피해청소년 예방 및 회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미국 일부 주를 포함한 주요국의 경우 형법에서 ‘청소년 성매매(juvenile prostitute)’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이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협약에서도 당연히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아동·청소년이 피해아동·청소년과 차별 없이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에 효과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주요내용]

제8조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행정조치·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 또는 강화·실행 및 보급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행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한 정보·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의 유해성과 예방조치에 대한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당사국은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적 수준을 포함한 이러한 **정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및 피해 아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3. 당사국은 **완전한 사회복귀 및 신체·심리적 회복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지원**을 위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출처: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4.10.14. 다자조약, 제168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2155&chrClsCd=010202>.
(인출일: 2017.10.25).

이와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 음주와 흡연을 포함한 유해약물의 오·남용, 각종 폭력피해, 근로권익 침해 사안 등의 경우 단기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참여로 문제해결과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피해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인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 서비스 수혜에 따른 만족도, 문제해결 정도, 회복 정도 등을 과정지표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한편, 피해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교를 포함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피해구제 관련 서비스 정보를 담은

자료를 비치하고 종사자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피해청소년 발굴과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거나 방송,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터넷, 스마트폰 과몰입, 약물오남용, 근로권의 침해 등의 피해가 있을 때 문자상담(#1388), 카카오톡 상담(#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24시간 핫라인(hot line)을 이용하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구제 사례 모음이나 안내서 등을 제작, 보급하고 피해경험 시 신고요령과 신고비용에 대한 정도를 사업의 과정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3-5. 지역사회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요소 강화

(1) 교육환경보호 강화

2016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동법 제3조), 교육환경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1항). 특히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선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등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명시한 업소의 운영과 행위 등이 금지된다(동법 제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호구역(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전국적으로 298개에 달하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6g, p.250).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보호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고 건축허가영업허가, 유해시설 방지 및 철거명령은 시·군·구청장의 소관이라 교육청의 단속과 개선 요구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법률을 근거로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과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동법 제10조 제3항)”,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동법 제10조 제4항)”.

따라서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학교와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는 위 법률과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근거로 추진하도록 하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및 실적에도 위 내용을 포함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내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 학교규정 운영 및 지도의 적절성, 지지적인 교사의 존재 등이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및 문제행동의 잠재적 보호요인을 확인된 만큼 주요 교육환경의 요소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동법 제4조),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따라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교육환경과 관련된 하드웨어 요소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요소를 포함하고 성과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의 생활환경보호 강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 범위 밖에 있는 청소년의 생활환경에 대한 정화와 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를 기준으로 한 보호구역 밖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단속실적이 2015년 한 해만 9,268 건에 달한다. 특히 같은 해 3월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단속 건수 가운데 술담배를 포함한 유해약물 등 판매 위반이 8,364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90%에 달한다(여성가족부, 2016g, p.247).⁹⁶⁾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53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2010년 화성·동탄2 신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6g, pp.247-248). 이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역사회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만족할수록 유해환경의 접촉과 위험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 단계에서 유해업소의 입지를 구획화하는 사업은 청소년과 청소년의 생활권인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접근임을 뒷받침하며 향후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이

96) 조치실적을 보면 9,268건 가운데 구속은 0건으로 모두 불구속조치가 이루어졌다.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적으로 273개의 감시단(총 19,099명)이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b). 감시단은 지역사회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감시단의 전문성 함양과 활동성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감시단의 자체적인 캠페인, 유해업소 점검·단속 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아웃리치(out-reach) 활동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 지원사업 등 청소년시설의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시너지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가운데 모니터링 실적 부분에 위의 활동성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감시단에 대한 직무교육 확대, 활동내용에 대한 평가, 회원자격 유지를 기본적인 조건 준수 등의 질 관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안)을 요약한 것이 <표 V-19>이다.

표 V-19 청소년보호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국정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신규 개선	추진시기 ¹⁾		주무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2년)	중장기 (5년)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1. 법률 및 지침 개정	1-1. 보호시책 추진 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 강화	○	신규	○		여성가족부
	1-2.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3. 청소년 유해환경 피해예방교육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4. 청소년 보호사업 분석평가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5. 학교의 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신규	○		"
	1-6. 선도보호조치 청소년 발굴 및 회복지원 근거 강화	○	신규	○		"
2. 추진 체계 정비	2-1. 청소년보호사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신규	○		"
	2-2. 성과지표 개선 및 환류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2-2-1. 정책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	○	개선	○		행정안전부
	2-2-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개선(안)					국무조정실
	2-2-3.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 실적보고 체계개선					
	2-3. 매체환경보호센터 기능 및 인력 확충					
	2-3-1. 1안 : 모니터링 영역 확대	○	개선	○		여성가족부
	2-3-2. 2안 : 모니터링+교육+성과관리 기능 확대					
	2-4. 청소년·가정·학교·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2-4-1. 청소년 : 참여기구 등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개선	○		여성가족부
3. 보호 사업 운영 내실화	2-4-2. 가정 : 부모책무 이행강화(청소년 이익 최우선)	○	개선	○		교육부
	2-4-3. 학교 : 청소년 발달 전략과 실행					지자체
	2-4-4. 지역사회 : 조례기반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3-1.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 사업 확대	○	개선	○		여성가족부
	3-2. 유해환경 규제 실효성 제고					
	3-2-1. 영상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섹스팅 규제	○	개선	○		여성가족부
	3-2-2. 청소년 피해예방, 권리 보장을 위한 세심한 제도 설계					방통위
	3-2-3. 유해업소 단속정보 정보공유 : 시정명령 이행을 관리					
	3-2-4. 소비자, 판매자보다 생산유통업자 규제 강화					
	3-3.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	○	개선		○	여성가족부
						방통위
						지자체
	3-4. 유해환경 피해청소년 발굴 및 회복지원 강화	○	개선	○		여성가족부
						법무부
						지자체
	3-5. 지역사회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요소 강화					여성가족부
	3-5-1. 교육환경보호 강화	○	개선	○		교육부
	3-5-2. 청소년의 생활환경보호 강화					지자체

* 주: 1) 단기 정책과제는 기존 정책 내에서 1~2년 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중장기 정책과제는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어 5년 내 추진 필요 과제를 기준으로 함.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신욱, 강혜규, 노대명, 이현주, 이병재 (2015).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정책보고서 2015-61).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배 (2013).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청소년행동연구**, 18, 53-80.
- 강진숙 (2010).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청소년 및 미디어교육 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5), 372-396.
- 고유빈 (201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게임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yhs.cdc.go.kr/new/pages/pds1.asp>에서 2017년 7월 30일 인출.
- 국무조정실 (2016).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595>에서 2017년 8월 30일 인출.
- 국회예산정책처 (2007). **사업평가방법론 연구** (사업평가 07-14).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권현오 (2012). 청소년 보호에 효과적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정보보호학회지**, 22(3), 37-40.
- 김성벽 (2007). 사이버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연구. **소년보호연구**, 제9호, 167-203.
- 김일환 (2016). 청소년보호를 위한 독일 규제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28(1), 1-29.

- 김지경, 하현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Ⅱ: 지역사회 진단·분석** (연구보고 14-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상준 (2015).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세종: 고용노동부.
- 김지경, 최인재 (201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지연 (2014).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토론 전자자료).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웹사이트 <https://opennet.or.kr/7498>에서 2017년 6월 1일 인출.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5-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머니투데이(2017.3.30). 온라인 도박 ‘사다리’에 2000만원 빚진 고교생.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32716265729398&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search%26sm%3Dtab_jum%26ie%3Dutf8%26query%3D%25EC%25B2%25AD%25EC%2586%258C%25EB%2585%2584%25EC%2582%25AC%25EC%259D%25B4%25EB%25B2%2584%25EB%258F%2584%25EB%25B0%2595%26url%3Dhttp%253A%252F%252Fwww.mt.co.kr%252Fview%252Fmtview.php%253Ftype%253D1%2526no%253D2017032716265729398%2526outlink%253D1%26ucs%3D9oizSB9tlCQh에서 2017년 6월 30일 인출.
- 모경환, 이미리, 김명정 (2014). **청소년문제와 보호**. 경기도: 교학사.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웹사이트 https://www.iapc.or.kr/info/mediaAddc/showInfoMediaAddcDetail.do?article_id=IC CART_0000000109198&board_type_cd=A1에서 2017년 9월 30일 인출.
- 박광선 (2016). 랜덤채팅의 음란정보 유통 실태 및 정책대안의 탐색. **경찰학연구**, 16(4), 125-156.
- 박종현 (2014).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최근의 소위 섯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2), 111-145.
- 박찬걸 (2015).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28(4), 33-57.

- 박찬걸 (2017).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30(1), 59-114.
- 배규한 (2014). 미래 청소년보호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113-136.
- 손애리 (2014).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3), 15-26.
- 송기철 (2012). 청소년 노동권의 효과적인 보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7(1), 153-172.
- 아시아경제 보도자료 (2017.3.31.). 배달앱 배달원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문 열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3111091852138>에서 2017년 6월 30일 인출.
- 양숙자 (2016). 부모양육태도 및 또래요인이 청소년 음란물 매체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729-742.
- 여성가족부 (2016a).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6b).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Ⅰ)(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6c).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016년도 시행계획(Ⅱ)(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6d).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내부자료)
- _____ (2016e). **2016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시범 운영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6f). **2016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6g).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보도자료 (2016.4.21.).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 수립·발표.
- _____ (2017a).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_____ (2017b). 내부자료.
- _____ (각년도). 예산자료(내부자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편.),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1-20.

-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연구보고서 13-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화 (2014). 청소년보호는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토론 전자자료).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 보호에 있어 부모와 국가의 역할**, 오픈넷 웹사이트 <https://opennet.or.kr/7498>에서 2017년 6월 1일 인출.
- 이성규 (2011). 인터넷 블로그 속 담배: 담배규제기본협약을 근거로 한 규제강화. **보건사회연구**, 31(4), 405-423.
- 이성규, 박주연, 김진영, 백민정, 박승의, 백하나 (2015). **금연정책 강화에 따른 담배제품 이용변화 및 신종담배 규제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이유진, 배규한, 이상희 (2014).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 (연구보고 14-R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윤식 (2011). **정책평가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정기, 오대영 (2014). 국내외 스마트폰 오픈마켓 유해정보 실태와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7-44.
- 이철수 (2013). **사회복지학 사전**. 경기도: 헤민박스.
- 이춘화, 강지명 (2009).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2호, 19-46.
- 이하림, 유홍식 (2017). 국내 유튜브 1인 창작자 콘텐츠의 내용적 유해성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소통학보**, 16(1), 119-152.
- 이해국, 박애란, 이보혜, 이수비 (2011).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2020** (연구보고서 2011-1). 서울: 알코올사업지원단.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0ahUKEwjRp-iGroTXAhVET7wKHYBzAHwQFggkMAA&url=http%3A%2F%2Fseoulmentalhealth.kr%2Fboard5%2FService%2FSimple%2Findex.jsp%3Fcmd%3DfileDown%26test_num%3D23&usg=AOvVaw2jjPdd487ocX1YtwLLKEqe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 임영덕 (2011). 청소년 보호법상 매체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청소년유해매체 정책·인터넷 게임중독 방지 정책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4(3), 87-106.
- 임현 (2012).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13(1), 131-153.

- 정금지, 윤영덕, 백수진, 지선하, 김일순 (2013). 한국인 성인 남녀의 흡연관련 사망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제38권 제2호, pp.36-48.
- 정의철 (2013).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 심의와 적극적 규제정책 연구. **한국언론학보**, 57(5), 423-464.
- 정재은, 장재홍 (2017). 청소년이 경험한 부부폭력, 자녀학대, 형제폭력과 학교폭력 가해/피해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5), 179-209.
-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5).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서울: 동현출판.
- 조운오, 이미정 (2013).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5(1), 259-286.
- 중앙일보 보도자료 (1996.8.19.). <새로 쓰는 가정 문화> 8. 때리는 아이, 때리는 부모. <http://news.joins.com/article/print/3313884>에서 2017년 10월 9일 인출.
- 최상진 (2017). **청소년의 근로실태와 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경험과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우정 (2015.12.14.).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KISO((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JOURNAL**, 21. http://journal.kiso.or.kr/?p=6967#identifier_1_6967에서 2017년 10월 19일 인출.
- 최종선 (2014).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유해미디어 심의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5(1), 304-333.
- 최해연, 곽윤영, 배주미 (2015). 청소년 성매매피해의 심리사회적 결정요인. **재활심리연구**, 22(1), 223-236.
- 최희경 (201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법조협회**, 62(2), 63-108.
- 코메디닷컴뉴스 보도자료 (2017.5.3.).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특수콘돔-자위기구 판매금지하는 위헌. http://www.kormedi.com/news/news/stat/1223173_2898.html에서 2017년 6월 30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7). 2017 청소년보호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내부자료).
- 한호일보 (2014.8.28.). 호주 첫 섹스팅 법안 빅토리아 주정부 상정.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07>에서 2017년 10월 21일 인출.
- 행정자치부 (2017). **2017년('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sessionId=IQIK9NYb0nUvFrXm4PVvaYVD953F1o7hD9NzwdOIXTz8b2am9orvTkSXkFwgmLAK.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57506에서 2017년 2월 6일 인출.
- 황성기 (2014).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 현재 2014.4.24. 2011헌마659등(병합),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등 위헌확인의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1(3), 25-47.
-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이미영, 안시영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15-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여정, 김지경, 이운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04). 서울: 여성가족부.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echt, M. L., Marsiglia, F. F., Elek, E., Wagstaff, D. A., Kulis, S., Dustman, P., & Miller-Day, M. (2003). Culturally grounded substance use prevention: An evaluation of the keepin' it R.E.A.L. curriculum. *Prevention Science*, 4(4), 233-248.
- Judge, A.M. (2012). "Sexting" among U.S.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legal perspectives [Electronic version].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0(2), 86 - 96. Retrieved October 18, 2017, from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512742>.
- Kulis, S., Marsiglia, F. F., Castillo, J., Becerra, D., & Nieri, T. (2008). Drug resistance strategies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in Monterrey, Mexico.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9(2), 167-192.
- Lee, S., Yun, J.E., Lee, J.K., Kim, I.S., Jee, S.H. (2010). The Korean Prediction Model for Adolescents' Future Smoking Intention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3(4), 283-291.
- Ling, P. M., Neilands, T. B., & Glantz, S. A. (2009). Young adult smoking behavior: a national surve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6(5), 389-394.
- Marsiglia, F. F., Kulis, S., Rodriguez, G. M., Becerra, D., & Castillo, J. (2009). Culturally specific youth substance abuse resistance skills: Applicability across the U.S.-Mexico Border.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8(2), 152-164.

- News Power (2005.5.14.). 가정안에 숨겨진 친밀성과 폭력의 비밀. <http://m.newspower.co.kr/3534>에서 2017년 9월 30일 인출.
- Park, E. (2006) School-based smoking pre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Health Education Research*, 21(3), 407-415.
-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n.d.). Communities that Care® Youth Survey. *Risk and protective factor scale construction summary*. http://www.sdrg.org/ctrresource/Risk_and_Protective_Factor_Scale.pdf에서 2017년 3월 24일 인출.
- White, A. R., Rampes, H., Liu, J. P, Stead, L. F., & Campbell, J. (2014). Do acupuncture and related therapies help smokers who are trying to quit.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1, 1-4.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The MPOWER package* 1-329. http://www.who.int/tobacco/mpower/gtcr_download/en/에서 2017년 7월 30일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March 20). The changed face of the tobacco industry [Electronic Version]. *Galvanizing global action towards a tobacco-free world Keynote address at the 15th World Conference on Tobacco or Health Singapore*, http://www.who.int/dg/speeches/2012/tobacco_20120320/en/에서 2017년 7월 30일 인출.

[국내 참고자료 및 웹사이트 자료]

- 국무조정실 (2015). 2015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 _____ (2016).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16~2018).
-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subview.jsp?id=nosmokeguide_030103010000에서 2017년 7월 30일 검색.
- 양군 블로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 설명자료. <http://yjhyjh.egloss.com/366791>에서 2017년 8월 18일 검색.
- 여성가족부 (2016).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2016년도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_____ 홈페이지. 조직도. http://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에서 2017년 6월 21일 인출.

_____ 홈페이지. 2012~2017년도 청소년 보호분야 민간보조사업 시행공고. <http://www.mogef.go.kr>에서 2017년 9월 19일 검색.

통계청 (2016). 9~24세 청소년 인구 통계자료.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97&board_cd=INDX_001에서 2017년 9월 20일 인출.

[해외 웹사이트 자료]

독일 T-Online 매거진 홈페이지. http://www.t-online.de/leben/familie/erziehung/id_57724390/jugendschutzgesetz-und-seine-grauzonen.html에서 2017년 7월 30일 인출.

미국 UCSF Library 홈페이지. 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s. <https://www.industrydocumentslibrary.ucsf.edu/tobacco/>에서 2017년 9월 1일 인출.

영국 The Children's Society & University of York (2013). The Good Childhood Report 2013 [Electronic version]. <https://www.childrenssociety.org.uk/what-we-do/resources-and-publications/publications-library/good-childhood-report-2013>에서 2017년 8월 20일 인출.

영국 NSPCC(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홈페이지. <https://www.nspcc.org.uk/preventing-abuse/keeping-children-safe/sexting/>에서 2017년 8월 7일 인출.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Policing and Crime Act 개정 내용 소개.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policing-and-crime-bill>에서 2017년 8월 7일 인출.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홈페이지(2016.3.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ild-safety-online-a-practical-guide-for-providers-of-social-media-and-interactive-services/child-safety-online-a-practical-guide-for-providers-of-social-media-and-interactive-services>에서 2017년 8월 8일 인출.

영국 내무부 홈페이지. Licensing act 개정 내용 소개.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mended-guidance-issued-under-section-182-of-the-licensing-act-2>

- 003에서 2017년 8월 9일 인출.
- 영국 Protection of Minors in EU 홈페이지. http://www.protection-of-minors.eu/en/GB_overview.php에서 2017년 8월 8일 인출.
- 영국 Inline Policy (2014. 9. 8) 홈페이지. <http://inlinepolicy.com/2014/online-dating-growth-regulation-and-future-challenges/>에서 2017년 8월 8일 인출.
- 프랑스 ATTITUDE PREVENTION 홈페이지. <http://www.attitude-prevention.fr/prevenir-drogue-enfant.html>에서 2017년 8월 20일 인출.
- 프랑스 DROGUES INFO SERVICE 홈페이지. <http://www.drogues-info-service.fr/Tout-savoir-sur-les-drogues/La-loi-et-les-drogues/Les-drogues-interdites#.We15i-RrymQ>에서 2017년 8월 20일 인출.
- 프랑스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홈페이지. <http://www.csa.fr/Les-reponses-du-Conseil-aux-questions-frequeemment-posees-FAQ>에서 2017년 8월 20일 인출.
- 프랑스 유럽연합 내 교육문화위원회 홈페이지. Mieux protéger les mineurs contre la violence en ligne, <http://www.europarl.europa.eu/news/fr/headlines/security/20170407STO70804/mieux-protoger-les-mineurs-contre-la-violence-en-ligne>에서 2017년 8월 20일 인출.

[법령 및 판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12.20. 일부개정, 법률 제1442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97&ancYd=20161220&ancNo=14424&efYd=2017062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계룡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6.10.20. 제정, 조례 제53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59293&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0>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헌재 2008.1.17. 2005헌마1215).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공중위생관리법(2016.12.27. 타법개정, 법률 제1447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561&ancYd=20161227&ancNo=14476&efYd=2017032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6.6.22. 제정, 조례 제218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38520&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0>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7.2.1. 제정, 조례 제148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276663&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0>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2015.11.9. 제정, 조례 제87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198960&chrClsCd=010202&gubun=ELIS&nwYn=Y&conDatGubunCd=0>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6.2.3. 제정, 법률 제1393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824&ancYd=20160203&ancNo=13937&efYd=20170204&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국가정보화 기본법(2017.3.14. 일부개정, 법률 제1457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298&ancYd=20170314&ancNo=14572&efYd=201709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헌재 2004.8.26. 2003헌마457).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헌재 2014.9.25. 2013헌마411 등).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국민건강증진법(2016.12.2. 일부개정, 법률 제1431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2&ancYd=20161202&ancNo=14318&efYd=20170603&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933, 제안일자: 2015.4.29.).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M5D0U4F2D9C1Q9S5C3Z3P6Y3J0Q5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843, 제안일자: 2016.7.13.)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D6R0I7D1T3J1X1A1B2E3X3Y2L5D1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995, 제안일자: 2016.7.20.).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T6S0B7G2G0W1R0Z5C6G1W9Z0G2X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담배사업법(2016.3.2. 일부개정, 법률 제1404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377&ancYd=20160302&ancNo=14042&efYd=2017030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4일 인출.
- 대한민국헌법(1987.10.29. 전부개정, 헌법 제1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ancYd=19871029&ancNo=00010&efYd=19880225&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5.12.22. 타법개정, 법률 제1358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647&ancYd=20151222&ancNo=13580&efYd=20160623&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헌재 1995.4.20. 92헌마264 등).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 사회보장기본법(2015.7.24. 타법개정, 법률 제1342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230&ancYd=20150724&ancNo=13>

426&efYd=201601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2월 15일 인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4.1.28. 타법개정, 법률 제12349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05&ancYd=20140128&ancNo=12349&efYd=2014072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70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544&ancYd=20170321&ancNo=14704&efYd=20170622&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소년법(2015.12.1. 일부개정, 법률 제1352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6680&ancYd=20151201&ancNo=13524&efYd=2015120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5.라.마. 위헌확인 (헌재 1999.9.16. 96헌마39).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31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71&ancYd=20170321&ancNo=14631&efYd=20170622&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아동복지법(2016.5.29. 타법개정, 법률 제1422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42&ancYd=20160529&ancNo=14224&efYd=2017053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04.10.14. 다자조약, 제168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trtyInfoP.do?mode=4&trtySeq=2155&chrClsCd=010202>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6737, 제안일자: 2013.9.6.).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

Detail.do?billId=PRC_Q1R3K0B9T0P6K1X7F4J4D3E3B8T8N9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09333, 제안일자: 2014.2.10.).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R4K0R2O1W0J1J3Q3H4B2S6M9E0C4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6.5.29. 일부개정, 법률 제14236호). 법제처 국가법
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69&ancYd=20160529&ancNo=14236&efYd=20161130&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
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478, 제안일자: 2016.8.8.).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M6E0P8J0K8P1A7M0V9B3N5K6G7L5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5598, 제안일자: 2017.2.13.).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I7B0N2M1X3P1O5P2K0D4U0O6X8W6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12.20. 일부개정, 법률 제1443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03&ancYd=20161220&ancNo=14430&efYd=2017062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6.1.6. 일부개정, 법률 제
1372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41&ancYd=20160106&ancNo=13726&efYd=20160707&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헌재 2006.11.30. 2004헌마
431 등).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
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3.22. 일부개정, 법률 제14080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842&ancYd=20160322&ancNo=14080&efYd=2017032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16.3.29. 일부개정, 법률 제1411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093&ancYd=20160329&ancNo=14118&efYd=20160329&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016.5.29. 전부개정, 법률 제14224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ancYd=20160529&ancNo=14224&efYd=20170530&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2883, 제안일자: 2016.10.24.).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Z6J1Q0A2W4H2Z0F5Q5X0I1F0Y2F1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 청소년 기본법(2004.2.9. 전부개정, 법률 제716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666&ancYd=20040209&ancNo=07162&efYd=20050210&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3일 인출.
- 청소년 기본법(2015.2.3. 일부개정, 법률 제13180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47&ancYd=20150203&ancNo=13180&efYd=20150504&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4690, 제안일자: 2015.4.13.).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T5P0F4G1A3L1I7L0O1N0L8H8K7Z5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5076, 제안일자: 2015.5.8.).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Y5N0W5H0F8I1W4Y3Z7C2F3J9U0F6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322, 제안일자: 2016.6.17.).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T5P0F4G1A3L1I7L0O1N0L8H8K7Z5

- C_H1N6Q0X6K1Y7P1U6O3G1Y0C6M0Q5V1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청소년 기본법(2016.12.20. 일부개정, 법률 제14445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0&ancYd=20161220&ancNo=14445&efYd=2017062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3일 인출.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1.1.18. 99헌마555).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 청소년 보호법(2011.9.15. 전부개정, 법률 제11048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6774&ancYd=20110915&ancNo=11048&efYd=20120916&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2월 15일 인출.
-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3 등 위헌확인(헌재 2014.4.24. 2011헌마659 등).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의안번호 2004131, 제안일자: 2016.12.6.).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M1F6T1R2Y0M6Y1X5C5B6W2F3Y0G0O0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 청소년 보호법(2016.12.20. 일부개정, 법률 제14446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1&ancYd=20161220&ancNo=14446&efYd=2017062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2월 15일 인출.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6306, 제안일자: 2017.3.21.).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A7Q0F3Y2B1E1A0S3B5H1Z0I9R3P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6685, 제안일자: 2017.4.11.).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H7H0D4S1T1A1Y0Y2H9Y4V1U6L0T8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 청소년복지 지원법(2016.12.20. 일부개정, 법률 제14447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422&ancYd=20161220&ancNo=14447&efYd=20170621&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헌재 1993.5.13. 92헌마80).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hm/index.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초·중등교육법(2017.3.21. 일부개정, 법률 제14603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10&ancYd=20170321&ancNo=14603&efYd=20170622&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헌재 2013.6.27. 2011헌바8 등).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7.4.18. 일부개정, 법률 제1476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3379&ancYd=20170418&ancNo=14762&efYd=201704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7월 10일 인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0.4.27. 98헌가16 등).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헌재 2016.5.26. 2014헌마374).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헌법재판소 (1992). 헌법재판소판례집. 4, 853-889.

헌법재판소 (1993). 헌법재판소판례집. 5(1), 365-385.

헌법재판소 (1995). 헌법재판소판례집. 7(1), 564-578.

헌법재판소 (1999). 헌법재판소판례집. 11(2), 343-355.

헌법재판소 (2000). 헌법재판소판례집. 12(1), 427-494.

헌법재판소 (2001). 헌법재판소판례집. 13(1), 119-128.

헌법재판소 (2004). 헌법재판소판례집(상). 16(2), 355-363.

헌법재판소 (2006.12.20.). 헌법재판소 공보. 제122호, 1356-1363.

- 헌법재판소 (2008). 헌법재판소판례집(상). 20(1), 111-123.
- 헌법재판소 (2013). 헌법재판소판례집. 25(1), 428-446.
- 헌법재판소 (2014). 헌법재판소판례집(하). 26(1), 176-208.
- 헌법재판소 (2014). 헌법재판소판례집(상). 26(2), 609-619.
- 헌법재판소 (2016). 헌법재판소판례집(하). 28(1), 360-386.
-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규정에 대한 위헌심판(헌재 1992.12.24. 92헌가8). 헌법재판정보
<http://search.ccourt.go.kr/thhs/pr/selectThsPr0101List.do>에서 2017년 5월 5일 검색.
- 형사소송법(2016.1.6. 타법개정, 법률 제13722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9031&ancYd=20160106&ancNo=13722&efYd=20170707&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에서 2017년 5월 5일
인출.

부 록

1. 설문지(초등학생)
2. 설문지(중·고등학생)
3.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요약)

부 록

1. 설문지(초등학생)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25%;"></td> </tr> </table>				

1

2017 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생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 나은 청소년보호정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보실 수 없고,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지연 연구위원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함인창 부장, 홍세정 대리 ※ 문의전화 : 080-674-1000
--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기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하주세요.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위표(X)를 하고, 바꾼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 하주세요.

02 보기 중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괄호 안에 적어주세요.

⑥ 휴대폰 문자 상담(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상담 포함)

⑦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기타에 기재하는 내용도 기록!)

03 질문 중 '모두 선택'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

만약 여러분이 휴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학교 선생님

③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⑤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사

⑦ 종교인(수녀, 신부, 승려, 목사, 전도사 등)

⑨ 형제지매

⑪ 학원 선생님(강사, 사범 등)

② 부모님(보호자)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

⑥ 의사

⑧ 친구

⑨ 나이가 나보다 많은 다른 청소년(선배 등)

⑫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04 응답을 선택한 후 화살표에 따라 반드시 해당번호로 이동해서 응답하세요.

9

여러분은 현재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②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지 않음

③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④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음

화살표 따라가기!

10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의 기능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 시간 제한 설정

②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부모님이 확인 가능(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등)

05 아래와 같이 같은 문항 안에서 앞의 응답에 따라 뒤의 응답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질문을 잘 읽고, **자시에 따라 정확히** 응답하세요.

15

다음 시설기관에 대해 학생의 지난 1년간의 이용 경험을 생각해 보고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해주세요. 만족도는 이용경험에 '2 있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 처음 들어봤거나 잘 모르는 시설기관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을 '1 없다'로 응답해 주세요.

내용	이용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주민자치센터(읍·면사무소)	① 없다 ② 있다 →	①	②	③	④	⑤
2) 종합사회복지관	① 없다 ② 있다 →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지역사회, 학교, 가정의 안전

1

다음은 청소년이 생활하기에 지역(동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우리 지역(동네)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오랫동안 이 지역(동네)에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으로서 생활하기에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만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부모님(보호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의견을 내도록 격려하고 경청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과 학교의 특성

3

다음은 학교 선생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이 시간을 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학교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우리 학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내에 운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수업 및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활동이나 교칙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친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나의 친구들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만약 담배나 술을 하려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만약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러 가자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의 보호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6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칸에 동그라미(○)표 해주세요.

항목 : 내 생각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주인에게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깐 사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가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주인을 알 수 없는 약간의 돈(1만원 정도)을 주었다면 그냥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표 해주세요.

항목 : 나는 아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싫다'고 말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거절할 것이고 그 이유를 말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거리를 둘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벗어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일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해당 칸에 동그라미(○)표 해주세요.

항목 : 나는 지난 해 ...	전혀 없었다	한두 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밤늦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느라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님(보호자)께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 한 적이 있다 (숙제를 못함, 약속을 어김, 학원 결석 등)	①	②	③	④
4)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여러분은 현재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②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지 않음
 ③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름
 ④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음

→ 12번 문항으로

10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의 기능을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 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 시간 제한 설정
 ②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부모님이 확인 가능(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등)
 ③ 내가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부모님이 확인 가능
 ④ 특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설정
 ⑤ 청소년 유해사이트 및 콘텐츠의 자동 차단
 ⑥ (부모님이) 내가 있는 위치 검색 가능
 ⑦ 위급상황 시 도움 요청
 ⑧ 내가 검색한 고민거리나 주제를 감지하여 부모님에게 알림
 ⑨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11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도움이 안 됨 ③ 도움이 됨 ④ 매우 도움이 됨

12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이 정해질 때, 여러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②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③ 반영되는 편이다 ④ 적극 반영된다
 ⑤ 잘 모르겠다

13

만약 여러분이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학교 선생님 | ② 부모님(보호자) |
| ③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 |
| ⑤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사 | ⑥ 의사 |
| ⑦ 종교인(수녀, 신부, 승려, 목사, 전도사 등) | ⑧ 친구 |
| ⑨ 형제자매 | ⑩ 나이가 나보다 많은 다른 청소년(선배 등) |
| ⑪ 학원 선생님(강사, 사범 등) | ⑫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

14

만약 여러분이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직접 만나서 상담자와 1:1로 상담
- ② 나를 포함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여러 명의 청소년과 상담자가 직접 만나서 상담
- ③ 나를 포함한 가족이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상담(가족 상담 캠프 포함)
- ④ 전화상담(휴대전화 포함)
- 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상담 포함)
- ⑥ 휴대폰 문자 상담(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상담 포함)
- ⑦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일반적인 사항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15 학생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만 세

16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

17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① 대도시(특별·광역시)'에 표시해 주세요.
나머지 지역은 '동'의 경우 ② 중소도시로, '읍·면·리'의 경우 ③ 농어촌(읍·면·리)로 표시해 주세요.

- ① 대도시(특별·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읍·면·리)

18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표 해 주십시오.

-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② 건강하지 못하다 ③ 보통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19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20 학생이 휴대 전화(스마트폰 포함)를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21 학생은 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만19세 미만(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표 해 주십시오.

-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22 학생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있는대로 모두 동그라미(○) 표 해 주십시오.

- ①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 ②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없음(나 혼자 산다) ⑩ 심터, 그룹홈, 위탁가정, 시설의 식구들
⑪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23 학생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에 대해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 해 주세요.

※ 부모님(보호자)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 지역 근무 또는 건강상 요양/입원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항목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1)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졸(중퇴 포함) 3. 전문대 졸(중퇴 포함) 4. 대졸(중퇴 포함) 5. 대학원 졸(중퇴 포함) 6. 잘 모르겠음	1. 중졸 이하 2. 고졸(중퇴 포함) 3. 전문대 졸(중퇴 포함) 4. 대졸(중퇴 포함) 5. 대학원 졸(중퇴 포함) 6. 잘 모르겠음	1. 중졸 이하 2. 고졸(중퇴 포함) 3. 전문대 졸(중퇴 포함) 4. 대졸(중퇴 포함) 5. 대학원 졸(중퇴 포함) 6. 잘 모르겠음
2) 직업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기타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기타	

24 학생은 몇 남 몇 녀 중 몇 째입니까?

남 녀 중 째

25 학생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 해 주십시오.

※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중국 조선족 가정 등을 말합니다.

① 다문화 가정이다

②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

26 학생은 자신의 학교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27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 형편(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낮은 수준	보통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설문지(중고등학생)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기록하지 마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40px;"> <tr>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1

2017 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사

중·고등학생용

부
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생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더 나은 청소년보호정책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및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보실 수 없고, 조사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 김지연 연구위원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함인창 부장, 홍세정 대리 ※ 문의전화 : 080-674-1000
--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1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기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하주세요.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워표(X)를 하고, 바꾼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 하주세요.

02 보기 중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괄호 안에 적어주세요.

⑥ 휴대폰 문자 상담(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상담 포함)

⑦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기타에 기재하는 내용도 기록!)

03 질문 중 '모두 선택' 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7

만약 여러분이 졸업, 응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학교 선생님

② 부모님(보호자)

③ 학교사회복지사(교목복지사)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

⑤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사

⑥ 의사

⑦ 종교인(수녀, 신부, 승려, 목사, 천도사 등)

⑧ 친구

⑨ 형제자매

⑩ 나이가 나보다 많은 다른 청소년(선택 등)

⑪ 학원 선생님(강사, 사범 등)

⑫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04 응답을 선택한 후 화살표에 따라 반드시 해당번호로 이동해서 응답하세요.

10

여러분은 현재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②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지 않음

③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④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음

화살표 따라가기!

1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의 기능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 시간 제한 설정

②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부모님이 확인 가능(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등)

05 아래와 같이 같은 문항 안에서 앞의 응답에 따라 뒤의 응답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질문을 잘 읽고, 지시에 따라 정확히 응답하세요.

25

다음 사실(가)에 대해 학생의 지난 1년간의 이용 경험을 생각해 보고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O) 표시를 하주세요. 만족도는 이용경험에 '2'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 차를 들어받거나 잘 모르는 사실(가)에 대해서는 이용경험을 '1' 없다고 응답해 주세요.

내용	이용경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종합사회복지관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지역사회의안전

1 다음은 지역(동네)과 이웃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우리 지역(동네)에서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심야시간대(밤10시 이후) 청소년이 보호자 동행 없이 출입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PC방, 오락실, 노래방, 피자방 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심야시간대(밤10시 이후) 청소년이 보호자 동행 없이 PC방, 오락실, 노래방, 피자방 등에 출입해도 어른들은 개의치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술에 취한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청소년이 생활하기에 지역(동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우리 지역(동네)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 동아리나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이 건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쁜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오랫동안 이 지역(동네)에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으로서 생활하기에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만한 곳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학교 주변 교육환경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과 학교의 특성

3

다음은 부모님(보호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나의 부모님(보호자)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스스로 의견을 내도록 격려하고 경청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학교 선생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발전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가까이 시간을 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학교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우리 학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내에 운동,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수업 및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활동이나 교칙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친구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나의 친구들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체로 학교생활에 충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대체로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만약 담배나 술을 하려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만약 학교나 학원을 빠지고 놀러 가자고 한다면, 나를 말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

7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내 생각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주인에게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잠깐 사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가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주인을 알 수 없는 약간의 돈(1만원 정도)을 주었다면 그냥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문장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나는 아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싫다'고 말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누군가 술이나 담배를 권한다면, 거절할 것이고 그 이유를 말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이나 상황과 거리를 둘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벗어나고자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9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일을 얼마나 자주 겪었습니까? 해당 칸에 동그라미(O)표 해주세요.

항목 : 나는 지난 해 ...	전혀 없었다	한두 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밤늦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느라 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부모님(보호자)께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 한 적이 있다 (숙제를 못함, 약속을 어김, 학원 결석 등)	①	②	③	④
4) 인터넷, 스마트폰, 또는 게임을 너무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후회하거나 좌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여러분은 현재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 ②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지 않을
- ③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만, 청소년보호 목적의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름
- ④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앱이 설치되어 있을

→ 13번 문항으로

1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의 기능을 모두 선택해주시요

- 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 시간 제한 설정
- ②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부모님이 확인 가능(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 등)
- ③ 내가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부모님이 확인 가능
- ④ 특정 사이트의 접속 차단 설정
- ⑤ 청소년 유해사이트 및 콘텐츠의 자동 차단
- ⑥ (부모님이) 내가 있는 위치 검색 가능
- ⑦ 위급상황 시 도움 요청
- ⑧ 내가 검색한 고인거라나 주제를 감지하여 부모님에게 알림
- ⑨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12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앱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 ② 도움이 안 됨
- ③ 도움이 됨
- ④ 매우 도움이 됨

13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이 정해질 때, 여러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②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반영되는 편이다
- ④ 적극 반영된다
- ⑤ 잘 모르겠다

14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분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계획·기획하는 단계
- ② 확정된 정책과 사업을 실행·추진하는 단계
- ③ 완료된 정책과 사업을 평가·반영(feedback)하는 단계
- ④ 잘 모르겠다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한 평가

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도움정도' 칸에 표시) 그리고 각각의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B 인지여부' 칸에 표시)

※ (A) 도움정도, (B) 인지여부 각각 모두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사업 및 활동	(A) 도움정도				(B) 인지여부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 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모른다	안다
1) 업소의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제도	①	②	③	④	①	②
2) 청소년이 담배나 술을 구매하고자 할 때 신분증 확인	①	②	③	④	①	②
3)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 사술사업	①	②	③	④	①	②
4) 청소년 유해업소(출입 · 고용금지) 지정 · 단속	①	②	③	④	①	②
5) 심야시간 대 인터넷게임 간접이용제도(셋다운제)	①	②	③	④	①	②
6)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 점검	①	②	③	④	①	②
7) 유튜브(YouTube) 등의 청소년 유해매체를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①	②
8) 청소년 통행금지구역(Red Zone)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①	②	③	④	①	②
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①	②	③	④	①	②
1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①	②	③	④	①	②
11) 성범죄자 신상 정보(인터넷) 공개	①	②	③	④	①	②
12)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제도	①	②	③	④	①	②
1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가게, 업소 등)에 대한 감독 · 단속	①	②	③	④	①	②

16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A 도움정도’ 칸에 표시) 그리고 지난 1년간, 각각의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으신가요? (‘B 참여여부’ 칸에 표시)

※ (A) 도움정도, (B) 참여여부 각각 모두 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	(A) 도움정도				(B) 참여여부	
	전혀 도움이 안됨	도움이 안 되는 편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참여 하지 않음	참여
1) 유해악물 예방 교육/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①	②
2) 흡연 또는 음주 예방 교육/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①	②
3) 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①	②
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①	②
5) 매체이용 관련 윤리 교육	①	②	③	④	①	②
6)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포함)	①	②	③	④	①	②
7) 청소년 성문화센터(이동형 센터 포함)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①	②
8) 금연 또는 금주(술을 끊음)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①	②
9)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①	②
10)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가족 캠프 포함)	①	②	③	④	①	②
11)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해피워크 매니저) 지원	①	②	③	④	①	②

17

만약 여러분이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학교 선생님 | ② 부모님(보호자) |
| ③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사 |
| ⑤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기관의 상담사 | ⑥ 의사 |
| ⑦ 종교인(수녀, 신부, 승려, 목사, 전도사 등) | ⑧ 친구 |
| ⑨ 형제자매 | ⑩ 나이가 나보다 많은 다른 청소년(선배 등) |
| ⑪ 학원 선생님(강사, 사범 등) | ⑫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

18

만약 여러분이 흡연, 음주, 또는 과도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는다면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원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① 직접 만나서 상담자와 1:1로 상담
- ② 나를 포함한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여러 명의 청소년과 상담자가 직접 만나서 상담
- ③ 나를 포함한 가족이 상담자와 직접 만나서 상담(가족 상담 캠프 포함)
- ④ 전화상담(휴대전화 포함)
- ⑤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상담 포함)
- ⑥ 휴대폰 문자 상담(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한 상담 포함)
- ⑦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과 피해예방

19 지난 1년간 여러분은 다음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보거나 이용하였나요?

매체	없음	년 1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3-4 개월에 1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1회 이상
1) 성인용 영상물 (19세 이상 시청가능한 TV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성인용 간행물 (19세 이상 이용가능한 만화, 소설, 잡지, 사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성인용 온라인 게임(19금, 폭력성 게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돈 또는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게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조건 만남 메신저 또는 채팅 앱(예: 줌톡, 앙톡, 영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폭력·선정적인 개인 인터넷방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지난 1년간 여러분은 다음의 음료나 물질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나요?

음료 및 물질	없음	년 1-2회	3-4 개월에 1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1) 고카페인 · 에너지음료 (HOT6, RedBul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흡입 형태의 비타민 (비타스틱, 비타콜, 비타미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술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 등 몇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담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전자담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환각성 물질 (부탄가스, 본드 등 화학물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친구, 선후배 등 다른 사람에게 다음의 행위를 얼마나 자주 행하였나요?

타인에 대한 행위	없음	년 1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3-4 개월에 1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1회 이상
1)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손, 발, 혹은 물건 등으로 때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돈이나 물건을 빼앗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왕따(따돌림)를 시키거나 그런 행위에 동참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런 행위에 동참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청소년에게 유해한 해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
- ②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
- ③ 폭력·학대피해 청소년 지원정책
- ④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지원정책
- 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정책
- ⑥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 유해행위를 단속하는 정책
- ⑦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유해행위에 대한 처벌 정책
- ⑧ 기타(직접 적어주세요: _____)

23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심야시간대(밤 10시 이후) 다음의 장소에 얼마나 자주 갔나요?
밤 10시 이전에 출입하여 밤 10시 이후까지 머물렀던 경험도 포함합니다.

※ 단,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이용했던 경험은 제외됩니다.

방문 또는 이용한 적이 있는 매장/가게/교습소	없음	년 1회 정도	6개월에 1회 정도	3~4 개월에 1회 정도	월 1회 정도	월 2~3회 정도	주1회 이상
1) 전자오락실	○	①	②	③	④	⑤	⑥
2) PC방	○	①	②	③	④	⑤	⑥
3) 노래방 (코인노래방 포함)	○	①	②	③	④	⑤	⑥
4) 멀티룸 (물카페 포함)	○	①	②	③	④	⑤	⑥
5) 비디오·DVD방	○	①	②	③	④	⑤	⑥
6) 인형뽑기방	○	①	②	③	④	⑤	⑥
7) 뽕질방	○	①	②	③	④	⑤	⑥
8) 술집 (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등)	○	①	②	③	④	⑤	⑥
9) 학원이나 교습소	○	①	②	③	④	⑤	⑥

24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25번으로

24-1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의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A 경험정도' 칸에 표시) 다음과 같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없음'을 제외하고 모두 응답), 그 당시 아르바이트 업종은 무엇이었나요? ('B 아르바이트 업종' 칸에 표시)

※ (A) 경험정도에 '없음' 이 아닌 경우('어쩌다 한 번', '가끔', '자주'에 해당), 해당 경험을 한 아르바이트 업종을 아래의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작성 해 주세요.

작성 예시

아르바이트 시 경험	(A) 경험정도				(B) 아르바이트 업종 업종 번호
	없음	어쩌다 한 번	가끔	자주	
1) 임금(시급, 일당, 수당 등)을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	①	②	③	
2)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한 금액 보다 적게 받았다	○	①	②	③	2
3) 일하기로 약속한 날 또는 시간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	○	①	②	③	20 (라디오)

아르바이트 시 경험	(A) 경험정도				(B) 아르바이트 업종 업종 번호
	없음	어쩌다 한 번	가끔	자주	
1) 임금(시급, 일당, 수당 등)을 약속한 날보다 늦게 받았다	○	①	②	③	
2)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한 금액 보다 적게 받았다	○	①	②	③	
3) 일하기로 약속한 날 또는 시간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	○	①	②	③	
4) 초과근무를 했지만 그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	①	②	③	
5)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6)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7)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	①	②	③	
8) 일을 하다가 다쳤으나 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	①	②	③	
9) 기타(부당한 경험 내용을 적어주세요: _____)	○	①	②	③	

① 음식점, 식당, 레스토랑

④ 학원, 사점, 문구점

⑦ 공장(제조, 가공, 포장, 조립 등)

⑩ 재택아르바이트

⑬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⑯ PC방, DVD방, 노래방, 만화방

⑲ 소주장, 호프, 카페

② 뷔페, 웨딩홀, 연회장

⑤ 대형마트, 쇼핑몰, 아울렛, 백화점

⑧ 물류창고, 택배 상하차

⑪ 주유소

⑭ 일반 회사(사무직)

⑰ 베이커리 또는 아이스크림 가게

⑳ 기타

③ 전단지 배포(스티커 부착)

⑥ 패스트푸드점(피자, 치킨, 햄버거)

⑨ 의류, 잡화, 가전, 휴대폰 등 매장

⑫ 주차장

⑮ 공사현장

⑱ 편의점



일반적인 사항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25 학생의 나이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만 세

26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 |

27 학생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모두 '① 대도시(특별·광역시)'에 표시해 주세요.
 나머지 지역은 '둘'의 경우 ② 중소도시로, '읍·면·리'의 경우 ③ 농어촌(읍·면·리)로 표시해 주세요.

- | | | |
|---------------|--------|--------------|
| ① 대도시(특별·광역시) | ② 중소도시 | ③ 농어촌(읍·면·리) |
|---------------|--------|--------------|

28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표 해 주십시오.

- | | | |
|---------------|------------|------|
|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② 건강하지 못하다 | ③ 보통 |
| ④ 건강한 편이다 | ⑤ 매우 건강하다 | |

29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30 학생이 휴대 전화(스마트폰 포함)를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얼마나 됩니까? 아래에 써 주십시오.

주중(월~금)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주말(토~일)에는 하루 평균 약 시간 분(사용하지 않는 경우 "0"으로 표시)

31 학생은 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혹은 만19세 미만(미성년)인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 해 주십시오.

-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32 학생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 해당 번호에 있는대로 모두 동그라미(○) 표 해 주십시오.

- ① 할아버지 또는 외할아버지 ② 할머니 또는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없음(나 혼자 산다) ⑩ 심터, 그룹홈, 위탁가정, 시설의 식구들
⑪ 기타(내용을 써주세요: _____)

33 학생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에 대해 해당 번호에 동그라미(○) 표 해 주세요.

- ※ 부모님(보호자)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을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 지역 근무 또는 건강상 요양/입원 등의 이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사는 가족에 포함됩니다.

항목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1) 교육수준	1. 중졸 이하 2. 고졸(중퇴 포함) 3. 전문대 졸(중퇴 포함) 4. 대졸(중퇴 포함) 5. 대학원 졸(중퇴 포함) 6. 잘 모르겠음	1. 중졸 이하 2. 고졸(중퇴 포함) 3. 전문대 졸(중퇴 포함) 4. 대졸(중퇴 포함) 5. 대학원 졸(중퇴 포함) 6. 잘 모르겠음	1. 중졸 이하 2. 고졸(중퇴 포함) 3. 전문대 졸(중퇴 포함) 4. 대졸(중퇴 포함) 5. 대학원 졸(중퇴 포함) 6. 잘 모르겠음
2) 직업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기타	1. 사무/전문/관리직 2. 판매/서비스/영업직 3. 생산/기술/노무직(노동자) 4. 농림·어업 5. 자영업(개인사업 및 장사 포함) 6. 주부 7. 무직/기타	

3.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요약)

법명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개정 내용	1999.2.5.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뿐만 아니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악물 및 청소년유해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규정 신설, 개정 청소년폭력과 학대 등 청소년보호 강화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및 동법에서 규정된 청소년보호 관련규정 통합 청소년 연령 상향조정(18세미만→19세미만) * 신설조항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확대(교육, 홍보, 치료, 재활) 청소년보호센터 등 설치규정마련(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공무원 파견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청소년업무의 효율적 운영 제고)	2005.12.29.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제명변경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적 착취·학대행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사회적 책임 강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추가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형태 추가(화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기관 신고의무 규정 신설 가해 청소년의 처리에 대한 규정 신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정보 등록 결정 및 열람, 통보 및 관리, 청소년관련 교육 기관 등에 의 취업제한, 취업자의 해임(폐쇄)요구 등 규정 신설
	2001.5.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보호대상 청소년의 연령조정 (당해연도 중 만19세가 되는 자는 청소년에서 제외함)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상대방의 연령 확인 및 청소년유해업소 종업원 고용 시 연령 확인을 통해 청소년 고용 사전 차단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일탈 청소년 중 선도, 보호조치가 필요한 자는 관할경찰서장, 소속학교장, 보호자 등에게 사실통보하고 효과적인 선도·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007.8.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죄를 반의사불벌죄 변경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대상 확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격리 및 보호결정 규정 신설 * 세부내용 가. 지상파 방송업자의 홍보영상 송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동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피해 청소년의 보호 확대·강화 (1) 친부(親父) 등에 의한 성범죄는 지속성을 특성으로 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2)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법원에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해임결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친권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보호시설에 보호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죄로 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민사손해배상으로 전락시켜서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로 막고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의 강화 (1)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성범죄자의 관리가 필요하고,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전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기간을 5년에서

법명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0년으로 연장하며,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일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열람권자를 관련 피해자 등에서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으로 확대함 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확대 (1)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취업제한기간이 현행 형 확정 후 5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짧아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취업제한의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 확정 후 10년으로 상향 조정함. (3)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04.1.29.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 심의대상 확대 (특수일간신문 → 일반일간신문)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 요구 및 거부 시 출입 제한 청소년 대상 다방 내 다류 외부배달 조정 및 목인 금지, 성적 접촉행위 등 유해행위를 목적으로 금전채무 등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무효처리 및 관련 채권은 변제요구 금지	2008.2.29.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법령 내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함
	2005.3.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 신설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통합, 일원화)	2009.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주요내용 제명변경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함(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 신설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규정 신설 * 세부내용 가. 제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검사에게 진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마. 법인 또는 개인이 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법원은 범죄가 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법명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선고하도록 함 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함 아.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005.12.29. 타법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 기본법」일부개정으로 청소년위원회→국가청소년위원회 변경	2010.1.18. 타법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일부개정에 따른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
	2005.12.29.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 친권자 등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가출 및 비행 등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 단속 기관에 협조 요청 규정 신설 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친권자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함 (보호자→친권자로 변경) 유독물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에서는 청소년 고용 가능	2010.4.15. 일부개정 * 주요내용 음주나 약물상태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벌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 고지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제도 도입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 대상에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 확대 * 세부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죄와 강도강간의 죄를 포함하도록 함 나.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함 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한 형량을 강화함 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감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 함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청구를 의무화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 반의사 불발죄의 범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죄로 대폭 축소함 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영상물 또는 기타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 그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함 자.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분리 또는 퇴거 조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의 보호처분을 법원에

법명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6개월의 범위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하도록 하며, 보호처분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차.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카.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의 요지 등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함 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추가하고, 취업제한 관련 교육기관 등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치는 설립당시 관할청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2008.2.29. 일부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국가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 삭제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로 기존 역할 및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의결 등에 관한 업무 수행)	2010.7.23. 일부개정 * 주요내용 법 개정(2009.6.9. 공포, 2010.1.1.시행)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규정 신설
	2010.1.18. 타법개정 *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일부개정에 따른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2011.9.15. 일부개정 *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 확대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처벌 규정 신설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처벌 강화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 성매매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 세부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도록 함 나.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자신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등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소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출석권,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 라. 소년부로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필요적 수감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마. 아동·청소년을 대한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법명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2011.5.19.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규정 신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예방, 상담 및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012.12.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 명확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며 관련 조항 삭제 신상정보 고지 제도 확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공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 세부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주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등 상향조정함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고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함 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공개대상을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교교과교육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 함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
	2011.7.28.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한 재심의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016.5.29. 일부개정 * 주요내용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 실시 근거 마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계산 시 타범죄로 교정시설 수용기간 제외 * 세부내용 가.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법명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2011.9.15. 「청소년 보호법」전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유해업소의 범위 확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나 대여 등을 할 때 본인여부 확인하도록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내용 공표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받도록 함 유해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 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 규정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 * 세부내용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증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을 추가함 나.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이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마. 16세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게임 이용정보를 친권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바.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 자.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차.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레법」상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 기간(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의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가정방문학습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에 포함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및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도록 함

법명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2012.1.17. 일부개정 * 주요내용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 명시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 단축(60일→30일)	
	2013.3.22.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추가(복합영상물제공업소)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해매체물등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의 신설	
	2014.3.24.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추가(승매(자)투표권 장외매장) 및 경마나 경전경륜이 개최되지 아니하는 날은 제외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금지 주류, 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2014.5.28.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부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의 보호의무자는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에 대한 판별검사 및 치료지원 및 구체적 기간 명시, 검사 및 치료 결정시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치료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 및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2016.3.2.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강박의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청소년고용 및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2016.12.20. 일부개정 * 주요내용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판매한 자 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 청소년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숙박업 내 종사자 배치 혹은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규정 신설	

Abstract

A Study of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of Current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verall status of current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and discover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in the 20th year of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main contents of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The first was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o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juveniles which are needed to promote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The second was the multilateral analysis about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ystems and promotion conditions of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The third was the survey on juveniles' status of the contact with noxious environments and verifications of the operating status of major protection systems and the protection impact of environmental system related to the contact with noxious environments. The fourth was the deduction of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current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study,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search on precedent studies conduc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urthermore,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used which include the investigations on the enforcement plans of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Formulation, etc. of Comprehensive Measure for Protection of Juveniles, the secondary data analysis on the original data of status survey on the juveniles' media use and noxious environments of 2016, survey for the youth, interview survey for unenrolled youth and parents, AHP, policy councils, etc.

The major research conclusions are as follows. Concerning the constant emergence of new and mutant noxious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otection policies in regards of the juveniles' participation and autonomy, as well as to approach delicately centered on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overall current policy status, it has been discovered that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control tower to prevent similar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in central government and reduce blind spots. Also, in response to the changing policy keynotes, expansion of counteracting projects for preventing the noxious environments by general account budget and enlargement in subsidy for the protection projects

conducted by private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necessary. In particular, the influences of risk factors and protection factors in an environmental system such as families, peers, school, local community, etc. surrounding the juveniles were examined to deduct the intervention fields and points for the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These include legislative amendments for arranging legal rounds and anticipative counteracts to secure and protect the juveniles' mental health, and circumfluence alternatives of policies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In addition to this, I proposed solutions for rais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or the noxious environments, activating recovery support, discovering victim juveniles, improving the response competence of the juveniles in the noxious environment, and construction of the regulated autonomous regulation system.

Based on the conclusions, the deducted tasks are strengthening the basis of promoting the related policies through enactment and amendment of legislation to improve the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enhancement in policy effectiveness and modification of the related policy system, the three policies and fifteen detailed projects such as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measures to secure the rights of the juveniles to be protected, etc.

Topics: juvenile protection, Juvenile Protection Act, noxious environment, response capabilities, autonomy, regulation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제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윤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여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rley, J·Losito, B·Agrust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 시 과 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탁과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강정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광기 (인제대학교 교수)
김기남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회장)
김길형 (청소년보호연맹 사무총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김영진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김태동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주무관)
박선영 (한세대학교 교수)
신병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사무관)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
이광호 (경기대학교 교수)
이성규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양대 겸임교수)
이순래 (원광대학교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
조진서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한미경 (San Jose State University Professor)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나다 순)

감 수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연구보고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인 쇄 2017년 12월 23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51-6 94330

979-11-5654-142-4 (세트)

연구보고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340**

